

# 성년후견제도 운영 개선 방안 모색

## : 치매 및 인지저하 노인의 의사결정 지원을 중심으로

이선희

김혜수·강은나·김세진·이연지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 연구진

|       |     |                      |
|-------|-----|----------------------|
| 연구책임자 | 이선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 공동연구진 | 김혜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
|       | 강은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       | 김세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       | 이연지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법학교수 |

연구보고서 2024-22

### 성년후견제도 운영 개선 방안 모색

: 치매 및 인지저하 노인의 의사결정 지원을 중심으로

발 행 일 2024년 12월  
발 행 인 강 혜 규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 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 쇄 처 (사)아름다운사람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ISBN 979-11-7252-039-7 [93330]  
<https://doi.org/10.23060/kihasa.a.2024.22>

## 발|간|사

고령인구 증가와 함께 치매 유병인구의 증가 속도 역시 가파를 것으로 예견된다. 치매로 인한 인지능력 저하로 스스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동의할 능력이 부족해진 경우, 사회생활에서 필수적인 재화나 서비스를 획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립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 또는 결여된 자 등을 대상으로 2013년 7월 성년후견제도가 새롭게 시행되었다. 민법에 의해 운영되는 광의의 성년후견(법정후견)은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에 따라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같은 사회적 관심에 더하여 2018년 7월 치매관리법이 개정되어 치매공공후견사업이 도입되었다. 이 사업은 성년후견제도를 기반으로, 단순한 돌봄을 넘어 치매노인의 삶 전반에 걸친 의사결정 지원을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편 치매공공후견사업은 다양한 후견 유형 중 특정후견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후견인에게 특정 사무에 관한 일시적인 후견 권한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사업이 해결해야 할 명확한 한계들이 존재한다.

후견제도의 활성화가 의사결정 지원의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의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되기 전에 장래의 의사를 미리 표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현행 후견제도의 한계를 인정하고, 의사결정 지원 측면에서 이를 강화하기 위한 단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접근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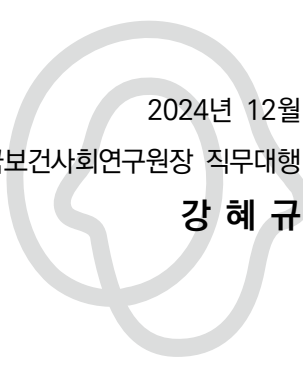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매노인의 의사결정 지원 관점에서 현행 치매공



공후견사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법정후견 전반의 쟁점을 다루는 것 역시 의미 있는 작업이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치매공공후견사업에 집중하였다. 현재 공공후견이 아닌 전체 법정후견의 경우, 친족이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비율이 높고, 청구의 목적 역시 재산 보호에 집중된다. 친족 후견이 갖는 제한점도 있겠으나, 피후견인의 입장에서 볼 때 사회적 관계망(친족)이 존재하며 이들이 신상보호와 관련한 지원을 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초점과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현재까지 후견제도의 이념인 자기결정권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강조되었으나, 이것이 원론적인 수준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관점에서 이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치매노인의 보호 및 자기결정권 강화 측면에서 현행 후견제도의 쟁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이선희 부연구위원의 책임하에 원내의 강은나 연구위원, 김세진 부연구위원, 김혜수 연구원과 함께 원외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연지 임상법학교수가 수행하였다. 연구진은 본 연구에 대해 귀중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원내의 이한나 연구위원, 원외의 동의대학교 이민홍 교수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



2024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직무대행  
**강 혜 규**

# 목 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            |
|-----------------------------------|------------|
| 요 약 .....                         | 1          |
| <b>제1장 서론 .....</b>               | <b>11</b>  |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 13         |
|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 20         |
| <b>제2장 선행연구 고찰 및 현황 분석 .....</b>  | <b>25</b>  |
| 제1절 후견 및 의사결정 지원에 대한 논의 .....     | 27         |
| 제2절 치매노인의 의사결정 지원 .....           | 31         |
| 제3절 성년후견제도 개괄 및 현황 분석 .....       | 36         |
| <b>제3장 국내외 유관 사례 분석 .....</b>     | <b>67</b>  |
| 제1절 분석 개요 .....                   | 69         |
| 제2절 국내 사례 분석 .....                | 70         |
| 제3절 해외 사례 분석 .....                | 117        |
| 제4절 소결 .....                      | 157        |
| <b>제4장 치매공공후견사업 진단 및 쟁점 .....</b> | <b>163</b> |
| 제1절 분석 개요 .....                   | 165        |
| 제2절 피후견인 측면에서의 현황 진단 .....        | 169        |
| 제3절 후견인 측면에서의 현황 진단 .....         | 186        |
| 제4절 치매안심센터 측면에서의 현황 진단 .....      | 212        |
| 제5절 후견감독관 측면에서의 현황 진단 .....       | 246        |

---

|                             |            |
|-----------------------------|------------|
| 제6절 소결 .....                | 258        |
| <b>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b> | <b>269</b> |
|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          | 271        |
| 제2절 정책 제언 .....             | 280        |
| <b>참고문헌 .....</b>           | <b>291</b> |
| <b>Abstract .....</b>       | <b>303</b> |

# 표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    |
|---------------------------------------------------------------|----|
| 〈표 1-1〉 65세 이상 추정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유병률(2015~2023년) .....           | 13 |
| 〈표 1-2〉 전체 및 65세 이상 인구 대비 1인 가구 비율(2013~2023년) .....          | 15 |
| 〈표 1-3〉 전문가 포럼 및 자문회의 운영 .....                                | 22 |
| 〈표 1-4〉 심층면접 및 FGI 운영안 .....                                  | 23 |
| 〈표 2-1〉 노인 돌봄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지원 원칙과 행동 지침 .....                   | 34 |
| 〈표 2-2〉 자기결정에 기반한 의사결정 지원 구성요소 .....                          | 35 |
| 〈표 2-3〉 법정후견업무 이행 절차 .....                                    | 38 |
| 〈표 2-4〉 후견 유형 비교 .....                                        | 41 |
| 〈표 2-5〉 가정(지방)법원별 후견 유형별 성년후견 사건 누적 접수 건수 현황(2014~2022년) .... | 44 |
| 〈표 2-6〉 후견 대상자 선정 기준(2024년 기준) .....                          | 48 |
| 〈표 2-7〉 치매공공후견사업 추진체계 .....                                   | 50 |
| 〈표 2-8〉 공공후견인 선정 기준(2024년 기준) .....                           | 56 |
| 〈표 2-9〉 치매공공후견인 후보자 선발 기준표(예) .....                           | 56 |
| 〈표 2-10〉 치매공공후견인 후보자 보수 교육(예) .....                           | 57 |
| 〈표 2-11〉 치매공공후견인의 주요 업무 .....                                 | 58 |
| 〈표 2-12〉 후견심판청구 건수(누적) .....                                  | 62 |
| 〈표 2-13〉 지역별 후견심판청구 건수(누적) .....                              | 62 |
| 〈표 2-14〉 후견심판청구 건수별 치매안심센터 분포(누적) .....                       | 63 |
| 〈표 2-15〉 치매공공후견인 양성 및 실제 활동(대기) 인원 수(누적 기준) .....             | 64 |
| 〈표 2-16〉 치매공공후견인 양성 교육 주제 및 교육 시간 .....                       | 64 |
| 〈표 2-17〉 후견 대상자 주요 특성 .....                                   | 65 |
| 〈표 2-18〉 후견인 후보자 및 피후견인 간 관계 .....                            | 66 |
| 〈표 3-1〉 국내외 유관 사례 분석 개요 .....                                 | 70 |
| 〈표 3-2〉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추진 근거 .....                            | 71 |
| 〈표 3-3〉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목표 사업량 및 사업 예산 추이 .....                | 74 |
| 〈표 3-4〉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추진체계 .....                             | 75 |
| 〈표 3-5〉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우선 고려 항목 .....             | 78 |

|                                                      |     |
|------------------------------------------------------|-----|
| 〈표 3-6〉 후견심판청구 관련 주요 필요 서류 및 작성 주체(발달장애인 공공후견)       | 79  |
| 〈표 3-7〉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후견인 양성 및 보수 교육 커리큘럼 예시        | 81  |
| 〈표 3-8〉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후견인 사무 및 대리권 범위(예시)           | 83  |
| 〈표 3-9〉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사업에서 후견감독인의 역할                     | 86  |
| 〈표 3-10〉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모니터링 대상별 점검 내용               | 88  |
| 〈표 3-11〉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추진 근거                      | 91  |
| 〈표 3-12〉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사업비 현황                     | 93  |
| 〈표 3-13〉 정신질환자 공공후견법인 사업 운영 현황(2024. 4. 30. 기준)      | 95  |
| 〈표 3-14〉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추진체계                       | 96  |
| 〈표 3-15〉 정신질환자 공공후견지원사업 대상자 기본 조건 및 우선 항목            | 98  |
| 〈표 3-16〉 후견심판청구 관련 주요 필요 서류 및 작성 주체(정신질환자 공공후견)      | 99  |
| 〈표 3-17〉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후견 담당자 교육 과정               | 100 |
| 〈표 3-18〉 후견활동 관련 공공후견법인 작성 및 제출 서류(정신질환자 공공후견)       | 101 |
| 〈표 3-19〉 공공후견법인 후견 담당자의 주요 업무                        | 103 |
| 〈표 3-20〉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에서 후견감독인(지자체)의 역할           | 104 |
| 〈표 3-21〉 국내 공공후견사업 비교                                | 116 |
| 〈표 3-22〉 지역연계 네트워크의 구성요소                             | 127 |
| 〈표 3-23〉 의사결정 지원 중심으로 후견제도가 운용되도록 하는 방안              | 141 |
| 〈표 3-24〉 본인이 직접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 145 |
| 〈표 3-25〉 독일 Hochtaunuskreis 지역 성년후견청의 역할 및 우리나라와의 비교 | 155 |
| 〈표 4-1〉 조사 대상 및 방법                                   | 167 |
| 〈표 4-2〉 조사 내용                                        | 168 |
| 〈표 4-3〉 참여자 주요 특성(피후견인)                              | 169 |
| 〈표 4-4〉 참여자 주요 특성(후견인)                               | 186 |
| 〈표 4-5〉 참여자 주요 특성(치매안심센터 사업 담당자)                     | 213 |
| 〈표 4-6〉 참여자 주요 특성(후견감독관)                             | 247 |
| 〈표 4-7〉 심층면접 및 FGI를 통해 도출된 주요 쟁점                     | 264 |
| 〈표 4-8〉 심층면접 및 FGI를 통해 도출된 후견 과정에서의 어려움 및 개선사항       | 26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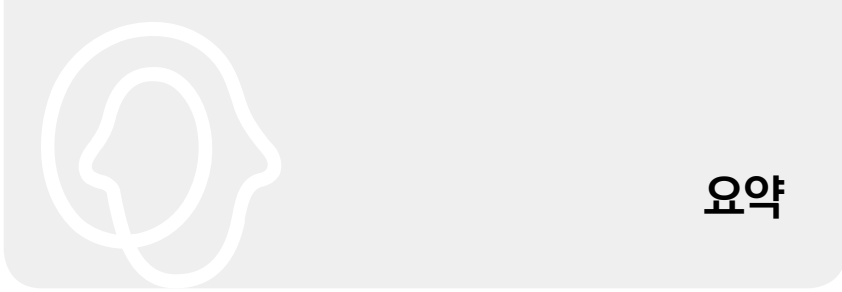
# 그림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     |
|-------------------------------------------------------------------|-----|
| [그림 2-1] 기존 제도 및 성년후견제도 간 차이 .....                                | 37  |
| [그림 2-2] 전국 연도별 후견 유형별 성년후견 사건 접수 건수 현황(2014~2022년) .....         | 43  |
| [그림 2-3] 후견 유형별 성년후견 사건 누적 접수 및 처리 건수 현황(2014~2022년) ...          | 45  |
| [그림 2-4] 전국 연도별 후견 유형별 성년후견감독사건 접수 건수 현황(2014~2022년) ...          | 46  |
| [그림 2-5] 치매공공후견사업 추진 절차 .....                                     | 54  |
| [그림 3-1]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운영체계도 .....                               | 76  |
| [그림 3-2]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 신청서 서식(일부 제시) .....                    | 77  |
| [그림 3-3] 후견인의 역할(당사자 안내자료) .....                                  | 84  |
| [그림 3-4] 원헨시의 후견청 홈페이지의 후견인 모집 공고 및 후견인 교육·포럼 게시글 ...             | 121 |
| [그림 3-5] 지역연계 네트워크 및 중핵기관의 역할 도식 .....                            | 130 |
| [그림 3-6] 시구정촌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 .....                          | 132 |
| [그림 3-7] 후견 관련 상담 창구 K-NET .....                                  | 133 |
| [그림 3-8] 무연고 독거 노인에 대해 시정촌이 관여한 새로운 권리옹호 및<br>의사결정 지원 대처 예시 ..... | 135 |
| [그림 3-9] 독일 법무부의 후견 개정법 사항에 대한 홍보 포스터 .....                       | 139 |
| [그림 3-10] 의사결정 능력의 평가 시트 .....                                    | 144 |
| [그림 3-11] 시구정촌장 심판청구 시의 사무 흐름도 .....                              | 151 |





## 요약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치매 유병률이 증가함에 따라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들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치매로 인해 인지기능이 저하될 경우,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 7월 치매관리법이 개정되어 치매공공후견사업이 도입되었다. 이 사업은 성년후견제도를 기반으로, 단순한 돌봄을 넘어 치매노인의 삶 전반에 걸친 의사결정 지원을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여전히 이 사업이 해결해야 할 명확한 한계들이 존재한다.

후견제도의 활성화가 의사결정 지원의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는 개인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되기 전에 장래의 의사를 미리 표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현행 후견제도의 한계를 인정하고, 의사결정 지원 측면에서 이를 강화하기 위한 단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접근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매노인의 의사결정 지원의 관점에서 현행 치매 공공후견사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치매노인의 보호 및 자기결정권 강화를 목표로, 현행 후견제도의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 2. 주요 연구 결과

### 가. 성년후견제도 개괄 및 현황

#### 1) 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제도는 민법에 따라 운영되며,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능력, 후견인의 권한 범위, 후견의 지속성 여부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구분된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접수된 성년후견 누적 건수는 62,538건으로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잠재적 수요자 대비 이용률은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다. 후견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년후견이 51,323건(82.1%)으로 가장 많고, 한정후견은 5,815건(9.3%), 특정후견은 5,213건(8.3%), 임의후견은 157건(0.3%) 순이다.

이 제도의 도입 초기와 비교해 보면, 최근 성년후견의 비중은 증가했으나 특정후견의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성년후견 사건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면서, 전체 후견 사건에서 특정후견이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든 결과로 해석된다.

#### 2) 치매공공후견사업

치매공공후견사업은 기본적으로 특정후견(최대 3년)을 원칙으로 하며, 치매 증상이 심해 의사결정에 지원이 특히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한정후견이 허용된다. 피후견인은 치매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중 소득수준, 가족관계, 혹은 욕구 기준을 충족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후견인

은 민법상 결격사유가 없으며,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필수 요건이다.

이 사업의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9월부터 2024년 4월 기준 치매공공후견 심판청구 건수(누적)는 562건으로 해마다 대체로 100건 내외의 후견심판이 접수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및 경기도 각각 131건으로 전체 청구 건수의 23%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부산(79건), 충남(27건), 충북 및 경남(26건) 등의 순으로 지역별로 이용의 편차가 있다. 대체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공공후견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며, 농촌 지역이 다수 포진된 도(道) 지역에서는 반대의 상황을 보인다.

치매안심센터별 후견심판 청구 건수에서는 1건 이상 후견심판 청구를 진행한 곳이 164개소로 전체의 64.1%를 차지한다. 3건 이상 공공후견 사건을 지원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나, 치매안심센터별로 수행의 편차가 큰 상황이다.

치매공공후견인의 경우, 2024년 4월까지 총 1,346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으나, 수료 후에 대기하는 인원이 709명으로 약 1/2 정도만 활동 중이다. 이는 곧 피후견인과의 후견 매칭률이 여전히 높지 않은 상황임을 내포한다. 피후견인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이 대다수(90.3%)를 차지한다. 이 제도의 변화 과정에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 범위를 넓혀 두었으나, 실제 이용은 제도 도입 초기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피후견인의 사망 또는 기간 만료에 따른 후견 종료는 233건으로, 인용된 사건 수(513건)의 약 1/2 수준이며, 종료 후에 후견을 재청구한 건수는 2024년 4월 기준 95건으로 나타난다. 이는 피후견인의 특성(치매, 고령, 독거)을 고려할 때, 특정후견 기간(3년) 내에 충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 나. 국내외 사례 분석

### 1) 국내 사례 분석

치매공공후견사업과 발달장애인, 정신질환자를 위한 공공후견사업을 비교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 가지 공공후견사업 모두 특정후견(최대 3년)을 원칙으로 하고, 한정후견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피후견인이 사망하면 후견은 종료되지만, 종료 전에 후견심판을 새로 청구하거나 연장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피후견인이 후견 공백 없이 지속적으로 의사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갑작스러운 후견 종료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피후견인이 안정적인 생활과 자립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 그러나 치매공공후견사업의 경우 다수의 후견이 종료 후에 재청구되는 상황으로, 치매 특성에 맞는 후견 기간 설정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둘째,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지원 원칙은 공통적으로 피후견인의 의사와 선호를 존중하는 것이다. 후견 개시 시 사회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피후견인과 후견인 후보자 면담을 통해 피후견인의 욕구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후견 개시 이후에도 정기보고서를 통해 모니터링이 진행되지만, 의사결정 지원의 구체적인 과정을 확인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치매공공후견사업의 후견인 양성 교육은 21시간으로, 발달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공공후견사업보다 교육 시간이 부족하며, 교육 내용 역시 치매의 특성과 법적 절차에 집중되어 있어 의사결정 지원에 대한 교육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

셋째,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시민 후견 중심으로 운영되는 반면, 발달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공공후견사업은 법인 후견으로 연계된다. 법인 후견

은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므로 피후견인의 복합적인 욕구에 대응하거나 고난이도 사무를 처리하기 용이한 반면, 시민 후견으로 이루어지는 치매 공공후견사업은 후견인의 전문성 축적에 한계가 있어, 역할의 모호성과 권한의 제한이 더 두드러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후견 전달체계에서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치매안심센터가 주요 역할을 담당하며, 발달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공공후견사업은 법인이 주도적으로 운영한다. 치매안심센터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공공후견을 전담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치매 대상자의 증가를 감안할 때 현재의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안 역시 고려가 필요하다.

## 2) 해외 사례 분석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들 국가는 치매 등 의사결정 능력 장애인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고, 이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을 국가적 책무로 인식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첫째, 두 나라는 후견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후견 전담 기구 또는 지역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독일은 성년후견청이라는 전담 조직을 통해 후견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이곳에서 조사, 후견계획 검토, 후견인 양성 등 후견 과정 전반을 담당한다. 일본은 중핵기관을 통해 지역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후견을 지원한다. 이로써 후견의 전문성이 보장되고, 운영 과정에서의 책임 분담 역시 공고히 하고 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후견제도에 대한 적극적 관심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역시 특징적이다.

둘째, 두 나라는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한 법적

명문화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은 후견 지시서와 ‘확장된 지원’ 제도를 통해 피후견인의 의사를 반영하고, 후견인의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은 의사결정 지원 가이드라인을 통해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할 수 있는 실무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있다.

셋째, 두 나라는 다층적인 공공후견 체계를 구축하여 후견인의 양성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한다. 독일은 명예 후견인, 전문 후견인, 후견사단, 관청 후견인 등을 통해 복잡한 후견 사례를 처리하고 있으며, 성년후견청은 후견인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는 상시 창구 역할을 한다. 일본은 법인 후견인과 시민 후견인을 다양하게 양성하며, 지역 연계 네트워크를 통해 후견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즉, 무자력 치매노인을 위한 후견인 후보자 풀을 확보하고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달체계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 대상군별 질적 조사를 통한 쟁점

대상군별 질적 조사에서 나타난 쟁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지원 과정에서 최선의 이익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관련하여 이에 대한 치매안심센터의 지원 수준에서 편차가 나타났다.

둘째, 후견인 발굴 및 선정 시 외부 기관과의 연계에서 후견제도에 대한 이해 차이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특히 후견의 필요성 및 절차에 대한 인식 부족이 발굴 과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제기되었다.

셋째, 후견인의 역할은 초기에 재산관리에 집중되나, 시간이 지나면서 신상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그러나 신상보호 범위에 대한 이해가 각



자 다르게 나타나며, 이에 따라 후견인 교육의 실효성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는 후견인 교육이 이론적 측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무적 대응과 실제 대응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의 다양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넷째, 후견인의 역할 중 하나인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서 공공 및 민간 서비스 제공자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나, 후견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후견제도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요구된다.

다섯째, 후견이 시작된 이후의 관리 및 감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대다수의 정보 제공 및 교육은 후견인의 후견 사무에 집중되어 있어, 후견감독인을 위한 참고 자료 및 교육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특정후견 종료 방식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피후견인의 사망 외에는 대다수 재청구로 이어지고 있어, 장기적인 측면에서 특정후견의 종료 시점이나 사유 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 3. 결론 및 시사점

치매노인의 의사결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치매공공후견사업의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치매노인의 의사결정 지원 개념을 재정립하고, 이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의사 형성부터 표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의사결정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의사결정 능력을 진단하는 도구나 비언어적 의사소통 도구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후견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육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법적 지식 외에도 의사소통 기술과 실무 능력을 강화하는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후견인 간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상호 간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기전 역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후견인의 역할 및 권한 설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후견 사무 수행 과정에서 대다수의 후견인은 본인들의 권한 범위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다양한 후견 사례의 축적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이들의 권한 및 역할 범위를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넷째, 후견감독인의 역할이 명확해져야 한다. 현재까지 다수의 논의가 후견인의 사무에 집중되어 있어 후견감독인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들에게도 구체적인 지침 및 교육 등을 제공하여, 일관성 있는 감독 체계를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장기적인 측면에서 후견 종료 시점 및 재청구 절차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수의 후견 사례가 재청구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설정한 후견 기간이 당초의 후견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적절한지 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여섯째, 후견 전달체계 개선 및 치매안심센터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안정적인 예산 배정 등이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이를 담당하는 별도의 부서나 팀을 마련하는 방안,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별도의 전담 기관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후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후견에 대한 사회적 이해의 부족은 다양한 차원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후견의 필요성 및 역할을 다양한 방식으로 알리고, 관련된 교육 및 홍보가 적극

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임의후견 활성화 등 예방적 개입 강화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 제공을 비롯하여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사전 후견지시서 등의 작성 역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주요 용어: 치매공공후견사업, 치매노인, 의사결정 지원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 1 장

##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제 1 장 서론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 연구 필요성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 추정 유병률은 2023년 기준 10.1%에 이르며 (중앙치매센터, 2024a), 고령인구 증가와 함께 치매 유병인구의 증가 속도 역시 가파를 것으로 예견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인지기능이 저하된 이들의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며, 이 중 하나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 필요성 또한 강화되는 추세이다.

〈표 1-1〉 65세 이상 추정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유병률(2015~2023년)

(단위: %)

| 구분                      | 2015 | 2017 | 2019 | 2021 | 2023 |
|-------------------------|------|------|------|------|------|
| 65세 이상<br>추정 치매 유병률     | 9.2  | 9.6  | 9.9  | 10.0 | 10.1 |
| 65세 이상<br>추정 경도인지장애 유병률 | 21.6 | 21.6 | 21.8 | 22.0 | 22.2 |

주: 65세 이상 인구는 주민등록인구현황에서,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 수 및 추정 경도인지장애 환자 수는 전국 및 시도별 치매유병현황에서 인출하여 비율을 산출함.

출처: 1) “주민등록인구현황: 행정구역(읍면동)별/5세별 주민등록인구(2011년~),” 행정안전부, 2024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재구성함. 2024. 5. 8.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5N&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5N&conn_path=I2)

2) “전국 및 시도별 치매유병현황,” 중앙치매센터, 2024a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재구성함. 2024. 5. 8. 검색, [https://www.nid.or.kr/info/today\\_list\\_2023.aspx](https://www.nid.or.kr/info/today_list_2023.aspx)

치매로 인한 인지능력 저하로 스스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동의할 능력이 부족해진 경우, 사회생활에서 필수적인 재화나 서비스를 획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립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제철웅 외, 2023). 이러한 문제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 또는 결여된 자 등을 대상으로 2013년 7월 성년후견제도가 새롭게 시행되었다. 민법에 의해 운영되는 광의의 성년후견(법정후견)은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에 따라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이들을 대상으로 하며(박인환, 2016; 제철웅 외, 2019),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과 후견계약에 의한 임의후견으로 구분하여 운영된다.

성년후견제도는 도입 배경 자체로는 당시의 사회적 기대에 부응한 제도로 평가된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 본연의 목적을 이행하고 있는가와 활성화 측면에서 한계가 자명하다. 제도 시행 다음 해인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접수된 성년후견 누적 건수는 62,538건으로(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2023), 시행 초기와 비교하여 증가 추이를 나타내고는 있으나 잠재적 수요층 대비 그 이용률이 높지 않다. 여기에는 가족 중심의 전통적 사고 방식, 이용 방법 및 절차의 복잡성, 신속한 처리의 어려움 등(최진솔 외, 2021)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법정후견 내에서도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지원 정도가 가장 낮은 성년후견 유형에 치중하여 운영되는 현실 역시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에 위배된다는 한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다면 협약에 따라 의사결정 대행제도의 성격을 띠는 현재의 후견제도를 즉각적으로 폐지해야 하는가? 관련 학자들은 이를 모든 후견제도의 즉각 폐지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장애인권리위원회 역시



도 장애인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인정하며, 이때 장애인의 현재의 욕구 및 선호를 최선을 다해 해석하고 그에 대한 법적 효력이 부여되어야 함을 주지하고 있다(제철웅 외, 2023; United Nations, 2014).

후견제도의 활성화만이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최선의 과제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우리나라는 본인의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되기 전에 장래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사전적 기제가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현재의 후견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를 인정하고, 의사결정 지원 측면에서 이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단계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가족 내 부양 기능의 약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구조의 변화 역시 후견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요인이다. 과거 가족 구조 내에서 해결 가능했던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같은 다양한 역할들을 이제는 가족에게만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표 1-2〉 전체 및 65세 이상 인구 대비 1인 가구 비율(2013~2023년)

(단위: %)

| 구분                       | 2013 | 2015 | 2017 | 2019 | 2021 | 2023 |
|--------------------------|------|------|------|------|------|------|
| 전체 인구 대비<br>1인 가구 비율     | 9.4  | 10.1 | 10.8 | 11.7 | 13.5 | 14.2 |
| 65세 이상 인구 대비<br>1인 가구 비율 | 18.4 | 18.5 | 19.0 | 19.5 | 20.6 | 21.1 |

주: 전체 인구수와 65세 이상 인구수는 장래인구추계에서, 전체 1인 가구 수와 65세 이상 1인 가구 수는 장래가구추계에서 인출하여 비율을 산출함.

출처: 1) “장래인구추계: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5세별) / 전국,” 통계청, 2023을 바탕으로 연구진이 재구성함. 2024. 5. 8.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I3)  
2) “장래가구추계: 가구주의 연령/가구유형별 추계가구-전국,” 통계청, 2022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재구성함. 2024. 5. 8.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Z0502&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Z0502&conn_path=I3)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여, 최근에는 치매공공후견사업<sup>1)</sup>을 비롯한 국가 차원의 의사결정 지원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 중 치매공공후견사업은 2018년 치매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되었다. 그간 치매노인을 위한 논의가 돌봄 또는 치료에 국한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치매노인의 삶 전반에 걸쳐 이루어져야 할 의사결정에 대한 제도적 개입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치매공공후견사업은 다양한 후견 유형 중 특정후견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후견인에게 특정 사무에 관한 일시적인 후견 권한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피후견인의 자기 결정권 보장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단, 현재 치매공공후견사업은 다음의 측면에서 한계를 나타낸다. 첫째, 현재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수행하는 세부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사업의 확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기초지자체 단위에 위치한 치매안심센터에서 수행된다는 점에서 접근하기 쉽다는 장점은 있겠으나, 치매안심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후견사업에 대한 집중적 운영은 제한적일 수 있다. 실제로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2024년 4월 말 기준) 접수된 후견심판청구 건수는 562건에 그치고 있다(중앙치매센터, 2024b).

둘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치매공공후견사업은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한다. 최대 3년까지의 후견 기간을 보장하며, 종료 6개월 전에 후견 지속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후견의 지속성을 판단하는 기준 중 중요한 요소는 현재 피후견인의 생활상의 안전을 보장(또는 조력)해 줄 지지체계가 있는가이다. 안전망이 원활히 구축되지 않았거나 피후견인에게 새로운 후견 수요가 나타날 경우 후견심판 재청구가 가능하다.

1) 공공후견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하지만, 여기에서는 국가가 재원을 제공하는 경우를 공공후견으로 분류함.

특정후견이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측면에서 강점을 갖는 것은 분명하지만, 치매 질환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면밀히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치매 질환은 저하된 인지 상태가 지속되고 대체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비가역성 치매가 다수를 차지한다. 특히 치매노인은 치매 질환으로 인한 문제뿐만 아니라 노화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경험한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이용하는 다수의 이용자가 지역사회 독거 치매노인이라는 점에서, 현재 설정된 후견 기간(3년) 내에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스스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영속적으로 후견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현재 설정된 후견 기간이 이들의 특성을 잘 반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후견이 종료되기 전에 지속 여부를 파악하여 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이러한 의문에 대한 제도적 지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후견인의 사망 등으로 후견이 종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후견 사건 중 대다수가 재청구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후견 방식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역시 제기된다.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최대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임은 부정할 수 없다. 다만 3년이라는 후견 기간이 현재 사업 대상인 피후견인들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에 있어 충분한 기간인지, 그리고 후견 사건 중 다수가 재청구되는 현실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현재 후견인에게 제시하고 있는 후견 사무(사회서비스 신청 및 이용 지원, 의료서비스 이용 지원, 거소 관련 사무 지원 등)를 이행함에 있어서 치매노인의 의사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후견 사무 범위를 벗어난 이외 영역의 의사결정 지원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명확치 않은 측면이 있다(박정연, 2023). 이는 법정후견 전반에도 이어지는

문제의식으로, 대행적 의사결정이 아닌 당사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치매공공후견사업이 기능하고 있는가에 대한 측면이다.

치매 질환의 경우, 개인별 편차뿐 아니라 시간 경과에 따라 의사결정 능력 역시 단계적으로 감퇴한다는 점을 감안하여(송영신, 2017; 박정연, 2023) 이들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한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다. 즉, 치매증상에 따라서 의사결정 지원 범위를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일률적으로 이를 판단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나아가 현재까지 후견제도와 관련한 논의들은 대다수 사법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 치매노인에게 요구되는 신상보호와 관련한 주요 결정에서 이들의 의사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등에 대한 논의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이영규, 2020; 오채근, 2011).

마지막으로, 후견 사무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상보호의 영역과 기존 치매노인을 위한 사회서비스 간 차별점은 무엇인지, 이 과정에서 야기되는 기존 서비스와의 충돌 지점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물론 후견 사무가 기존 사회서비스와는 다른 대안적 급여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서성운, 최성현, 2023), 나열된 후견 사무의 범주를 볼 때 기존 서비스와의 차이가 적고, 후견인 역시도 광범위한 돌봄의 역할까지 수행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상존한다(이지은, 202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매노인의 의사결정 지원 측면에서 현행 치매공공후견사업의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법정후견 전반의 쟁점을 다루는 것 역시 의미 있는 작업이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치매공공후견사업에 집중하고자 한다. 현재 공공후견이 아닌 전체 법정후견의 경우, 배우자 또는 자녀 등과 같은 친족이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비율이 높고, 청구의 목적 역시 재산보호(상속 등)에 집중된다(박인환, 2021a; 서울가정법원, 한국후견협회, 2023). 친족 후견이 갖는 제한점도 있겠으나, 피

후견인의 입장에서 볼 때 사회적 관계망(친족)이 존재하며 이들이 신상보호와 관련한 지원을 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초점과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현재까지 후견제도의 이념인 자기결정권의 가치에 대한 강조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이것이 원론적인 수준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관점에서 이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치매노인의 보호 및 자기결정권 강화 측면에서 현행 후견제도의 쟁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의사결정 지원 측면에서 현행 치매공공후견사업의 쟁점을 파악하고, 치매(인지저하) 노인을 위한 후견의 의미와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인지저하 노인은 엄밀한 의미에서 법정후견제도의 대상은 아니나, 이 중 10~15%가 치매로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여(김용일, 2022) 사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 대상에 포함하였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이 도입된 후 약 6년이 경과한 시점에 전반적인 문제의식은 공유된 상황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이루어진 사법적 논의에서 나아가 치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실제적 실천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1. 연구 내용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의 분석틀을 마련하기 위해 후견 및 의사결정 지원에 대한 개념적 이해, 치매 특성 및 치매노인의 의사결정 지원의 의미 등에 대해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둘째, 광의의 성년후견제도 및 치매공공후견사업의 개괄적인 사항과 주요 현황을 살펴보았다. 성년후견제도와 관련해서는 도입 배경, 후견 유형, 후견 이행 절차 등을 통해 제도 전반의 운영 흐름을 파악하였다. 현황과 관련해서는 누적 접수(처리/감독) 건수를 연도별, 지역별로 살펴보았다. 치매공공후견사업 역시 추진체계 및 대상자 선정 기준, 이행 절차 등을 중심으로 현재 사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 파악하였다. 나아가 주요 이용 현황은 중앙치매센터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후견심판청구 실적, 후견 이용자 주요 특성, 후견인 양성 실적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외 유관 사례를 분석하였다. 국내의 경우, 치매공공후견사업과 마찬가지로 공공후견사업을 실시하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사업, 정신질환자 공공후견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체계와 현재 해당 사업들에서 빚어지는 쟁점에 대해 파악하였다. 국외의 경우, 후견제도를 운영하는 주요 국가 중 당사자의 의사결정 지원 및 공공후견 운영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제도 운영 과정을 살펴보았다.

넷째, 질적 인터뷰를 통해 치매공공후견사업 이용자(피후견인)와 서비스 제공자(후견인, 치매안심센터 사업 담당자) 및 후견감독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제공) 경험과 개선사항을 파악하였다. 또한 각 조사 대상자 별로 후견을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과정에서 겪은 구체적인 경험 역시 심도 있게 나누었다. 질문 항목으로 피후견인에게는 의사결정 시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는 과정(경험), 제공되는 후견 내용 등에 대해, 후견인에게는 후견 참여 계기 및 의사결정 시 피후견인의 의사가 반영되는 구조, 제공하는 후견 내용 등을 파악하였다. 치매안심센터 사업 담당자에게는 후견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어려움 및 후견인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경험, 인식 등에 대해, 마지막으로 가정(지방)법원 후견감독관에게는 주요 임무 및 감독 과정에서 나타난 후견사업의 문제점 등에 대해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까지의 연구 내용을 종합하여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2. 연구 방법

첫째, 문헌 연구를 통해 후견 및 의사결정 지원에 대한 개념들을 정립하고, 치매의 특성과 이를 바탕으로 치매노인에게 요구되는 의사결정 지원은 무엇인가에 대해 검토하였다. 아울러 치매공공후견사업 이외에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공공후견사업(발달장애인, 정신질환자)과 해외 주요국의 후견 제도에 대해서도 기존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쟁점을 파악하였다.

둘째, 성년후견제도 및 치매공공후견사업 운영 현황에 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성년후견제도 통계연감 등을 활용하여 후견심판 접수 및 인용(처리), 감독 건수 등을 파악하고, 나아가 후견 유형 및 지역별 차이에 대해서도 기술하였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의 경우, 보건복지사업 안내 및 후견 사무 매뉴얼, 실무문답집 등을 활용하여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또한 중앙치매센터에 공문을 통해 요청한 내부자료(2024

년 4월 30일 기준)를 바탕으로 후견심판(누적) 접수 및 인용 건수, 후견인 양성 건수, 피후견인의 주요 특성, 후견인과 피후견인 간 관계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셋째, 전문가 포럼 및 자문회의를 운영함으로써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정책 개선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구축하였다. 우선 성년후견제도 운영 전반 및 치매공공후견사업 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전문가와의 회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발달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공공후견사업을 전담하는 센터 또는 법인의 사업 담당자와의 포럼을 통해 각 사업의 현안을 이해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나아가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와의 포럼을 총 4회 진행하였다. 이외에도 정책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와의 자문회의를 대면 또는 서면을 통해 추가로 진행하였다.

〈표 1-3〉 전문가 포럼 및 자문회의 운영

| 주요 내용                   | 전문가                                                                                                    |
|-------------------------|--------------------------------------------------------------------------------------------------------|
| 성년후견제도 운영 전반            | - 한국후견협회, 한국후견사회복지사회                                                                                   |
| 치매공공후견제도 운영 전반          | - 중앙치매센터 공공후견지원팀장                                                                                      |
| 국내 공공후견사업 운영 전반 및 주요 쟁점 | - 명노연 변호사/권익옹호팀장(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br>- 홍민우 팀장(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공공후견사업부)<br>- 홍정기 사무국장(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공공후견사업단) |
| 국가별 성년후견제도 주요 쟁점        | - 제철웅 교수(한양대학교)<br>- 박인환 교수(인하대학교)<br>- 김원경 교수(메이저가쿠인대학교)                                              |

마지막으로 치매공공후견사업 이용자 및 서비스 제공자(후견인, 치매안심센터 사업 담당자), 후견감독관을 중심으로 심층면접과 FGI를 진행하였다. 심층면접은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이용 중인 피후견인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서비스 이용 계기 및 긍정적인 측면, 개선되어야 할 측면 등



에 대해 파악하였다. 서비스 제공자 및 후견감독관과의 면담은 FGI 형식으로 진행하였고, 공통적으로 후견인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측면은 무엇인지, 향후 제도를 바꾸어나가야 할 지점 등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표 1-4〉 심층면접 및 FGI 운영안

| 구분                     | 인원 | 지역           | 대상자                                                                      | 조사 방법                                                                       |
|------------------------|----|--------------|--------------------------------------------------------------------------|-----------------------------------------------------------------------------|
| 치매공공후견사업 이용자<br>(피후견인) | 4명 | 수도권/<br>비수도권 | -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이용 중인 자 중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br>- 의사소통 능력 고려하여 치매 중증도에서 중등도, 경도로 한정 | - 1:1 심층면접(40분 이내)<br>- 치매안심센터 후견사업 담당자의 도움 하에 면접 진행(당사자 자택(시설))<br>- 대면 면접 |
| 치매공공후견인                | 9명 |              | - 치매공공후견인으로 활동 중이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자(1년 이상)                                 | - 초점집단면접(120분 이내)<br>- 대면 면접<br>- 지역별 안배하여 초점집단 면접 수행                       |
| 치매안심센터<br>후견사업<br>담당자  | 9명 |              | - 치매공공후견사업 담당자                                                           | - 초점집단면접(120분 이내)<br>- 대면(비대면) 면접<br>- 지역별 안배하여 초점집단 면접 수행                  |
| 가정(지방)법원<br>후견감독인      | 3명 | 서울/수원<br>/부산 | - 공공후견사업을 전담하여 운영 중인 법원의 후견감독관                                           | - 초점집단면접(120분 이내)<br>- 비대면 면접                                               |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2장

### 선행연구 고찰 및 현황 분석

제1절 후견 및 의사결정 지원에 대한 논의

제2절 치매노인의 의사결정 지원

제3절 성년후견제도 개괄 및 현황 분석



## 제2장 선행연구 고찰 및 현황 분석

### 제1절 후견 및 의사결정 지원에 대한 논의

모든 행위에는 행위를 선택하는 의사결정 과정이 수반된다. 의사결정은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의 행동을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비교하여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것까지 일련의 과정을 포괄한다. 명시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의사결정의 기저에는 자기결정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즉 누구나 행위를 선택함에 있어 자기 자신이 결정의 주체가 됨을 뜻한다. 자기결정은 자기결정의 주체가 누구인지뿐 아니라 어떻게 행사하는지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때에는 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 및 사회의 책임을 요구한다(김현철, 2015; 서성운, 최성현, 2023, p. 4).

의사결정 지원은 이 과정에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이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본인의 욕구와 선호, 가치를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박정연, 2023)에 그 목적이 있다. 이 과정에서 개개인이 현 상황 속에 놓여진 정보를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조력하며, 나아가 자기결정을 침해당했을 때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까지를 포괄한다.

개념적 정의에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의사결정 지원은 고정된 하나의 형태가 아닌 당사자의 의사결정 능력 정도와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상황, 그에 따른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조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한다(박정연, 2020). 유념해야 할 것은 의사결정 지원과 자기결정 개념은 상호 유기성을 띤다는 점이다.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이 곧 당사자

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직결되며, 의사결정 지원 과정의 적절성 확보는 개인의 자기결정권 향유와 관련된다(오혜인, 이아영, 2021).

의사결정 지원에 대한 논의가 강조된 것은 UN 장애인권리협약과 맞물린다. 특히 협약의 제12조에서는 장애인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타인과 동등한 법적 능력(legal capacity)<sup>2)</sup>을 가질 권리를 명시하며, 그들이 법적 능력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는 장애인의 법적 능력을 박탈하거나, 장애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의사결정 대행자를 통해 본인 대신 결정을 내리거나(대행), 장애인의 욕구나 선호도에 따른 것이 아닌 제3자의 최선의 이익에 따라 운영되는 의사결정 대행 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제철웅 외, 2023; United Nations, 2014). 해당 조항은 기존 후견제도가 이루어지던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결부된다.

후견제도는 정신능력(mental capacity)에 따라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할 경우, 이들의 법적 능력을 일정 부분 대리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 왔고<sup>3)</sup> 이는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볼 때, 후견인의 법적 권한을 포괄적 범위에서 인정하는 협의의 성년후견이나 기간의 명시가 따로 없는 한정후견은 협약에 대한 위반의 소지가 있다. 다만 이것이 모든 후견제도의 즉각 폐지로 이어지기보다는 의사결정 지원 측면에서의 개선 방안을 도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실천 과제일 수 있다.

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의사결정 지원 과정을 통해 자기결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며, 의사결정 지원

2) 법적 능력은 권리 보유뿐 아니라 이를 행사할 능력도 포함되는 취지로 이해함(박인환, 2019).

3) 법적후견 내에서도 성년후견이 광범위한 대리권을 허용하고 있음.

의 방식이 대행으로 이어져서는 안 됨을 밝히고 있다(박정연, 2022). 중증의 의사결정 능력 장애 또는 의식불명 등의 상황에서 대행적 의사결정이 불가피한 경우일지라도, 본인의 가치관 및 선호, 욕구 등을 최선을 다해 파악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는 점에서(제철웅, 정민아, 2020), 협약의 내용은 현재의 후견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 역시도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국으로서 후견제도를 의사결정 지원 제도로 전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후견제도에서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 전무한 것은 아니다. 제도의 기본 이념은 피후견인의 의사 및 잔존 능력을 존중하는 데 근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후견 수행의 기본 원칙을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후견은 피후견인의 필요에 의해 개시되어야 하며(필요성의 원칙),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될 경우를 대비해 후견계약 등을 통해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 보충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보충성의 원칙). 또한 가능한 한 사회 공동체 내에서 피후견인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정상화의 원칙). 피후견인의 잔존 능력에 따라 협의의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법정후견의 유형을 나누고 유형에 따라 제한적 범위 안에서 대리권을 부여하는 등 권한 설정을 달리하는 것 역시 이러한 원칙의 일환이다. 더욱이 그간 사회복지 영역에서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던 의사결정 지원의 역할을 법률적으로 공식화하고 체계적으로 이행하도록 한 점 역시 후견제도가 갖는 중요한 이점이다.

현행 후견제도가 개인의 의사표시 능력 및 행위능력의 제약으로 인한 온정주의적 개입(이동석, 2019)이라는 측면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현재 우리사회에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에 대한 권리 옹호 수단

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후견제도를 의사결정 지원 관점에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는 것이 보다 중요할 것이다.

후견제도가 진정한 의미에서 의사결정 지원 제도로 나아가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여전히 산재해 있다. 후견제도의 기본적 이념이 개개인의 구체적이고 개별적 사안에서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본인의 의사가 어떤 의미이며, 이를 어떤 방식으로 도출할 수 있는지, 잔존 능력의 활용은 어떤 수준까지 가능한지(이현곤, 2018) 등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또한 잔존능력에 따른 후견 이용이 가능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후견인의 법적 능력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성년후견(협의의 개념)으로 집중되는 경향은 의사결정 지원 관점에서 후견제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함을 반증한다. 따라서 후견제도가 의사결정 지원 관점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후견제도에 대한 사회적 수용 및 이해도를 높이는 작업과 함께, 후견인이 당사자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하고 필요한 후견 사무를 적절히 지원할 수 있도록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 후견인이 의사결정 대행자가 아닌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박정연, 2020), 개별 사안마다 당사자의 의사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후견제도가 이행될 수 있도록 현 단계에서의 문제점을 구체화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 제2절 치매노인의 의사결정 지원

치매란 뇌 기능 손상으로 지적 능력이 감퇴하거나 소실됨으로써 인지 기능의 장애를 경험한다. 어떠한 원인으로 치매가 발병하였는가에 따라 이환 기간에는 차이가 있으나, 치매는 대체로 후천적으로 발병하여 약 10년 이상 장기간 지속되는 퇴행성 만성질환의 일환이다(이성우, 2018).

치매 중 다수를 차지하는 알츠하이머형 치매는 일반적으로 발병 후 초기(최경도), 중기(중증도), 말기(고도)의 세 단계를 거치게 되며, 단계에 따라 증상 및 특징을 달리한다(중앙치매센터, 2024c). 초기 치매는 최근 기억이 감퇴되긴 하나 어느 정도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지만, 중기 치매로 접어들게 되면 기억력 및 언어능력 등이 더욱 감퇴되어 일정 부분 의사결정(또는 판단)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이후 말기에 다다르면 지적 및 의사결정 능력의 심한 손상으로 인하여 주변의 도움이 크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이 같은 치매 질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관리는 물론 각 단계마다의 특성을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통합적 접근은 단순히 의료적 지원을 넘어서 치매환자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해야 함을 의미하며, 심리사회적 지원뿐 아니라 치매환자의 권리 옹호 및 사회구성원으로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권적 접근(최희경, 2017)까지를 포괄한다. 특히 의사결정에 제약이 뒤따르는 중기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이들의 삶의 질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된다.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의사결정 지원이란 장애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불충분한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자율성과 가치에 준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뜻한다(이지은, 2022, p. 35). 이는 치매노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인지능력 저하로 인해 선택과 결정에 어려움을 경

힘할지라도, 개인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자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연계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치매노인의 의사결정 지원과 관련하여 간과하지 않아야 할 점은 인지 능력 저하에 따라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무능력자로 치부하는 것이 아닌 그 가운데에서도 동등한 사회구성원이자 의사결정의 주체로 인정(오혜인, 박수빈, 2020)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발병 후 진행 과정에 따라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인지능력이 감퇴하는 치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사결정 지원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 치매의 중증도별 구성 비율(2023년 기준)을 보면, 최경도 17.4%, 경도 41.4%, 중등도 25.7%, 중증 15.5%(중앙치매센터, 2024a)로 초기 단계의 치매가 약 2/3를 차지한다. 중등도 이전 단계에서는 일상생활 영역에 일정 부분 어려움은 있지만, 독립적으로 지낼 수 있는 능력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특히 잔존 능력을 인정하고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후천적으로 발병하는 질환인 만큼 이들이 그간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 온 경험을 존중하며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송영신, 2017; 이지은, 2022).

박정연(2023)에 따르면, 치매노인이 경험하는 주요한 의사결정 영역은 생필품 구매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거래에서부터 의료서비스 이용 및 입(퇴)원, 시설 입(퇴)소 및 주거 등과 같은 신상보호와 관련한 직접적인 사항, 공법상의 의무 이행이나 권리의 실현, 민법상의 재산 및 신분 법률 행위에 이르기까지 매우 폭넓다. 광범위한 영역에서 치매노인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은 돌봄의 한 축을 담당하거나, 돌봄 서비스가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로 작용하는 등 상호 관련성을 지닌다. 따라서 합리적으로 의사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의 제약이 있을지라도, 통합적인 돌봄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정보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당사자의 동의

과정을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의사결정 지원의 첫걸음이라 하겠다.

오랜 기간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자기결정권이 주요한 가치로 논의되어 왔으며, 이는 치매노인의 돌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치매노인 돌봄 현장에서는 당사자의 잔존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이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치매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강조한 영국에서는 치매 대응을 위한 돌봄 경로(the well pathway for dementia)를 발표하면서, 치매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서비스에 대한 윤리적 고려와 함께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이성우, 2018). 구체적으로, 환자가 택할 수 있는 선택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해의 정도를 확인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인지기능이 손상되었을 때에는 권익 옹호를 위한 서비스 또는 자원봉사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도록 한다. 나아가 호주에서는 국가 차원의 기본 원칙(National Decision Making)을 수립하고, 돌봄 현장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발하였다(김효정, 2022). 또한 개발된 지침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평가 도구를 만들고, 각 원칙별로 관련된 조항을 연결하여 적절한 의사결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장에서의 적응도를 높이고자, 경험할 수 있는 유사 사례를 제시하고 이 과정에서 가질 수 있는 의문과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함께 제시하는 것 역시 참고할 만하다. 영국 및 호주의 치매환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 원칙은 앞서 살펴본 의사결정 지원의 기본 원칙과도 부합한다.

34 성년후견제도 운영 개선 방안 모색: 치매 및 인지저하 노인의 의사결정 지원을 중심으로

〈표 2-1〉 노인 돌봄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지원 원칙과 행동 지침

| 원칙                                                                                                  | 주요 행동 지침                                                                              |
|-----------------------------------------------------------------------------------------------------|---------------------------------------------------------------------------------------|
| 1. 모든 성인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고 그러한 결정을 존중받을 동등한 권리가 있음                                            | - 의사결정, 역량 및 동의에 대한 조직의 접근 방식을 개념화하는 높은 수준의 정책 문서 개발                                  |
| 2. 의사결정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고 의사소통하고 참여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함                        | - 지원 및 대체 의사결정을 뒷받침하는 원칙 뿐 아니라 조직, 개별 클라이언트 또는 거주지와 관련하여 지지자, 대표자 및 옹호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 |
| 3.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의지, 선호도 및 권리는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지시해야 함                                         | - 의사결정 도구를 제공하여 위험의 맥락에서 직원이 개인의 의지와 선호도를 존중하는 방법과 프로세스를 명확히 함                        |
| 4. 법률 및 법적 프레임워크는 남용 및 부당한 영향을 방지하는 것을 포함,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한 개입과 관련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장치를 포함해야 함 | - 의심되는 남용 또는 부당한 영향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

출처: “노년케어에서의 의사결정지원-호주의 노인케어 제공자를 위한 정책개발지침,” 김효정, 2022, Issue Brief, 24, 1-3, p. 3. 재인용.

그러나 치매노인의 의사결정 범위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돌봄뿐 아니라 재산관리 및 신상과 관련한 다양한 사항들을 포함한다. 이 과정에서 적절한 의사결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선택과 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권익을 보호받기 어려워진다. 또한 치매노인은 아직까지 복지 또는 돌봄 서비스 대상이라는 인식이 강하여, 의사결정 지원에 대한 논의 역시 돌봄 현장에 국한되어 있거나, 이들 스스로가 본인의 신상과 관련한 결정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인식 역시 부족하며,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수단도 다양하지 못하다. 후견제도에 대한 첨예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으나, 현 제도의 결함을 제거하여 의사결정 지원 수단으로 활용해야 하는 이유(제철웅 외, 2023)는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제기된다.

관련하여 오혜인, 이아영(2021)은 후견인 및 피후견인과의 관계에 기

초하여 의사결정 지원의 구성요소 12가지를 제안하였다. 궁극적으로 치매노인을 의사결정의 주체로 바라보는 물론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소통을 강조한다. 대다수의 치매노인은 시간 경과에 따라 언어능력 및 정보 처리 능력 저하를 경험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의사결정 지원자와의 즉각적인 소통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 등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질문들을 제시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되풀이하여 설명하거나, 충분한 시간을 들여 소통하고 최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등이 의사결정 지원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이라 하겠다(박정연, 2023).

〈표 2-2〉 자기결정에 기반한 의사결정 지원 구성요소

| 구성요소          | 주요 질문                                                      |
|---------------|------------------------------------------------------------|
| 행위 주체         | - 최종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주체가 피후견인 당사자인가?                            |
| 외재적 동기의 내재화   | - 동기가 없었던 특정 결정에 대해 필요에 따라 외재적 동기가 내재화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지원하는가? |
| 관심 영역         | -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과 지원이 필요한 영역에 대한 사정 과정이 포함되는가?          |
| 선택의 반영과 가치 이해 | - 피후견인의 선호와 가치가 반영되는가?                                     |
| 정보 제공         | - 피후견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영역 및 내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는가?                |
| 선택지 제공        | - 다양한 결정을 고려할 만한 충분한 선택지가 제공되는가?                           |
| 결정 이후 결과의 양방향 | - 특정한 결정을 할 경우에 처해질 상황, 결정하지 않을 경우의 결과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는가?  |
| 결정에 대한 숙고와 심의 | - 특정 결정에 대한 숙고 및 심의 과정을 밟는가?                               |
| 의사소통          | - 충분한 의사소통 과정을 밟고 있는가? 단순한 표현을 사용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가?         |
| 충분한 시간        | - 피후견인의 결정 과정에 충분한 시간이 부여되는가?                              |

출처: “치매노인 공공후견 과정의 자기결정지원 요소에 대한 비판적 고찰-치매공공후견인을 위한 ‘후견사무매뉴얼’ 분석을 중심으로,” 오혜인, 이아영, 2021, 한국사회복지학, 73(3), 123-15.1, p. 131을 바탕으로 연구진이 재구성함.

종합해보면, 치매노인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이들이 경험하는 복합적인 특성과 치매 증상의 다양성 등에 대한 지속적인 고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후견제도가 갖는 의미를 고려하여, 관련 제도와의 조화 속에서 치매노인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기본 원칙 수립 및 실천적 관점에서의 이행 방안 등을 보다 정교하게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제3절 성년후견제도 개괄 및 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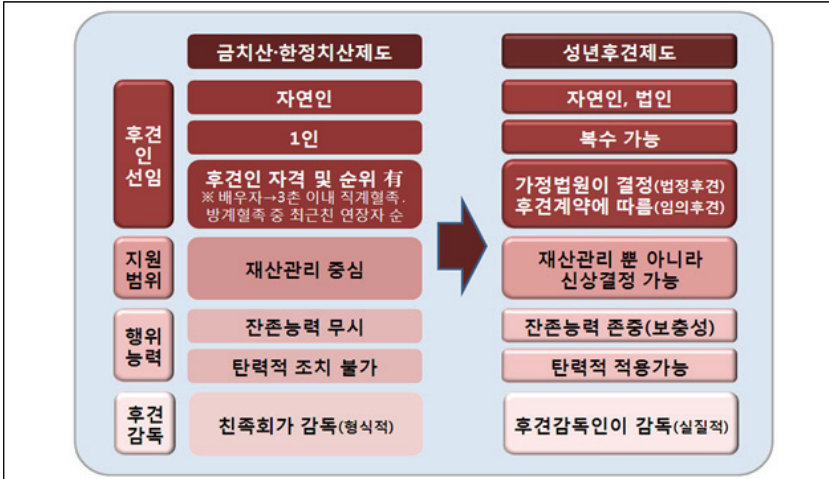
### 1. 성년후견제도

#### 가. 제도 개요

성년후견제도는 민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 제약에 따라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거나 일정 부분 부족한 성인에 대해 후견 개시 심판을 통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이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4).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운영되었으나, 경제적 지원에 국한되었을 뿐 아니라 후견인 업무에 대한 감독의 어려움,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광범위한 제약 등의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2024). 이러한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필요성 및 보충성, 정상화 원리에 기반하여 운영되는 성년후견제도는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보장 및 권익 옹호 측면에서 종래의 제도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이지은, 2022).

[그림 2-1] 기존 제도 및 성년후견제도 간 차이



출처: “7월 1일부터 성년후견제도 시행[보도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2013, p. 2.  
[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27&list\\_no=287817&seq=1](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27&list_no=287817&seq=1)

여기에서 성년후견은 광의의 의미이며 법원에 의해 후견이 개시되는 법정후견을 뜻한다. 법정후견은 본인을 비롯해 법원에서 인정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로부터 시작되며, 이후 가정(지방)법원에서는 정신감정(성년후견, 한정후견에 국한) 및 가사조사, 당사자 심문 등을 통해 당사자의 인지능력 및 정신상태, 후견에 대한 본인 의사 확인, 신상 및 재산 현황, 후견인 후보자의 적절성, 후견계획의 적절성 등을 판단하게 된다(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2023). 이를 바탕으로 후견심판을 통해 후견 개시를 선언하며, 이후 실질적인 후견이 개시된다. 후견 개시 이후에는 후견인-피후견인 간 직접적인 후견 사무 지원이 수행되며, 가정(지방)법원은 이 과정에서 후견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한다. 후견 종료는 개시와 마찬가지로 후견 종료에 대한 심판에 따라 이루어진다.

〈표 2-3〉 법정후견업무 이행 절차

| 절차        | 주체별 역할                                                                                                                                              |                                                                                                                              |                                                                                   |
|-----------|-----------------------------------------------------------------------------------------------------------------------------------------------------|------------------------------------------------------------------------------------------------------------------------------|-----------------------------------------------------------------------------------|
|           | 가정(지방)법원                                                                                                                                            | 후견인                                                                                                                          | 피후견인                                                                              |
| 1. 청구     |                                                                                                                                                     |                                                                                                                              | - (청구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br>- (청구지) 사건 본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 2. 심판     | - 심리 및 심판<br>- (심리)정신감정(성년/한정후견), 가사조사, 심문<br>- (심판(문))후견 개시 선언, 후견인 및 감독인 선임, 대리권 및 취소권, 동의권 범위 등에 관한 사항 등 기재<br>- 고지 및 통지<br>- 확정(14일)<br>- 등기 촉탁 | - 의견청취서·보증보험증권 제출(해당 시)<br>- 심판서 수령 및 내용 확인<br>- 사건기록 열람·복사<br>- 후견등기사항 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발급                                 |                                                                                   |
| 3. 후견업무개시 | - 후견 업무 감독                                                                                                                                          | - 재산조사, 재산목록 작성, 채권·채무 관계 제시 등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후견감독인 참여 필요)<br>- 2개월 내 가정(지방)법원에 재산목록보고서 제출                                    |                                                                                   |
| 4. 후견업무수행 | - 후견 업무 감독                                                                                                                                          | -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br>- 후견사무보고서 작성 및 보고<br>- 변경사항 확인 및 변경등기 신청(해당하는 경우)<br>- 보수 수여 심판 청구                                    |                                                                                   |
| 5. 후견업무종료 | - 후견 업무 감독<br>- 후견 종료 심판<br>- 등기 촉탁                                                                                                                 | - 후견 종료 심판 청구<br>- 심판서 수령 및 내용 확인<br>- 말소등기 또는 종료등기 신청(해당 시)<br>- 재산관리의 계산(1개월 내,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후견감독인 참여 필요)<br>- 보수 수여 심판 청구 |                                                                                   |

출처: “3. 후견업무의 흐름\_법정후견업무,”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2015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재구성함. 2024. 4. 29. 검색, <http://kscg1.mireene.com/xe/dbgk/6787>



이 같은 법정후견은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능력 및 후견인의 업무 범위(권한), 후견의 지속성 여부 등에 따라 다시 성년후견<sup>4)</sup>,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나뉜다.

후견 유형별로 특성을 살펴보면, 협의의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후견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청구권자는 본인 및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된다.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에 대한 포괄적 취소권과 대리권을 갖게 된다. 한정후견은 피후견인이 정신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심판청구가 가능하며, 청구권자는 성년후견과 같다. 단 한정후견인에게는 법원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의 동의권과 대리권만 수여되며, 당사자의 행위능력 역시 법원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한한다는 점에서 성년후견과는 차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특정후견은 정신 제약에 따라 일시적(기간) 또는 특정 사무의 후원(범위)이 필요한 경우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으며, 후견인의 권한 역시 법원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의 대리권만 수여된다.

살펴본 바와 같이, 후견 유형별로 후견인이 지닌 법적 권한이 다르다. 대리권은 피후견인이 직접 법적 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신하여 법적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로(민법 제929조), 협의의 성년후견에서는 이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며, 한정 및 특정후견에서는 법원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대리권 수여가 가능하다. 취소권은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불이익한 법적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로(민법 제940조), 역시 협의의 성년후견 유형에서만 적용된다. 한편 동의권은

4) 앞에서 언급한 광의의 의미와 다른 성년후견으로, 법정후견의 한 종류를 뜻함.

피후견인이 법적 행위를 할 때 후견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권리(민법 제 911조)로, 한정후견인에게 수여된다.

법정후견제도는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무 범위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결정 능력을 고려하여 판단하고자 하는 취지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의사결정 지원제도로서의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한다(이지은, 2022). 이 중에서도 특정후견이, 법정후견 내에서는 후견의 기간 또는 후견인의 권한 측면에서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약이 가장 적다. 반면 성년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행위능력 제한, 한정후견제도는 후견제도의 영속성 측면에서 피후견인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한계가 있다(이지은, 2022; 제철웅, 2015).

나아가 법정후견 이외에 후견인과 피후견인 간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임의후견은 당사자가 판단 능력이 부족해질 때를 대비하여 후견인이 될 사람을 미리 지정하여 자유롭게 계약을 맺는 것으로, 가정법원에서 임의후견 감독인의 선임 심판이 확정될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법원 허가를 통해 종료된다. 법정후견과 비교할 때, 당사자의 자유 의사(또는 의지)에 따라서 스스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자기결정권 구현 측면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표 2-4>와 같다.

〈표 2-4〉 후견 유형 비교

| 유형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 임의후견                                         |
|-------------|--------------------------------------------------|------------------------------|--------------------------------------|----------------------------------------------|
| 개시 사유       | 정신적 제약으로<br>사무처리 능력<br>지속적으로 결여                  | 정신적 제약으로<br>사무처리 능력<br>부족 시  | 정신적 제약으로<br>일시 후원 또는 특정<br>사무 후원 필요시 | 정신적 제약으로<br>사무처리 능력 부족 시                     |
| 청구권자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br>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                              |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br>친족, 후견인, 검사,<br>지방자치단체의 장 |
| 당사자<br>행위능력 | 원칙적 제한                                           | 법원에서 정한<br>바에 따라 제한          | 행위능력 미제한                             | 행위능력 미제한                                     |
| 후견인<br>권한   | 포괄적 취소권 및<br>대리권                                 | 법원에서 정한<br>바에 따른 동의권,<br>대리권 | 법원에서 정한<br>바에 따른 대리권                 | 계약에서 정한 대리권                                  |

출처: “성년후견제도의 이해와 활용- 치매노인과 발달장애인의 신상보호와 재산관리,” 이현곤, 2018, 고시계사, p. 29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재구성함.

또한 후견은 후견인의 특성에 따라서 친족 후견, 전문가 후견, 공공후견<sup>5)</sup>으로도 분류된다. 친족 후견은 피후견인의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이 후견을 맡는 경우이며, 전문가 후견은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가 후견인이 되는 경우를 뜻한다(이지은, 2020). 마지막으로 공공후견은 공익을 목적으로 피후견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제철웅 외, 2016), 앞의 두 후견 유형의 분류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이 중 공공후견은 전문가 후견인이 선임되기도 하나 특별한 전문자격 없이 양성 교육 이수 후 후견인으로 선임되기도 한다(김성우, 2017). 다만 통상적으로 이 같은 분류가 유지되는 것은 공공후견의 다수가 소정의 양성 교육을 이수한 시민 후견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간주된다.

후견인의 유형에 따라 갖는 장단점은 명확하다. 친족 후견의 경우, 사

5) 공공후견인과 시민 후견인은 공익적인 목적에 따라서 후견 사무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의미로 활용됨. 보건복지부에서는 시민 후견인보다는 공공후견인을 정식 명칭으로 사용함(이현곤, 2018).

전에 피후견인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피후견인의 선호나 이익을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오히려 이것이 과한 간섭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는 비판 역시 존재한다(이지은, 2020). 전문가 후견은 보다 고난이도의 후견 사무가 필요할 때 전문적으로 이를 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보수 지급 및 피후견인과의 관계 형성 등에 있어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후견, 이 중에서도 시민 후견은 자발적 참여의사를 바탕으로 활동한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으나, 양성 교육 편차 및 개인 역량 여하에 따라 후견 사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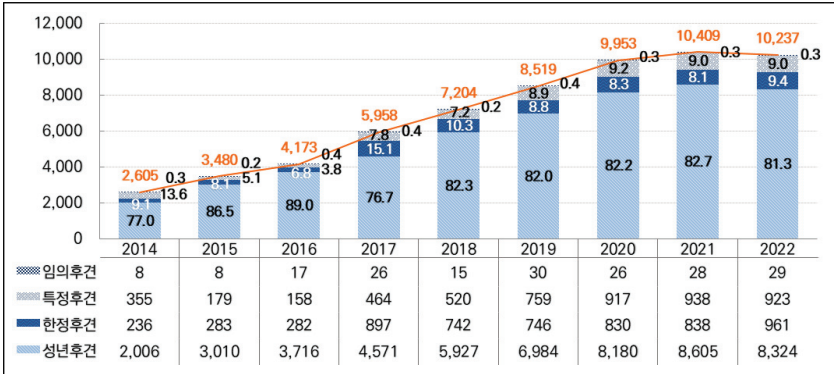
## 나. 현황 분석

제도 시행 다음 해인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접수된 성년후견 누적 건수는 62,538건으로(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2023), 해마다 그 수치가 늘고 있긴 하나 잠정적 수요자 대비 이용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후견제도의 절대적 이용률이 낮은 데에는 여전히 전통적 가족주의에 기초하여 대다수의 일상 지원 및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법정후견 이용 방법과 절차의 복잡성, 신속한 처리가 어렵다는 문제 등이 연유하고 있다(최진솔 외, 2021).

누적 접수 건수를 기준으로 볼 때, 후견 유형별로는 성년후견이 51,323건(82.1%)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한정후견 5,815건(9.3%), 특정후견 5,213건(8.3%), 임의후견 157건(0.3%) 순이다. 도입 초기와 비교하면 최근 들어 성년후견의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특정후견의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성년후견에 치중하여 전체 후견 사건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2-2] 전국 연도별 후견 유형별 성년후견 사건 접수 건수 현황(2014~2022년)

(단위: 건, %)



출처: “통계로 알아보는 우리나라 후견(감독)사건의 현황.”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2023, p. 27을 바탕으로 연구진이 재구성함. 2024. 5. 8. 검색, <http://kscg1.mireene.com/xe/dbdata/13827>

전체 성년후견 사건 누적 접수 건수 대비 각 가정(지방)법원의 접수 건수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가정법원이 24.6%로 가장 높고 수원가정법원(15.4%), 부산가정법원(8.0%), 인천가정법원(7.7%), 대구가정법원(7.6%) 등의 순이다(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2023). 소관 지역과 관계없이 성년후견의 비중이 가장 높고, 한정후견 및 특정후견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한정후견은 대인가정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후견은 광주가정법원, 춘천지방법원 등에서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정 및 특정후견은 대다수 공공후견사업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해당 지역의 공공후견사업 운영 현황에 따른 차이로 간주된다.

44 성년후견제도 운영 개선 방안 모색: 치매 및 인지저하 노인의 의사결정 지원을 중심으로

〈표 2-5〉 가정(지방)법원별 후견 유형별 성년후견 사건 누적 접수 건수 현황(2014~2022년)

(단위: 건, %)

| 구분      | 계      |                  | 성년후견   |                  | 한정후견  |                  | 특정후견  |                  | 임의후견 |                  |
|---------|--------|------------------|--------|------------------|-------|------------------|-------|------------------|------|------------------|
|         | 건수     | 비율 <sup>1)</sup> | 건수     | 비율 <sup>2)</sup> | 건수    | 비율 <sup>2)</sup> | 건수    | 비율 <sup>2)</sup> | 건수   | 비율 <sup>2)</sup> |
| 전국      | 62,538 | 100.0            | 51,323 | 82.1             | 5,815 | 9.3              | 5,213 | 8.3              | 187  | 0.3              |
| 서울가정법원  | 15,372 | 24.6             | 12,805 | 83.3             | 1,624 | 10.6             | 885   | 5.8              | 58   | 0.4              |
| 의정부지방법원 | 4,611  | 7.4              | 3,846  | 83.4             | 591   | 12.8             | 151   | 3.3              | 23   | 0.5              |
| 인천가정법원  | 4,822  | 7.7              | 4,218  | 87.5             | 268   | 5.6              | 330   | 6.8              | 6    | 0.1              |
| 수원가정법원  | 9,636  | 15.4             | 8,409  | 87.3             | 688   | 7.1              | 522   | 5.4              | 17   | 0.2              |
| 춘천지방법원  | 1,690  | 2.7              | 1,358  | 80.4             | 77    | 4.6              | 246   | 14.6             | 9    | 0.5              |
| 대전가정법원  | 4,185  | 6.7              | 3,020  | 72.2             | 650   | 15.5             | 496   | 11.9             | 19   | 0.5              |
| 청주지방법원  | 2,029  | 3.2              | 1,522  | 75.0             | 252   | 12.4             | 249   | 12.3             | 6    | 0.3              |
| 대구가정법원  | 4,729  | 7.6              | 3,887  | 82.2             | 432   | 9.1              | 407   | 8.6              | 3    | 0.1              |
| 부산가정법원  | 5,017  | 8.0              | 4,180  | 83.3             | 365   | 7.3              | 454   | 9.0              | 18   | 0.4              |
| 울산가정법원  | 1,633  | 2.6              | 1,329  | 81.4             | 137   | 8.4              | 159   | 9.7              | 8    | 0.5              |
| 창원지방법원  | 2,550  | 4.1              | 2,063  | 80.9             | 181   | 7.1              | 301   | 11.8             | 5    | 0.2              |
| 광주가정법원  | 3,377  | 5.4              | 2,389  | 70.7             | 306   | 9.1              | 679   | 20.1             | 3    | 0.1              |
| 전주지방법원  | 2,002  | 3.2              | 1,574  | 78.6             | 191   | 9.5              | 228   | 11.4             | 9    | 0.4              |
| 제주지방법원  | 885    | 1.4              | 723    | 81.7             | 53    | 6.0              | 106   | 12.0             | 3    | 0.3              |

주: 1) 전국 접수 건수 대비 각 법원의 접수 건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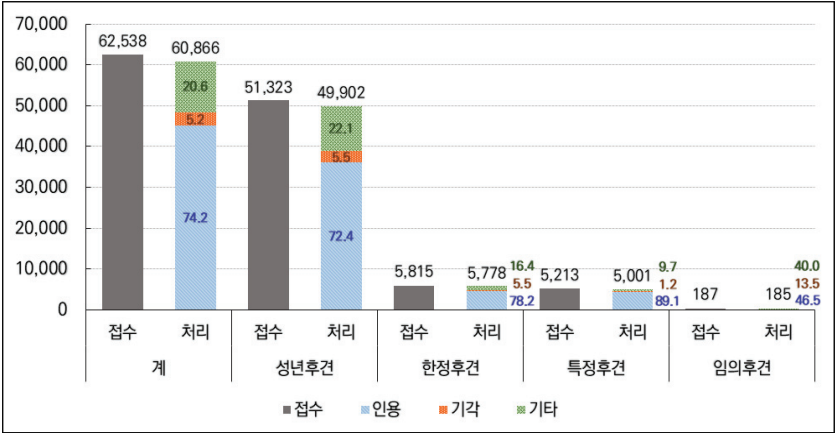
2) 법원 접수 건수 대비 각 후견 유형의 접수 건수 비율

출처: “통계로 알아보는 우리나라 후견(감독)사건의 현황.”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2023, p. 29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재구성함. 2024. 5. 8. 검색, <http://kscg1.mireene.com/xe/dbdata/13827>

동 기간의 성년후견 사건의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인용 74.2%, 기타 20.6%, 기각 5.2%로(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2023) 접수된 사건의 다수가 인용되는 양상이다. 후견 유형별로 전체 접수 건수 대비 인용 건수의 비율은 특정후견(89.1%)에서 가장 높고, 한정후견(78.2%), 성년후견(72.4%), 임의후견(46.5%)의 순으로 나타난다.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후견 개시 심판을 할 수 없다는 법적 장치가 존재하며, 치매공공후견을 비롯한 대다수 공공후견사업들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접수 사건에 대해서는 대다수 인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3] 후견 유형별 성년후견 사건 누적 접수 및 처리 건수 현황(2014~2022년)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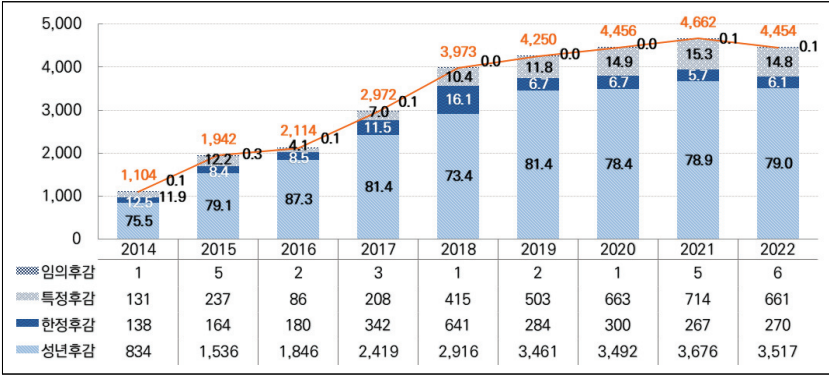
주: 처리 건수 중 기타 건수는 후견 사건의 취하, 이송 등으로 종료 처리된 건수를 의미함.  
출처: “통계로 알아보는 우리나라 후견(감독)사건의 현황,”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2023, p. 85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재구성함. 2024. 5. 8. 검색, <http://kscg1.mireene.com/xen/dbdata/13827>

인용된 후견 사건의 경우, 후견 과정에서 후견감독인 및 법원에 의해 후견감독이 이루어진다. 법원 직권 또는 청구에 따라 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가정법원이 직접 후견활동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다. 개시된 후견심판문에 기초하여 후견인의 임무에 대한 감독과 후견사무보고서 검토 등이 해당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후견감독 사건 역시 접수 양상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거나 특히 성년후견 및 특정후견 감독의 비중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성년후견은 전체 법정후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특정후견은 관련 공공후견사업의 확대에 따른 영향으로 간주된다.

46 성년후견제도 운영 개선 방안 모색: 치매 및 인지저하 노인의 의사결정 지원을 중심으로

[그림 2-4] 전국 연도별 후견 유형별 성년후견감독사건 접수 건수 현황(2014~2022년)

(단위: 건, %)



출처: “통계로 알아보는 우리나라 후견(감독)사건의 현황.”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2023, p. 27을 바탕으로 연구진이 재구성함. 2024. 5. 8. 검색, <http://kscg1.mireene.com/xe/dbdata/13827>

일련의 현황은 후견제도 내에서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지원 정도가 가장 낮은 성년후견 유형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UN 협약의 권고와 배치된다. 이러한 현실은 후견제도가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대신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더욱 심화시킨다. 따라서 법정후견 내에서 당사자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방식의 정교화 및 특정후견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법정후견 이외 임의후견과 같이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더욱 잘 반영할 수 있는 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2. 치매공공후견사업

### 가. 제도 개요<sup>6)</sup>

#### 1) 사업 목적 및 추진 경과

2015년 12월 ‘제3차 국가치매관리계획’을 통해 정부는 치매노인에 대한 공공후견 도입 의사를 밝히고, 이듬해인 2017년에 보건복지부의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 치매 독거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공공후견지원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을 수행하였다(오혜인, 이아영, 2021). 같은 해 치매국가책임제 도입과 함께 치매관리법 제12조의 3(성년후견 이용지원)을 신설함으로써 치매공공후견사업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다음 해인 2018년 9월 본 사업이 시작되었다. 2024년도 치매공공후견사업의 예산은 9억 원으로 2023년 대비 1억 원이 감소하였다(보건복지부, 2024a).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이들을 대상으로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 등을 지원하는 후견사업은 이들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특정후견(최대 3년)<sup>7)</sup>을 원칙으로 하며, 치매 증상이 심하여 의사결정 지원의 필요성이 높을 경우 예외적으로 한정후견을 인정한다. 치매의 경우 후천적으로 발병하며 이전 생애 기간 동안 자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한 경험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대한 피후견인의 독립성을 인정하고자 한 조치로 볼 수 있다.

6) 보건복지부(2024b). 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pp. 277-320을 바탕으로 재구성

7) 기간 만료(최대 3년) 또는 피후견인의 안전망이 형성되었다고 판단되면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나, 종료 6개월 전 후견을 지속할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욕구 확인 및 욕구가 발견될 경우 종료 3개월 전 후견 개시 심판을 재청구할 수 있음.

2) 사업 대상

2024년 기준 치매공공후견사업의 대상(피후견인)은 치매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이면서, 소득 또는 가족, 또는 욕구 기준에 부합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업 운영 초기에는 65세 이상 중증도 이상의 치매환자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현재는 연령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치매 정도와 관계없이 진단을 받은 자는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당초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치매노인을 중심으로 제도가 설계되었으나, 현재는 저소득층 이외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서비스 이용 대상 기준을 완화하였다(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수급자 등에게 우선 지원). 나아가 당사자의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부재하거나 관계망이 있을지라도 학대, 방임, 자기방임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후견인 지원을 요청할 때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다. 단,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지라도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판단할 경우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 역시 열어두었다.

〈표 2-6〉 후견 대상자 선정 기준(2024년 기준)

| 구분    | 내용                                                                                                       | 2018년 기준                     |
|-------|----------------------------------------------------------------------------------------------------------|------------------------------|
| 치매 여부 | - 치매 진단받은 자                                                                                              |                              |
| 소득기준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기초연금수급자 등 우선 지원(일반층 지원 가능)                                                       | - 65세 이상<br>- 중증도 이상<br>치매환자 |
| 가족기준  | - 권리를 적절히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br>- 가족 있을지라도 학대, (자기)방임 가능성 있을 경우 지원 가능<br>- 가족 있을지라도 장기간 가족해체로 실질적 지원 없는 경우 | - 수급자 등<br>저소득층<br>지원 원칙     |
| 욕구기준  | - 후견인을 통한 도움 또는 의사결정 지원 필요시                                                                              |                              |

\* 조건 미충족자이더라도, 후견 필요하다고 지자체장 판단 시 선정 가능

출처: 1) “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4b, p. 280을 바탕으로 연구진이 재구성함.  
2024. 3. 28. 검색, [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19&list\\_no=1480673&seq=2](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19&list_no=1480673&seq=2)

2) “제2회 한국후견대회-한국후견제도 시행 10주년, 성과와 전망-[자료집],” 서울가정법원, 한국후견협회, 2023, p. 67을 바탕으로 연구진이 재구성함.

### 3) 사업추진체계

치매공공후견사업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치매관리사업 주요 전달체계인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가 주축이 되어 운영된다.

추진체계별 역할을 살펴보면(〈표 2-7〉), 전국 256개 시·군·구의 치매안심센터에서는 기존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또는 독거노인에 대한 정보, 이외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및 요양시설(병원) 등의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추천받은 치매환자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선정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선정된 후견 대상자에 대해서는 후견심판청구가 이루어지며, 심판청구비 등을 비롯하여 대상자 발굴 과정에서 소요되는 부대 비용<sup>8)</sup>에 대한 처리(1인당 연간 최대 50만 원 실비 지원), 공공후견인에 대한 활동비 지급 업무 등 전반적인 후견사업의 실무를 담당한다. 나아가 치매안심센터는 후견인 활동 보고서 점검과 후견 개시 이후 월 1회 이상 후견 사례회의 등을 개최하여 전반적인 후견인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역시 겸하고 있다.

광역치매센터는 전국 17개 시도에 위치하며, 후견인 후보자<sup>9)</sup>에 대한 선발, 교육 및 관리 업무에 주력한다. 우선 광역치매센터는 매년 후견인 후보자에 대한 선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일괄 공지한다. 이후 공고 등을 통해 후견인 후보자를 모집하고 일정한 선발기준에 따라 후견인 후보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후견인 후보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주관의 법정 의무교육인 후견인 후보자 양성 교육을 실시하며, 최종 선발된 후견인 후보자에게는 위촉장이 수여된다. 이후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8) 후견 대상자 발굴, 후견지원회의, 자문 수당, 회의 다과비, 사회조사 보고서(1건당 최대 10만 원), 법원 인지송달료 등 후견심판청구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단, 치매안심센터에서 대상자를 발굴하여 사회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보고서 작성 비용은 미지급)

9) 양성 교육 수료 후 후견심판 확정(법원 심판) 전까지는 후견인 후보자이며, 법원 심판에 따라 후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만 후견인으로 칭함.

서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해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후견 대상자와 적합한 후보군을 2배수 이상 추천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외에도 후견인 후보자 또는 후견인으로 활동 중인 자를 대상으로 보수 교육을 운영하며, 교육 시수 및 내용, 방식 등은 광역치매센터의 재량으로 운영된다.

마지막으로 중앙치매센터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수행하는 후견심판청구 대리 및 법률 자문, 후견감독 및 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2024년 기준 중앙치매센터는 9개의 팀으로 운영되는데, 이 중 공공후견지원팀 소속 변호사가 후견심판청구 대리 및 후견 업무 수행과 관련한 법률 자문의 역할을 담당한다(경기도의 경우, 광역치매센터에서 담당). 그리고 해당 팀에서는 치매공공후견사업 교육 및 홍보 지원을 위한 각종 워크숍 및 관련 책자(실무문답집 등) 발간 등의 업무를 겸한다.

〈표 2-7〉 치매공공후견사업 추진체계

| 수행 주체             | 기능              |                                                                                                                                                                                                                                                                                                                                                                                                                                         |
|-------------------|-----------------|-----------------------------------------------------------------------------------------------------------------------------------------------------------------------------------------------------------------------------------------------------------------------------------------------------------------------------------------------------------------------------------------------------------------------------------------|
| 보건복지부             | 사업 총괄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사업계획 수립 및 지침 마련</li><li>• 예산 지원</li><li>• 후견인 후보자 양성 교육 실시</li></ul>                                                                                                                                                                                                                                                                                                                            |
| 시·도               | 광역단위 사업 조정 및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광역치매센터/관할 치매안심센터 사업 관리 총괄</li><li>• 지방비 확보</li></ul>                                                                                                                                                                                                                                                                                                                                            |
| 시·군·구<br>(치매안심센터) | 후견 대상자 발굴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후견 대상자 발굴·선정</li><li>• 후견심판청구</li><li>• 후견인 활동비 지급</li><li>• 후견 감독</li></ul>                                                                                                                                                                                                                                                                                                                    |
| 광역지원단<br>(광역치매센터) | 후견인 후보자 선발·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후견인 후보자 모집·선발</li><li>• 치매안심센터에 후견인 후보자 추천</li><li>• 후견인 후보자 지원 및 인력풀 관리</li><li>• 후견인 후보자 및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등 교육</li><li>• 후견심판청구 지원 및 법률자문(후견심판청구지원 계획 및 체계를 확립한 시·도 광역지원단만 해당)<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전문인력(변호사, 관계 전문가 등)을 두고 시도 및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심판청구 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할 치매안심센터의 후견심판청구 업무 지원 가능. 단, 후견심판청구 진행 및 결과 등에 대해 중앙지원단에 사전·사후 보고 및 상호 협의 필수</li></ul></li></ul> |

| 수행 주체             | 기능                    |                                                                                                                                                             |
|-------------------|-----------------------|-------------------------------------------------------------------------------------------------------------------------------------------------------------|
| 중앙지원단<br>(중앙치매센터) | 법률자문 및<br>후견 사무<br>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견심판청구 지원 및 법률자문</li> <li>• 광역지원단·치매안심센터 지원 및 모니터링</li> <li>• 후견 업무 관리·감독 지원</li> <li>• 후견인 후보자 교육과정 지원</li> </ul> |

출처: “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4b. p. 281을 바탕으로 연구진이 재구성함.  
2024. 3. 28. 검색, [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19&list\\_no=1480673&seq=2](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19&list_no=1480673&seq=2)

#### 4) 대상자 선정 및 후견심판청구 지원 절차

##### 가) 대상자 발굴 및 선정

첫 번째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부 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 대상자 추천 공문을 통해 추천을 의뢰하거나 치매안심센터 자체 시스템(ANSYS)에 등록된 치매환자 중 후견 필요도가 높은 자 등을 중심으로 후견 대상자를 발굴한다. 대상자를 발굴한 기관은 시·군·구(치매안심센터)에 후견 지원회의 요청서, 후견 필요성 판단 기준표, 후견 유형 결정 판단 기준표, 후견인 권한 결정을 위한 판단기준표 등 일련의 서류를 제출하게 된다.

이후 후견 대상자별 후견지원 회의를 통해 공공후견인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후견지원 회의에는 치매안심센터 담당자, 후견 대상자 관할 주민센터 담당자 등이 참여하며, 후견 필요성 여부와 후견 유형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다. 앞서 대상자 발굴기관에서 제출한 후견 필요성 판단기준표가 이를 결정하는 기본자료로 활용되며, 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치매 정도, 독거 여부 및 학대나 방임 여부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특히 후견 유형의 경우,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하지만 지속적인 법률 지원 또는 신상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을 대리해야 할 경우 예외적으로 한정 후견으로 결정한다(한정후견일 경우에만, 후견 유형 판단기준표 작성).

#### 나) 후견인 후보자 추천 및 선정

다음으로 후견인 후보자에 대한 추천 요청 및 선정 과정이 이루어진다. 치매안심센터는 광역치매센터에 공공후견인 후보자에 대한 추천요청서를 공문으로 제출하게 되며 후견인 후보자 선정회의 개최 등을 통해 최종 후견인 후보자가 결정된다. 후견인 후보자 선정 회의에서는 후견인 후보자의 성별 및 피후견인과의 지리적 근접성, 과거의 직업 또는 경력, 종교 및 생활환경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최종 선정 결과는 광역치매센터에서 해당 치매안심센터로 공문을 통해 안내한다.

#### 다) 후견심판청구

선정된 후견 대상자에 대해서는 후견심판청구를 진행하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이를 위해 후견 대상자에 대한 관련 서류(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후견심판청구동의서,<sup>10)</sup> 사회조사보고서, 후견계획서 및 후견감독계획서 등)를 준비한다. 이 중 사회조사보고서는 피후견인이 후견이 필요한 상황임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서 기능하며, 발굴기관 담당자가 직접 작성(1건당 최대 10만 원, 치매안심센터 담당자 작성 시 미지급)한다. 사회조사보고서를 기반으로 후견인 후보자는 후견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해 치매안심센터 담당자가 일차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후견감독계획서는 지자체 또는 실제 후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치매안심센터의 직원 및 후견인 후보자의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소속 위임장은 중앙치매센터의 변호사와 협의하여 준비한다. 해당 서류들은 심판청구 요청

10) 피후견인의 의사능력 부족으로 후견심판청구 동의서 작성이 어려우면, 치매안심센터 담당자가 '후견심판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를 작성함. 특정후견의 경우 후견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개시할 수 없으나, 동의가 필수 요건이 아니므로 의향 확인서로 이를 파악함.

공문과 함께 중앙치매센터에 이메일로 제출하게 된다.

도착한 서류는 중앙치매센터 변호사가 검토한 후 사전현황설명서와 후견심판청구서 작성 과정을 거쳐 후견심판청구서를 제출(심판청구인은 지자체장)하는 것으로 후견심판 결정 전까지의 절차가 마무리된다.

#### 라) 후견심판 결정 및 후견 종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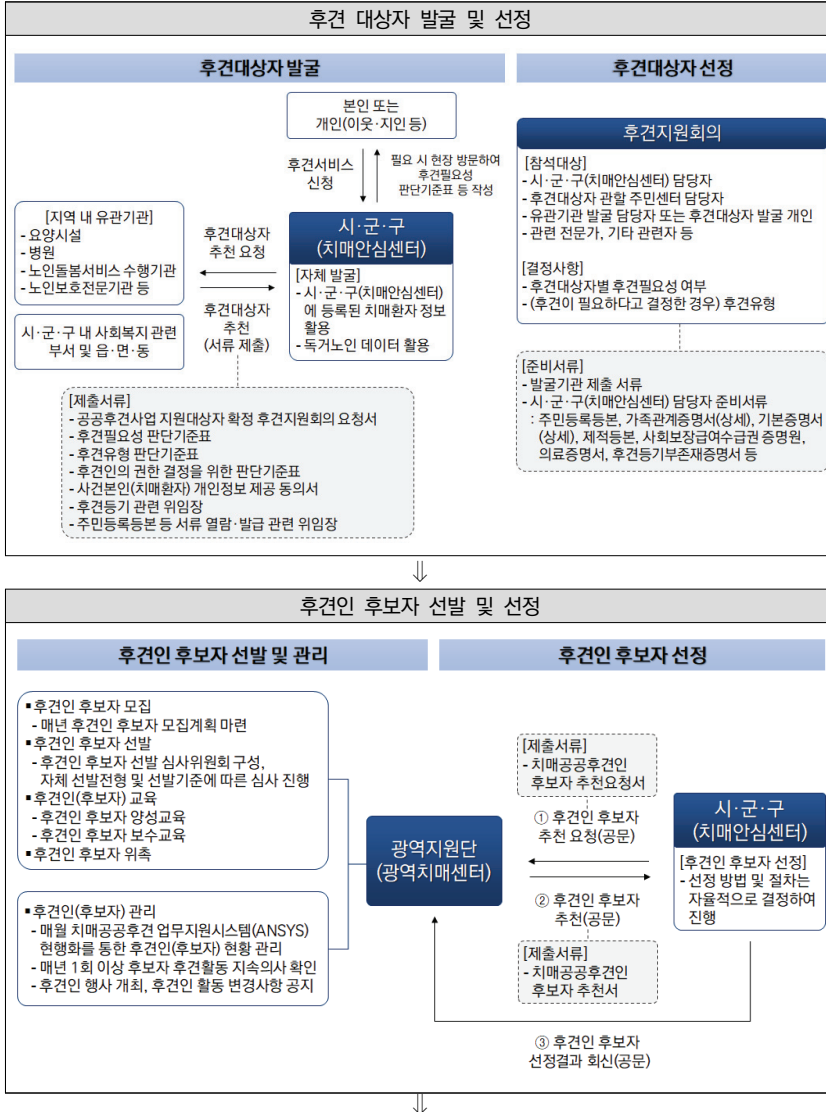
이후 가정(지방)법원에서 후견심판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지며, 심리 과정에 피후견인, 후견인 후보자, 중앙치매센터의 변호사, 치매안심센터 사업 담당자(후견감독사무 수행 예정자), 필요시 심판 절차 의사소통 조력인으로서 요양보호사나 생활지원사 등이 참석한다.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 필요성, 후견 유형의 적정성, 후견 후보자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후견심판 결정이 이루어진다.

후견심판 결정을 통해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이 선임된다. 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청구된 심판의 후견 개시 여부와 후견인의 사무 및 대리권 범위를 결정한다. 이후 송달된 후견 개시 심판문(변호사, 후견인, 피후견인에게 각각 송달)을 바탕으로 중앙치매센터 변호사는 치매안심센터에 결정 사실을 전달한다. 심판 내용에 대해 2주 이내에 불복하지 않으면 후견심판은 최종 확정되며, 후견인의 후견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후견인-피후견인 간의 후견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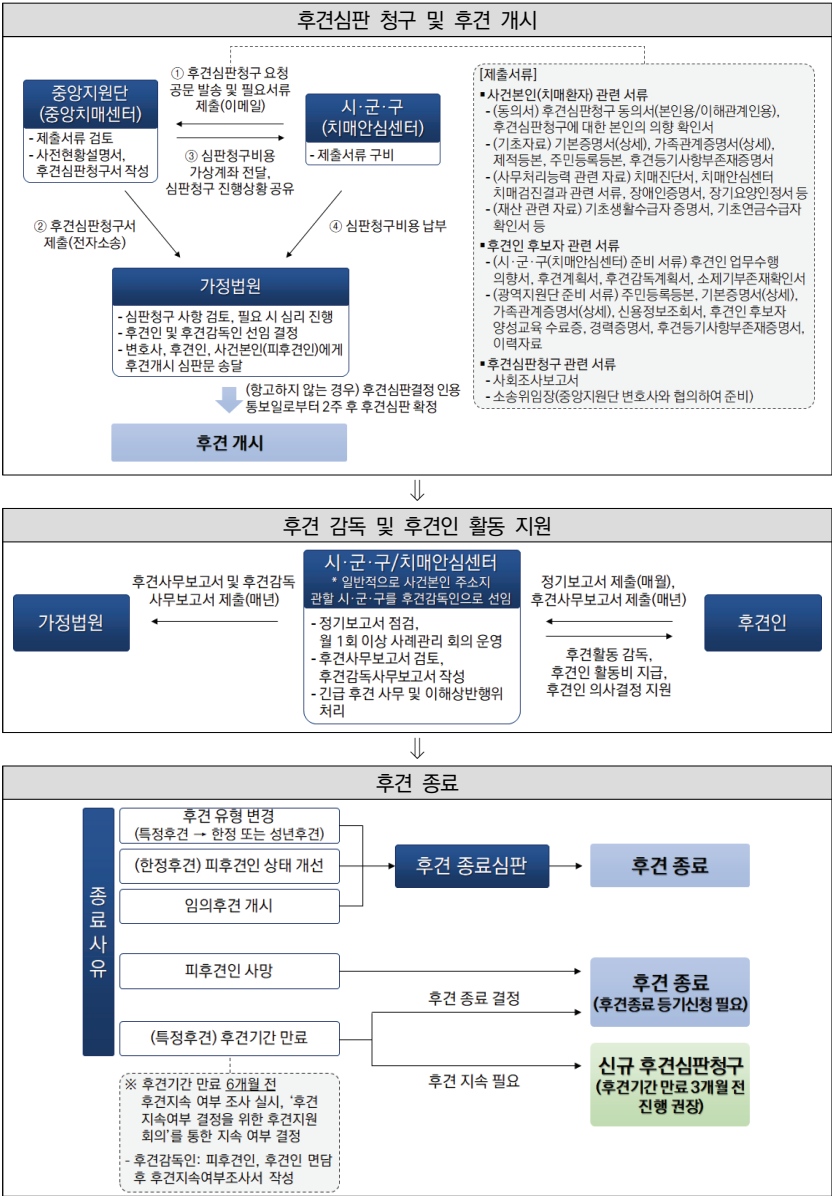
피후견인의 사망이나 특정후견의 기간 만료에 따른 통상적인 후견활동 종료 시에는 별도의 심판을 청구하지 않으나, 후견 유형을 변경(한정 또는 성년)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별도의 심판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후견활동이 종료된 이후에도 피후견인의 원만한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일정 기간 피후견인의 사회적 안전망과의 연락을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54 성년후견제도 운영 개선 방안 모색: 치매 및 인지저하 노인의 의사결정 지원을 중심으로

[그림 2-5] 치매공공후견사업 추진 절차







출처: “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4b, p. 282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새롭게 도식화함.  
2024. 3. 28. 검색, [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19&list\\_no=1480673&seq=2](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19&list_no=1480673&seq=2)

5) 후견인 선발 및 역할

공공후견인은 민법 제937조에서 명시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다. 제도 도입 당시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퇴직한 공무원을 중심으로 공공후견인을 양성하였으나, 현재는 민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확대함으로써 제도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였다.

〈표 2-8〉 공공후견인 선정 기준(2024년 기준)

| 내용                                                              | 2018년 기준              |
|-----------------------------------------------------------------|-----------------------|
| 민법 제93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br>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교육(21시간) 이수자 | 노인일자리사업<br>(퇴직공직자 위주) |

출처: “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4b. p. 280을 바탕으로 연구진이 재구성함.  
2024. 3. 28. 검색, [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19&list\\_no=1480673&seq=2](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19&list_no=1480673&seq=2)

모집된 후견인 후보자 중 더 적합한 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해 광역치매 센터에서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대체로 아래 〈표 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력 및 전문성, 관련 분야 교육 및 자원봉사 활동 경험, 피후견인과의 관계, 공공후견인으로서의 활동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표 2-9〉 치매공공후견인 후보자 선발 기준표(예)

| 고려 요소      | 배점 항목                      |
|------------|----------------------------|
| 경력 및 전문성   | 관련 분야 경력자(기간별 배점)          |
|            | 해당 없음                      |
| 교육수료 및 자격증 | 관련 분야 교육수료 및 자격증(개(회)당 배점) |
|            | 해당 없음                      |
| 자원봉사 활동 등  | 안심센터 등 자원봉사 활동 내역(회당 배점)   |
|            | 해당 없음                      |
| 업무 능력      | 워드 및 후견인 보고서 작성 등 업무 능력 평가 |

| 고려 요소 | 배점 항목        |
|-------|--------------|
| 종합의견  | 참여 적극성       |
|       | 건강상태 및 수행 능력 |

출처: “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4b. p. 293을 바탕으로 연구진이 재구성함.  
2024. 3. 28. 검색, [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19&list\\_no=1480673&seq=2](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19&list_no=1480673&seq=2)

선발된 후견인 후보자는 법정 의무교육인 후견인 후보자 양성 교육을 이수해야만, 후견인으로서 활동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교육 내용으로는 노인에 대한 이해, 치매 정신행동 증상에 대한 이해와 대처, 후견인 실무에 대한 내용 등이 해당된다.

양성 교육을 이수한 이후 1년 이상 후견인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대기 중인 경우, 보수 교육(6시간)을 진행하도록 한다. 교육 내용 등은 광역치매센터의 재량으로 구성된다. 이외에도 권고사항으로 광역치매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활동 중인 후견인 또는 대기 중인 후견인 후보자를 대상으로 상시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2-10〉 치매공공후견인 후보자 보수 교육(예)

| 교과목                 | 강의 구성 내용                              |
|---------------------|---------------------------------------|
| 후견인 역할              | 실제 활동 중인 후견인의 본인 활동                   |
| 후견인 윤리              | 치매환자 인권, 후견인 윤리 등                     |
| 후견감독사무              | 치매안심센터 사업 담당자 또는 관할 가정법원 후견감독관의 사무 안내 |
| 후견활동 사례             | 실제 활동 중인 후견인의 본인 활동 사례 공유             |
| 치매환자와의 소통           | 치매환자 특성 및 라포형성을 위한 실무 교육              |
| 지역사회 사회복지서비스의 이해    | 치매환자가 활용 가능한 지역사회 사회복지서비스 안내 및 활용방안   |
| (비고) 온라인 교육자료 활용 가능 |                                       |

출처: “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4b. p. 294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재구성함.  
2024. 3. 28. 검색, [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19&list\\_no=1480673&seq=2](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19&list_no=1480673&seq=2)

이렇게 선발된 공공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대리권 범위 내에서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된다. 본 사업이 특정후견을 기본 원칙으로 운영되는 만큼, 후견인에게도 동의권 또는 취소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후견인의 역할 역시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부여된 업무가 달라지는데, 대체로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이용 지원,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무 지원, 거소 관련 사무 지원, 일상생활 관련 지원)와 관련하여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보건복지부, 2024b).

나아가 피후견인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 임무 역시 맡게 되는데, 이는 특정후견이 갖는 특성과 결부된다. 치매공공후견은 최대 3년이라는 한시적 기간 내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후견은 기간이 만료되거나 피후견인에게 후견인이 아닌 조력자 또는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종료가 가능하다. 따라서 영속적인 후견으로 이어지지 않고 피후견인이 후견 종료 후에도 자립적인 생활 영위가 가능하도록, 후견인에게 피후견인의 사회적 지지망을 형성하는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안전망 조력자는 피후견인의 활동 반경 내에 있는 자로서, 피후견인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표 2-11〉 치매공공후견인의 주요 업무

| 주요 업무                               |                                                   |
|-------------------------------------|---------------------------------------------------|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이용 지원       |                                                   |
|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무 지원<br>(침습적 의료행위 제외) | - 진료, 검사 등은 가능<br>- 수술 등 건강이 악화될 수 있는<br>의료행위는 제외 |
| 거소 관련 사무 지원                         | - 임대차 계약 갱신, 보증금 반환,<br>시설 입소 계약 지원               |
| 일상생활비 및 일상생활 관련 사무 지원               |                                                   |
| 공법상 신청행위 사무 지원                      |                                                   |

출처: “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4b. p. 288을 바탕으로 연구진이 재구성함.  
2024. 3. 28. 검색, [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19&list\\_no=1480673&seq=2](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19&list_no=1480673&seq=2)

마지막으로 본인이 수행한 후견 업무에 대해서는 매월 후견인 정기보고서, 금전지출 내역서, 후견활동 내역서를 작성하여 후견 감독인에게 제출하는 것을 의무로 한다. 후견인의 경우, 피후견인 1인을 담당할 경우 월 20만 원, 2인 담당 시 월 30만 원, 3인 담당 시 월 40만 원이 활동비로 지급된다. 당초 후견인 양성이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시작되었다는 점과 국선후견인의 보수 수준을 고려하여, 치매공공후견인의 활동비 수준 역시 그에 맞춰 책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 6) 후견감독

치매공공후견사업과 같이, 제3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해당 지자체를 후견감독인으로 선임할 것을 동시에 청구한다. 청구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가정법원은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을 선임하게 되며, 후견감독인은 후견 개시일(심판 확정일)로부터 후견 종료 시까지 후견감독인으로서의 권한 및 업무를 수행한다.

후견감독인은 민법 제940조의 6에 따라 일반적인 감독권한 업무를 수행하며, 후견인과 피후견인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피후견인을 대리할 권한을 갖게 된다. 또한 긴급 상황에서 피후견인 보호를 위해 후견인을 대신하여 피후견인을 대리 또는 결정할 권한을 지니며, 민법 제950조를 바탕으로 후견인이 중요한 행위를 대리할 때 이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이외에도 민법 제953조에 의해, 후견인 임무 수행에 대한 보고 요구, 피후견인 재산 목록에 대한 작성 및 보고 요구, 피후견인 재산 상황 조사 권한 등을 갖는다.

이 같은 후견 감독의 권한을 바탕으로 수행하는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후견인이 매월 제출하는 정기보고서에 대한 검토이다. 피후견인의 상태 및 재산 등에 있어서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 피후견인을 위하

여 법률 행위 또는 신상 결정을 대리했는지 여부 및 항목, 피후견인 방문 여부(횟수), 피후견인의 안전망 조력자와 긴급 연락망 등을 기재한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후견 감독관은 후견 사무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판단하게 된다. 후견인 정기보고서에 대한 점검과 사례관리를 위한 회의(월 1회) 역시 진행하게 된다.

이외의 후견활동에 대한 감독을 함께 수반하는데, 피후견인의 안전망 조력자 연락처(후견인 정기보고서 기재 항목)에 대한 확인 및 관리 업무와 매년 법원에 제출하는 후견감독사무보고서를 작성한다. 이외에도 특정후견 종료 시점 이전에 후견 지속 여부 등에 대한 관리 역시 후견감독관의 업무이다.

나아가 후견인이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후견 지원회의 또는 공동 의사결정 회의 진행을 통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 역시 후견감독인의 몫이다. 이외에도 후견인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후견인 변경 신청을 하거나, 후견인 권한 범위를 변경하는 등의 업무 역시 후견감독인이 수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후견 지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거쳐 후견이 종료(피후견인의 사망 또는 후견 기간 도래)될 경우, 제출된 후견종료보고서(후견인 작성)와 후견감독인 의견서(후견감독인 작성)를 법원에 제출하고 관할(가정) 법원에 후견 종료 등기를 신청하는 것으로 공식적인 절차가 마무리된다.

## 7) 후견의 종료

치매공공후견사업은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진행되며, 특정후견은 피후견인의 사망 또는 후견 기간 도래 시 종료된다. 다만 종료 6개월 전에 특정후견 지속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후견감독인은 후견인 및 피후견인에 대한 면담과 후견지원회의를 통해 후견 지속 여부를 결

정한다. 특정후견이 달성해야 할 목표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피후견인의 안전망이 제대로 형성되었는가이다. 만약 지지체계가 잘 연결되었다고 판단되면<sup>11)</sup> 후견이 종료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또는 피후견인에게 새로운 후견 수요가 발생할 경우 등에는 후견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관련 논의 결과를 토대로 후견감독인이 후견 지속 여부 조사서를 작성한다. 특정후견을 지속하기로 한 경우에 후견감독인은 중앙치매센터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새로운 후견 유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한정 또는 성년 후견으로의 후견심판청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후견심판청구는 후견 공백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료 3개월 전에 진행하도록 권하고 있다.

## 나. 현황 분석<sup>12)</sup>

제도 도입 이후 치매공공후견사업의 주요 이용 현황을 후견심판청구 실적, 후견 이용자의 주요 특성, 후견인 양성 실적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018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치매공공후견 심판청구 건수(누적)는 562건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는 해마다 대체로 100건 내외의 후견심판이 접수되고 있다(중앙치매센터, 2024b). 2023년의 경우, 이전 연도와 비교하여 후견심판청구 접수 건수가 146건으로 높는데 이는 특정 후견 종료 후에 재청구하는 건수가 일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전체 접수된 사건 중에서 심판청구 중 피후견인이 후견 의사를 철회하거나 사망하

11) 피후견인의 안전망 조력자에 대한 연락처를 매월 후견인 활동보고서에 기재하며, 후견감독인이 이에 대해 관리함.

12) 아래 현황은 중앙치매센터(2024b). 중앙치매센터 치매공공후견사업 현황 내부자료. pp. 1-3에 근거하여 작성함(2024년 4월 30일 기준).

여 취하된 건은 2024년 기준 28건, 현재 심리 중인 사건은 21건, 실제 인용된 건은 513건으로(중앙치매센터, 2024b) 취하와 관련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대다수 후견이 개시(심판청구 인용)되고 있다.

〈표 2-12〉 후견심판청구 건수(누적)

(단위: 건)

| 연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4. | 계   |
|------------------|------|------|------|------|------|------|---------|-----|
| 누적 후견심판<br>청구 건수 | 11   | 90   | 99   | 89   | 93   | 146  | 34      | 562 |

주: 2024. 4. 30. 기준

출처: “중앙치매센터 치매공공후견사업 현황 내부자료,” 중앙치매센터, 2024b, p. 1.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및 경기도가 각각 131건으로 전체 청구 건수의 23%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부산(79건), 충남(27건), 충북 및 경남(26건) 등의 순으로 지역별 이용 편차가 두드러진다(중앙치매센터, 2024b). 대체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공공후견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며, 농촌 지역이 다수 포진된 도(道) 지역에서는 반대의 상황이다.

〈표 2-13〉 지역별 후견심판청구 건수(누적)

(단위: 건)

| 지역 | 후견심판청구 건수 | 지역 | 후견심판청구 건수 |
|----|-----------|----|-----------|
| 서울 | 131       | 강원 | 25        |
| 부산 | 79        | 충북 | 26        |
| 대구 | 7         | 충남 | 27        |
| 인천 | 19        | 전북 | 8         |
| 광주 | 8         | 전남 | 5         |
| 대전 | 24        | 경북 | 23        |
| 울산 | 10        | 경남 | 26        |
| 세종 | 11        | 제주 | 2         |
| 경기 | 131       | 전체 | 562       |

주: 2024. 4. 30. 기준

출처: “중앙치매센터 치매공공후견사업 현황 내부자료,” 중앙치매센터, 2024b, p. 2.



전체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기준으로 살펴보면(중앙치매센터, 2024b), 1건 이상 후견심판청구를 진행한 곳이 164개소로 전체의 64.1%를 차지하며 2건 이내 60개소, 3~5건 74개소, 6~9건 23개소, 10건 이상 7개소 순이다. 3건 이상 공공후견 사건을 지원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나, 치매안심센터별로 수행의 편차가 크다. 2023년 2월 기준으로 이를 분석한 제철웅 외(2023)의 연구를 통해 보면, 대체로 군단위에 위치한 치매안심센터에서 현재까지 후견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이 치매안심센터가 수행하는 세부 사업 중 하나라는 점에서, 각 센터별로 후견사업에 대한 인식 및 중요도, 후견인 양성 및 피후견인 발굴 편차 등이 연유한 결과로 해석된다.

〈표 2-14〉 후견심판청구 건수별 치매안심센터 분포(누적)

(단위: 개소)

| 구분       | 0건 | 1~2건 | 3~5건 | 6~9건 | 10건 이상 |
|----------|----|------|------|------|--------|
| 치매안심센터 수 | 92 | 60   | 74   | 23   | 7      |

주: 2024. 4. 30. 기준

출처: “중앙치매센터 치매공공후견사업 현황 내부자료,” 중앙치매센터, 2024b, p. 1.

다음으로 치매공공후견인 양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부터 2024년 4월까지 총 1,346명이 수료하였다(중앙치매센터, 2024b). 공공후견 접수 건수와 마찬가지로 양성 인원 역시 해마다 그 규모가 증가하는 양상이다. 치매공공후견인 후보자 관리는 17개 시도의 광역치매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1년 이상 활동을 대기하고 있는 후견인 후보자에게는 보수 교육이 이루어진다. 현재 수료 후 대기 인원은 709명으로 수료 인원의 약 1/2 정도가 활동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곧 피후견인과의 후견 매칭률이 여전히 높지 않은 상황임을 내포한다.

〈표 2-15〉 치매공공후견인 양성 및 실제 활동(대기) 인원 수(누적 기준)

(단위: 명)

| 연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4.      |
|------------------|------------|-------------|--------------|--------------|--------------|--------------|--------------|
| 양성 인원            | 132        | 427         | 806          | 1,010        | 1,131        | 1,301        | 1,346        |
| 활동 인원<br>(대기 인원) | 1<br>(131) | 55<br>(372) | 129<br>(558) | 180<br>(679) | 211<br>(661) | 224<br>(728) | 240<br>(709) |

주: 2024. 4. 30. 기준

출처: “중앙치매센터 치매공공후견사업 현황 내부자료,” 중앙치매센터, 2024b, p. 1.

현재 치매공공후견인에 대한 양성 교육은 총 21시간으로 국가치매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제철웅 외(2023)에 따르면, 치매 공공후견인 양성 교육의 주요 교육 내용은 노인 및 치매에 대한 이해, 치매 관련 서비스에 대한 안내, 치매 의사소통 원칙 및 후견과 관련한 법률 상식, 후견인의 직무와 역할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 내용의 대부분은 치매에 대한 이해나 법률 사무(후견제도 이해, 심판청구 절차)에 집중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후견인의 직무와 역할 등의 순이다. 상대적으로 치매와 관련한 의사소통 원칙이나 실제 활동 사례에 할애하는 교육의 시간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제철웅 외, 2023).

〈표 2-16〉 치매공공후견인 양성 교육 주제 및 교육 시간

(단위: 시간)

| 교육 내용              |                  | 교육 시간 |
|--------------------|------------------|-------|
| 노인에 대한 이해          |                  | 1.0   |
| 노인 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 |                  | 1.0   |
| 치매에 대한 이해          | 치매 정의 및 진단 과정 이해 | 0.7   |
|                    | 치매 원인 및 단계별 증상   | 1.6   |
|                    | 치매 감별 질환         | 0.9   |
|                    | 치매 정신행동 이해 및 대처  | 0.6   |
| 치매 관련 서비스 안내       |                  | 1.3   |
| 치매 의사소통 원칙         |                  | 0.8   |
| 치매환자 인권 및 후견인 윤리   |                  | 1.2   |
| 후견제도 이해를 위한 법률 기초  |                  | 1.5   |

| 교육 내용               | 교육 시간 |
|---------------------|-------|
| 치매공공후견 심판 청구 절차의 이해 | 2.8   |
| 후견인 직무와 역할          | 2.5   |
| 후견감독 절차 이해          | 1.1   |
| 후견인 실무 실습           | 1.4   |
| 치매공공후견인 활동 사례       | 1.7   |
| 학업성취도 평가            | 1.0   |
| 계                   | 21.3  |

출처: “치매노인의 의사결정 지원에 중점을 둔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 목적 공공후견사업 수행의 현황 분석과 활성화 방안 연구,” 제철웅 외, 2023. 국립중앙의료원·중앙치매센터·후견신탁연구센터. pp. 80-81을 바탕으로 연구진이 재구성함.

치매공공후견사업 대상자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후견 대상자의 절대 다수(90.3%)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변화 과정에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 범위를 넓혀 두었으나, 실제 이용은 제도 도입 초기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 95.6%가 독거 가구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 거주가 69.8%, 요양병원 14.4%, 요양시설 13.2% 등의 순으로 나타나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독거가구가 주요 대상층임을 알 수 있다.

〈표 2-17〉 후견 대상자 주요 특성

(단위: 건, %)

| 구분    |           | 건(%)       |
|-------|-----------|------------|
| 소득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 487 (86.7) |
|       | 차상위       | 20 ( 3.6)  |
|       | 일반        | 55 ( 9.8)  |
| 독거 여부 | 독거        | 537 (95.6) |
|       | 동거 가구원 있음 | 25 ( 4.4)  |
| 거주지   | 지역사회      | 392 (69.8) |
|       | 요양병원      | 81 (14.4)  |
|       | 요양시설      | 74 (13.2)  |
|       | 기타        | 15 ( 2.7)  |

주: 2024. 4. 30. 기준

출처: “중앙치매센터 치매공공후견사업 현황 내부자료,” 중앙치매센터, 2024b, p. 2.

나아가 후견인 후보자와 피후견인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전체 후견의 89.5%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기타 5.2%, 지인 2.7%, 돌봄 서비스 제공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2.1%, 친족 0.5% 등의 순이다(중앙치매센터, 2024b). 이 같은 결과는 곧 공공후견이 대체로 시민 후견으로 진행됨을 의미한다. 시민 후견의 장점은 피후견인과의 이해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보다 객관적으로 후견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겠으나, 전문적인 영역에서의 후견 사무 진행의 어려움 역시 존재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이지은, 2022).

〈표 2-18〉 후견인 후보자 및 피후견인 간 관계

(단위: 건, %)

| 제3자           | 친족         | 지인          | 돌봄 서비스 제공자<br>(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등) | 기타          |
|---------------|------------|-------------|--------------------------------|-------------|
| 503<br>(89.5) | 3<br>(0.5) | 15<br>(2.7) | 12<br>(2.1)                    | 29<br>(5.2) |

주: 2024. 4. 30. 기준

출처: “중앙치매센터 치매공공후견사업 현황 내부자료,” 중앙치매센터, 2024b, p. 2.

마지막으로 현재 활동 중인 공공후견인은 235명, 피후견인은 268명이며(중앙치매센터, 2024b), 후견인 1명이 피후견인을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공후견인 규모가 조금 더 작은 것으로 간주된다. 나아가 피후견인의 사망 또는 기간 만료에 따른 후견 종료는 233건으로 인용된 사건 수(513건)의 약 1/2 수준이며, 종료 후 후견을 재청구한 건수는 2024년 4월 기준 95건으로 나타난다(중앙치매센터, 2024b). 피후견인의 특성(치매 및 고령, 독거)을 고려해볼 때, 특정후견 기간(3년) 내에 피후견인을 조력해 줄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가 쉽지 않음을 시사한다.



## 제3장

### 국내외 유관 사례 분석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국내 사례 분석

제3절 해외 사례 분석

제4절 소결



## 제3장 국내외 유관 사례 분석

### 제1절 분석 개요

본 장에서는 치매공공후견사업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외 유관 사례를 분석하였다. 개별 사업 및 국가별 제도 운영 현황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인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지원, 후견인의 역할 및 권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쟁점도 분석에 포함하였다.

우선 국내 사례로는 치매공공후견사업과 함께 운영되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사업 및 정신질환자 공공후견사업의 현황을 파악하였고, 이를 치매공공후견사업과 비교하여 주요 쟁점을 도출하였다.

해외 사례는 독일과 일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국가별 법적 구조, 전달체계, 운영 방식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는 후견제도를 일찍부터 도입하여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독일은 1990년에 성년후견법을 제정한 이후 성년후견청을 별도로 설치하고 후견 관련 제도를 발전시켜 왔으며, 후견제도를 지원하는 다양한 조직이 잘 갖추어져 있다. 일본은 2000년에 후견제도를 도입하여 우리나라보다 약 13년 앞서 시행하였으며, 다양한 후견 지원 조직을 통해 성공적인 후견 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들 국가는 우리나라 후견제도 운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어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같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치매공공후견사업 개선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국내외 사례 분석은 선행연구 분석 및 해당 분야 전문가와의 자문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요약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3-1〉 국내외 유관 사례 분석 개요

| 구분 | 분석 대상                              | 분석 내용                                                                         | 관련 전문가                                                                                         |
|----|------------------------------------|-------------------------------------------------------------------------------|------------------------------------------------------------------------------------------------|
| 국내 | 발달장애인<br>공공후견사업<br>정신질환자<br>공공후견사업 | - 사업 운영 현황<br>- 주요 쟁점<br>· 자기결정권 보장 측면<br>· 후견인 역할 및 권한 측면<br>· 유사 제도 운영 측면 등 | - 명노연 변호사/권익옹호팀장<br>(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br>- 홍민우 팀장(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br>- 홍정기 사무국장<br>(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
| 해외 | 후견제도 운영<br>국가 <sup>1)</sup>        | - 주요 쟁점<br>· 자기결정권 보장 측면<br>· 공공후견 운영 측면<br>· 후견제도 전달체계 측면                    | - 제철웅 교수(한양대학교)<br>- 박인환 교수(인하대학교)<br>- 김원경 교수(메이저가쿠인대학교)                                      |

주: 지속적 대리권 등 사전적으로 대리권 수여를 통해 의사결정 지원을 하는 국가의 사례는 제외  
출처: 연구진 작성

## 제2절 국내 사례 분석

본 절에서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과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사업의 개요는 기본적으로 2024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와 2024년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 사업안내의 내용을 토대로 정리하였다. 아울러 기존 문헌과 전문가 포럼에서 제기된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치매공공후견사업<sup>13)</sup>과 비교하여 쟁점을 분석하였다.

### 1.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 가. 사업 목적 및 추진 경과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13) 본 보고서 제2장에 기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함.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이들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보건복지부, 2024c). 동 사업은 기본적으로 2013년 7월 시행된 개정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성년후견 중에서도 특정후견 유형을 원칙으로 한다(보건복지부, 2024c). 성년후견제 도입에 관한 민법 개정안이 공포('11. 3.)된 후 정부는 2012년 7월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정책과제로 취약계층 발달장애인을 위해 성년후견 심판 청구 절차 비용과 후견인 활동 비용을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 2012). 이후 2013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이 시범 운영되었고(보건복지부, 2024c), 그 사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5년 11월부터 시행되었다. 동법 제9조에는 성년인 발달장애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울 경우 지자체장이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 개시, 한정후견 개시,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후견 사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표 3-2〉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추진 근거

| 추진 근거                                         | 내용                           |                                                                                                                                                            |
|-----------------------------------------------|------------------------------|------------------------------------------------------------------------------------------------------------------------------------------------------------|
| 「민법」 제14조의 2<br>(‘11. 3. 일부개정,<br>‘13. 7. 시행) | 특정후견 청구<br>및 심판 주체           |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
| 발달장애인<br>지원계획<br>(‘12. 7. 발표)                 | 후견심판청구<br>비용 및 후견인<br>활동비 지원 | 취약계층 발달장애인에게 성년후견 심판청구 절차 비용(인지대·정신감정 비용 등) 지원, 시민 후견인 활동비용 지원                                                                                             |

72 성년후견제도 운영 개선 방안 모색: 치매 및 인지저하 노인의 의사결정 지원을 중심으로

| 추진 근거                                                     | 내용                                                                                                                                                                                                                                                                                                                                                                                                                                                                                                                                                                                                                                                              |
|-----------------------------------------------------------|-----------------------------------------------------------------------------------------------------------------------------------------------------------------------------------------------------------------------------------------------------------------------------------------------------------------------------------------------------------------------------------------------------------------------------------------------------------------------------------------------------------------------------------------------------------------------------------------------------------------------------------------------------------------|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br>(‘14. 5. 제정, ‘15. 11. 시행) | <p>지자체장의 성년후견 심판청구,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p> <p>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인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한정후견 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li> <li>2.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li> <li>3.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li> </ol> <p>(중략)</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3조 제1항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할 수 있다.</p> <p>(중략)</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의 요건, 후견인 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 절차, 후견인 후견 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

주: 각 자료를 토대로 연구진이 재구성함.

출처: 1) “민법,” 2011, 법률 제10429호.

2) “발달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한다 -발달장애인 장애유형별로 특화된 종합지원계획 수립-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 2012, p. 10. [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27&list\\_no=274191&seq=1](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27&list_no=274191&seq=1)

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4, 법률 제12618호.

또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15. 11. 시행) 제3조를 통해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한 후견법인 지정 및 후견법인을 통한 후견인 후보자 양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017년 4월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등을 위한 후견법인 지정에 관한 고시」가 제정되었으며,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와 사단법인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후견법인으로 지정되었다(고시 적용 기간: ‘16. 9. 1.~’17. 12. 31.). 고시 제정 이후 2018년 3월, 2020년 4월, 2022년 12월 고시 일부개정에 따라 동일한 법인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고시에 따른 지정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다.

## 나. 지원 내용 및 대상

2024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에 따른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의 지원 내용과 대상을 살펴보면, 동 사업에서는 후견심판청구 절차 및 비용에 대한 지원과 공공후견인 활동 및 활동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후견심판청구 비용에 대해서는 1인당 연간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하고 있다. 다음으로,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은 친족이 아닌 제3자가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자연인 후견<sup>14)</sup>의 경우에는 피후견인 1인당 월 20만 원을 활동비로 지급하며, 활동비 지급 상한액은 월 50만 원이다. 즉, 피후견인 1인 담당 시 월 20만 원, 2인 담당 시 월 40만 원이 지급되고, 3인부터는 피후견인 수와 관계 없이 월 50만 원이 지급된다. 후견법인이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활동비는 피후견인 1인당 월 20만 원으로 동일하나, 상한의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자연인 후견과 차이가 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의 대상은 19세 이상인 성인 발달장애인이다. 「장애인복지법」상 지적 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이 대상이 되며, 지적·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발달장애인 본인, 발달장애인의 가족,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연중 공공후견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14) 권리와 의무를 지닌 법적 주체로, 일반적으로 법인 후견과 비교하는 측면에서 사용됨.

다. 사업 규모 및 예산

2024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의 목표 사업량은 후견심판청구 지원 600건,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1,563명이다(아래 표 참조).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목표 후견심판청구 건수는 2018년(400건)을 제외하고 600건으로 유지되었다.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수혜자 목표 수는 2015년 600명에서 2024년 1,563명으로 9년간 2.6배가량 높아졌다.

사업 예산은 2015년 약 12억 원에서 2024년 약 35억 원으로 9년간 2.9배 가량 증가하였다. 2024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의 국고보조율은 서울이 50%, 지방이 80%이며, 예산은 중앙(보건복지부) → 시·도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 광역 단위 공공후견법인의 흐름으로 교부된다.

〈표 3-3〉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목표 사업량 및 사업 예산 추이

| 구분                   |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목표 사업량 <sup>1)</sup> | 후견심판청구      | 600건    | 600건    | 600건    | 400건   | 600건   |
|                      |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 600명    | 900명    | 600명    | 400명   | 600명   |
| 사업 예산 <sup>2)</sup>  |             | 12억 원   | 15억 원   | 15억 원   | 12억 원  | 15억 원  |
| 구분                   |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목표 사업량 <sup>1)</sup> | 후견심판청구      | 600건    | 600건    | 600건    | 600건   | 600건   |
|                      |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 600명    | 600명    | 1,263명  | 1,563명 | 1,563명 |
| 사업 예산 <sup>2)</sup>  |             | 15.4억 원 | 16.6억 원 | 23.6억 원 | 35억 원  | 35억 원  |

출처: 1)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각 연도를 토대로 연구진이 재구성함.  
2)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보건복지부, 각 연도를 토대로 연구진이 재구성함.

라. 사업추진체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의 추진체계와 운영체계도는 각각 다음 표와 그림에 제시된 바와 같다(보건복지부, 2024c). 보건복지부는 사업의 총괄 주체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침을 시달한다. 시·도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매칭 비율을 고려하여 지방비를 확보하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시·군·구는 사업의 시행 주체로서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공공후견지원 신청을 접수하며, 후견심판을 청구한다. 또한 후견심판청구 결과 시·군·구가 후견감독인으로 선임된 경우, 시·군·구는 후견인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전반적인 사업 지원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중앙센터에서는 후견심판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점검 및 작성하고 법률 자문을 수행한다. 지역센터에서는 시·도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심판절차 비용을 지출하고 공공후견법인에 후견인 활동비를 교부하며, 공공후견지원사업 모니터링 실적을 관리한다. 또한 중앙 및 지역센터는 대상자 발굴을 지원하고 공공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는 역할을 한다.

공공후견법인은 공공후견인 후보자를 모집·양성하고, 후견인 후보자와 후견인에 대한 보수 교육과 명부 관리를 수행한다. 이외에 제3자 후견에서의 피후견인과 후견인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부터 교부받은 후견인 활동비를 지출한다. 필요시 공공후견법인은 사회조사보고서 및 후견심판청구서를 작성하며, 법인이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직접 후견서비스를 제공한다.

〈표 3-4〉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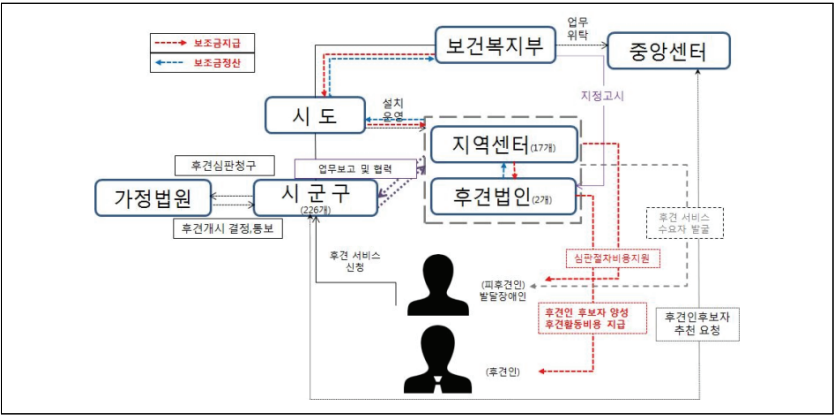
| 수행 주체 | 기능                                                                                                                                                                                                                                                                          |
|-------|-----------------------------------------------------------------------------------------------------------------------------------------------------------------------------------------------------------------------------------------------------------------------------|
| 보건복지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총괄</li> <li>-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지침 시달</li> <li>- 예산 지원 및 사업 평가, 관리·감독</li> </ul>                                                                                                                                                    |
| 시·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 단위 사업 조정</li> <li>- 매칭 비율에 맞도록 지방비 확보</li> <li>- 시·군·구 공무원에 대한 교육 실시</li> <li>-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후견법인 관리·감독(지도·점검 실시)</li> <li>- 심판절차비 및 후견인 활동비 보조</li> <li>- 심판절차비 및 후견인 활동 보조금 교부</li> </ul> <p>(시·도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 공공후견법인)</p> |

76 성년후견제도 운영 개선 방안 모색: 치매 및 인지저하 노인의 의사결정 지원을 중심으로

| 수행 주체                 | 기능                                                                                                                                                                                                                                                                                                                                                                                        |
|-----------------------|-------------------------------------------------------------------------------------------------------------------------------------------------------------------------------------------------------------------------------------------------------------------------------------------------------------------------------------------------------------------------------------------|
| 시·군·구<br>(사업 시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사업 시행<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신청 접수, 지원 대상자 발굴, 후견심판청구</li><li>- 후견법인 관리·감독(지도·점검 실시)</li></ul></li></ul>                                                                                                                                                                                                                          |
| 발달장애인<br>지원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사업 지원 및 자문<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대상자 발굴 지원</li><li>-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후보자 추천</li><li>- 심판청구서 및 제출 서류 점검 지원 및 자문</li><li>- 심판청구 지원 또는 심판 과정에서의 대응 조언</li><li>- 사회조사보고서 및 후견심판청구서 작성</li><li>- 심판 절차 비용 지출 관리</li><li>- 공공후견법인 후견인 활동비 교부, 지급 관리</li><li>- 심판청구, 후견활동 지원 사항 모니터링 실적 취합, 보고 등</li></ul></li></ul>              |
| 공공<br>후견법인<br>(지정 기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공공후견인 후보자 교육 및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공공후견인 후보자 모집 및 교육 등 관리</li><li>- 공공후견인 활동 개시 오리엔테이션, 신규·보수 교육, 자조모임 지원 등 후견인(후보자 포함) 관리 및 모니터링</li><li>- 사업실적보고 및 후견인활동비 지출 관리</li></ul></li><li>• (후견인으로 선임될 경우) 직접 후견서비스 제공</li><li>• 사회조사보고서 및 후견심판청구서 작성</li><li>• 활동 후견인 및 피후견인 지원</li><li>- 제3자 후견인 및 피후견인 모니터링</li></ul> |

출처: “2024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4c, p. 15. 2024. 4. 16. 검색, [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19&list\\_no=1480768&seq=2](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19&list_no=1480768&seq=2)

[그림 3-1]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운영체계도



출처: “2024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4c, p. 16. 2024. 4. 16. 검색, [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19&list\\_no=1480768&seq=2](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19&list_no=1480768&seq=2)

## 마. 대상자 선정 및 후견심판청구 지원 절차<sup>15)</sup>

대상자 선정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신청자(발달장애인 본인, 가족, 유관 기관 종사자 등)는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후견심판청구 동의서 등의 서류를 시·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신청인 및 사건 본인의 기본 정보와 희망하는 후견인 유형, 의사결정 지원 필요 항목이 포함된다(아래 그림 참조). 이 중 의사결정 지원 필요 항목은 피후견인의 특성에 따라 필요로 하는 사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며, 이는 추후 법원에서 후견인의 대리권 범위를 설정하는 데 기초 자료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3-2]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 신청서 서식(일부 제시)

|                                                                                                           |                                                                                                                       |
|-----------------------------------------------------------------------------------------------------------|-----------------------------------------------------------------------------------------------------------------------|
| <b>3. 후견인 희망유형</b>                                                                                        |                                                                                                                       |
| <b>희망 유형</b>                                                                                              | <input type="checkbox"/> 친족(가족)후견(사건본인과의 관계 :                      ) <input type="checkbox"/> 제3자후견                   |
| <b>후보자 추천필요</b>                                                                                           | <input type="checkbox"/> 추천필요<br><input type="checkbox"/> 추천 필요하지 않음(희망하는 후견인이 있음 / 사건본인과의 관계:                      ) |
| <b>4. 의사결정지원 필요내용(주요 후견수요 상황을 기재)</b>                                                                     |                                                                                                                       |
| <input type="checkbox"/> 은행업무지원(예금계좌개설 및 해지, 계좌이체 및 출금, 체크카드 발급, 예금관련정보조회 등)                              |                                                                                                                       |
| <input type="checkbox"/> 일상생활비관리지원(계획적인 금전관리 등)                                                           |                                                                                                                       |
| <input type="checkbox"/> 의료서비스이용지원(정신병원 입·퇴원 포함)                                                          |                                                                                                                       |
| <input type="checkbox"/> 공법상행위사무지원(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개인신상에 관한 제반 서류발급)                                   |                                                                                                                       |
| <input type="checkbox"/> 인감증명서발급사무지원(사유 :                      )                                          |                                                                                                                       |
| <input type="checkbox"/> 주거마련과 관련된 정보탐색 및 계약체결 지원(공공임대아파트신청, 주거이동에 따른 계약, 아파트 매수 등)                       |                                                                                                                       |
| <input type="checkbox"/> 상속 재산처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사무지원(상속재산조회, 상속재산분할,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포기 등)                      |                                                                                                                       |
|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급여 및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이용지원(공적·여가 서비스, 복지시설연계 등)                                  |                                                                                                                       |
| <input type="checkbox"/> 권리피해 상황 시 형사 절차 및 민사적 구제 절차 진행 사무(고소, 증거수집, 형사기록열람신청, 형사합의, 변호사 선임 계약 체결 및 해지 등) |                                                                                                                       |
|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출처: “2024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4c, pp. 95-96. 2024. 4. 16. 검색, [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19&list\\_no=1480768&seq=2](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19&list_no=1480768&seq=2)

15) 2024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에서는 ‘민간에서 시·군·구에 공공후견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와 ‘가정법원 등에서 공공후견인 추천을 요청한 경우’의 절차를 구분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본 절에서는 전자의 절차만 제시함.

시·군·구는 접수된 신청 건 중에서 사건 본인의 경제적 상황과 후견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를 정하고(아래 표 참조), 대상자 선정 결과를 신청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에 통지한다. 이후 시·군·구는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대상자에게 적합한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을 요청한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공공후견법인에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법인으로부터 후보자 목록을 전달받아 시·군·구에 제출한다. 시·군·구는 사건 본인의 가족 또는 추천받은 후보자 목록 중 1인을 후견인 후보자로 선정한다. 사건 본인의 가족이 아닌 제3자를 후견인 후보자로 선정함에 있어, 사건 본인과 이해관계가 충돌될 염려가 없는 사람을 선정해야 하며 거주시설 종사자나 사건 본인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중인 자(활동지원사 등)를 후보자로 선정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지침상 안내하고 있다.

〈표 3-5〉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우선 고려 항목

| 구분 | 내용                                                                                                                                                                                                                                                                                         |
|----|--------------------------------------------------------------------------------------------------------------------------------------------------------------------------------------------------------------------------------------------------------------------------------------------|
| 1  |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가정(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중 급여를 본인·가족이 아닌 제3자가 받는 경우)                                                                                                                                                                                                                                    |
| 2  | 가족(사건 본인 포함) 중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경우(특히, 가족 전원이 장애인인 경우)                                                                                                                                                                                                                                          |
| 3  | 범죄 피해 우려, 혹은 피해 보상을 위해 긴급히 후견이 필요한 경우                                                                                                                                                                                                                                                      |
| 4  | 재가 및 시설 거주 발달장애인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사실상 보호자가 없는 경우(가족의 방임, 방치 등)                                                                                                                                                                                                                                   |
| 5  | 아래 5개 법률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경우<br>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할 경우<br>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경우<br>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경우<br>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br>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 등을 지원받는 경우<br>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을 받은 경우 |
| 6  | 발달장애인법 제19조 개인별지원계획수립에 의해 해당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출처: “2024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4c, p. 21. 2024. 4. 16. 검색, [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19&list\\_no=1480768&seq=2](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19&list_no=1480768&seq=2)



후견인 후보자를 선정한 후에 시·군·구,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은 심판청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작성하여 후견심판청구를 준비한다. 후견심판청구 동의서, 후견인 업무 수행 의향서 등 피후견인과 후견인 후보자와 관련된 구비서류 외에 추가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 목록은 아래 표에 제시된 바와 같다. 후견심판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피후견인과 후견인 후보자 간 면담이 이루어져야 하며, 후견심판청구서의 제출은 가급적 대상자 선정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하도록 지침을 통해 권고하고 있다.

〈표 3-6〉 후견심판청구 관련 주요 필요 서류 및 작성 주체(발달장애인 공공후견)

| 필요 서류                                      | 작성 주체                                                                                                                                                          |
|--------------------------------------------|----------------------------------------------------------------------------------------------------------------------------------------------------------------|
| 사회조사보고서                                    | • 시·군·구 담당 공무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 사건 본인과 업무 연관성이 있거나 정보 제공이 가능한 자 (공무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이 아닌 사람이 사회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에 대한 작성 수수료 지급 가능)                            |
| 후견계획서                                      | • 사회조사보고서 작성자 또는 공공후견법인 작성                                                                                                                                     |
| 후견감독계획서                                    | • 시·군·구 담당 공무원과 후견인 후보자가 서명                                                                                                                                    |
| 심판 절차 대리허가 신청 및 위임장<br>(지자체 청구 시)          | • 시·군·구 담당 공무원 작성                                                                                                                                              |
| 소송위임장<br>(발달장애인지원센터 변호사 또는 사건 수임 변호사 청구 시) | • 시·군·구 담당 공무원이 작성하여 지역 내 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전송                                                                                                                        |
| 후견심판 절차 보조인 출석허가 신청서                       | • 사회보고서를 작성한 사회복지사, 평소 후견 대상인을 잘 아는 사람 등 의사소통 지원이 가능한 사람이 작성                                                                                                   |
| 후견심판청구서                                    | • (지자체 청구 시) 공무원이 후견심판청구서를 작성하되, 작성 이 어려운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공공후견법인의 지원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음.<br>•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변호사 또는 사건 수임 변호사 청구 시)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후견심판 청구서 작성 |

출처: “2024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4c, pp. 28-29. 2024. 4. 16. 검색, [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19&list\\_no=1480768&seq=2](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19&list_no=1480768&seq=2)

후견심판청구는 시·군·구 담당 공무원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변호사 또는 사건을 수임받은 변호사가 지자체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전자소송으로 후견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진행한다. 청구 이후 가정법원에서는 사건 본인의 후견 필요성, 후견 유형의 적정성, 후견인 후보자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해 심리를 개시할 수 있으며, 통상 청구 시점으로부터 6~8주 내에 후견심판청구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적절하다고 여겨지면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을 선임하는 결정을 내린다. 가정법원에서 후견심판결정을 통보한 후 심판 내용에 불복하지 않는다면 2주 후 후견심판이 확정되어 후견이 개시된다.

## 바. 공공후견법인의 역할 및 업무

### 1) 후견인 양성 및 관리

「민법」에서는 후견인에 대한 별도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제 937조에 결격사유만 규정하고 있다. 공공후견법인에서는 후견인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후보자로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기 위해 직업 및 경험,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 사업 참여 의지 등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공공후견인 교육의 참여자는 공공후견법인에서 자체적으로 홍보하여 모집하거나, 지자체가 지원 대상을 선정하면서 대상자와 기존에 긴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된 사람이 있어 후견인 후보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인에 교육을 의뢰하여 정해진다. 이때 공공후견법인은 자체 발굴한 교육 대상자보다 지자체장이 의뢰한 교육 대상자에 대해 우선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공공후견법인은 매년 후견인 양성 교육과 보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양성 교육은 최소 30시간 이상으로 구성되며, 6가지 내용(후견제도의 원칙,

후견인의 권한과 책임,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 후견 사건과 가정법원, 사회복지서비스의 이해, 기타 실무지식)을 필수로 포함해야 한다. 공공후견법인은 수강생의 출결 사항을 관리하며, 전체 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에 한하여 수료증을 발급한다. 보수 교육은 지침상 최소 이수 시간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법원에서 후견 사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자유롭게 구성이 가능하다. 공공후견법인으로 지정 운영 중인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 커리큘럼은 아래 표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3-7〉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후견인 양성 및 보수 교육 커리큘럼 예시

| 구분    | 영역                       | 강의 내용                                                           | 시간 |
|-------|--------------------------|-----------------------------------------------------------------|----|
| 양성 교육 | 성년후견제도 이해<br>(성년후견제도 원칙) | - 성년후견제도 및 법률의 이해<br>- UN 장애인권리협약 및 요코하마 선언 등 의사결정 지원제도로서의 후견제도 | 3  |
|       | 발달장애인의 이해 및 인권           | - 발달장애인의 장애 특성 및 현황, 실태                                         | 3  |
|       | 인권과 후견인의 윤리              | -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방법                                                | 3  |
|       |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지원            | - 발달장애인의 인권 이해 및 침해 예방                                          | 3  |
|       | 사회보장제도 이해                | - 서비스신청 및 이의신청 방법 절차<br>- 장애인복지 서비스 현황, 관련 정보 확보 방법             | 3  |
|       | 후견인의 직무와 역할의 이해          | - 성년후견인의 직무 및 역할의 이해<br>- 계약체결 방법                               | 3  |
|       | 재정관리의 이해                 | - 재산관리의 이해 - 부동산의 매매, 처분 등<br>- 재정관리의 이해 - 생활금융 및 세무의 이해        | 3  |
|       | 후견심판절차의 이해               | - 후견심판의 절차<br>- 후견심판 결정 이후 활동<br>- 가정법원의 역할과 권한                 | 3  |
|       | 현장실습                     | - 발달장애인 생활현장 방문<br>- 발달장애인 이해와 체험                               | 4  |
|       | 평가                       | - 교육과정 전반 평가                                                    | 2  |
| 계     |                          |                                                                 | 30 |
| 보수 교육 | 피후견인의 인권보호               | - 피후견인 인권에 대한 이해(장애인 인권)                                        | 2  |
|       | 재정관리의 이해(심화)             | - 심화된 재정관리의 이해                                                  | 2  |
|       | 후견제도의 이해와 공공후견인으로 활동하기   | - 후견제도와 공공후견인 활동에 대한 이해                                         | 2  |
|       | 보건복지부 정책에 대한 이해          | -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 및 복지정책에 대한 이해                              | 2  |
| 계     |                          |                                                                 | 8  |

출처: “공공후견인 교육 안내,”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연도 미상, 2024. 5. 13. 검색, [http://m214.mirweb.co.kr/bbs/content.php?co\\_id=education](http://m214.mirweb.co.kr/bbs/content.php?co_id=education)

공공후견법인은 후견인 후보자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하는데, 교육 수료 후에 후견인으로 활동하려는 의사가 바뀌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년 해당 여부를 조사하여 후견인 후보자의 명부를 갱신한다.

## 2) 후견인 활동 지원 및 사업 모니터링

공공후견법인은 공공후견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과 감독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활동 지원에 있어서는 후견인에게 활동 매뉴얼을 제공하고, 정기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하는 방법 등을 안내하며, 매월 활동비를 지급한다. 또한 후견인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피후견인에게 위험이 발생하여 지원이 필요할 때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함께 후견인에게 조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공공후견법인은 후견인이 제출한 정기보고서를 수령하여 후견활동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특이사항이 있을 시 즉시 담당 시·군·구와 후견감독인에게 보고한다. 또한 제3자 후견에서의 피후견인과 후견인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사업 모니터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 후견감독 및 감독 지원’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 사. 공공후견인의 역할 및 사무

2024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에 명시된 공공후견인의 역할과 임무를 살펴보면, 첫째, 후견인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해진 사무 범위 내에서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특정후견의 경우에는 후견인에게 취소권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후견 개시 후 발생한 피후견인의 단독행위를 후견인이 법률적으로 취소할 수는 없다. 둘째, 후견인은

후견감독인의 요구에 따라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며, 복지급여 수급 여부와 이용 중인 서비스 현황을 조사한다. 셋째, 후견인은 후견이 진행되는 동안 피후견인의 안전망 조력자를 형성하고 긴급연락망을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후견인은 매월 말 본인의 후견활동에 관한 정기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공후견법인과 후견감독인에 제출한다.

공공후견인 활동 매뉴얼(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2023)에는 공공후견인의 사무 수행과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상세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특정후견에서 공공후견인은 피후견인과 관련한 형사사건 발생 시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사무,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민사적 구제에 관한 사무, 재산관리, 주거 결정 관련 지원 사무, 의료서비스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무, 피후견인의 소비, 발생 가능한 피해 예방 등 일상에서의 지원 사무, 그 외 피후견인에게 필요한 사무(입양, 이혼 등)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피후견인의 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표 3-8〉 참조).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안내하고 있는 공공후견인의 역할은 [그림 3-3]과 같다.

〈표 3-8〉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후견인 사무 및 대리권 범위(예시)

| 구분             | 내용                       |                                                                          |
|----------------|--------------------------|--------------------------------------------------------------------------|
| 특정<br>후견<br>사무 | 형사절차 진행 사무               | - 피후견인의 명의 도용<br>- 신체적·정신적 학대<br>- 피후견인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사무                    |
|                | 재산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사무 | - 사기 피해<br>- 타인에 의한 재산 갈취<br>- 민사소송<br>- 채무상속                            |
|                | 재산관리 사무                  | - 시설에 거주하는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br>-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                       |
|                | 주거 및 임시주거를 결정하는 사무       | - 피후견인의 거주지(거주형태) 결정 및 이사 지원<br>- 임대차 계약 연장 및 집수리 지원                     |
|                | 의료서비스 사무                 | - 의료적 행위(수술, 치료 등)에 대한 계약, 의약품 복용 안내 및 건강상태 변화 관찰, 건강관리, 의료기관 섭외 및 치료 연계 |

84 성년후견제도 운영 개선 방안 모색: 치매 및 인지저하 노인의 의사결정 지원을 중심으로

| 구분  | 내용                                                                                                                                                                                                                                          |                                                                                |
|-----|---------------------------------------------------------------------------------------------------------------------------------------------------------------------------------------------------------------------------------------------|--------------------------------------------------------------------------------|
|     |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관련 사무                                                                                                                                                                                                                           |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신청<br>- 직업교육 및 구직활동 지원                                            |
|     | 일상지원 사무                                                                                                                                                                                                                                     | - 소비활동 지원<br>-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방 및 피해 상황에 대한 대처                                   |
|     | 기타 사무                                                                                                                                                                                                                                       | - 파양 및 입양 절차 지원      - 위기 상황 지원<br>- 이혼 절차 지원                - 금융상품 및 보험 가입 지원 |
| 대리권 | 형사합의 및 민사손해배상<br>기타 민사적 예방조치 등의 사무 처리를 지원할 변호사 선임계약체결의 대리권<br>사건 본인 재산 피해 상황 입증을 위한 금융정보 조회 대리권<br>통장개설 및 통장관리<br>임시 주거의 이용계약 체결 및 해지 대리권<br>사회복지서비스 등의 이용계약 체결 대리권<br>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계약 체결 대리권<br>가사도우미 서비스 계약 체결 대리권<br>기타 공법상의 신청행위에 대한 대리권 |                                                                                |

출처: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활동 매뉴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2023, pp. 10-20. 2024. 4. 16. 검색, [http://m214.mirweb.co.kr/bbs/board.php?bo\\_table=c\\_material&wr\\_id=6](http://m214.mirweb.co.kr/bbs/board.php?bo_table=c_material&wr_id=6)

[그림 3-3] 후견인의 역할(당사자 안내자료)



출처: “후견인이 필요한가요?,”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2017, p. 3. 2024. 4. 16. 검색, <https://www.broso.or.kr/hp/bbs/ViewCmpPosNttDtl.do?cnterCd=01000001&bbsId=0&bbsTyCd=02&nttId=1414>

## 아. 후견감독 및 감독 지원

### 1) 후견감독

후견인의 후견 사무는 법원과 후견감독인이 직접 감독하는데, 후견감독인은 후견이 개시되어 종료될 때까지 감독인으로서의 권한과 임무를 지닌다. 제3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후견심판청구는 통상 지사체장이 해당 지사체를 후견감독인으로 선임해 줄 것을 함께 청구한다.

후견감독인의 주요 역할을 살펴보면, 첫째, 후견감독인은 후견이 개시된 후 2개월 이내에 후견인에게 피후견인의 재산 상황과 복지 수요를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그 결과를 가정법원에 제출한다.

둘째, 공공후견인의 활동을 감독하고 후견인과 피후견인을 지원한다. 감독 차원에서 후견인이 각각 매월, 매년 작성하는 정기보고서와 후견사무보고서를 검토하고, 후견인이 형성한 피후견인의 안전망 조력자에 대한 정보를 정기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한다. 후견인과 피후견인에 대한 지원의 차원에서는 후견인이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례회의나 공동 의사결정회의를 진행한다. 또한 피후견인의 신상 및 재산과 관련하여 위급 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고,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할 수 있다.

셋째, 후견감독인은 매년 가정법원에 후견감독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후견감독사무보고서에는 1) 신상보호에 대한 감독의견, 2) 재산관리에 대한 감독의견, 3) 종합의견(그 외 일반사무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유무, 향후 유의사항 등)을 작성하며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한다.

넷째, 후견감독인은 필요시 후견인 또는 후견인의 권한 범위에 대한 변경을 신청하거나 후견인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처분명령을 청구한다.

다섯째, 후견감독인은 특정후견에 있어 후견이 종료되기 전 후견의 지

속 필요성을 검토하여 지속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 지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후견이 종료된 후 후견감독인은 후견종료등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후견인이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였는지 확인 하며, 재산 상황에 대한 조사 및 결산 과정에 참여하고 현장에 대한 확인 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표 3-9〉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사업에서 후견감독인의 역할

| 구분                    | 내용                                                                                                                                                                                                                                                                                                                                                                                          |                                                                                                                                                                                                   |
|-----------------------|---------------------------------------------------------------------------------------------------------------------------------------------------------------------------------------------------------------------------------------------------------------------------------------------------------------------------------------------------------------------------------------------|---------------------------------------------------------------------------------------------------------------------------------------------------------------------------------------------------|
| 피후견인의 재산 상황 및 복지 수요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법상 한정후견인이나 특정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후견감독인의 요구가 있을 시 수행해야 함(민법 제953조).</li> <li>- 심판청구 시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피후견인의 재산 상황을 세부적으로 파악 하기 충분하지 않으므로, 후견감독인은 재산과 관련하여 피후견인에게 발생 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후견인에게 피후견인의 재산목록 작성 및 보고를 요구함.</li> <li>- 후견인은 후견 개시 이후 2개월 내로 재산 목록표와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이 용 현황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후견감독인에게 보고하고 후견감독인은 이 를 가정법원에 제출함.</li> </ul> |                                                                                                                                                                                                   |
| 공공후견인 활동 감독 및 지원      | 후견인 정기보고서 등 점검                                                                                                                                                                                                                                                                                                                                                                              | - 매월 후견인으로부터 정기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 (관할 후견법인과 의 업무위임 등을 통해 후견법인으로부터 정기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 가능)                                                                                                                    |
|                       | 기타 후견활동 감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견인에게 ‘피후견인 안전망 조력자’를 구축하여 후견인 정 기보고서에 기재토록 하고, 조력자 연락처를 확인 및 관리 (공공후견법인, 시·군·구)</li> <li>- 후견사무보고서 작성(매 1년) 감독</li> <li>- 후견인 활동 지원 및 모니터링 등</li> </ul> |
|                       | 사례회의 및 공동 의사결정 회의의 진행                                                                                                                                                                                                                                                                                                                                                                       | - 필요시 사례회의 또는 공동 의사결정회의를 통한 후견인 의 사결정 지원                                                                                                                                                          |
|                       | 긴급 후견 사무 및 이해상반행위 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해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를 위해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 가능</li> <li>- 후견인과 피후견인 간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대해 피후견 인 대리 가능</li> </ul>                                     |
| 후견감독 사무보고             | - 매년 가정법원에 후견감독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



| 구분                    | 내용                                                                                |                                                                                                                                                                          |
|-----------------------|-----------------------------------------------------------------------------------|--------------------------------------------------------------------------------------------------------------------------------------------------------------------------|
| 기타 변경<br>청구 등<br>사후조치 | 후견인 변경                                                                            | - 감독 결과 후견인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피후견인의 복리에 영향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후견인 변경(민법 제940조)을 신청                                                                                     |
|                       | 후견인 권한<br>범위 변경                                                                   | - 피후견인을 위해 특정후견인에게 더 넓은 범위의 권한(대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을 때, 새로 특정후견 심판청구를 하거나 보다 간소한 절차로 대리권 범위 변경 청구를 진행                                                                         |
|                       | 후견인의 임무<br>수행에 필요한<br>처분명령 청구                                                     | - 법원의 동의 사항(예: 병원 입·퇴원, 부동산 및 상속재산 처분 등)에 관한 대리권 행사가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처분명령을 청구함.                                                                            |
| 후견 지속<br>여부 조사        | - 특정후견이 종료되기 전 후견 지속 여부를 조사하여, 최소한 6개월 전에 판단을 내려야 하며, 결정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리 |                                                                                                                                                                          |
| 후견 종료<br>후 조치         | 후견 종료<br>사무처리                                                                     | - 후견 종료 후 후견인이 해야 할 작업을 마무리하였는지 확인<br>- 후견 종료 후 법원에 후견종료등기신청서 제출<br>- 피후견인의 재산에 대한 결산보고서(후견인 작성) 접수 등                                                                    |
|                       | 현장조사 협력                                                                           | - 후견 사무 종료 시 후견인은 1개월 이내에 피후견인의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필요한 결산을 하도록 해당 절차에 참여하여 관리<br>- 결산보고서 접수 후 후견감독인은 직접 또는 공공후견법인 책임자로 하여금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함(예: 재산 결산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시 후견인에게 변상 요구). |

출처: “2024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4c, pp. 58-65의 내용을 연구진이 요약하여 재구성함. 2024. 4. 16. 검색, [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id=0019&list\\_no=1480768&seq=2](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id=0019&list_no=1480768&seq=2)

## 2) 후견감독 지원(공공후견지원사업 모니터링)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공공후견법인은 피후견인, 후견인, 공공후견법인, 후견감독인을 대상으로 공공후견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점검)을 실시한다. 모니터링의 목적은 후견서비스의 질을 점검하고 피후견인의 후견 수요 변화 여부와 만족도를 확인하여 공공후견사업이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공공후견법인은 제3자 후견에서의 피후견인과 후견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담당하며, 그 외 대상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담당한다. 모니터

링은 후견 사례의 성격에 따라 긴급사례는 월 1회, 일반사례는 연 1회 실시하며, 대상별 점검 내용은 다음 표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3-10〉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모니터링 대상별 점검 내용

| 모니터링 대상          | 점검 내용                                                                                                                                                                                         |
|------------------|-----------------------------------------------------------------------------------------------------------------------------------------------------------------------------------------------|
| 피후견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공공후견인이 지원하는 후견활동 내역</li><li>- 후견인 활동에 대한 만족도</li><li>- 후견인에게 기대하고 있는 피후견인의 의사 및 욕구 파악</li><li>- 후견인과의 관계 수준 파악 등</li></ul>                            |
| 공공후견인<br>(개인/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공공후견활동 현황</li><li>- 공공후견활동 수행 정도, 피후견인과 관계</li><li>- 공공후견활동 만족도</li><li>- 공공후견 활동 시 필요한 지원</li></ul>                                                  |
| 공공후견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공공후견지원 사업에 있어서 공공후견법인의 역할</li><li>- 원만한 후견활동지원을 위한 필요한 지원체계 등</li><li>- 사회조사보고서 작성 및 후견심판청구서 작성 등</li><li>- 후견법인 업무 충실도, 공공후견 관련 예산 집행 내역 등</li></ul> |
| 공공후견감독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공공후견인 활동 감독의 적정성 확인</li><li>- 수행 중인 공공후견감독기관의 역할</li><li>- 공공후견지원 사업에 있어서 감독기관의 역할</li><li>- 원만한 후견감독활동을 위한 필요한 지원 등</li></ul>                        |

출처: “2024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4c, pp. 67-68의 내용을 연구진이 재구성함. 2024. 4. 16. 검색, [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19&list\\_no=1480768&seq=2](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19&list_no=1480768&seq=2)

## 자. 공공후견의 종료

공공후견지원사업에서 후견의 종료는 피후견인의 사망, 특정후견의 기간 만료, 특정후견에서 성년 또는 한정후견으로의 변경, 임의후견의 개시, 피후견인의 상태 개선(한정후견의 경우) 등의 사유로 이루어진다. 앞에서 후견감독인의 역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정후견의 경우 후견 기간이 만료되기 최소 6개월 전에 특정후견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침상 안내하고 있다. 후견 지속 여부 조사 결과, 특정

후견의 지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다시 후견심판청구를 진행하나, 특정후견의 지속이 불필요하거나, 다른 후견 유형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기존의 특정후견을 종료하게 된다.

피후견인이 사망하거나 특정후견의 기간이 만료되어 후견이 종료될 때는 가정법원에 후견 종료 심판을 청구할 필요가 없다. 후견인은 위의 이유로 특정후견이 종료되었음을 알게 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후견 종료 등기신청을 해야 하며, 후견 종료 등기신청은 후견인뿐만 아니라 피후견인 본인,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후견감독인도 할 수 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 한편, 특정후견에서 성년 또는 한정후견으로 후견 유형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임의후견을 개시하고자 하거나, 한정후견에서 피후견인의 상태가 개선되어 기존의 후견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후견 종료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후견이 종료되면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은 각각 피후견인의 재산과 관련된 조치를 해야 한다. 후견인은 피후견인 소유의 재산을 피후견인 또는 새로운 후견인, 또는 피후견인의 상속인에게 반환하고, 후견감독인에게 피후견인 관련 서류를 반환하며, 피후견인의 재산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후견감독인은 앞의 후견감독인의 역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후견인이 후견 종료 후 해야 할 작업을 제대로 마무리하였는지 확인하고 이후 현장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공공후견법인은 후견 종료 이후에 피후견인에게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정 기간 피후견인의 안전망 조력자와 긴급 연락망을 유지하도록 지침상 권고하고 있다.

## 2.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 가. 사업 목적 및 추진 경과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은 보호의무자가 없고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정신질환자에게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복귀 촉진 등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둔다(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2024). 동 사업은 2017년 5월 30일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전부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비자의 입소에 관한 규정이 강화되면서, 보호의무자가 없는 비자의 입소자의 퇴소 또는 계속 입소를 지원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2024). 이에 공공후견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규모에 대한 조사를 거쳐 2017년 6월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시후견 심판이 완료되었고 이에 따라 후견이 개시되었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6월 초, 공모를 통해(보건복지부, 2017c), 4개 법인(감리회태화복지재단,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을 정신질환자 공공후견법인으로 지정하였다(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2024). 4개 법인은 2018년과 2020년에도 공공후견법인으로 지정을 받아 2022년까지 후견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 2022년 말 감리회태화복지재단과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가 지정 신청을 하지 않았고,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과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만 2024년까지 공공후견법인으로 지정을 받아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은 「민법」에 규정된 성년후견 관련 조문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

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근거하여 추진되어 왔다. 지자체의 후견심판청구, 법인을 통한 사업 수행, 후견인의 후견 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채로 진행되다가, 2024년 1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어(2026년 1월 시행) 지자체장의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제38조의 3)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앞두고 있다.<sup>16)</sup>

〈표 3-11〉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추진 근거

| 추진 근거                                                                  | 내용                                                                                                                                                                                                                                                                                                                                                                                                                                  |
|------------------------------------------------------------------------|-------------------------------------------------------------------------------------------------------------------------------------------------------------------------------------------------------------------------------------------------------------------------------------------------------------------------------------------------------------------------------------------------------------------------------------|
| 「민법」                                                                   | 제9조(성년후견 개시의 심판), 제12조(한정후견 개시의 심판), 제14조의 2(특정후견의 심판), 제929조(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 제959조의 2(한정후견의 개시)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br>(‘16. 5. 전부개정, ‘27. 5. 시행)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 복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br>(중략)<br>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 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br>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3<br>(‘24. 1. 일부개정, ‘26. 1. 시행)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인 정신질환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한정후견 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li> <li>2. 정신질환자 등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li> <li>3.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li> </ol>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 개시, 한정후견 개시 또 |

16) 2026년 1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동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근거하여 사업을 수행함.

| 추진 근거 | 내용                                                                                                                                                                                                                                                                                                             |
|-------|----------------------------------------------------------------------------------------------------------------------------------------------------------------------------------------------------------------------------------------------------------------------------------------------------------------|
|       | 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 후보자로 하여 그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함께 청구하여야 한다.<br>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br>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의 요건,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절차, 후견인 후견 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출처: 1)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2024, p. 2. 2024. 4. 16. 검색, [https://www.ncmh.go.kr/mentalhealth/board/boardView.do?no=9665&menu\\_cd=04\\_02\\_00\\_04](https://www.ncmh.go.kr/mentalhealth/board/boardView.do?no=9665&menu_cd=04_02_00_04)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024, 법률 제19902호.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의 후견 유형에 관한 방향성이 기존에는 한정후견 중심이었으나, 최근 원칙적으로 특정후견을 지원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2022년도 사업안내에는 후견 유형에 있어 ‘대부분 한정후견 유형으로 지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2023년도에는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 지원”으로 지침이 수정되었고, 2024년도에는 “원칙적으로 특정후견을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한정후견을 지원”하는 것으로 다시금 수정되었다(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2022, 2023, 2024). 또한 기존에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해 한정후견 중심으로 제공되던 공공후견서비스를 지역사회 거주자 또는 재활시설 이용자 등에 대해 특정후견 중심으로 확대하여 개편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3년부터 ‘정신질환자 공공후견 개편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국립정신건강센터, 2023).

## 나. 지원 내용 및 대상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은 공공후견법인의 사업 수행을 위한 활동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활동비는 이용자(피후견인 및 피후견인 후보자) 1인당 월 20만 원으로, 법인별 이용자 규모에 12개월을 곱하여 총사업비를 지급한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의 사업비 총예산은 약 11.7억 원으로 동결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총 486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규모이다(아래 표 참조).

〈표 3-12〉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한울정신건강<br>복지재단   | 376.8<br>(157명)   | 357.6<br>(149명)   | 376.4<br>(157명)   | 376.4<br>(157명)   | 376.4<br>(157명)   | 652.6<br>(272명)   | 652.6<br>(272명)   |
| 한국정신건강<br>전문요원협회 | 348.0<br>(145명)   | 336.0<br>(140명)   | 348.0<br>(145명)   | 348.0<br>(145명)   | 348.0<br>(145명)   | 513.4<br>(214명)   | 513.4<br>(214명)   |
| 감리회<br>태화복지재단    | 160.8<br>(67명)    | 160.8<br>(67명)    | 160.8<br>(67명)    | 160.8<br>(67명)    | 160.8<br>(67명)    |                   |                   |
| 한국정신재활<br>시설협회   | 280.8<br>(117명)   | 276.0<br>(115명)   | 280.8<br>(117명)   | 280.8<br>(117명)   | 280.8<br>(117명)   |                   |                   |
| 예산 총액            | 1,166.4<br>(486명) | 1,166.0<br>(486명) | 1,166.0<br>(486명) | 1,166.0<br>(486명) | 1,166.0<br>(486명) | 1,166.0<br>(486명) | 1,166.0<br>(486명) |

주: 괄호 안 수치는 이용자 정원을 의미하며, 사업비는 이용자 정원 \* 240만 원(월 20만 원 \* 12개월)으로 산정됨.

출처: “보조사업 현황,” 보조금통합포털, 연도 미상. 2024. 5. 17. 검색, <https://www.bojo.go.kr/bojo.do>

공공후견서비스 지원 대상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19세 이상 성인 정신질환자이다. 정신질환자 본인, 정신요양시설장, 지자체장, 관할 가정법원 등에서 연중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다. 사업 운영 현황

2024년 4월 말 기준 정신질환자 공공후견법인의 사업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표 3-13>과 같다. 이용자 규모는 총정원 486명이고,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에서 272명(56%),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에서 214명(44%)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후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피후견인(실인원)은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이 244명,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가 195명으로, 두 법인 모두 한정후견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의 비율이 전체 이용자의 약 95% 수준을 차지한다. 성별은 남녀 비율이 유사한 수준이나 남성의 비율이 약간 높고, 연령대는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의 경우 50~64세가 45%, 65세 이상이 42%를 차지하고,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는 65세 이상이 77%, 50~64세가 22%를 차지하여 법인 간 차이가 있다. 피후견인 거주 지역의 경우,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은 경기(23.8%)와 충북·충남(23.8%)의 비율이 높고,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는 대구·경북(43.6%)과 경남(19.5%)의 비율이 높은 편인데 이는 법인이 관할하는 지역의 차이로 해석된다.

법인의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은 후견 전담 인력 8명, 후견보조인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는 후견 전담 인력 7명, 후견보조인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후견보조인은 국내 공공후견사업 중 정신질환자 공공후견사업에만 있는 인력 형태로, 각 법인에서 관할하는 지역이 전국에 분포해 있는 데 반하여 대부분의 전담 인력은 서울에 상주하기 때문에 피후견인의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후견보조인을 두어 법인의 후견활동을 보조하도록 하고 있다.



〈표 3-13〉 정신질환자 공공후견법인 사업 운영 현황(2024. 4. 30. 기준)

| 구분         |          |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
|------------|----------|--------------------------------------------------------------------------------------------------------------------------|------------------------------------------------------------------------------------------------|
| 이용자 규모     |          | - 정원 272명, 실인원 244명                                                                                                      | - 정원 214명, 실인원 195명                                                                            |
| 피후견인<br>특성 | 후견<br>유형 | - 한정후견 95.1%<br>- 특정후견 4.9%                                                                                              | - 한정후견 95.4%<br>- 특정후견 4.6%                                                                    |
|            | 성별       | - 남성 54%, 여성 46%                                                                                                         | - 남성 51%, 여성 49%                                                                               |
|            | 연령대      | - 20~30대 3%<br>- 40대 10%<br>- 50~64세 45%<br>- 65세 이상 42%                                                                 | - 40대 1%<br>- 50~64세 22%<br>- 65세 이상 77%                                                       |
|            | 거주<br>지역 | - 서울 2.5%<br>- 부산 3.7%<br>- 대구 7.4%<br>- 인천 1.2%<br>- 대전 17.2%<br>- 세종 4.5%<br>- 경기 23.8%<br>- 충북·충남 23.8%<br>- 전남 16.0% | - 서울 0.5%<br>- 대구·경북 43.6%<br>- 울산 9.2%<br>- 경기 12.8%<br>- 충북 0.5%<br>- 전북 13.8%<br>- 경남 19.5% |
|            | 입원<br>형태 | - 자의 입원 63.9%<br>- 비자의 입원 32.0%<br>- 해당 없음(지역사회 거주 또는<br>노인요양시설 입소) 4.1%                                                 | - 자의 입원(동의 포함) 78.4%<br>- 비자의 입원 18.0%<br>- 행정 입원 3.6%                                         |
| 인력 현황      |          | - 담당자(전담 인력) 8명<br>- 후견보조인(지역 거주 보조 인력) 11명                                                                              | - 담당자(전담 인력) 7명<br>- 후견보조인(지역 거주 보조 인력) 10명                                                    |

주: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전문가 포럼의 발표 내용을 토대로 연구진이 재구성함.

출처: 1) “정신장애인 공공후견서비스(정신질환자 공공후견 활동지원사업)[전문가 포럼 발표자료],” 홍민우, 2024, pp. 9-11을 바탕으로 연구진이 재구성함.

2)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법인 현황[전문가 포럼 발표자료],” 홍정기, 2024, pp. 6-7을 바탕으로 연구진이 재구성함.

## 라. 사업추진체계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의 추진체계는 〈표 3-14〉에 제시된 바와 같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는 공공후견법인(공공후견인)을 지정하고 지원 예산을 집행하며 후견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공공후견활

동지원사업을 총괄한다.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공공후견활동 지원사업의 운영 주체로서 공공후견법인을 관리·감독하고 공공후견인(법인)과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시·군·구는 후견심판을 청구하는 주체이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후견감독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후견감독사무를 수행한다.

공공후견법인은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아 후견사업을 관리하고, 공공후견인으로서 직접적인 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 외 정신요양시설 등 정신질환자를 지원하고 있는 기관들도 관계기관으로서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되며, 후견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시·군·구에 지원을 의뢰하고 공공후견법인의 후견 사무 수행에 협력한다.

〈표 3-14〉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추진체계

| 수행 주체 | 기능            |                                                                                                                                                                                                                                                                                                                                                                                                                                       |
|-------|---------------|---------------------------------------------------------------------------------------------------------------------------------------------------------------------------------------------------------------------------------------------------------------------------------------------------------------------------------------------------------------------------------------------------------------------------------------|
| 보건복지부 | 정신건강 정책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지침 제·개정 및 시달</li> <li>- 공공후견지원에 관한 관리·감독</li> <li>- 공공후견지원 예산 집행 및 사업 평가</li> <li>- 공공후견인(법인) 지정</li> <li>- 후견 대상자 선정</li> </ul> </li> </ul>                                                                                                                                                                   |
|       | 국립정신 건강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사업지침 제·개정 지원</li> <li>-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에 관한 관리·감독</li> <li>- 공공후견법인 관리·감독</li> <li>-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 실시</li> <li>- 공공후견인(법인) 대상 교육</li> </ul> </li> </ul>                                                                                                                                       |
| 시·군·구 | 정신질환자 공공후견 담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견감독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견 대상자 발굴, 후견심판청구(필요시 변호사나 법무법인에 소송 위임)</li> </ul> </li> <li>• 후견감독사무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조사보고서 작성. 단, 피후견인과 신뢰관계가 형성된 자(관계기관 등)나 공공후견법인의 지원을 받거나, 작성을 위탁할 수 있음.</li> <li>- 정기보고서 점검 및 후견감독사무보고서(연 1회) 제출</li> <li>- 피후견인 권익보호사항 확인</li> </ul> </li> </ul> |

| 수행 주체         | 기능                              |                                                                                                                                                                                                                                                                                                                                                  |
|---------------|---------------------------------|--------------------------------------------------------------------------------------------------------------------------------------------------------------------------------------------------------------------------------------------------------------------------------------------------------------------------------------------------|
| 공공후견인<br>(법인) | 지정 기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후견인(법인) 활동(후견서비스 제공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견 담당자 모집 및 선발</li> <li>- 후견 담당자 기본·보수 교육</li> <li>- 후견 담당자 관리 및 모니터링</li> <li>- 사업실적보고(연 2회)</li> </ul> </li> <li>• 직접 후견서비스 제공</li> <li>• 활동보고서 및 정기보고서 작성·보고</li> <li>• 보조금 예산집행 및 정산보고</li> </ul>                   |
| 관계기관          | 정신질환자<br>를 실제로<br>지원하고<br>있는 기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후견지원사업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담당자에게 공공후견지원사업 신청</li> <li>- 후견심판청구 절차 협조(필요 서류 구비 등)</li> <li>- 사회조사보고서 작성 지원(피후견인과 신뢰관계가 형성된 자)</li> </ul> </li> <li>• 공공후견법인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후견법인 후견 사무 협조</li> </ul> </li> </ul> |

출처: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2024, p. 4. 2024.  
4. 16. 검색, [https://www.ncmh.go.kr/mentalhealth/board/boardView.do?no=9665&menu\\_cd=04\\_02\\_00\\_04](https://www.ncmh.go.kr/mentalhealth/board/boardView.do?no=9665&menu_cd=04_02_00_04)

## 마. 대상자 선정 및 후견심판청구 지원 절차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의 대상자(수혜자) 수는 사업 시작 이래 486명으로 고정되어 운영되는 상황으로, 피후견인 사망, 후견 개시 원인 소멸 등으로 후견이 종료되어 대상자 정원에 여유가 생길 경우 추가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에서는 연중 후견서비스 이용 신청을 받고 있으며, 필요시 지자체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와 함께 피후견인 후보자 명부를 관리한다.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1) 중증 정신질환자, 2)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적절한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자, 3) 의사결정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자력으로 경제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는 자라는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다음 표 참조).

공공후견법인 또는 지자체 담당자는 후견이 종료되면 한 달 내로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에 후견 종료 사실을 보고하고 이에 따른 대

상자 추가 선정을 요청한다. 보건복지부는 피후견인 후보자 명부 중에서 피후견인 후보자의 후견서비스 요구도 및 긴급성(아래 표 참조)에 따라 우선순위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입소시설, 후견인 후보자, 관할 지자체에 통보한다.

〈표 3-15〉 정신질환자 공공후견지원사업 대상자 기본 조건 및 우선 항목

| 구분       | 내용                                                                                                                                                                                                                                                       |
|----------|----------------------------------------------------------------------------------------------------------------------------------------------------------------------------------------------------------------------------------------------------------|
| 기본<br>조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중증 정신질환자</li><li>-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있더라도 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적절한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li><li>- 의사결정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경제관리 및 기타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li></ul>                                                                         |
| 우선<br>항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가정법원에서 공공후견인 추천을 요청한 사건</li><li>- 정신요양시설 또는 정신병원에 입소(원) 또는 퇴소(원) 절차가 필요한 경우</li><li>- 지자체 등이 긴급히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li><li>- 범죄 피해 우려, 혹은 피해 보상 지원 시</li><li>- 재산관리가 필요한 경우(예금, 부동산, 상속재산 등)</li></ul> |

출처: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2024, p. 9. 2024. 4. 16. 검색, [https://www.ncmh.go.kr/mentalhealth/board/boardView.do?no=9665&menu\\_cd=04\\_02\\_00\\_04](https://www.ncmh.go.kr/mentalhealth/board/boardView.do?no=9665&menu_cd=04_02_00_04)

대상자가 선정되면 후견심판청구 절차를 준비한다. 우선 후견 대상자의 후견심판청구에 대한 동의 서류를 확보하고, 피후견인의 공공후견인(법인)을 선정한다. 이때 지자체장은 공공후견지원 대상자의 거주 지역을 담당하는 공공후견법인을 추천할 수 있다. 또한 사회조사보고서, 후견계획서 및 후견감독계획서, 후견심판청구 등 필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다(아래 표 참조). 후견심판청구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심판절차대리인으로 후견심판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에 소송을 위임하여 소송대리인이 제출한다.

〈표 3-16〉 후견심판청구 관련 주요 필요 서류 및 작성 주체(정신질환자 공공후견)

| 필요 서류   | 작성 주체                                                                                      |
|---------|--------------------------------------------------------------------------------------------|
| 사회조사보고서 | • 지자체 담당 공무원, 피후견인 후보자와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정신요양시설 담당자, 사회복지사 등), 후견법인 후보자가 각각 담당<br>한 부분을 작성 |
| 후견계획서   | • 공공후견법인 작성                                                                                |
| 후견감독계획서 | • 시·군·구 담당 공무원과 후견인 후보자가 서명                                                                |
| 후견심판청구서 | • 지자체 공무원이 작성하되, 작성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작성<br>(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에 심판청구절차 위임 가능)              |

출처: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2024, p. 12. 2024. 4. 16. 검색, [https://www.ncmh.go.kr/mentalhealth/board/boardView.do?no=9665&menu\\_cd=04\\_02\\_00\\_04](https://www.ncmh.go.kr/mentalhealth/board/boardView.do?no=9665&menu_cd=04_02_00_04)

가정법원에서 청구 이후 심리 날짜를 정하여 통보하면, 해당 날짜에 사건 본인, 후견인 후보자, 지자체 담당 공무원, 심판 절차 의사소통 조력인 등이 참석하여 법원에 의견을 제시한다. 가정법원은 후견심판청구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을 선임하는 결정을 내린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과 동일하게, 심판 내용에 불복하지 않는다면 2주 후 후견심판이 확정되어 후견이 개시된다.

## 바. 공공후견법인의 역할 및 사무

### 1) 사업관리 및 행정 사무

공공후견법인은 사업관리 및 행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무를 수행한다. 첫째, 사업 수행 주체와 네트워크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협력한다. 지자체와 반기별로 간담회를 추진하고,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후견활동 점검·감독 시 협조하며, 피후견인의 신상보호를 위해 정신요양시설 등 유관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둘째,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의 후견 인력을 관리한다. 공공후견법인의 채용 절차를 통해 후견 담당자를 선발하고, 선발된 후견 담당자의 명부와 담당자별 피후견인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셋째, 후견 담당자에게 활동 업무매뉴얼을 제공하고 원활한 후견활동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후견 담당자가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는 기본교육, 보수 교육, 인권교육이 있다. 기본교육은 후견활동 전에 최초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3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교육의 내용은 아래 표에 제시된 바와 같다. 후견 담당자는 국립정신건강센터와 공공후견법인에서 실시하는 보수 교육을 연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인권교육도 연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공공후견법인은 교육 수료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며, 수료자 명단과 교육결과보고서 등을 법인 내에 보관해야 한다.

〈표 3-17〉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후견 담당자 교육 과정

| 구분       | 교육 내용                                                                                                                                                                                                                                            | 이수 시간                                                                           |
|----------|--------------------------------------------------------------------------------------------------------------------------------------------------------------------------------------------------------------------------------------------------|---------------------------------------------------------------------------------|
| 기본<br>교육 | - 후견제도의 이해와 실제(의사결정 지원제도로서의 후견제도)<br>- 후견인 권한과 책임(후견직무와 역할, 의사결정 능력의 확인 방법과 지원 방법 등)<br>- 후견 사건과 가정법원(후견심판 절차, 후견심판 결정 이후 활동, 가정법원의 역할과 권한 등)<br>-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br>- 사회복지서비스의 이해(복지서비스 현황, 서비스 신청·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자원연계 등)<br>- 기타 실무지식(금융재산의 관리 등) | 최초 30시간 이상<br>(관련 자격증 취득자는 이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 정신건강전문요원: 15시간 이상, 재활활동요원: 21시간 이상) |
| 보수<br>교육 | - 후견 담당자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 후견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내용으로 구성                                                                                                                                                                                                  | 연간 8시간 이상<br>(매년 이수)                                                            |

출처: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2024, p. 18. 2024. 4. 16. 검색, [https://www.ncmh.go.kr/mentalhealth/board/boardView.do?no=9665&menu\\_cd=04\\_02\\_00\\_04](https://www.ncmh.go.kr/mentalhealth/board/boardView.do?no=9665&menu_cd=04_02_00_04)

넷째, 공공후견법인은 신상보호 중심의 서비스를 통해 피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하며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피후견인을 방문하

는 역할을 한다. 방문 면담은 후견 담당자 또는 대면 면담을 전담하는 인력인 후견 보조인이 수행하며, 피후견인 1인당 연간 평균 20회 이상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후견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최소 월 2회, 1년 이상 3년 미만일 경우 최소 월 1회, 3년 이상일 경우 최소 격월로 1회씩 방문해야 한다.

다섯째, 공공후견법인은 후견활동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활동 실적을 보고하는 사무를 수행한다. 후견 기간 중 작성 및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은 아래 표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3-18〉 후견활동 관련 공공후견법인 작성 및 제출 서류(정신질환자 공공후견)

| 제출 서류                   | 내용                                                                                             |
|-------------------------|------------------------------------------------------------------------------------------------|
| 재산목록보고서                 | • 후견 개시 2개월 이내에 최초 1회 작성하여 공공후견법인에서 보관하고 법원 및 후견감독인(지자체)에게 송부                                  |
| 정기후견보고서                 | • 분기별로 후견 업무 수행에 관한 정기후견보고서를 작성하여 후견감독인(지자체)에게 제출                                              |
| 후견사무보고서                 | • 후견 개시 1년 이후부터 작성하여 후견감독인(지자체)에게 제출, 후견감독인은 보고서 검토 후 후견감독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후견사무보고서와 함께 후견감독 재판부에 제출 |
| 후견활동보고서<br>작성 및<br>실적보고 | • 매월 후견 담당자로부터 후견활동보고서를 보고받아 활동 적절성 여부를 관리하고,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에 후견활동 추진 실적을 보고                       |

출처: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2024, pp. 20-21. 2024. 4. 16. 검색, [https://www.ncmh.go.kr/mentalhealth/board/boardView.do?no=9665&menu\\_cd=04\\_02\\_00\\_04](https://www.ncmh.go.kr/mentalhealth/board/boardView.do?no=9665&menu_cd=04_02_00_04)

## 2) 후견인으로서의 역할 및 사무

공공후견법인의 후견 담당자는 후견인으로서 첫째, 법원 판결문에 명시된 후견 범위 내에서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후견활동을 시작하기 전 피후견인과 대면하여 개별적으로 후견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활동을 진행한다. 둘째, 후견인으로서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의료행위, 거소, 근로, 그 외 일상생활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필요한 행위를 대리하며, 공법상 신청행위에 관련된 지원 및 대리를 수행하고, 학대 피해나 심판, 소송이 발생하면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항목별 주요 업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표 3-19>에 제시된 바와 같다. 셋째, 후견등기사항 증명서의 대리권 목록상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무를 수행해야 할 경우, 후견감독인에게 즉시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역할을 한다. 넷째, 공공후견법인은 피후견인의 사망으로 후견이 종료될 경우 상속 및 금전 관리 사무를 수행하고, 필요시 장례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한다.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인계하고, 상속인이 없거나 알 수 없으면 위임의 법리에 따라 채무 변제, 공과금 납부, 장례 사무 등 긴급한 사무를 처리하며 필요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한다. 장례 절차의 경우, 공공후견법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고자가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협조하고, 우선순위 연고자에게 장례 의사가 없을 경우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규정된 연고자(정신요양시설의 장,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 등)가 장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처리한다. 여러 사무 중에서도 피후견인 구제를 위한 심판, 소송 등 절차 지원, 피후견인 사망 후 상속 절차 지원 등의 사무는 자연인 후견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고난도 사무에 해당한다. 즉, 법인이 후견을 수행하기 때문에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무 외에도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사무나 장기간 소요되는 사무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표 3-19〉 공공후견법인 후견 담당자의 주요 업무

| 구분                          | 내용                                                                                                                                         |
|-----------------------------|--------------------------------------------------------------------------------------------------------------------------------------------|
| 재산 관련 법률 행정 지원              | - 수입 및 지출 내역 확인, 통장거래 내역 확인을 통한 재산 상황 관리, 은행거래정지 및 피후견인 체크카드 사용 정지 대응 등                                                                    |
| 의료행위의 동의 관련 의사결정 지원 및 동의 대리 | - 병원 외래진료, 입·퇴원, 긴급 수술 등 필요시 의사결정 지원 및 동의 대리<br>(정신병원 입원, 동의 입원 및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으로의 전환, 의료행위의 결과로 사망 또는 상당한 장애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 필요) |
| 거소 관련 정보 제공 및 의사결정 지원       | - 거소 이전이 필요한 경우 피후견인 거주시설 및 후견감독인(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논의하여 입소 가능한 시설을 모색<br>- 후견인은 입소 절차를 지원하고 법원에서 부여한 한정후견 대리권에 따라 자립생활에 필요한 절차를 지원             |
| 근로 관련 의사결정 지원               | - 근로계약 체결 관련 의사결정 지원, 피후견인이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임금 수준과 불이익 여부를 확인하여 고용주와 협의, 근로하고 있지 않으나 근로를 할 수 있는 상황일 경우 시설과 상의하여 취업 연계 진행                    |
| 일상생활 관련 지원                  | - 피후견인이 필요로 하는 물품 등을 확인하여 구매 지원                                                                                                            |
| 공법상 신청행위 관련 지원 및 대리         | -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발급 등 지원 및 대리                                                                                                            |
| 학대피해 등 구제 관련 지원             | - 피후견인이 경제적·정신적·신체적·성적으로 착취나 희생의 대상이 되지 않고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출처: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2024, pp. 25-27.  
2024. 4. 16. 검색, [https://www.ncmh.go.kr/mentalhealth/board/boardView.do?no=9665&menu\\_cd=04\\_02\\_00\\_04](https://www.ncmh.go.kr/mentalhealth/board/boardView.do?no=9665&menu_cd=04_02_00_04)

## 사. 후견감독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에서도 제3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후견심판청구의 경우 통상 지자체의 장이 해당 지자체를 후견감독인으로 선임해 줄 것을 함께 청구한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후견감독인이 선임되면 후견감독인은 후견이 확정된 날로부터 후견이 종료될 때까지 후견감독인으로서의 권한과 임무를 지니게 된다. 지침상 제시된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에

서 후견감독인의 역할은 아래 표와 같으며, 세부적인 역할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에서 후견감독인의 역할과 유사하다.

〈표 3-20〉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에서 후견감독인(지자체)의 역할

| 구분               | 내용                                                                             |                                                                                                                                                                                                                |
|------------------|--------------------------------------------------------------------------------|----------------------------------------------------------------------------------------------------------------------------------------------------------------------------------------------------------------|
| 피후견인 재산목록 보고서 검토 | - 후견 개시 시점으로부터 최초 1회 공공후견법인으로부터 피후견인의 재산목록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필요시 후견감독 재판부에 즉시 보고함. |                                                                                                                                                                                                                |
| 공공후견인 활동 감독 및 지원 | 공공후견법인 정기후견보고서 검토                                                              | - 분기별로 공공후견법인으로부터 정기후견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함. 내용 중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법인에 통지하여 기초조사를 하도록 하거나 직접 재산 상황을 조사함. 필요시 후견감독 재판부에 즉시 보고함.                                                                                              |
|                  | 후견활동 감독                                                                        | - 공공후견법인 후견활동 모니터링(후견서비스 질 점검, 피후견인 만족도 확인 등)                                                                                                                                                                  |
|                  | 긴급 후견사무 및 이해상반행위 처리                                                            | -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하여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행위나 처분을 할 수 있음<br>-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할 수 있음                                                                                     |
| 후견감독 사무보고        | - 매년 가정법원에 후견감독사무보고서 제출(후견인의 후견사무보고서 작성을 감독하여 함께 제출)                           |                                                                                                                                                                                                                |
| 기타 변경 청구 등 사후조치  | 후견인(공공후견법인) 변경                                                                 | - 감독 결과 공공후견법인의 활동이 부적절하여 후견활동이 지속 불가능할 경우 공공후견법인 변경을 신청                                                                                                                                                       |
| 후견 종료 후 조치       | 후견 종료 사무처리                                                                     | - 후견 종료 후 후견인이 해야 할 작업을 마무리하였는지 확인<br>- 후견인은 재산에 대한 계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후견감독인에게 제출하며, 후견감독인은 이를 검토한 후 후견감독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br>- 피후견인 또는 그의 상속인(피후견인이 사망한 경우), 또는 새로운 후견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피후견인 재산 등의 반환 등을 후견인이 수행하였는지 확인 |
|                  | 현장조사 협력                                                                        | - 후견 사무 종료 시 후견인은 1개월 이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필요한 결산을 해야 하며 후견감독인이 위 절차에 참여해야 함.<br>- 후견인이 후견감독인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후견감독인은 직접 또는 공공후견법인 책임자로 하여금 현장확인을 하도록 해야 함.                                                    |

출처: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2024, pp. 36-39. 2024. 4. 16. 검색, [https://www.ncmh.go.kr/mentalhealth/board/boardView.do?no=9665&menu\\_cd=04\\_02\\_00\\_04](https://www.ncmh.go.kr/mentalhealth/board/boardView.do?no=9665&menu_cd=04_02_00_04)

## 아. 공공후견의 종료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에서 후견의 종료는 피후견인의 사망, 특정후견 기간 만료, 후견 유형의 변경 또는 한정후견에서 피후견인의 상태가 개선되어 후견을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진다. 후견 종료 심판의 청구는 위의 사유 중 피후견인의 상태가 개선되어 후견을 종료하고자 할 때만 해당되며, 그 외 사유로 후견을 종료할 때는 별도의 종료 심판 청구가 불필요하다.

특정후견의 경우 후견이 종료되기 6개월 전에 후견 연장 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공공후견법인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 후견 연장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국립정신건강센터는 후견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후견이 종료되면 공공후견법인의 후견 담당자는 피후견인 소유의 재산을 반환하고 후견감독인에게 피후견인의 재산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후견 종료와 관련된 사무처리를 해야 한다. 특히 공공후견법인의 역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후견인의 사망으로 후견이 종료된 경우 피후견인의 상속과 금전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장례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한다. 후견감독인은 후견 종료 후 후견인이 후속 조치를 적절하게 완료하였는지 관리한다.

### 3. 국내 사례 분석을 통한 주요 쟁점<sup>17)</sup>

이상에서 살펴본 국내 공공후견사업의 주요 내용을 치매공공후견사업과 비교하여 살펴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후견 유형

우선 치매공공후견사업을 포함하여 정신질환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사업은 모두 특정후견(최대 3년)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한정후견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sup>18)</sup> 법정후견 유형 중에서도 특정후견은 한시적인 기간만 운영된다는 점, 아울러 법원에서 인정한 대리권 범위 내에서만 후견인의 후견 사무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는 이점이 있다. 치매공공후견을 포함한 나머지 공공후견사업들의 궁극적 목표가 피후견인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 증진에 있다는 점에서, 해당 후견 유형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단, 치매공공후견을 이용하는 피후견인의 특성상 인지저하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특정후견 기간 내에 당초의 후견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비하여 후견이 종료되기 전에 지속 여부를 조사하여 새롭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제가 마련되어 있으며(재청구<sup>19)</sup>), 이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사업에서도 동일하다. 정신질환자 공공후견사업 역시 지속 여부 조사를 실시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새로운 심판청구가 아닌

17) 국내 유사 사례와 관련한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 수행한 국내 유사 사례 포럼 및 전문가 회의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18) 정신질환자 공공후견사업은 해당 원칙이 2024년부터 적용되었으며 현재 피후견인의 약 95%가 한정후견으로 후견이 기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19) 재청구는 법률 용어는 아니며, 각 공공후견사업 지침서에서 활용되는 용어임.

특정후건의 연장 방식(1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방식의 차이를 차치하고, 국내 공공후건사업에서는 모두 후건 종료 이전에 목표 달성 여부를 파악하고 재청구 또는 후건 연장을 통해 피후견인을 지원하고 있다. 즉, 피후견인이 후건 공백 없이 지속적으로 의사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갑작스러운 후건 종료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피후견인의 안정적인 생활과 자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 있어서, 치매공공후건사업의 경우 피후견인 사망에 따른 종료를 제외하고 후건 목표 달성에 따른 종료보다는 대다수 후건 사건이 재청구로 이어지는 상황이다.<sup>20)</sup> 즉, 현재 설정된 3년이라는 후건 기간이 후건이 시작된 원인(일시적 후원이 필요했던 이유)을 해결하고, 후건이 종료된 이후에도 피후견인이 안정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기간으로 충분한지에 대해 피후견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

## 나. 피후견인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과정

### 1) 절차적 측면

치매공공후건사업을 포함하여 국내 공공후건사업의 대상자는 치매 또는 장애로 인한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경험하며 그에 따른 지원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후건이 개시되는 과정에서부터 당사자의 의사 및 선호를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치매공공후건사업의 경우, 발굴된 후건 대상자의 주요 특성을 사회조사보고서에 작성하여 추후 심판청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대상자의

20) 본 보고서 제2장의 치매공공후건사업 현황에 제시된 내용임.

일반적 특성뿐 아니라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항목(자기결정권 행사 영역)과 당사자의 욕구 또는 희망, 감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항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정신질환자 및 발달장애인 후견사업에 있어서도 유사하며, 피후견인에게 필요한 후견 욕구 및 당사자의 선호와 이해, 욕구에 맞는 후견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로 간주된다. 단, 치매공공후견사업 지침서에는 제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발달장애인 치매공공후견사업에서는 후견심판을 청구하기 이전에 피후견인과 후견인 후보자가 면담을 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는 후견 대상자의 욕구와 관심사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절차로 간주되며, 추후 치매공공후견사업의 지침서 개정 등에서 이를 추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나아가 후견심판 과정에서 필요시, 의사소통 조력인<sup>21)</sup>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역시 치매공공후견을 포함한 이외의 공공후견사업에서 공통적인 사항으로, 평소 후견 대상자와 잘 알고 있으며 의사소통이 원활한 자를 참여하게 함으로써 후견심판에 대한 당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조치로 여겨진다.

후견이 개시된 이후, 후견인과 피후견인 간에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후견 사무 과정에서 의사결정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직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후견인에 대한 교육이며, 둘째는 후견감독인을 통한 후견활동 전반의 모니터링 과정이다. 이 중 후견인에 대한 교육은 내용적 측면에서 후술하고자 하며, 후견감독인의 역할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치매공공후견을 포함한 공공후견사업에서는 공통적으로 지자체가 감독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 지침서에 제시된 치매공공후견 감독인의 주요 업무는 후견인 정기

21) 치매공공후견사업의 경우, 의사소통 조력인으로 사업 지침서에 명시됨. 이외 공공후견사업명에 따라 절차 보조인 등으로 명칭을 달리하기도 함.

보고서 등에 대한 점검, 기타 후견활동 감독, 후견지원 회의 및 공동 의사결정 회의 진행 등으로 발달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공공후견사업의 후견감독인 활동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일련의 후견감독 과정에서 후견 사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점검하는 것은 곧 피후견인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일례로 피후견인을 위해 법률 행위 또는 신상 결정을 대리한 경우, 후견인 정기보고서에 피후견인 접촉 횟수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피후견인과 어떠한 과정(방식)을 거쳐 의사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후견인 정기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부재하다. 물론 후견인 정기보고서가 피후견인에 대한 관찰일지 또는 상담 내용을 적는 기록지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것은 아니나(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2024), 후견 과정에서 후견감독인과 후견인 간에 지속적인 교류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피후견인과의 후견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월 1회 사례관리 회의(후견지원 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보완적 노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노력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각자가 이해하는 후견 사무의 기본 원칙이나 후견감독인의 역할이 다를 수 있어 현장에서는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정신질환자 공공후견사업에서는 법원에서 신상보호 중심의 후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후견보조인을 활용하여 피후견인에 대한 방문 면담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절차적 기제이며, 이 같은 절차가 실제 후견 과정에서 얼마나 지켜지는지, 그리고 내용적 측면에서 충분히 뒷받침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 2) 내용적 측면

후견은 피후견인 및 후견인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지원 과정 전반에서 후견인의 활동이 갖는 의미가 크다. 앞에서 살펴본 후견인 활동에 대한 후견감독인의 모니터링이 사후적 기제라면, 후견인에 대한 양성 교육은 이들이 후견활동을 제대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전적 기제이다.

현재 치매공공후견사업의 후견인 후보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양성 교육을 이수한 후에 후견인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양성 교육 절차는 정신질환자 및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사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치매공공후견사업의 양성 교육은 21시간으로, 나머지 공공후견사업의 기본교육 시간(최소 30시간)과 비교하여 가장 적다. 치매노인의 경우, 치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변화뿐 아니라 노화에 따른 어려움을 복합적으로 경험한다는 점에서 대상자를 이해하는 데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실상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아울러 치매공공후견사업에서 이루어지는 양성 교육의 주요 내용은 노인 및 치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치매공공후견 절차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제철웅 외, 2023), 상대적으로 후견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원칙이나 이를 위해 유념해야 할 사항에 할애하는 시간은 적은 편이다. 발달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공공후견사업의 교육 내용도 큰 틀에서는 치매공공후견사업과 유사하지만, 교육 시간의 총량이 많기 때문에 의사결정 지원 내용에 할애하는 비중이 치매공공후견사업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치매공공후견사업에서 수행되는 현재의 양성 교육 시간 및 내용이,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지원과 후견 사무를 진행하는 데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치매공공후견인 양성 교육을 이수한 후 1년 이상 후견인으로 활



동하지 못하고 대기 중인 경우, 보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광역치매센터의 재량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현재 활동 중인 후견인이나 대기 중인 후견인 후보자에 대한 상시 교육의 경우,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발달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공공후견사업의 보수 교육 운영 현황도 치매공공후견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공공후견사업 전반에 걸쳐 유사한 문제가 발견된다.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후견 과정에서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지원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후견인을 포함한 관계자들의 이에 대한 인식 역시 어느 정도 확립되어 가고 있다. 다만 기존의 논의 결과(조미경, 김란효, 2017; 김미옥 외, 2019)에 따르면, 구체적인 의사결정 지원 방법이 부재하여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된다. 특히 의사결정 지원의 시작점인 피후견인의 의사 파악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현재의 후견인 양성 교육 체제가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지원에 대한 실질적 의미를 갖추고 실천력을 담보해야 함을 시사한다.

#### 다. 후견인 특성 및 역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후견인은 크게 친족, 전문가, 시민 후견으로 나뉘며, 이 중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시민 후견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정신질환자 공공후견사업은 법인 후견을 중심으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사업은 친족 후견을 중심으로 진행되긴 하나 고난이도 사무가 예상되거나 후견인 선임이 어려운 사건 등의 경우 법인 후견으로 연계된다. 법인 후견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조직의 형태로 후견 업무를 수

행한다는 측면에서 전문가 후견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후견인 특성의 차이는 후견인이 수행하는 후견 사무의 차이와도 관련된다.

즉, 현재 치매공공후견사업의 경우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특정 사무를 중점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반면 정신질환자 공공후견사업은 자연인 후견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고난도 사무(소송, 재판 등 절차 지원)를 추가로 지원한다. 특정후견의 성격상 피후견인이 필요한 사무의 범위 내에서 후견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고난도 사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욕구가 있을 경우 현재의 시민 후견 방식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후견인 활동에 대한 비용은 치매공공후견사업을 비롯하여 나머지 공공후견사업 모두 피후견인 1인당 월 20만 원으로 동일하나, 사업별로는 활동비 상한의 차이를 둔다. 정신질환자 공공후견사업은 사업 예산을 피후견인 수로 산정하여 지급되는 구조이며,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사업의 경우 월 상한액이 50만 원으로<sup>22)</sup> 치매공공후견(40만 원)에 비해서 다소 높은 수준이다.

치매공공후견인의 사무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해지므로 그 범위가 명확하다. 다만 실제 진행 과정에 있어서는 역할의 모호함을 경험하는 사례들이 있다. 특히 신상보호 사무는 표준화하기 어려운 특성으로 인해, 후견인이 업무의 범위를 설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김미옥 외, 2019; 하경희 외, 2019; 이은정 외, 2022; 김효정, 2023). 이런 상황에서 후견인들은 개인의 감에 의존하여 활동하거나, 법원 판결문에 규정된 역할을 넘어 피후견인을 돕는 등 각자 다른 양상의 후견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이은정, 2018; 이은정 외, 2022). 또한 후견인이 기대한 역할과 현장과의 괴리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후견인은 후견활동 전의 기

22) 이는 시민 후견에 한정된 논의이며, 친족 후견인에게는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음.  
또한 법인 후견일 경우 상한을 두지 않음.

대와 달리, 시설 보조(산책, 식사 보조 등), 사회복지사의 업무와 중복되는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고 인식하는 선행연구의 결과 역시 존재한다(이은정, 2018; 김미옥 외, 2019). 피후견인의 개별적 욕구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후견활동 역시 하나의 틀로 정형화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후견인이 단순히 말벗의 역할에 그치거나 직접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등은 후견이 지향하는 본연의 목표와는 거리가 있다.

단, 후견인의 역할과 권한을 둘러싼 어려움이 치매공공후견사업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전반적인 공공후견사업에서 공유되는 문제의식이다. 그러나 대다수가 시민 후견으로 운영되는 치매공공후견사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전문성 및 관련 경험이 부족한 후견인들이 복잡한 상황에서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활동 범위가 정해지긴 하지만, 활동 과정에서는 여전히 많은 도전과 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나아가 이 같은 후견인의 역할 및 권한은 후견이 갖는 가치적 측면과도 결부된다. 일부 후견인들은 피후견인의 자율성 보장에 관심을 기울이면 서도 피후견인이 제대로 결정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거나 피후견인의 결정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불안감에 피후견인의 자율성 존중보다는 보호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존재한다(이은정, 2018). 또한 피후견인의 의사대로 결정했을 때 피후견인에게 경제적인 타격이나 안전상의 위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후견인들은 피후견인이 본인의 의사대로 결정하지 않도록 설득하거나(강상경, 하경희, 2019), 피후견인의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들어주지 않는 방식(김효정, 2023)으로 대처하는 양상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일련의 양상은 전반적인 공공후견사업에 걸쳐 나타나지만, 특히 치매 공공후견사업 대상자들의 경우 자율성 및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이 크다. 치매는 후천적으로 발병하고 점진적으로 인지기능이 저하되므로, 피후견인은 과거의 행동 양식이나 선호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로 인해, 피후견인은 자신의 과거 가치관과 현재 상황 사이에서 충돌하거나 일관되지 않은 선택을 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치매공공후견인들이 후견 과정에서 경험하는 역할에 대한 고민과 자율성-보호 사이의 균형에 대한 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라. 전달체계의 역할 및 기능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후견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총괄하며, 지자체(시·군·구)가 후견감독인으로 선임되어 감독 사무를 수행한다. 이 중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치매안심센터는 대상자 선정 및 발굴, 후견인 후보자와의 매칭, 후견심판청구를 위한 사전 준비, 그리고 후견감독인으로서의 업무 등을 총괄한다. 광역치매센터는 후견인 후보자의 모집, 교육, 선발을 담당하며, 중앙치매센터는 후견심판청구 대리 및 법률 자문의 역할을 수행한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을 발달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공공후견사업과 비교해 보면, 전달체계별로 역할이 서로 다르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대상자 선정 및 발굴은 지자체(시·군·구)에서 담당하며, 후견심판청구 대리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수행한다. 반면 정신질환자 공공후견사업에서는 보건복지부가 대상자 선정 및 발굴을 담당하고, 심판청구 대리는 법인이 수행하며 법률자문은 외부 자문을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후견인 후보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는 발달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공공후견사업 모두 해당 법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sup>23)</sup>

종합적으로 볼 때, 치매공공후견사업에서는 치매안심센터가 후견 전반의 역할을 주로 담당하는 반면, 발달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공공후견사업에서는 전담 법인이 대다수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대상자에 대한 이해가 높고, 기초지자체 단위로 위치하여 대상자에 대한 접근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향후에도 현재와 같은 운영방식이 지속될 경우, 현재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이 보다 가증될 수 있다.

첫째, 지자체장이 후견감독인으로 선임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치매안심센터가 주요한 감독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치매안심센터의 역할이 후견인 지원과 관리 및 감독 사이에서 모호해질 가능성이 있다(박인환, 2023; 제철웅 외, 2023). 특히 3년이라는 특정후견 기간이 만료된 후 재청구를 통해 후견을 이어가는 사례들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어떠한 역할에 더 집중할 수 있을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 역시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치매안심센터가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상담 및 등록 관리, 치매 조기 검진,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 치매예방 관리 사업 등) 중 하나로 진행되고 있어, 향후 후견 수요가 증가할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후견 대상자들은 지속적인 관심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논의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23) 단, 발달장애인의 경우 친족 후견에 대해서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담당함.

〈표 3-21〉 국내 공공후견사업 비교

| 구분                      |                            | 치매공공후견사업                                                                                                                                                    | 발달장애인<br>공공후견지원사업                                                  | 정신질환자<br>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
|-------------------------|----------------------------|-------------------------------------------------------------------------------------------------------------------------------------------------------------|--------------------------------------------------------------------|---------------------------------------------|
| 대상자<br>특성 및<br>후견<br>유형 | 대상자<br>특성                  |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br>무연고 노인 중심                                                                                                                                    | 지역사회 거주 및 시설<br>입소 발달장애인                                           | 시설 입소자 중심<br>(지역사회 거주자 대상<br>확대 추진 중(시범사업)) |
|                         | 후견 유형                      | 특정후견 원칙<br>(한정후견 예외)                                                                                                                                        | 특정후견 원칙<br>(한정후견 예외)                                               | 특정후견 원칙이나,<br>현재 피후견인의 약<br>95%가 한정후견       |
|                         | 특정후견<br>지속 여부<br>조사        | 종료 6개월 전 지속 여부<br>조사하여 지속 필요시<br>후견심판청구 진행<br>(연장 불가능)                                                                                                      | 종료 6개월 전 지속<br>여부 조사하여 지속<br>필요시 후견심판청구<br>진행(연장 불가능)              | 1회에 한하여<br>연장 가능<br>(종료 6개월 전<br>심사 진행)     |
| 후견인<br>특성 및<br>역할       | 후견인<br>특성                  | 자연인 후견<br>(시민 후견 중심)                                                                                                                                        | 자연인+법인 후견<br>(시민 및 친족 후견 중심)                                       | 법인 후견<br>(전문 후견)                            |
|                         | 후견 사무                      |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br>사무 중심                                                                                                                                        |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br>사무 중심                                               |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br>+ 고난도 사무                     |
|                         | 자격                         | 민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
|                         | 교육                         | - 교육 내용: 후견제도 및 피후견인에 대한 이해, 후견인의 직무와 역할,<br>후견심판 절차에 대한 이해 등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별로<br>자율적으로 구성<br>- 교육 시간: 기본교육 시수 상이(치매: 21시간, 발달장애인/정신질환자:<br>최소 30시간 이상) |                                                                    |                                             |
|                         | 피후견인<br>1인당<br>활동비         | 월 20만 원,<br>상한 월 40만 원                                                                                                                                      | 친족 후견: 활동비 없음<br>제3자 후견: 월 20만 원<br>(자연인) 상한 월 50만 원<br>(법인) 상한 없음 | 월 20만 원 기준으로<br>총사업비 산정하여 지급                |
| 전달<br>체계<br>구조 및<br>기능  | 사업 총괄                      | 보건복지부                                                                                                                                                       |                                                                    |                                             |
|                         | 신청 접수<br>및 대상자<br>선정       | 치매안심센터<br>(후견지원회의를<br>통한 선정)                                                                                                                                | 시·군·구                                                              | 보건복지부<br>(정신건강정책과,<br>국립정신건강센터)             |
|                         | 심판청구<br>대리 및<br>법률 자문      | 중앙치매센터,<br>(경기도: 광역치매센터)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심판청구 대리: 법인<br>법률 자문: 법인에서 외<br>부 전문가 활용    |
|                         | 후견인<br>(후보자)<br>교육 및<br>관리 | 광역치매센터                                                                                                                                                      | 친족 후견인: 발달장애인<br>지원센터<br>제3자 후견인: 공공후견<br>법인                       | 법인<br>(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br>보수 교육 일부 담당)           |
|                         | 후견감독                       | 법원 판결에 따라 선임<br>(제3자 후견의 경우 통상 해당 시·군·구를 후견감독인으로 선임)                                                                                                        |                                                                    |                                             |
|                         | 점검 및<br>서비스 질<br>관리        | (정기/수시) 사례관리를 위한 회의 진행<br>법인: 신상보호 중심의 서<br>비스 제공을 위한 피후견<br>인 방문 면담 실시(후견보<br>조인 활용, 피후견인 1인당<br>연간 평균 20회 이상)                                             |                                                                    |                                             |

출처: 연구진 작성

### 제3절 해외 사례 분석

현재 후견제도가 과거의 금치산·한정치산자 제도에 비해 진일보하였다는 사실은 민법 규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후견 유형을 다양화하여(민법 제9조, 제12조, 제14조의 2), 피후견인의 보호 및 복리를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심판으로 지정하고(민법 제936조, 제959조의 3, 제959조의 9), 사무의 범위도 사건별로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민법 제938조, 제947조, 제959조의 4, 제959조의 11). 이는 후견제도가 이전 제도에 비해 피후견인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설계됐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민법 규정만으로는 후견제도의 기본 이념인 ‘필요성, 보충성, 정상화’ 원칙을 충분히 실현하기에 한계가 있다. 민법은 후견제도를 큰 틀에서 정의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운영 사항에 대한 규정이 부족하다. 특히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이념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세부 규정이나 지원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후견제도를 우리보다 먼저 경험한 해외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해외 후견제도의 운영 사례는 후견제도의 이념이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다. 이를 위해 먼저 해외의 후견 전달체계와 지원체계가 우리나라와 어떻게 다른지 고찰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전달체계를 먼저 살펴보는 것은, 해외 국가의 경우 우리와 근본적으로 상이한 체계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큰 틀을 먼저 이해하고 세부 제도들을 검토하는 작업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측면에서 어떠한 규정과 제도들이 구체적으로 운영되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공공의 지원이 필요한 무자력 치매노인에 대한 후견제도 운영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독일과 일본의 후견제도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통합된 하나의 체계로 후견제도가 운영된다는 점에서 치매노인만을 위한 별도의 제도를 분석하지는 않았다. 아울러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 제도의 단순한 현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의사결정 지원 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에 있으므로, 관련한 실질적인 사례를 살펴보는 것에 역점을 두었다. 나아가 해외에서는 후견제도 외에도 다른 의사결정 지원 제도나 후견 대체제도가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나, 본 연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후견제도에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사전 대리권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는 제도는 본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연구 범위를 사전 대리권 등의 준비 없이 후견제도를 이용하는 치매 및 인지저하 노인이 의사결정 지원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 1. 후견제도의 전달체계 및 지원체계

### 가. 독일

#### 1) 개관

독일은 1990년에 성년후견법(Betreuungsgesetz)을 제정하여 기존의 행위무능력자 제도를 폐지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 법을 개정하여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람들의 권익과 복지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왔다(백승흠, 2011). 이 과정에서 후견법원, 성년후견청, 후견사단, 후견협회 같은 전달체계를 보완해왔으며, 2021년에는 성년후견조직법(Betreuungsorganisationsgesetz, BtOG)을 제정하여 성년후견제도의 조직과 운영을 규율하고, 기존 성년후견청법(Betreuungsbehördengesetz, BtBG)을 대체하였다. 이로 인해 성년후견제도의 운영이 보다 체



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독일은 후견제도 외에도 의사능력이 있는 시점에서 미리 대리권을 부여하는 사전 대리권 제도(Vorsorgevollmacht)를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 2020년 3월 기준으로 약 470만 건의 사전 대리권이 등록되어 있는데(Deutscher Bundestag, 2020), 이는 2016년 기준 법정후견인이 선임된 사람의 수가 약 130만 명인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치이다(Bundesverband der Berufsbetreuer/innen, n.d.). 이처럼 사전 대리권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은 독일 후견제도의 특징적 측면 중 하나이다.

법정후견인 중 약 52%는 자원봉사 성격의 후견인이며, 나머지 47%는 전문 후견인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자원봉사 후견인 중에서도 약 81%는 피후견인의 가족이 담당하고 있으며, 나머지 7%는 제3자에 의해 후견 업무가 이루어진다. 반면 전문 후견인 중 약 2%는 자영업 후견인이며, 약 0.5%는 후견사단 소속 후견인이 담당하고 있다(Brosey, 2022).

독일의 후견제도는 대리권 준비 없이 후견제도를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법정후견제도와 더불어 사전 대리권을 통해 미리 준비하는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 2) 후견제도 전달체계 및 지원체계

독일의 성년후견제도는 성년후견법원(Betreuungsgericht)과 정부 기관인 성년후견청(Betreuungsbehörde)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민간 부문에서는 성년후견사단(Betreuungsverein)과 성년후견협회(Arbeitsgemeinschaft für Betreuungsangelegenheiten)가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후견제도의 운영 및 지원을 담당한다(김윤정 외, 2017).

성년후견법원은 독일 법원조직법(GVG) 제23조c에 따라 독일 전역의

지방법원(Amtsgericht) 내에 설치되어 성년후견 관련 사건을 전담한다(GVG, 1877). 독일 전역에 약 638개의 지방법원이 있으며, 후견법원 역시 약 638개로 추정된다. 법원은 후견인의 선임, 후견 범위 결정, 후견인 해임, 후견 사무 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FamFG, 2008). 독일 후견법원의 역할은 우리나라와 유사하지만, 독일에서는 성년후견청이 법원의 심판 사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성년후견청은 독일 후견제도의 중추적 기관으로, 성년후견법원이 심리하는 거의 모든 사항에 대해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이 중 성년후견청은 피후견인의 개인적, 건강 및 사회적 상황을 포함한 사회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 보고서는 피후견인의 의사 및 복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BtOG § 11(2)). 우리나라의 경우 법원이 청구인에게 보고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으나, 독일처럼 후견청이 공적인 조사 역할을 맡아 보고서를 제출하는 체계는 갖추어지지 않았다. 독일 법원은 사회보고서를 통해 피후견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후견인의 역할과 결정이 피후견인의 의사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성년후견청은 또한 후견인 선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법원이 적합한 후견인을 선임하기 위해 성년후견청의 의견을 듣고, 필요시에는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받도록 하고 있다. 피후견인의 복지와 의사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후견인의 선임이 중요하지만, 법원이 모든 사건을 상세히 검토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후견청의 개입은 필수적이다(FamFG § 279). 후견청은 법원이 요청한 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후견 개시 심판 중 후견인의 권한 확대 필요 여부나 후견 지속 필요성 여부를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피후견인의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한 조사를 담당하며, 그 결과를 법원에 전달한다(김윤정 외, 2017).

또한 성년후견청은 후견인의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후견인의 적합성 검증, 후견인 후보자 모집 및 교육, 후견인 변경 및 후견 계획서 작성 지원 등을 담당하며, 피후견인의 의사를 반영하는 후견계획서 작성을 돕는다. 후견계획서는 피후견인의 권리와 선호를 존중하는 중요한 도구로, 후견청은 이 과정에서 피후견인이 계획 수립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김윤정 외, 2017).

[그림 3-4] 뮌헨시의 후견청 홈페이지의 후견인 모집 공고 및 후견인 교육·포럼 게시물


**muenchen.de**  
Das offizielle Stadtportal

Rathaus ▾
Veranstaltungen
Freizeit
Sehenswertes
Hotels
Verkehr
Jobs
Leben
Bürgerservice ▾

### 자영업 형태의 법적 전문 후견인(남/여/기타) 구함

뮌헨시 후견청에서 자영업 형태의 법적 전문 후견인을 찾고 있음.

**업무 내용:**  
후견인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더 이상 독립적으로 법률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지원함. 이 활동은 자영업 형태로 수행되고 다른 전문 후견인들과 사무실 공유도 가능함. 업무 시간의 범위와 담당할 후견 건수는 귀하가 직접 결정함.

---

### 전문 후견인을 위한 교류 포럼

친애하는 전문 후견인 여러분,

많은 분들의 요청에 따라 여러분께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서로 알아가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그 외에도 다양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함께 식사와 음료를 즐기면서 말입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제1회 전문 후견인 교류 포럼 초대장

**제목:** "전문 후견인을 위한 교류 포럼"  
**일시:** 2024. 7. 1.(월), 18:00~23:00

---

### 뮌헨시 후견청의 신규 전문 후견인을 위한 대면 교육

**제목:** "법적 후견 후보자를 위한 사무 조직 및 시간 관리"  
**일시:** 2024. 6. 12.(수), 14:00~17:00

출처: "Betreuungsstelle," Landeshauptstadt München, n.d.의 내용을 연구진이 번역 및 재구성함.  
 함: <https://stadt.muenchen.de/infos/betreuungsstelle.html>

성년후견청은 이외에도 후견인과 피후견인에 대한 상담 및 지원, 후견 관련 조직(성년후견사단 및 성년후견협회) 지원과 대국민 홍보 활동 등과 같은 다양한 업무를 담당한다.

이 같은 성년후견청의 역할은 성년후견조직법(BtOG)에 규정되어 있다. 후견법 관련 문제에 대한 정보 제공과 상담(BtOG § 5), 후견인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후견이 필요한 개인에 대한 지원(BtOG § 6), 후견제도를 보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도움을 증개하는 것(BtOG § 8) 등을 포함하며, 피후견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확장된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 역시 제시하고 있다. 일련의 역할을 통해 국민들이 후견과 관련된 사안을 일원화된 창구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기관으로 기능한다.

다음으로 독일의 성년후견제도 전달체계 중 민간기관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성년후견사단(Betreuungsverein)은 주로 명예 후견인에 대한 조언 및 지원을 제공하며, 후견인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후견인 모집 및 알선, 일반 시민들에게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 관계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2021년에 개정된 성년후견조직법(BtOG)은 후견사단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였다. 법에 따르면, 후견사단은 명예 후견인과 지속적 대리인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후견 관련 일반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공적 과제를 맡는다. 또한 후견사단의 직원이나 법인 자체가 후견인으로도 활동할 수 있다(BtOG § 15).

후견사단은 독일의 여러 주에서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니더작센(Niedersachsen) 주에서는 연간 최대 28,800유로,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주에서는 최대 24,000유로의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베를린 후견사단(Betreuungswerk Berlin)의 경우 후견인(Betreuerin) 5명,<sup>24)</sup> 사무원(Sachbearbeiter) 3명, 자원봉

사자 1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Betreuungswerk Berlin, n.d.). 후견사단은 전문 후견과 명예 후견의 교차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김윤정 외, 2017), 후견청 외에도 명예 후견인, 일반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후견 관련 창구로서 기능한다.

또한 성년후견협회(Arbeitsgemeinschaft für Betreuungsangelegenheiten)는 성년후견사단들의 연합체이며 성년후견 사건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성년후견제도 관련 정책 제안 및 입법 활동, 성년후견 관련 연구 및 자료 발간, 성년후견사단 간 정보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후견인 교육 및 지원, 명예 후견인 모집 및 관리, 성년후견 관련 정보 제공, 상담 등 각 지역 실정에 맞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일례로 함부르크 후견협회의 활동을 살펴보면 정기적으로 후견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워크숍을 제공하고 있으며, 후견법이 개정되면 그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도 후견인들을 교육하고 사전 의로지시서와 지속적 대리권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Hamburger Betreuungsvereine, n.d.). 이외에도 경험을 교류할 수 있는 모임을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시청에서 연례행사로 2024년 6월 ‘함부르크 성년후견의 날(Tag der Hamburger Betreuungsvereine)’을 개최하여 후견제도에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명예 후견인 모집 홍보 등을 수행한 바 있다(Hamburger Betreuungsvereine, n.d.).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의 성년후견제도는 성년후견청, 성년후견사단, 성년후견협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운영되며, 후견인과 피후견인에게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즉, 후견청은 후견인의 활동을 감독하고 지원하며, 후견사단과 후견협회는 후견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돕는 역할을 담당한다.

24) 대부분 변호사나 법학 출신

## 나. 일본

### 1) 개관

일본은 2000년 4월에 후견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후견제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2016년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성년후견이용촉진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성년후견 이용촉진 각료회의와 전문가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들이 수립 및 시행되고 있다. 특히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제1기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 기본계획이 시행되었고, 2022년부터 2026년까지는 제2기 기본계획이 진행 중이다.

주목할 점은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촉진을 국가적 과제로 삼고, 성년후견이용촉진회의 의장으로 ‘내각총리 대신’을 지정하였으며, 회의 위원은 유관 부처의 장관들로 구성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후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 전문가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들을 실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박인환(2021b)은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며, 중핵기관 설치 및 의사결정 지원 가이드라인 공표를 그 대표적인 사례로 들고 있다. 이처럼 일본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는 후견제도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의 보고서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성년후견제도(임의후견 포함) 전체 이용자는 총 249,484명으로, 이는 전년 대비 약 1.8% 증가한 수치이다. 성년후견 유형별로는 성년후견 이용자가 가장 많아 178,759명을 기록하였으며, 이어 보좌 52,089명, 보조 15,863명, 임의후견 2,773명 순으로 나타났다(最高裁判所, 2024). 일본의 고령화 수준에 비추어 후견 이용률은 낮은 편으로 평가되고 있으

며, 이를 근거로 일본은 성년후견이용 촉진을 범정부적 과제로 삼아 관련 법 제정 및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박인환, 2021b).

2023년에 성년후견과 관련해 법원에 청구를 신청한 건수는 총 40,951건으로, 이는 전년 대비 약 3.1%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약 70%인 28,358건이 후견 개시 신청(전년 대비 1.3% 증가)이었다. 특이한 점은 후견심판 청구인 중 시구정 촌장이 23.6%로, 본인(22.2%)이나 자녀(20.0%)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이다(最高裁判所, 2024). 후견 개시 원인으로는 치매가 가장 많아 전체의 약 62.6%를 차지하였고, 이어서 지적장애가 9.9%, 조현병이 8.8%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신청 동기로는 예금 등의 관리(37,531건, 31.1%)가 가장 많았고, 이어 신상보호(29,330건, 24.3%), 개호보험 계약(17,293건, 14.3%) 순이었다(最高裁判所, 2024).

후견인 유형의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2000년 후견제도 도입 초기에는 친족 후견인이 90% 이상을 차지했으나, 2023년 한 해 동안 선임된 후견인 중 친족 후견인은 18.1%에 불과하며, 나머지 81.9%는 제3자 후견인으로 나타났다(最高裁判所, 2024). 제3자 후견인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친족 후견인에 의한 부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가정재판소에서 전문가 후견인 선임을 의도적으로 늘린 결과로 해석된다(박인환, 2021b). 제3자 후견인으로는 주로 사법서사(35.9%), 변호사(26.8%), 사회복지사(18.4%)가 선임되며, 이외에도 후견법인(7.7%), 사회복지협의회(4.6%), 행정서사(4.6%), 시민 후견인(1.0%)이 활동하고 있다(最高裁判所, 2024).

일본에는 ‘공공후견청’ 같은 별도의 성년후견 전담 행정기관은 없다. 대신 공공 부문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법원과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가 후견 업무를 수행한다. 가정재판소는 후견 재판뿐만 아니라 절차 상담, 교육, 홍보, 정보 제공 등의 업무도 담당하며, 일부 지역 법원에서는 후견 센터를 설치하여 후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김윤정 외, 2017).

관련 정부 부처 중 법무성은 후견제도의 법적 기반 마련 및 등기제도 운영을, 후생노동성은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사업과 촉진 지원을 담당한다(厚生労働省, n.d.a). 지방자치단체는 후견이 필요한 사람을 발굴하고 법원에 후견 신청을 진행하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중핵기관 및 권리옹호센터를 설치해 지역 연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후견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실정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있다.

민간 부문에서는 일본변호사연합회, 사법서사단체(공익법인 성년후견센터·리걸서포트), 일본사회복지사회 같은 전문직 단체가 후견제도의 전달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지역별로 후견법인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일본의 후견 전달체계는 별도의 후견 전담 관청이 없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지역연계 네트워크’와 ‘중핵기관’ 운영에서 차별점을 보인다.

## 2) 후견제도 전달체계 및 지원체계

일본은 후견 전달체계에서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매우 중시하며 이를 ‘지역연계 네트워크(地域連携ネットワーク)’라고 부른다(박인환, 2021b). 후생노동성이 발간한 가이드에 따르면, 이 네트워크는 전국 어디서나 후견제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적절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에 상담 창구를 정비하고, 권리옹호가 필요한 사람을 발굴해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는 구조를 말한다(厚生労働省, 2018). 이 네트워크는 보건·의료·복지 체계에 사법 분야까지 포함해 협력 구조를 구축하고 있으며, 세 가지 주요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 권리옹호가 필요한 사람을 발굴 및 지원하는 것, 둘째, 초기 단계부터의 상담 및 대응 체계를 정비하는 것, 셋째, 의사결정 지원 및 신상보호를 중시한 성년후견제도의 운용에 기여하



는 것이다(厚生労働省, 2018).

이 네트워크는 두 가지 기본 구조를 중심으로 작동한다. 하나는 피후견인과 후견인을 함께 지원하는 ‘팀’이며, 다른 하나는 지역 내의 ‘협의회’이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원활히 운영하고, 협의회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서 이를 총괄하는 허브 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厚生労働省, n.d.b). 후생노동성과 시구청촌으로 이어지는 기본적인 행정 전달체계가 있으며, 복지 전달체계로는 지역 단위의 지역포괄지원센터(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도 존재하지만, 후견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별도의 허브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허브 기관은 ‘중핵기관(中核機関)’이라 불리며, 지역 내에서 후견 관련 문제들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표 3-22〉 지역연계 네트워크의 구성요소

| 구분 | 내용                                                                                                                                                                                                                                                                                                                                                                                                                                                                                                                                                                                                                                                                                                                                                                                                                                           |
|----|----------------------------------------------------------------------------------------------------------------------------------------------------------------------------------------------------------------------------------------------------------------------------------------------------------------------------------------------------------------------------------------------------------------------------------------------------------------------------------------------------------------------------------------------------------------------------------------------------------------------------------------------------------------------------------------------------------------------------------------------------------------------------------------------------------------------------------------------|
| 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과 가까운 친족, 복자의료·지역사회 등 관계자와 후견인이 팀으로 구성되어 일상적으로 본인을 지켜보고, 본인의 의사나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필요한 대응을 하는 구조</li> <li>- 팀의 구성은 구체적으로 본인과 가까운 친척, 친구, 복지나 의료 관계자, 이웃 주민, 동네 상인, 금융기관, 민생위원 등 공식적·비공식적 개인과 기관, 기본적으로 일상생활권역(경우에 따라서는 지자체권역) 내의 사람으로 구성될 것(팀 구성원 예시: 케어매니저, 상담지원전문요원, 생활보호사례관리사, 보건사, 정신보건복지사, 입소기관, 입원기관, 사회복지시설, 치매초기집중지원팀, 치매질환의료센터, 요양서비스사업소, 장애인복지서비스사업소,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병원, 치매안심병원, 장애인복지서비스사업소, 방문간호사, 민생위원, 시군구 창구, 필요에 따라 전문직)</li> <li>- 후견 개시 이전에는 지역 내에서 권리옹호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발굴하여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시키는(본인과 사회와의 관계 회복) 기능을 수행하고 후견 개시 이후에는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신상보호를 중시하는 성년후견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법적 권한을 가진 후견인이 후견인으로서 후견을 수행</li> <li>- 후견인과 지역 관계자 등이 협력하여 일상적으로 본인을 보살피고, 본인의 의사나 상황을 가능한 한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li> <li>- 필요에 따라 복지, 법률 전문가가 전문적 자문 및 대응 등의 지원에 참여하며 가능한 한 기존 지원의 틀을 활용하여 구성</li> </ul> |

| 구분   | 내용                                                                                                                                                                                                                                                                                                                                                                                                                                                                                                                                                                               |
|------|----------------------------------------------------------------------------------------------------------------------------------------------------------------------------------------------------------------------------------------------------------------------------------------------------------------------------------------------------------------------------------------------------------------------------------------------------------------------------------------------------------------------------------------------------------------------------------|
| 협의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견 등 개시 전후를 막론하고 '팀'에 대해 법률, 복지 직능단체 및 관계기관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각 지역에서 직능단체 및 관계기관이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각 직능단체 및 각 관계기관이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의체</li> <li>- 협의체를 통해 팀(특히 친족 후견인 등)에 대한 적절한 백업 체계를 정비하고 사례회의 등을 통해 어려운 사례에 대처 가능, 다직종 간의 연계 가능, 성년후견제도를 포함한 지역의 권리옹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 가정법원과의 정보교환과 조율</li> </ul>                                                                                                                                                                                                                                       |
| 중핵기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가의 전문적 자문 등 지원책 확보와 협의회 사무국 등 지역 연계 네트워크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li> <li>- 지역연계 네트워크가 홍보, 상담,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기능, 후견인 지원의 4가지 기능을 단계적·계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li> <li>- 다양한 사례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 복지 등의 전문지식과 지역 내 전문가 및 다양한 관계자와의 신뢰관계를 유지 및 발전시켜 원활한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노하우 등을 단계적으로 축적하면서 지역 내 연계 및 지역 내 대응 체계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역할</li> <li>- 지역 실정에 따라 시구정촌이 기존에 설치한 '성년후견지원센터'나 '권리옹호센터' 등 기존의 기관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나, 시구정촌에 중핵기관의 설치 및 운영 책임 부여(위탁 가능)</li> <li>- 중핵기관이 담당해야 할 업무의 범위는 지역연계 네트워크의 관계기관과 분담하는 등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조정</li> </ul> |

출처: “地域における成年後見制度利用促進に向けた体制整備のための手引き,” 厚生労働省, 2018, pp. iii-iv의 내용을 연구진이 번역 및 재구성함. <https://www.mhlw.go.jp/content/000503081.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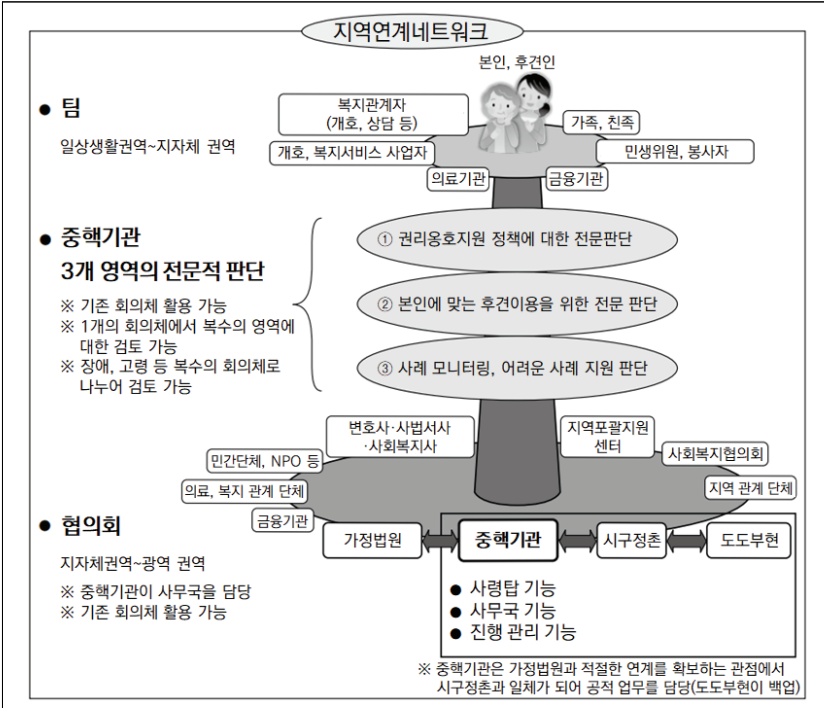
일본의 후견 전달체계에서 중핵기관은 지역연계 네트워크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 기관이다. 중핵기관은 지역 내 전문가들과 법률, 복지 등의 다양한 사례에 대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관련하여 제1기 성년후견이용촉진 계획에서는 핵심 목표 중 하나로 권리옹호 지원을 위한 지역연계 네트워크의 형성을 설정하고, 이를 위해 일본의 시구정촌 1,741개가 중핵기관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厚生労働省, n.d.b).

이와 같은 중핵기관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사례접촉 기능으로, 지역에서 다양한 관계자들이 협력하여 후견 대상자에 대

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핵기관은 이 과정에서 전반적인 후견 업무를 조정하는 등 네트워크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두 번째는 사무국 기능으로, 지역 내 협의회를 운영하며 가정법원과 지자체, 다양한 직능단체 및 관계기관이 협력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즉, 협의회와 원활한 운영을 통해 지역연계 네트워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세 번째는 진행 관리 기능이다. 중핵기관은 후견 업무를 총괄 진행하며, 중요한 판단을 내리고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권리옹호 지원 정책에 대한 검토, 성년후견제도의 적합한 이용 여부 검토, 고난이도 사례의 모니터링과 지원에 대한 판단 등이 포함된다. 중핵기관은 네트워크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후견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사무를 조정하고, 후견인이 모든 업무를 혼자 해결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중핵기관은 새로운 협의체를 만들지 않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지역케어회이나 장애인종합지원법에 근거한 협의체를 활용하여 후견 사례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나아가 지역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후견 사례를 처리하기 위해 복지 및 법률 전문가와 긴밀히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과의 연계하여 조정 및 관리하는 역할 역시 수행한다.

[그림 3-5] 지역연계 네트워크 및 중핵기관의 역할 도식



출처: “地域における成年後見制度利用促進に向けた体制整備のための手引き,” 厚生労働省, 2018, p. 15의 내용을 연구진이 번역 및 재구성함. <https://www.mhlw.go.jp/content/000503081.pdf>

일본의 중핵기관은 시구청촌이 직접 운영할 수 있지만,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중핵기관의 운영 형태는 지역 실정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시구청촌의 복지종합상담실이나 지역포괄지원센터 내에 중핵기관을 설치하는 방식, 지자체의 소관부서와 외부 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식, 사회복지협의회, NPO법인, 공익법인 등 외부 법인에 중핵기관을 위탁하는 방식, 또는 복수의 시구청촌이 광역적으로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식 등이 있다. 이 경우, 1개의 지자체를 간사로 지정하거나, 각 시구청촌이 별도로 위탁하는 방식이 포함된다(厚

生労働省, n.d.e).

이처럼 중핵기관은 매우 유연하게 운영되며, 운영 방식은 각 지역의 실정에 맞출 수 있다. 예를 들어, 치타 지역의 경우 9개의 지자체가 NPO법인 한 곳에 중핵기관 역할을 부여하였고, 해당 법인은 중핵기관 역할뿐만 아니라 후견법인의 역할도 수행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제1기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 계획에 이어 제2기 계획에서도 중핵기관 설치 및 정비와 관련한 정책과제가 지속되고 있다.

2019년 중간 검증 당시에는 전체 1,741개 시구정촌 중 160개(9.2%)가 중핵기관을 정비하였고, 429개(24.6%)가 권리옹호센터를 설치한 상태로 목표에 미치지 못한 성과를 보였다(厚生労働省, n.d.b). 그러나 지속적인 정부의 노력으로 2023년 4월 기준, 1,070개(61.5%) 시구정촌이 중핵기관 정비를 완료하였고, 정비 예정인 곳까지 포함하면 1,293개 시구정촌(74.3%)이 중핵기관 설치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 50만 명 이상인 시구정촌은 100% 정비를 완료하였다(厚生労働省, 2024).

일본의 후견 전달체계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지자체별 정책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연계 네트워크와 중핵기관을 활용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시구정촌 및 중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 시구정촌의 실천 사례 소개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할 뿐 아니라 실무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창구(K-넷)를 전국사회복지협의회에 개설하였다(厚生労働省, 2024). 또한 후견제도와 관련한 포털사이트 운영, 각종 안내서 배포, 도도부현 중핵기관의 사례집 발간, 뉴스레터 발행 등의 활동을 통해 지자체 간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厚生労働省, 2024).

다음 그림은 일본 정부에서 개설한 성년후견 자료 포털 사이트이다. 다

132 성년후견제도 운영 개선 방안 모색: 치매 및 인지저하 노인의 의사결정 지원을 중심으로

른 도도부현이나 시구정촌의 대응 상황을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연수 동영상 자료 등은 별도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활용할 수 있다.

[그림 3-6] 시구정촌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

成年後見 はわかり

ホーム

ふりがなをつける

調べたい語句を入力

検索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에게 /  
 존중받을 수 있는 삶을 함께 만든다

성년후견제도  
せいねんこうけんせいど

본인·가족·지역  
여러분께

제도에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이야기합니다.

성년후견제도란

임의후견제도란

법정후견제도란

지원을 고려중인  
여러분께

당신이 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시민후견인이란

법인후견인이란

지역관계기관

지자체·중핵기관  
여러분께

체제 정비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후견의 이해 모음

대처 사례 소개

연수 동영상

成年後見 はわかり

ホーム

ふりがなをつける

ログイン

調べたい語句を入力

検索

지자체·중핵기관 여러분께

지자체·중핵기관의 대처 사례 검색

후생노동성의 중핵기관에 대한 연구 사업에 의해 “중핵기관의 정비, 대처 사례집”이 정리되었습니다.  
이 사례집 내용 외 후생노동성 성년후견 촉진 홈페이지에 소개된 각 지자체의 대처 사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중핵기관의 대처 사례 검색

도도부현

시구정촌

지자체 연구

고령화율

설치방법

운영방법(적령, 위탁 등)

- 출처: 1) “成年後見はわかり,” 厚生労働省, n.d.g의 내용을 연구진이 번역 및 재구성함. <https://guardianship.mhlw.go.jp/>
- 2) “自治体中核機関の取組事例検索,” 厚生労働省, n.d.h의 내용을 연구진이 번역 및 재구성함. <https://guardianship.mhlw.go.jp/municipality/search/>

일본의 K-넷은 성년후견제도와 관련된 전국적인 상담 체제를 갖추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이 상담 창구는 권리옹호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적절히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구정촌, 중핵기관, 도도부현, 사회복지협의회 직원 등을 대상으로 상담을 제공하며, 이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돕는다(厚生労働省, 2024).

상담자는 지역의 행정 기관, 사회복지협의회, 전문가 단체, 가정법원 등과 연계하여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상담자는 상담 내용을 듣고 해결 방침을 검토하며, 다른 지자체의 사례나 참고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적절한 상담처를 소개해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이러한 전국적인 상담 체제는 각 지역에서 성년후견제도가 일관되게 운영되도록 보장하며, 권리옹호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빠르고 적절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같이 K-넷은 성년후견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3-7] 후건 관련 상담 창구 K-NET



출처: “K- ネット,” 厚生労働省, n.d.i의 내용을 연구진이 번역하여 제시함. <https://www.mhlw.go.jp/content/12000000/001112978.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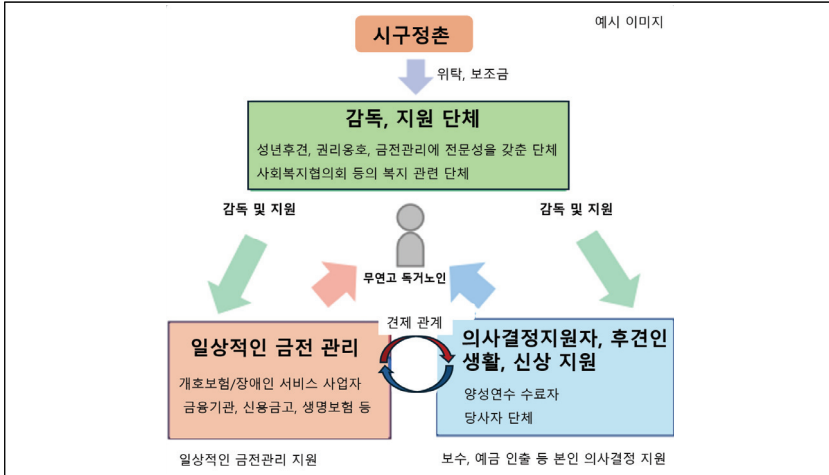
나아가 일본 정부는 성년후견제도와 기존 복지 지원 전달체계의 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후생노동성은 ‘성년후견제도와 권리옹호 지원책 등 연계 강화 사업’을 통해, 생활보호제도, 일상생활 자립지원, 기타 권리옹호제도가 성년후견제도와 조화롭게 활용되도록 강조한다(厚生労働省, n.d.d). 이 사업은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일상생활 자립 지원에서 성년후견제도로의 적절한 이행을 촉진하고, 후견제도와 기존의 권리옹호 지원책 간 연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厚生労働省, 2024).

이에 따라 제2기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 계획에서는 제1기의 지역연계 네트워크 구축 목표를 이어받아, 추가로 ‘새로운 권리옹호 지원책의 구축’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厚生労働省, n.d.c). 이는 성년후견제도가 다른 권리옹호 지원제도와 별개로 운영될 수 없다는 일본 정부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권리옹호 지원모델 사업’을 통해 새로운 지원책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후견제도가 단순한 법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과 자립을 위한 복지지원과 긴밀히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통합하고 연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역연계 네트워크 구축과 새로운 권리옹호 지원책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일본 정부의 장기적인 목표라 할 수 있다.



[그림 3-8] 무연고 독거 노인에 대해 시정촌이 관여한 새로운 권리옹호 및 의사결정 지원 대처 예시



출처: “成年後見制度利用促進に係る取組状況等について,” 厚生労働省, 2024, p. 27의 내용을 연구진이 번역하여 제시함. <https://www.mhlw.go.jp/content/12000000/001228464.pdf>

치매 유병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권리옹호 지원에 대한 요구 역시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의 시정촌은 다양한 대책을 연구하고 실천 사례를 축적하며, 축적된 사례를 바탕으로 모델을 구축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厚生労働省, 2024). 단순히 성년후견제도에 국한하지 않고, 후견제도 이외에도 다양한 권리 옹호 지원책을 균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무연고 독거 노인의 생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정촌은 새로운 생활 지원 방식, 자금 관리 방법, 의사결정 지원 대응책 등을 시행하고, 사례들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화 가능성을 검토하며, 정책적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검증해 나가고 있다(厚生労働省, 2024).

이러한 접근은 앞으로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그에 따른 권리옹호

요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방향으로, 시구정촌이 보다 구체적인 실천 사례를 통해 사회적 지원체계를 강화해나가는 과정이라 하겠다.

## 2. 의사결정 지원 및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후견 활용 방안

### 가. 독일

독일의 후견제도는 국가 차원에서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여러 법률을 통해 이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후견법 및 성년후견법 개혁법(Gesetz zur Reform des Vormundschafts- und Betreuungsrechts)을 통해 이를 더욱 강화하였다. 이 개혁법은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원칙을 반영하여,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Brosey, 2022). 구체적으로, 독일 법률이 어떻게 의사결정 지원을 중심으로 후견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를 후견의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후견인 선임 이전 단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

첫째, 독일은 피후견인의 의사를 미리 남길 수 있도록 사전 의료지시서(Patientenverfügung)와 후견 지시서(Betreuungsverfügung)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치매나 기타 질병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되기 전에 이러한 지시서를 작성하도록 권고하며, 법무부와 후견청을 통해 양식과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사전 지시서를 작성하면, 후견인은 피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어 피후견인의 의사를 더욱 존중할 수 있다.

사전 대리권 제도(Vorsorgevollmacht)는 후견제도를 대체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후견인이 직접 활용할 수 없으나, 사전 의료지시서와 후견지시서는 후견제도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만약 사전 의료지시서가 작성되어 있으면, 후견인은 그 지시서가 현재 상황에 적용 가능한지 검토한 후, 적용 가능한 경우 질병의 종류나 단계에 관계없이 피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치료를 이행해야 한다(BGB § 1827(1)). 사전 의료지시서가 없거나 적용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자의 치료 희망 사항이나 추정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BGB § 1827(2)). 이러한 사전 의료지시서는 후견이 이미 개시된 후에도 작성될 수 있으며, 후견인은 이를 피후견인에게 알리고 필요할 경우 지시서 작성을 지원해야 한다(BGB § 1827(4)).

또한 정부는 후견 지시서를 작성하도록 권장하는데, 이는 후견이 필요한 상황을 대비해 자신의 의사를 미리 명시하는 법적 문서이다(Bundesministerium der Justiz, 2023a). 이 문서에는 원하는 후견인, 배제하고 싶은 후견인, 후견인의 역할에 대한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Bobisch, n.d.). 후견 지시서는 법원이 명령한 후견을 피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구체화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법원과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지시서 내용에 구속된다(Bundesministerium der Justiz, 2023a). 후견 지시서는 사전 대리권 제도와 함께 작성되며, 중앙 사전돌봄등록부(Zentrales Vorsorgeregister)에 등록할 수 있다.

## 2) 후견인 선임 단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안

독일은 후견인 선임 단계에서 후견의 보충성 원칙이 잘 반영되도록 여러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첫째, 독일 민법은 후견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지정되도록 하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BGB § 1814(3)). 다른 대리인이나 지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후견을 피해야 한다. 둘째, 개정된 성년 후견조직법(BtOG)은 후견제도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충적으로 사용되도록 ‘확장된 지원’ 개념을 도입했다. 이는 사회보고서를 작성할 때 후견 대신 가능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후견 당국의 의무로 명시되어 있다(BtOG § 11(3)). 확장된 지원이란 개념은 법적 후견 대신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제한된 기간(3~6개월) 동안 전문 사례관리 형태로 제공되며, 필요시 후견사단이나 전문 후견인이 이를 수행할 수 있다(BGT e.V., n.d.). 셋째, 사회복지 기관들도 후견 당국과 협력해 후견 대신 다른 지원 방법을 찾도록 의무화하고 있다(SGB I § 17(4)).

후견 개시 심판 과정에서도 피후견인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후견청이 피후견인의 의사 존중 원칙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적으로 후견인 선임, 동의권 제한 명령, 법원 허가 시 법원이 당사자를 직접 심문해 그의 희망 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 관계인의 의견도 들을 수 있도록 한다(FamFG § 278, § 279, § 298). 만약 피후견인이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못할 경우, 법원은 절차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FamFG § 276). 2021년 법 개정예 따라, 피후견인이 특정인을 후견인으로 지명하면 법원은 해당 인물이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하며, 특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그 거부를 존중해야 한다(BGB § 1816(2)).

[그림 3-9] 독일 법무부의 후견 개정법 사항에 대한 홍보 포스터

|  |                                                                                                                                                                                                                                                                                                                                                                                                                                                                                                                                                                                                                                                 |
|--|-------------------------------------------------------------------------------------------------------------------------------------------------------------------------------------------------------------------------------------------------------------------------------------------------------------------------------------------------------------------------------------------------------------------------------------------------------------------------------------------------------------------------------------------------------------------------------------------------------------------------------------------------|
|  | <p>“GEMEINSAM. AUF MEINEM WEG.”<br/>       “함께. 내 길에서.”</p> <p>“Zu mehr Selbstbestimmung in der Betreuung.”<br/>       후견에서 더 많은 자기결정권을 위해</p> <p>“Mehr Selbstbestimmung und Mitsprache. Bessere Qualität und Aufsicht. Eine individuellere Betreuung. Dafür stehen das neue Betreuungsrecht und alle Menschen, die es umsetzen.”<br/>       더 많은 자기결정권과 참여. 더 나은 전문화된 후견 사무와 감독. 더 개별화된 돌봄. 이를 위해 새로운 후견법과 이를 실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p> <p>“Mehr unter <a href="https://www.bmj.de/betreuungsrecht">www.bmj.de/betreuungsrecht</a>”<br/>       더 자세한 내용은 <a href="https://www.bmj.de/betreuungsrecht">www.bmj.de/betreuungsrecht</a>에서 확인하세요.</p> |
|--|-------------------------------------------------------------------------------------------------------------------------------------------------------------------------------------------------------------------------------------------------------------------------------------------------------------------------------------------------------------------------------------------------------------------------------------------------------------------------------------------------------------------------------------------------------------------------------------------------------------------------------------------------|

출처: “Gemeinsam. Auf meinem Weg. Zu mehr Selbstbestimmung in der Betreuung,”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n.d의 내용을 연구진이 번역하여 제시함. [https://www.bmj.de/SharedDocs/Publikationen/DE/Broschueren/Betreuungsrecht\\_Platat\\_2.html](https://www.bmj.de/SharedDocs/Publikationen/DE/Broschueren/Betreuungsrecht_Platat_2.html)

### 3) 후견인 활동 단계에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후견인 활동 단계에서 독일은 피후견인의 의사 반영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다.

독일 민법은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도록 후견인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적 사무를 처리할 때 대리권을 필요한 범위에서만 사용하여 후견인의 대리 의사결정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BGB § 1821(1)). 또한 후견인은 피후견인이 가능한 한 자율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후견 사무를 수행하며, 피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그의 희망을 따라야 한다(BGB § 1821(2)(3)). 이를 위해 후견인은 피후견인과의 정기적인 개인적 접촉을 유지하고, 그의 선호와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BGB § 1821(5)).

피후견인의 현재 의사뿐만 아니라 과거의 의사도 존중해야 하며(BGB § 1821(2)), 피후견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거나 그 의사를 따를 수 없는 경우, 후견인은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피후견인의 추정적 의사를 파악해야 한다. 이때 피후견인의 이전 발언, 윤리적 또는 종교적 신념, 기타 개인적 가치관을 고려해야 함을 명시한다(BGB § 1821(4)).

특히 민법 제1821조 제6항에서는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자기결정 역량을 회복시키거나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후견의 궁극적인 목적이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 행사 능력의 회복임을 나타낸다(Bobisch, n.d.).

또한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의사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피후견인의 의사를 적절히 반영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직접 피후견인을 청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BGB § 1862). 후견인은 선임된 후 3개월 내에 초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피후견인의 개인적 상황과 후견에 대한 희망 사항이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BGB § 1863(1)). 연례 보고서 역시 피후견인의 의사를 반영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피후견인과의 개인적 접촉의 종류, 범위, 이유 등을 기재하여 법원이 후견인의 활동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BGB § 1863(3)).

전문 후견인 등록 시 ‘후견에 있어서의 의사소통 및 지원된 의사결정 방법’에 대한 교육을 45시간 이수해야 한다(BtRegV § 3). 지원된 의사결정이란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방식으로, 2021년 법 개정에서 추가된 주요 개념 중 하나이다(Bundesministerium der Justiz, n.d.).

마지막으로, 독일 법률은 후견의 지속 여부에 대해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후견 개시 때뿐만 아니라 후견이 계속 유지될 필요성이 있는지도 법

원이 정기적으로 검토한다(BGB § 1863(3)). 이는 우리의 성년, 한정 후견의 경우 후견 개시 사유가 소멸되기 전까지 후견이 지속되어야 하는 것과 대비된다.

의사결정 지원 중심으로 후견제도가 운영되기 위해 독일에서 취하고 있는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3-23〉 의사결정 지원 중심으로 후견제도가 운용되도록 하는 방안

| 분류           | 방안                                                                                                                                                                                                                                                                                                                                                         |
|--------------|------------------------------------------------------------------------------------------------------------------------------------------------------------------------------------------------------------------------------------------------------------------------------------------------------------------------------------------------------------|
| 후견인 선임 이전 단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 의료지시서, 사전 후견 지시서를 통해 본인 의사를 표시</li> <li>- 해당 지시서의 내용대로 후견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li> </ul>                                                                                                                                                                                                                               |
| 후견인 선임 단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견 보충성의 원칙 반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후견 이용하도록 원칙 천명</li> <li>2) 후견 당국에 확장된 지원 가능성(후견 외의 방식)에 대한 검토 의무</li> </ol> </li> <li>- 사회복지 관련 기관들도 후견 외의 방법을 검토할 의무</li> </ul>                                                                                               |
| 후견인 선임 단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판 과정에서 피후견인 의사 반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후견청이라는 별도의 기관을 통해 피후견인의 의사를 전문적으로 반영</li> <li>2) 사회조사보고서를 통해 본인 의사를 조사</li> <li>3) 희망사항 등 당사자를 직접 심문할 의무를 법원에 부여</li> <li>4) 당사자가 의사 표시가 어려운 경우 절차 보조인 선임</li> <li>5) 당사자의 후견인에 대한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li> </ol> </li> </ul>                 |
| 후견활동 단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상 대리권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규정</li> <li>- 후견인은 피후견인과 개인적 접촉을 할 의무 부여</li> <li>-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개인적 상황과 선호를 파악하고 논의하도록 규정</li> <li>- 피후견인의 자기결정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의무</li> <li>-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의사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심문</li> <li>- 법원에 제출하는 보고서상 피후견인 의사를 기준으로 하도록 기재</li> <li>- 후견이 필요 없이 지속되지 않도록 후견 중단 여부를 검토하도록 요구</li> </ul> |

출처: 연구진 작성

## 나. 일본

일본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국가 차원에서 후견제도가 피후견인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후견 선임 이전 단계보다 후견활동 단계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최근 의사결정 지원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 내용을 통해 후견 활동 단계에서의 의사결정 지원 방식에 대해 더욱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일본은 제1기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 계획에서 의사결정 지원에 관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이 계획에는 의사결정 지원 가이드라인 제정, 후견인 및 관련 직원 대상 의사결정 지원 교육 실시, 2025년까지 치매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의사결정 지원 내용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장애인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효과 연구도 포함되었다(厚生労働省, n.d.b). 이러한 정책들은 성년후견제도가 단순히 법적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본인다운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제2기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 기본계획에서도 이러한 정책들이 연속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우리나라의 특정후견과 유사한 보조 후견 및 임의 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厚生労働省, n.d.c). 이 계획의 핵심은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후견 사무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2020년에 최고재판소, 후생노동성, 일본변호사연합회, 리걸 서포트, 일본사회복지사회가 참여한 의사결정 지원 워킹 그룹을 통해 의사결정 지원 기반 후견 사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最高裁判所, 2020). 이 가이드라인은 후견인이나 중핵기관, 지자체 직원들이 실무에서 의사결정 지원 역할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후견활동에서 피후견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후견인의 의사가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다. 후견인이 모든 의사결정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후견인이 직접 결정할 수 없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을 때에만 후견인이 대행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때도 피후견인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추정해 결정을 내려야 하며, 이후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시 피후견인의 의사능력을 추정하는 지원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후견 사무의 모범적인 처리 방식을 국가 차원에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박인환, 2021b).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서식 중 하나는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능력을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 실무자가 후견인이 대리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돕는다(最高裁判所, 2020). 예를 들어, 후견인은 피후견인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대행 결정을 피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대리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평가 도구는 후견인의 판단이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능력을 침해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 치매공공후견사업의 경우, 치매 진단서를 통해 주로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능력을 확인하며 후견 필요성 여부 역시 필요 사무를 중심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에 반해 일본은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능력을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서식과 도구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사결정 지원 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10] 의사결정 능력의 평가 시트

|             |  |     |  |    |  |
|-------------|--|-----|--|----|--|
| 본인          |  | 가입자 |  | 관계 |  |
| 과제가 되는 의사결정 |  |     |  |    |  |
| 과거의 지원 상황   |  |     |  |    |  |
| 실시일         |  |     |  |    |  |
| 검토 멤버       |  |     |  |    |  |

|                                              |                                                                                                                                                                                                                      |
|----------------------------------------------|----------------------------------------------------------------------------------------------------------------------------------------------------------------------------------------------------------------------|
|                                              | 의사결정의 기한이 다가오고 있으며,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는 상태인가?<br><input type="checkbox"/> 연장할 수 없다(기한: 연월일까지)<br><input type="checkbox"/> 연장할 수 있다 ➡ 【양식 1】로 돌아온다.                                                                         |
| A 의사결정을 내리는 장면에서 다음의 4가지 요소 중 충족하지 않은 것이 있는가 | <input type="checkbox"/> 본인이 관련 정보를 이해하지 못했다.<br><input type="checkbox"/> 본인이 관련 정보에 대해 기억을 유지할 수 없었다.<br><input type="checkbox"/> 본인이 관련 정보에 대해 비교 검토할 수 없었다.<br><input type="checkbox"/> 본인이 의사를 표현할 수 없었다.<br>근거: |
| B 상기 기한까지 실행 가능한 의사결정 지원을 다 하였는가             | <input type="checkbox"/> 기한까지 가능한 지원은 모두 다 하였다.<br>지원 내용:<br><input type="checkbox"/> 실행 가능한 자원이 남아 있다.                                                                                                              |

상기 평가 결과,

☐ A, B 모두 적용 가능 => 본인이 위 과제에 대해 의사결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평가된다.  
(의사 추정 접근법)

☐ 그 외 => 의사결정 지원으로 돌아간다.

출처: “意思決定支援を踏まえた後見事務のガイドライン,” 最高裁判所, 2020의 내용을 연구진이 번역하여 제시함. <https://www.mhlw.go.jp/content/000750502.pdf>

둘째, 일본의 의사결정 지원 가이드라인은 후견인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의사결정 지원이란, 피후견인이 특정 행위에 대한 판단에 어려움을 겪을 때, 후견인이나 관련 지원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피후견인의 의사나 생각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말한다. 이를 통해 피후견인은 자신의 가치관과 선호에 따라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의사 형성을 돕고, 그가 자신의 결정을 표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즉, 후견인의 역할을 의사 형성 지원과 의사 표명 지원으로 나누어 세분화하고 있다. 의사 형성 지원은 피후견인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의사소통을 통해 돕는 활동이며, 의사 표명 지원은 피후견인이 자신의 결정을 외부에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다. 구체적으로 후견인은 피후견인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여러 선택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후견인이 자신의 가치관과 선호에 맞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질문하며 논의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이 과정에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말을 경청하고, 그가 주도적으로 의사 형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세부 지침은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대리 결정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후견 업무를 수행하도록 안내한다. 특히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의사 형성과 의사 표명을 지원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후견활동의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最高裁判所, 2020).

〈표 3-24〉 본인이 직접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                |                                                                                                                                                                                                                                                                                                                                                                                                                                              |
|----------------|----------------------------------------------------------------------------------------------------------------------------------------------------------------------------------------------------------------------------------------------------------------------------------------------------------------------------------------------------------------------------------------------------------------------------------------------|
| 의사<br>형성<br>지원 | <input type="checkbox"/> 후견인이 판단하기 전에 본인의 희망에 주목하고 가능한 한 ‘열린’ 질문을 찾는다.<br><input type="checkbox"/> 본인의 이해와 지원자들의 이해에 차이는 없는가?<br>- 본인에게 설명해 달라고 한다. 같은 취지의 질문을, 시간을 두고, 다른 각도에서 하고 설명된 내용을 잊어버릴 수 있으므로 그때마다 설명한다.<br>- 본인에게 체험을 받게 함으로써 본인의 이해를 깊게 한다.<br><input type="checkbox"/> 선택사항을 제시할 때의 잘 궁리가 되어 있는가?<br>- 비교 포인트, 중요한 포인트를 알기 쉽게 보여준다.<br>- 문자로 한다. 그림이나 표를 사용한다. 화이트보드 등도 활용한다.<br><input type="checkbox"/> 타인으로부터의 「부당한 영향」은 없는가? |
|----------------|----------------------------------------------------------------------------------------------------------------------------------------------------------------------------------------------------------------------------------------------------------------------------------------------------------------------------------------------------------------------------------------------------------------------------------------------|

|                         |                                                                                                                                                                                                                                                                                                                                                                                                                                                                                                                  |
|-------------------------|------------------------------------------------------------------------------------------------------------------------------------------------------------------------------------------------------------------------------------------------------------------------------------------------------------------------------------------------------------------------------------------------------------------------------------------------------------------------------------------------------------------|
| <p>의사<br/>표명<br/>지원</p> | <p><input type="checkbox"/> 시간을 충분히 두고 커뮤니케이션을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요한 의사결정의 경우에는 시간을 두고 다시 의사를 확인한다.</li> <li>- 시간의 경과나 놓인 상황, 동석자의 영향에 의해 의사는 바뀔 수 있다</li> <li>- 본인에게 의사결정을 강요하지 않는다</li> </ul> <p><input type="checkbox"/> 본인이 표명한 의사가 그때까지의 본인이 보여온 가치관 등과 부합하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금까지와의 판단과 다른 경우보다 신중하게 본인의 의사를 살펴본다.</li> <li>- 표면상의 말에 얽매이지 않고 본인의 진심을 탐구한다.</li> </ul> <p><input type="checkbox"/> 의사를 표명하기 어려운 요인이나 타인으로부터의 부당한 영향은 없는가?</p> |
|-------------------------|------------------------------------------------------------------------------------------------------------------------------------------------------------------------------------------------------------------------------------------------------------------------------------------------------------------------------------------------------------------------------------------------------------------------------------------------------------------------------------------------------------------|

출처: “意思決定支援を踏まえた後見事務のガイドライン,” 最高裁判所, 2020의 내용을 연구진이 번역하여 제시함. <https://www.mhlw.go.jp/content/000750502.pdf>

셋째, 가이드라인에서는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이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평소에 의사결정 경험을 제공해야 하며, 모든 지원 인력 또한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후견인과 피후견인 간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피후견인이 자신의 결정을 보다 잘 내릴 수 있도록 돕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最高裁判所, 2020).

넷째, 팀에 의한 지원의 필요성 역시 강조한다. 의사결정 지원은 한 명의 후견인이 아니라 여러 지원자가 함께 논의하고 협력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가이드라인의 핵심 중 하나이다. 후견인은 피후견인과 함께 일하는 모든 관계자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논의하고, 그 논의에 피후견인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논의 과정에서 피후견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피후견인이 본인의 생각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 역시 강조하고 있다(박인환, 2021b).

또한 가이드라인은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의사결정 지원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다. 예를 들어, 재산관리에서는 피후견인의 일상적인 소액 지출 습관을 존중하되 과도한 지출을 방지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신상보호에서는 의료 결정 시 피후견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선호도를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피후

견인이 자신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필요 이상의 권리 제한을 피하고 적절한 후견 유형을 선택하도록 후견 제도의 적절한 이용을 촉진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最高裁判所, 2020).

이 가이드라인은 일본 후견제도가 피후견인의 의사와 선호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후견인을 단순한 대리인이 아닌 의사결정 지원자로 재정의하고, 실무에서 이를 어떻게 적용할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후견 실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最高裁判所, 2020).

또한 일본 정부는 이러한 의사결정 지원이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고, 각 지자체에 후견인 및 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2020년부터 친족 후견인, 시민 후견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의사결정 지원 연수가 시작되었으며,<sup>25)</sup> 2022년도까지 총 6,761명이 수강하였다(厚生労働省, 2024). 이를 통해 후견인들이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지원에 대한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 3. 무자력 치매 노인에 대한 국가의 지원 시스템

#### 가. 독일

독일의 후견제도는 크게 명예 후견인(Ehrenamtliche Betreuer)과 전문 후견인(Berufsbetreuer)으로 나뉜다. 명예 후견인은 주로 피후견인과 개인적으로 관계가 있는 가족, 친구 등이 무보수로 활동하며, 법적으로 명시된 바에 따라 피후견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명예 후견인은 후견인 선임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며, 이는 피후견인의 의사와 사회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함이다(BGB § 1816(5)).

25) 도도부현은 2022년부터 시작

전문 후견인은 보수를 받으며, 자영업 형태로 활동하거나 후견사단(Vereinsbetreuer), 관청(Behördenbetreuer) 소속 후견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 후견 보수는 피후견인이 지불하며, 무자력자의 경우 국가가 보수를 지원한다(VBVG § 7(1)). 독일에서는 후견 업무를 수행하는 후견사단과 후견청도 있어, 어려운 사례나 자원 부족 문제에 대응이 가능하다. 즉, 명예 후견인이 없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전문 후견인이 선임되며, 이도 불가능할 때는 후견사단이나 후견청이 후견을 맡게 된다(BGB § 1816(5), § 1818(1), § 1818(4)).

독일의 후견제도에서 주요한 시사점 중 하나는 무자력 치매노인을 지원할 수 있는 ‘후견인 후보자 풀(pool)’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후견사업을 통해 자원봉사 성격의 시민 후견인을 양성하고 있지만, 독일은 이와 다르게 자연인 후견인 외에도 후견사단(Vereinsbetreuer), 관청(Behördenbetreuer) 등 다양한 후견인 후보자 풀이 존재하여, 복잡하고 어려운 후견 사례에서도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다.

무자력 치매노인에게 후견인이 필요할 경우, 우선적으로 명예 후견인이 있다면 이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BGB § 1816(5)). 만약 적합한 명예 후견인이 없을 경우에는 전문 후견인을 선임하고, 전문 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후견사단이나 후견청이 후견 역할을 맡는다(BGB § 1818(1), § 1818(4)). 다양한 방식을 통해 피후견인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체계화되어 있다.

독일에서는 후견인의 보수를 피후견인의 재정 상태에 따라 결정하며, 명예 후견인의 경우 보수는 받지 않지만 연간 425유로의 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피후견인이 무자력일 경우, 해당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며(Bobisch, n.d.), 전문 후견인이나 후견사단의 경우에도 후견 보수가 국가에서

지원된다(VBVG § 16(1)). 즉, 독일의 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사회적 자원 활용을 최대화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또한 독일은 명예 후견인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잘 갖추어, 치매 노인과 같은 피후견인들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첫째, 피후견인과 개인적인 유대가 없는 제3자를 명예 후견인으로 선임할 때는 해당 후견인이 주에서 인정한 후견사단 또는 관할 기관과 ‘협력 및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BGB § 1816(4)). 이 협약은 후견인의 교육 참여 의무, 후견사단의 상담 및 협력을 위한 협회 담당자 지정 등을 포함하며, 의무 사항으로 한다(Bundesministerium der Justiz, 2023a). 독일 법무부는 이를 통해 명예 후견인들이 어려운 임무를 혼자서 감당하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제공한다고 설명하고 있다(Bundesministerium der Justiz, 2023b).

둘째, 명예 후견인은 후견청과 후견사단으로부터 지속적인 교육,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시적인 상담 창구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후견 업무 수행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는 피후견인의 권리 보호와 자기결정권 존중으로 이어진다.

셋째, 명예 후견인의 전문성을 인정해주는 체계도 마련되어 있다. 명예 후견인으로서의 경험이 많을 경우 전문 지식이 있다고 추정되며(BtRegV § 7(5)),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명예 후견인이 전문 후견인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VBVG § 10(2)).

넷째, 명예 후견인의 책임 범위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Bundesministerium der Justiz, 2023a). 또한 각 주에서는 명예 후견인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후견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하고 있다(Bobisch, n.d.).

후견 사무의 내용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지만, 후견인 후보자 풀을 다층적으로 형성하고 명예 후견인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 나. 일본

일본은 후견을 필요로 하는 무연고 치매노인이 있을 때, 시구정촌이 법인 후견과 시민 후견인 육성과 같은 제3자 후견인 풀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후견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한다.

2010년 요코하마 선언에서는 후견제도를 운용하는 데 있어 시구정촌장 청구를 적극 활용해야 하며, 후견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저소득자를 국가에서 지원하여 ‘성년후견의 사회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선포하였다(박인환, 2021b). 이러한 선언과 더불어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 계획과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사업이 시행되었으며, 이 사업은 시구정촌의 무연고 치매노인을 위한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였다.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사업은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치매노인이 보조를 받지 않으면 후견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심판 비용 및 후견인 보수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1,741개의 시구정촌 중 1,602개(92.0%)가 심판 비용이나 후견인 보수를 모두 지원하는 상황이다(厚生労働省,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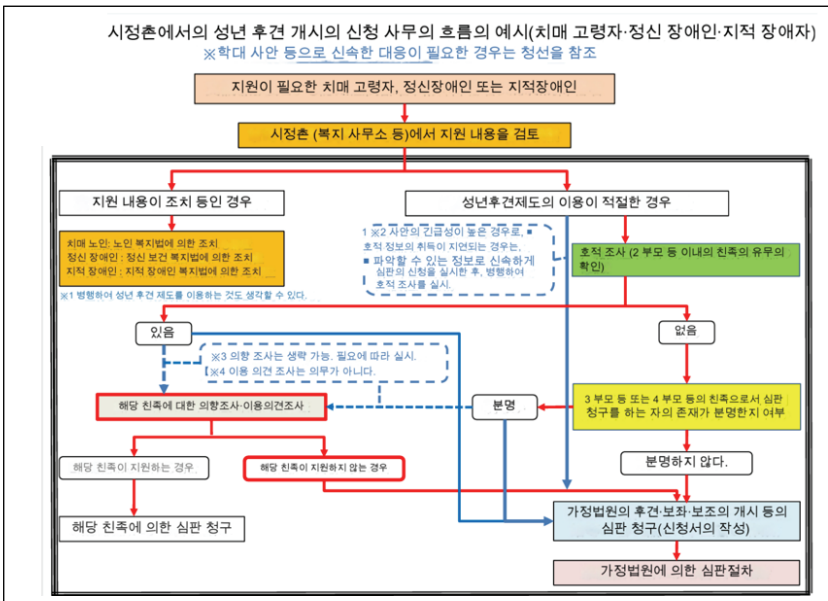
시구정촌장의 성년후견 신청 절차는 대상자 발견부터 지원 내용 검토, 친족 확인, 호적 조사, 시구정촌장의 심판청구, 가정재판소의 심판 절차로 이어진다. 대상자는 지역포괄지원센터나 케어매니저 등에서 발견되어 시구정촌과 연결되며, 그 후 대상자의 상황을 검토하여 적절한 지원 방법을 결정한다. 만약 친족의 지원이 없거나 심판청구를 할 친족이 없는 경



우, 시구정촌장이 직접 성년후견 심판청구를 하게 된다. 이후 가정재판소에서 후견, 보좌, 보조 개시 등의 심판을 하게 된다(厚生労働省, n.d.f).

이 절차는 친족의 지원이 없는 치매노인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시구정촌은 대상자 발견부터 가정재판소 청구까지 전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일본에서는 시구정촌장의 심판청구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일부 시구정촌에서는 심판청구 비중이 40% 이상에 달하는 반면, 교토시는 10.7%로 지역 간 편차가 있다(最高裁判所, 2024). 정부는 제1기 계획에 대한 중간 검토를 통해, 이 같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시구정촌장 심판 신청이 보다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厚生労働省, 2024).

[그림 3-11] 시구정촌장 심판청구 시의 사무 흐름도



출처: “市区町村長申立ての事務の流れ,” 厚生労働省, n.d.j, p.2의 내용을 연구진이 번역 및 재구성함: <https://www.mhlw.go.jp/content/000983172.pdf>

나아가 일본 정부는 시민 후견인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공후견제도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제2기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 계획에서는 도도부현별로 시민 후견인 육성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맞춰 시민 후견인 양성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시구정촌에서는 시민 후견인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 후견인의 역할을 홍보하는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厚生労働省, n.d.c).

시민 후견인 양성과 관련하여 2023년 4월 기준으로 도도부현 47개 중 15개(31.9%)가 교육을 시행 중이며, 23개(48.9%)가 교육 시행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하였다(厚生労働省, 2024). 법인 후견인 양성과 관련해서는 18개 도도부현이 교육을 실시 중이며, 의사결정 지원 교육도 22개(46.8%) 도도부현에서 진행 중이다(厚生労働省, 202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역시 시민 후견인의 활동 비중이 낮다는 문제가 있다. 시민 후견인이 실제 활동하는 비율은 약 1%로 매우 낮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문제와 유사하다. 일부 시구정촌에서는 이러한 시민 후견인을 일상생활 자립 지원사업이나 법인 후견의 후견 사무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厚生労働省, n.d.b).

또한 법인 후견인 체계를 공고히 하며, 이들의 경우 난이도가 높은 사례를 주로 담당한다. 이는 시민 후견인이나 전문가 후견인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복잡한 사례를 법인 후견인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법인 후견 사례의 주요 특징은 실제 업무를 자연인인 개인(법인 직원)이 담당하더라도, 법인 내 여러 직원이 협력하여 후견 사무를 공동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후견 사무를 수행하는 담당자가 변경되더라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는 장점을 지닌다. 또한 다양한 사례를

통한 후견 경험 축적이 가능하여 전문성이 높아지며, 지역 내 다른 기관들과의 협력에서도 이점이 있다.

특히 법인 후견은 장기간 후견이 지속될 때, 이점이 극대화된다. 이는 여러 명의 법인 직원이 협력해 업무를 분담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치타 지역 법인 후견인이나 오와리동부 성년후견센터, 나고야시 사회복지협의회의 경우, 평균적으로 2.5명의 법인 직원이 43건의 후견직무를 담당하는데(제철웅 외, 2023), 이러한 운영 방식은 자연인 후견에 비해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 4.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한 주요 쟁점

해외의 치매노인을 위한 후견제도를 살펴보면, 국가 차원에서 이들이 법적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나아가 이 같은 내용들이 후견제도 전반의 주요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함을 사회 전반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체계가 확립되어 있다. 또한 이 같은 원칙들이 다양한 조직들을 통해 유기적으로 작동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 역시 큰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독일 및 일본은 후견을 전담하는 조직 또는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역할을 중시함으로써, 후견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독일은 성년후견청을 중심으로 성년후견 관련 업무를 단계적으로 세분화하여 운영한다. 후견청은 피후견인 및 후견인 조사, 사회조사보고서 작성, 후견계획 검토, 후견인 양성 및 추천, 후견인 풀 관리, 후견인 활동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후견사단 및 후견협회와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후견 과정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며, 피후견인

과 후견인의 안정적 보호가 가능하다. 전체 후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업무를 후견청이 주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후견이 원만히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일본은 후견청과 같은 중앙 조직은 없지만, 각 지역에 중핵기관을 중심으로 한 지역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후견을 지원하고 있다. 중핵기관은 후견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후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팀제로 이를 운영하거나 협의회와 함께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간다. 일본의 중핵기관은 후견인의 활동을 조정하고,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 존중, 일상생활에서의 의사결정 등 다양한 법적 및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 같은 전달체계를 우리나라의 치매공공후견사업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역시도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한 공적 전달체계가 유지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지닌다. 단, 우리나라의 치매안심센터는 독일이나 일본의 성년후견청 또는 중핵기관과 같은 전담 조직은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독일이나 일본 같은 전문적인 전담 조직의 부재로, 후견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이슈나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표 3-25〉 독일 Hochtaunuskreis 지역 성년후견청의 역할 및 우리나라와의 비교

| 분류                    | 업무                | 세부 역할                                                                                                                     | 해당 역할 수행하는<br>우리나라 기관<br>(괄호는 공공후견<br>사업 수행 주체)       |
|-----------------------|-------------------|---------------------------------------------------------------------------------------------------------------------------|-------------------------------------------------------|
| 법원을<br>위한<br>업무       | 사회보고서<br>작성       | 사회보고서 작성(피후견인 상황)<br>후견의 필요성 및 보충성 조사<br>후견 업무 내용 구체화                                                                     | 가정법원<br>(치매안심센터)                                      |
|                       | 후견인<br>매칭         | 후견인 적합성 검증<br>후견인 물색<br>적합한 후견인 추천                                                                                        | 가정법원 혹은<br>담당 기관 없음<br>(치매안심센터 및<br>광역치매센터)           |
|                       | 추가 조사<br>및 지원     | 사실 관계 조사<br>법원 조사 요청 사항<br>(업무 범위 확대, 자유 제한 조치에 대한 의견<br>제시 등)<br>법원이 결정한 강제 조치의 집행 지원                                    | 가정법원<br>(치매안심센터 및<br>중앙치매센터)                          |
| 후견인을<br>위한<br>지원      | 후견인<br>관리         | 후견인 활동 중 문제 사항 조사<br>후견인 교체 지원                                                                                            | 담당 기관 없음<br>(치매안심센터)                                  |
|                       | 후견인<br>지원 및<br>상담 | 법적 후견의 모든 영역에 대한 조언과 지원<br>후견인 교육(기존, 신규)<br>후견업무 소개 교육                                                                   | 가정법원 혹은<br>담당 기관 없음<br>(치매안심센터,<br>광역치매센터,<br>중앙치매센터) |
|                       | 후견인<br>명단 관리      | 명예 후견인 업무 소개(협회와 협력)<br>전문 후견인 등록, 지원, 교육                                                                                 | 담당 기관 없음<br>(광역치매센터)                                  |
|                       | 후견계획<br>지원        | 후견계획서 수립 지원                                                                                                               | 담당 기관 없음<br>(치매안심센터)                                  |
| 피후견인과 그 가족을<br>위한 서비스 |                   | 질병으로 인한 의사결정 무능력 상황에 대비한<br>사전 지시서와 후견 지시서에 대한 정보 제공<br>사전 지시서와 후견 지시서의 공식 인증(10유<br>로의 수수료로 제공)<br>후견법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한 상담 | 담당 기관 없음                                              |
| 기타 업무                 |                   | 피후견인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서비스에 대한<br>정보 제공<br>대중 홍보 활동<br>성년후견사단, 협회 지원                                                            | 대법원, 법무부 혹은<br>담당 기관 없음<br>(광역치매센터,<br>중앙치매센터)        |

주: 1) 독일에 한하여 구성한 후, 국내 상황에 맞게 연구진이 작성함.

2) 괄호 안은 치매공공후견에 해당하는 전달체계를 표기함.

출처: "Betreuungsbehörde," Hochtaunuskreis, n.d.의 내용을 연구진이 번역 및 재구성함.  
<https://www.hochtaunuskreis.de/Betreuungsbeh%C3%B6rde.html>

둘째, 독일과 일본은 법률과 정부 정책을 통해 후견의 보충성 원칙,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 존중, 그리고 의사결정 지원의 중요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원칙에 맞춰 자국의 법제도를 정비하고, 후견제도를 의사결정 지원 중심으로 운영하며, 후견이 남용되지 않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특히 독일은 후견 개시 이전에 후견이 반드시 필요한지 충분히 검토하는 절차를 갖추었고, 사전의료지시서와 사전 후견지시서 같은 제도를 통해 피후견인의 의사를 미리 기록하도록 장려하며, 정부 차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또한 후견인 선임 시 확장된 지원의 가능성을 반드시 검토하도록 하여, 후견인의 개입 없이 해결 가능한 사안을 우선적으로 파악하도록 한다. 또한 피후견인의 의사가 심판 과정에서 적절히 반영되도록 후견청에 관련된 역할 역시 부여하였다. 국가 차원에서 의사결정 지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할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이 같은 의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장려하는 역할 역시 담당하고 있다.

일본은 ‘의사결정 지원 후견 사무 가이드라인’을 통해 후견인에게 후견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후견 이용 촉진 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의 성과를 면밀히 관리하고 계획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다.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 기본계획에서는 KPI를 설정해 실적을 관리하고, 중간 검증을 포함한 실시 상황을 매년 1회 인터넷에 공표하는 시스템 역시 운영한다.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치매공공후견사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고, 국가 차원에서도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 역시 미진한 상황이다. 독일과 일본은 법률과 정책을 통해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노력을 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제도의 기틀이 마련된 데 반해, 실천적 뒷받침은 부

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해외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적인 정책적 비전을 마련하고,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체계적 노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독일과 일본은 공공후견 운영을 위한 다층적인 구조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후견인 양성 및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독일은 명예 후견인, 전문 후견인, 사단 후견인, 관청 후견인 등을 통해 유기적으로 후견 사례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후견인들은 후견청, 후견사단, 후견협회 등의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시민 후견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제3자 후견인은 후견 기관과 법적 협약을 맺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이들의 활동 역시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일본은 지자체, 전문가 단체, 후견법인, 중핵기관, 그리고 지역 연계 네트워크 등을 통해 다층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무자력 치매노인을 포함하여 후견이 필요한 이들에 대한 지원에 기여하고 있으며, 법인 후견 및 시민 후견의 방식을 통해 후견인을 양성하여 공공후견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

## 제4절 소결

현재까지 치매공공후견사업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하여 국내외 유관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다.

### 1. 국내 유사 사례를 통한 시사점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발달장애인과 정신질환자를 위한 공공후견사

업과 치매공공후견사업 간 비교를 통해 도출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 가지 공공후견사업은 모두 특정후견(최대 3년)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한정후견을 허용한다. 후견은 기간 만료 또는 피후견인의 사망 시 종료되지만, 종료 전에 재청구나 연장을 통해 후견의 공백 없이 지속적인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하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추가적인 기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치매공공후견사업의 경우 피후견인의 사망 외에는 대다수가 재청구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대부분 종료라는 퇴로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현재의 후견 기간 설정이 피후견인의 특성(치매 질환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한 것인지 등에 대한 재검토를 필요로 한다.

둘째,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지원 측면에서의 쟁점이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을 포함한 국내 공공후견사업들은 피후견인의 의사와 선호를 존중하는 것을 최우선의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해 후견 개시 과정에서 대상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조사보고서를 작성하며, 후견심판 전에 피후견인과 후견인 후보자 간의 면담을 통해 대상자의 욕구와 관심사를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후견 개시 후에 후견인 정기보고서 작성 및 검토 등을 통해 활동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것 역시 그 일환이다. 그러나 피후견인과의 구체적인 의사결정 지원 과정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한다.

나아가 적절한 의사결정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세 사업 모두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통해 후견인을 양성하고 있다. 단, 치매공공후견사업의 교육 시간은 21시간으로 나머지 두 사업의 교육 시간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아울러 교육 내용 역시 치매 특성이나 후견 절차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의사결



정 지원이나 실무적 측면에서의 내용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 보수 교육 또한 실효성이 부족하여,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지원에 대해 보다 실천적인 측면에서의 교육 내용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셋째,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시민 후견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발달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공공후견사업과 차이가 있다. 법인 후견으로 연계되는 나머지 두 후견의 경우, 법인 내 다양한 전문가들이 후견 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피후견인의 욕구에 대응이 용이하고 고난이도 후견 사무 역시 수행 가능하다는 점 역시 치매공공후견사업과 다른 점이다.

아울러 치매공공후견인의 역할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명확하게 정해지지만, 실제 활동에서는 역할의 모호함을 경험하는 경우가 잦다. 이 같은 문제는 국내 공공후견사업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지만, 시민 후견을 중심으로 하는 치매공공후견사업의 경우 후견인의 전문성 축적 등의 한계로 역할의 모호함과 권한의 한계에 대한 문제가 더 두드러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후견 전달체계의 측면이다. 현재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치매안심센터가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발달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공공후견사업은 관련 법인들을 주축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다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관리 전달체계의 주축으로 공공후견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후견사업에 대한 전담이 어려운 구조이다. 향후 후견을 필요로 하는 대상층들이 증가할 것을 고려할 때, 현재의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필요로 한다.

## 2. 해외 사례를 통한 시사점

해외 사례를 통해 도출된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과 일본 모두 후견 전달체계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

관을 두고 있다. 독일의 성년후견청은 후견 청구부터 피후견인 조사, 사회조사보고서 작성, 후견계획 검토, 후견인 양성 및 추천, 후견인 활동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단계적으로 수행한다. 이를 통해 체계적으로 후견의 전체 과정을 관리하며, 피후견인의 의사와 선호를 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본은 독일의 후견청 같은 중앙 차원의 조직은 없지만, 중핵기관을 통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후견과 관련한 사안들을 처리하고 있다. 우리나라 치매공공후견사업 역시 치매안심센터라는 공적 전달체계를 통해 후견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독일이나 일본과 같이 후견만을 전담하는 기관은 부재하다. 이 같은 전담 기구의 부재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후견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한계를 가져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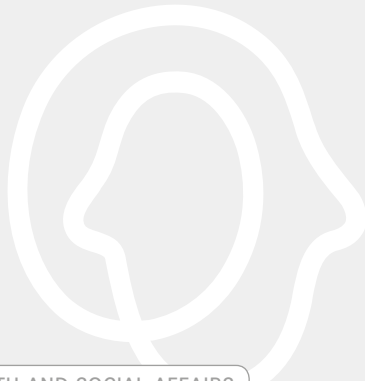
둘째, 독일과 일본은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후견제도의 주요 원칙으로 상정한다. 독일은 사전 의료지시서와 후견 지시서 등을 통해 피후견인의 의사를 사전에 반영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으며, 후견을 이용하기 이전에 확장된 지원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는 등의 사전적 기제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후견인이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등의 후견의 기본 원칙을 실현하고자 한다. 일본은 의사결정 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후견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관련된 교육 역시 다방면으로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후견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가 낮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식 역시 저조한 상황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정책적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셋째, 독일과 일본은 다층적인 공공후견 체계를 통해 후견인을 양성 및 관리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명예 후견인, 전문 후견인 외에도 후견사단

과 관청 후견인을 두고 있으며, 후견청은 후견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상담 등을 상시적으로 제공한다. 일본은 법인 후견 및 시민 후견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후견인을 양성 및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반적인 후견제도의 경과 연수가 길지 않을 뿐 아니라 치매공공후견사업은 도입 초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후견 업무 수행의 분업화된 체계가 원활히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일 뿐 아니라 후견인에 대한 양성 및 관리 체계 역시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치매노인을 위한 공공후견제도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피후견인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며, 후견 과정에서 야기되는 다양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관심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국가적 차원의 관심은 단순히 명문상의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직적·법적 지원이 더해져야 할 것이다.





## 제4장

### 치매공공후견사업 진단 및 쟁점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피후견인 측면에서의 현황 진단

제3절 후견인 측면에서의 현황 진단

제4절 치매안심센터 측면에서의 현황 진단

제5절 후견감독관 측면에서의 현황 진단

제6절 소결



## 제4장 치매공공후견사업 진단 및 쟁점

본 장에서는 현재 치매공공후견사업의 이용(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쟁점을 도출하기 위해 피후견인과 후견인, 치매안심센터 담당자 및 가정(지방)법원 후견감독관을 대상으로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대상군별로 구체적인 사업 이용(제공) 경험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개선 사항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제1절 분석 개요

질적 조사는 크게 네 대상군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조사 참여자는 사업을 이용하는 피후견인(4명), 제공자인 후견인(9명), 나아가 치매공공후견사업을 담당하는 치매안심센터 사업 담당자(9명), 가정(지방)법원의 후견감독관(3인)이며, 후견감독관을 제외한 세 대상군은 수도권 및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피후견인의 경우, 해당 지역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공공후견사업을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치매 중증도에서 경도 또는 중등도)를 추천받아 진행하였다. 피후견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면접은 40분 이내, 일대일 심층면접으로 이루어졌다. 단, 피후견인에 대해 보다 풍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치매안심센터로부터 피후견인의 기본 정보(성별, 연령, 거주지역, 가구형태, 치매 정도, 장기요양등급, 기초생활수급 여부, 후견서비스 이외의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와 후견 이용 관련 정보(치매안심센터 이용 기간, 후견 이용 계기 등)를 사전에 제공받아 면

접에 참고하였다. 이와 함께 피후견인 가정에 방문하기 전에 담당 후견인을 만나 피후견인의 일상생활, 제공되는 후견서비스 내용, 피후견인의 특이사항 등에 대해 인터뷰하였다. 후견인과의 인터뷰는 피후견인 거주지 근처에서 약 60분간 진행하였다. 후견인이 피후견인 집까지 동행하여 피후견인에게 연구자에 대한 소개 및 진행 절차에 대해 안내하였으며, 후견인이 이석한 후 피후견인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후견인 역시, 해당 지역 치매안심센터 또는 광역치매센터에서 치매공공후견사업의 후견인으로 활동 중이거나 1년 이상 활동한 경험이 있는 자를 추천받아 진행하였다. 질적 인터뷰는 수도권 권역(5명), 비수도권 권역(4명)으로 나누어 초점집단면접(120분 이내)으로 이루어졌다.

치매안심센터 사업 담당자는 중앙치매센터를 통해 2024년 4월 기준 치매공공후견 심판청구를 3건 이상 수행한 기관의 리스트를 구득한 후, 연구진이 권역별로 무작위 선정하여 사업 담당자의 참여 의사 여부를 파악하여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이렇게 모집된 총 9명의 대상자를 수도권(5명), 비수도권(4명)으로 나누어 초점집단면접(120분 이내)으로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후견감독관은 공공후견사업을 전담하여 운영 중인 법원의 후견감독관 중 조사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세 지역(서울, 수원, 부산)을 중심으로 초점집단면접(120분)을 진행하였다.

질적 조사는 2024년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연구의 윤리성 확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쳤다(제 2024-047호). 또한 인터뷰 진행에 앞서 연구자들의 신분을 밝힌 후 연구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참여 동의를 확인하였으며, 심층면접 또는 초점집단면접 과정에서 녹음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사전 동의를 구득하였다. 인터뷰 과정에서 얻어진 자료는 익명으로 사용되고 연구 수행 목적으로만 분석될 것임을 고지하였으며, 녹취된 자료는 녹취록으로 재구성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4-1〉 조사 대상 및 방법

| 구분              | 인원 | 지역       | 대상자                                                                  | 진행 일정 및 방법                                            |
|-----------------|----|----------|----------------------------------------------------------------------|-------------------------------------------------------|
| 치매공공후견사업 이용자    | 4명 | 수도권/비수도권 | -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이용 중인 자 중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br>- 의사소통 능력 고려하여 치매 중증도에서 중등도, 경도 | - 7/9, 7/15, 7/30, 8/13<br>- 1:1 심층면접(대면)<br>- 40분 이내 |
| 치매공공후견인         | 9명 | 수도권/비수도권 | - 치매공공후견인으로 활동 중이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자(1년 이상)                             | - 7/22, 7/23<br>- 초점집단면접(대면)<br>- 120분 이내             |
| 치매안심센터 후견사업 담당자 | 9명 | 수도권/비수도권 | - 후견심판청구 3건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기관의 공공후견사업 담당자                             | - 7/17, 7/18<br>- 초점집단면접(대면/비대면)<br>- 120분 이내         |
| 가정(지방)법원 후견감독인  | 3명 | 서울/수원/부산 | - 공공후견사업을 전담하여 운영 중인 법원의 후견감독관(공공후견감독 담당자)                           | - 6/19<br>- 초점집단면접(비대면)<br>- 120분 이내                  |

출처: 연구진 작성

조사 내용은 치매공공후견사업 현황 및 국내외 사례 분석,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제기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표 4-2〉와 같다. 공통질문과 대상군별 개별 질문으로 구분하였으며, 구체적으로 공통질문에서는 후견을 이용 또는 제공하면서 느낀 구체적 경험과 향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포함하였다.

개별 질문에 있어서, 피후견인의 경우 후견을 결정하게 된 계기와 후견 이용 시 피후견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제공되는 후견의 내용은 무엇인지, 후견인과의 관계나 소통 과정 등 후견 이용 전반에 대해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후견인에게는 후견사업에 대한 인식, 후견에 참여한 계기, 현재 공공후견인에게 제공되는 교육(양성 교육, 직무 매뉴얼 및 실무문답집 등)의 도움 정도, 후견 시 피후견인의 의사를 반영하는 과정, 제공하는 후견의 내용과 피후견인과의 관계나 소통 과정 등 후견 제공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청취하였다.

치매안심센터 사업 담당자에게는 사업 참여 경력 및 전체 사업 중 후견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치매안심센터 내, 사업 담당자의 담당업무 내)을 일차적으로 파악하였다. 나아가 후견사업 진행 과정에서 피후견인 발굴 및 선정, 후견심판청구를 위한 준비, 후견인 관리 감독의 역할이 각각 차지하는 비중과 그에 따른 어려움, 후견 시 피후견인의 의사를 반영하는 과정, 후견인 역할 및 권한에 대한 구체적 경험이나 인식, 유관 서비스 제공자(예: 돌봄, 의료 등)와의 의견 조율 경험 등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후견감독관에게도 사업 참여 경력과 후견감독관의 주요 사무에 대해 일차적으로 파악하였으며, 피후견인의 의사를 반영하는 과정, 후견인 역할 및 권한에 대한 구체적 경험이나 인식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표 4-2〉 조사 내용

| 구분                        | 공통 질문                   | 개별 질문                                                                                                                                                                                                                                                                                                                                  |
|---------------------------|-------------------------|----------------------------------------------------------------------------------------------------------------------------------------------------------------------------------------------------------------------------------------------------------------------------------------------------------------------------------------|
| 치매<br>공공후견<br>이용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견을 결정하게 된 계기</li> <li>- 의사결정 시 피후견인의 의사 반영 구조(과정)</li> <li>- 제공되는 후견 내용</li> <li>- 후견인과의 관계 및 소통 방식(과정) 등 후견 이용 전반에 대한 구체적 경험</li> </ul>                                                                                                                                                     |
| 치매<br>공공후견인               | - 후견 이용<br>(제공)시<br>어려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견사업에 대한 인식</li> <li>- 후견 참여 계기</li> <li>- 교육자료(양성 교육, 직무 매뉴얼, 실무문답집 등)의 도움 정도</li> <li>- 의사결정 시 피후견인의 의사 반영 구조(과정)</li> <li>- 제공하는 후견 내용(후견인의 역할과 권한 측면)</li> <li>- 피후견인과의 관계 및 소통 방식(과정) 등 후견 제공 전반에 대한 구체적 경험</li> </ul>                                                                   |
| 치매<br>안심센터<br>후견사업<br>담당자 | - 후견 개선<br>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참여 경력</li> <li>- 전체 수행사업 중 후견사업의 비중(센터 내, 담당자 내)</li> <li>- 후견사업 진행 과정에서 피후견인 발굴 및 선정 / 심판청구 준비 / 후견인 관리 감독 역할의 비중</li> <li>- 의사결정 시 피후견인의 의사 반영 구조(과정)</li> <li>- 후견인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경험/인식</li> <li>- 유관 서비스 제공자(예: 돌봄, 의료 등)와의 의견 조율 경험(이해 관계자들과의 협력 경험)</li> <li>- 후견사업 미활성화 이유</li> </ul> |
| 가정(지방)법원<br>후견감독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참여 경력 / 감독관의 주요 임무</li> <li>- 의사결정 시 피후견인의 의사 반영 구조(과정)</li> <li>- 후견인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경험/인식</li> </ul>                                                                                                                                                                                        |

출처: 연구진 작성

## 제2절 피후견인 측면에서의 현황 진단

### 1. 참여자 주요 특성

인터뷰에 참여한 피후견인은 총 4명으로 남성 2명, 여성 2명이며, 연령대는 60대 1명, 70대 2명, 80대 1명이고, 4명 모두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 있다. 피후견인 4명 중 3명은 자택에 거주하고 나머지 1명은 노인 요양시설에 거주하였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피후견인은 모두 독거 가구로 장기요양서비스 중 방문요양을 이용하고 있었다.

〈표 4-3〉 참여자 주요 특성(피후견인)

| 구분 | 성별 | 연령대 | 치매 정도 | 기초생활수급 | 가구 유형   | 장기요양 이용    |
|----|----|-----|-------|--------|---------|------------|
| A  | 남  | 80대 | 경도    | 수급     | 독거      | 방문요양, 복지용구 |
| B  | 남  | 70대 | 경도    | 수급     | 독거      | 방문요양, 복지용구 |
| C  | 여  | 70대 | 경도    | 수급     | 독거      | 방문요양       |
| D  | 여  | 60대 | 경도    | 수급     | (시설 거주) | 시설급여       |

출처: 연구진 작성

본 절의 내용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제공한 서면자료, 담당 후견인과의 인터뷰 내용, 그리고 피후견인과의 인터뷰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여 구성하였다. 피후견인과의 면접에서는 치매공공후견사업에 관한 쟁점을 도출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어 피후견인의 일상생활과 후견서비스 이용 경험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치매공공후견서비스를 이용하는 피후견인의 생활상을 이해하고, 피후견인이 인식하는 후견서비스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2. 심층면접 분석 결과

### 가. 피후견인 A

#### 1) 후견 이용 계기 및 후견 사무

피후견인 A는 2023년 재가장기요양센터 직원과 요양보호사의 권유로 치매 진단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 결과 치매로 판정받아 치매안심센터로 연계되어 상담을 받게 되었다.

상담을 통해 그간 공과금 등의 비용 납부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해 신용 불량 상태이고, 병원에서 의사와의 소통 시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아가 현재 이혼한 상태로 입양 자녀가 있었으나 오래 전 단절되어 실질적 무연고자라는 점에서, 후견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이후 후견인 매칭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피후견인 A에 대한 특정후견 사무는 예금 및 일상생활비 관리 같은 재산관리와 더불어 의료서비스 이용, 거소 이전 관련 업무, 공법상의 신청 행위 등과 같은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이 중에서도 피후견인 A에게 주로 제공되는 후견 사무는 예금 및 일상생활비 관리와 의료서비스 이용에 집중되어 있다.

현재 후견인은 피후견인 집에 월 1~2회 방문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모니터링하며, 피후견인이 이용하는 병원, 보건소와 긴급 시 이용 가능한 119 구급대 등과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원활히 유지되기 위해 변동 사항 등을 확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피후견인은 치매공공후견사업과 후견인에 대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적인 지지체계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견 지속이나 중단에 대한 본인의 결정권에 대한 확신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O26): 저 분(후견인)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A: 국가에 대한 후견인 식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수급자 거시기로 연락해주고 그거죠.*

*O: 어떤 점에서 (후견인이) 좋으세요?*

*A: 정보 전해주고 누구 또 몇 시에 오신다고 전화해줘요.*

## 2) 경제 상태

피후견인 A는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그리고 주거급여로 매월 약 70만 원의 수입이 있다. 피후견인 A는 통장 2개(수급비 통장, 입출금 통장)가 있으며, 수급비 통장으로 월 70만 원 정도가 입금되면 약 10만 원 정도만 남긴 후 나머지 금액을 입출금 통장으로 이체하여 사용한다.

피후견인의 지출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등의 기본적인 공과금이 입출금 통장에서 자동으로 이체된다. 두 번째는 월 20만 원 정도의 현금을 피후견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다. 입출금 통장과 체크카드<sup>27)</sup>는 요양보호사가 관리하며, 요양보호사가 입출금 통장에서 현금으로 월 20만 원 정도를 인출하여 수급자에게 주면<sup>28)</sup> 피후견인의 이미용비 또는 의류 구입, 병원 이동을 위한 교통비 등에 사용하고 있다. 세 번째는 피후견인의 식재료 및 생필품 구입 등에 사용되는 지출로, 요양보호사가 체크카드로 이를 구입하고 있다.

*O: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밥을 해주고 반찬 거리는?*

*A: 반찬거리는 내 생계비에서 나오는 돈이 나가요. 거기서 떼어주지.*

26) 이후 인용문에서도 피후견인은 A~D, 연구자는 O, 사업 담당자는 I, 후견인은 P로 표기함.

27) 후견인이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도록 함.

28) 피후견인은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못해 피후견인이 현금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요양보호사가 현금을 인출해서 피후견인에게 전달하고 있음.

후견인은 매일 수급 통장 및 입출금 통장 내역과 요양보호사가 사용하는 체크카드 내역을 확인 및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피후견인의 수입이나 재산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피후견인이 용돈이나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제한적이다.

### 3) 일상생활

피후견인은 현재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는 전세로 거주하였으며,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으로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15년째 거주하고 있다.

피후견인의 집은 약 10평 남짓으로 안방, 작은 방, 부엌, 화장실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옷가지나 쌓아놓은 물건이 많아 안방에서도 최대 3명이 겨우 앉을 수 있다. 피후견인은 현재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 중이며, 이 중 복지용구 급여를 활용하여 집안에 안전손잡이(방문 옆, 현관 앞)와 안전봉(침대 앞)을 설치하였고, 수동침대를 사용 중이다.

피후견인 A의 하루 일과는 주로 집 안에서 이루어진다. 아침에 기상하여 전날 요양보호사가 준비해 준 음식으로 아침과 점심을 먹고, 주로 TV를 시청하거나 수면을 취한다. 요양보호사가 오후에 오면, 청소 및 식사 준비와 같은 가사지원을 도맡고 간단한 인지프로그램을 함께 한다. 월 3~4회 요양보호사와 함께 병원에 가는 것 이외에 집 밖에 나가는 일은 거의 없다.

*O: 저건 무슨 약이에요?*

*A: 혈압, 신경통, 허리, 다리 이런 데 아픈 데. 하얀 건 혈압에 대한 약이고 ○○ 병원에서 처방해 와서 먹어요. 전화해주면 약이 없다 하면 간호사들이 처방해서 갖다 줘요.*

O: 필요한 음식은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사오시기도 하고 아버님이 나가서 사시는 경우도 있어요?

A: 아니, 나는 못 사요. 물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시장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못 나가요, 바깥에.

#### 4) 후견 이외의 이용 서비스

피후견인은 장기요양서비스(방문요양, 복지용구), 독거노인 및 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외 피후견인이 전립선 질환이 있어 치매안심센터에서 분기마다 현물서비스(성인용 기저귀)를 제공받는다.

피후견인 A는 후견서비스를 이용하기 전부터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요양보호사가 주 5일, 하루 3시간(오후 3시~6시)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6개월 전까지는 치매안심센터에 종종 방문하여 교육을 받거나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지만, 현재는 신체기능이 원활치 않아 가지 않는 상황이다.

### 나. 피후견인 B

#### 1) 후견 이용 계기 및 후견 사무

피후견인 B는 2022년 10월에 노인복지센터를 통해 관내 신경과에서 치매 진단을 받았으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증약, 치매약을 처방받아 복용 중인 사실을 알게 되어 치매안심센터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사례관리를 하던 중 독거 및 인지저하로 의사결정이 어려워 후견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2024년 4월부터 후견서비스를 시작하였다.

*O: 후견을 어떻게 이용하게 되셨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B: 후견 관리 같은 경우 수시로 찾아오셔서 애를 좀 많이 좀 덜어주셨어요.*

피후견인 B 역시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와 관련한 사무를 지원받고 있으며, 이 중 후견 초기 단계에서 재산관리를 지원받은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후견인 매칭 후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 및 금융 상황을 확인해 본 결과, 피후견인이 질병 관련 또는 상조와 관련한 보험에 복수로 가입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매월 15~20만 원 정도를 납입하는 상황이었다. 피후견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진료비나 약제비 등의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거나 적기 때문에, 별도의 보험 가입에 따른 실익이 없을 뿐 아니라 전체 수입에서 보험료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컸다.

이에 후견인은 피후견인에게 보험 및 상조 가입 지속 희망 여부를 확인하였고, 피후견인의 해지 의사에 따라 후견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여러 단계를 거쳐 일부 금액을 환급받고 해지하게 되었다.

이외 현재 피후견인의 후견 사무는 일상생활에 대한 모니터링 수준에서 후견이 진행되고 있었다. 피후견인은 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자주 전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후견인은 일주일에 1~2번 정도 전화하거나 월 1~2회 정도의 방문을 통해 일상생활을 파악하고 있다.

## 2) 경제상태

피후견인 B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주거급여가 주 소득원이며 월 7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다. 피후견인은 본인이 체크카드와 현금 인출을 통해 직접 물건을 구매하며, 수입과 지출 관리를 하고 있다. 요양보호사도 피후견인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피후견인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다.



지출은 정기적으로 관리비, 통신비 등의 공과금이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 발생하며, 체크카드로 식재료비 등 생필품을 구입하고, 그 외 한 달에 10~2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피후견인이 필요시 지출하고 있다.

*O: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장 보시고, 한 번 장 보시고 오면 그 비용이 얼마나 되세요?*

*B: 많게는 한 5만 원 되고 적게는 2~3만 원.*

### 3) 일상생활

피후견인 B는 방 1개, 화장실 1개, 부엌으로 이루어진 9평의 영구임대 아파트에서 10년째 거주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자로 복지용구 급여를 이용 중이며, 수동침대 및 안전봉을 침대 앞과 현관 앞에 설치하였다. 피후견인 B는 혼자 살기에는 불편한 것이 없다고 인식하며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O: 아파트가 다른 아파트에 비해 괜찮은 것 같아요.*

*B: 혼자 살기는 딱 맞아요. 9평인데.*

피후견인 B는 기상 후 집을 정리하고, 집에 있는 소도구로 운동을 하는 등 가벼운 외부 활동이 가능하긴 하나 대체로 집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다. 다만 앞의 피후견인 A와 비교하여 기능 상태는 다소 양호한 상황으로, 필요에 따라 요양보호사와 물건을 사러 나가기도 하고, 가끔은 인근 마트 또는 지인을 만나러 혼자 외출이 가능하다.

*O: 그러면 아버님은 하루 어떻게 지내세요?*

*B: 그냥 지내는 것. 운동하고 아침 먹고, 그리고 그냥 쉬는 거죠.*

피후견인 B는 정기적으로 주거지 인근 내과에 다니고 있으며, 이외 필요시 이비인후과나 치과에 다니고 있다. 평소 위장약, 당뇨약, 혈압약 등 복용하는 약이 많아, 요양보호사가 약 달력 등을 통해 피후견인의 약 복용을 지원하고 있다.

*O: 그러면 질환은, 질병은 무엇 때문에 병원에 가시는 거예요?*

*B: 약이 여러 가지예요. 위장약, 당뇨약, 혈압약 등등 여러 가지 약이고 말도 못해.*

*O: 치과도 가시고. 그러면 그 약들은 아버님 평소에 다 챙겨서 드세요?*

*B: 네. 여기 돌봄 선생님이 많이 챙겨서 잊어버리니까 챙겨주시고 이렇게.*

#### 4) 후견 이외의 이용 서비스

피후견인 B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현재 방문요양을 이용하고 있다. 요양보호사가 오전 7시에 방문하여 오전 10시까지 주 5일, 3시간 근무하고 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지는 1년이 조금 넘었으며, 현재까지 요양보호사는 세 번 교체되었다.

인터뷰 결과, 요양보호사가 피후견인의 일상을 상당 부분 책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 식사, 가사일, 시장 보기, 병원 동행, 약 복용 관리 등을 매일 챙기고 있으며, 당일 점심과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등 전반적인 일상지원이 요양보호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피후견인과 후견인 모두 요양보호사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다. 피후견인 C

### 1) 후견 이용 계기 및 후견 사무

피후견인 C는 관내에서 자주 배회하고 방황하는 모습이 주민들에게 목격되었고, 해당 주민의 신고로 2019년 치매안심센터에 연계되었다. 치매안심센터로 연결된 당시 피후견인은 금전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고, 자기방임 등의 양상과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 후견 대상으로 선정되어 2020년에 후견을 시작하였다.

피후견인 C의 가족(부모 및 남편)은 모두 사망하였으며, 자녀도 없는 무연고 상태이다. 여동생이 1명 있으나 오래 전에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피후견인 C는 자산관리, 간단한 금융업무, 의료서비스 등은 스스로 신청이 가능한 상태였으나, 사회보장서비스 유지 및 신청, 우편물 내용 확인 및 이해, 거소 계약 관련 업무 등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주변에 충분한 지원체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다. 2020년 특정후견 시작 후 3년이 도래하여 종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특정후견 지속 여부를 파악한 결과 후견인과 피후견인 모두 특정후견 지속을 희망하여 재청구를 진행하였다. 재청구는 2023년에 이루어졌으며, 현재까지 후견을 이용 중이다.

2024년에는 2020년부터 피후견인을 담당했던 후견인을 변경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피후견인 C가 2024년 상반기에 척추협착증으로 병원에 1~2개월 입원 후 퇴원하는 과정에서 후견인과의 상의 없이 요양보호사의 도움으로 퇴원하는 사건을 계기로 후견인이 업무 포기 의사를 밝혔다. 이로 인해 2024년에 현재의 후견인으로 후견인을 변경하여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다. 새로 연결된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를 한 결과, 부채가 발견되어 법원에 이를 탕감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 이외에도 피후견인은 자기방임의 위험이 높아 후견 대상자로 연계되었었다는 점에서, 후견인은 현재 피후견인이 이용 중인 방문요양서비스의 요양보호사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일상생활을 모니터링하거나 병원 동행을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O: 지금 오신 선생님(=후견인)이 어머니를 위해서 어떤 걸 해 주시는지는 아세요?

C: 깊이까지는 모르고. 그냥 한테서 뭐가 일이 일어나는 때 알아서 해 주시니까.

O: 후견인 선생님한테 크게 불만은 없으신 거고요?

C: 네, 너무 좋으세요. 남자분이라서, 남자분도 왜 말이 많고 막 그런 사람들 많아. 그냥 내가 말을 잘 못하니까 요양사 선생이 나 대신 말을 해 줘요. 그러니까 두 분이서 이렇게, 나는 전화해도 내가 일절 전화를 안 받으니까 요양 선생한테 전화 하는 거지.

O: 근데 한편으로는 후견인 선생님은 (요양보호사 선생님처럼) 따로 해 주시는 거 없잖아요.

C: 그게 또 못하는 게 있잖아요. 요양 선생이 뭐 이렇게 서류를 떼는 게 있으면 내가 가서 떼야 되는데 내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해주시고.

O: 그러네요. 그러니까 요양보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신청하실 때도 못 하시니까 저분이 대신 해 주기도 하고.

C: 다 다니시면서 하더라고. 이번에도 통장을 내가 그전에 다 찢어버렸어요, 통장 그전 쓰던 거. 근데 어떻게 알아보셨나 봐, 내가 다니던 은행을. 그래서 ○○인가 어디에서 3만 얼마를 찾아다 주시더라고.

O: 방문 간호서비스는 받으실 필요는 없으신 거죠?

C: 지난 달에는 진짜 한 달 내 두 달 내 너무 아파서 후견인 선생님이 ○○ 병원 가정과에 가서서, 내가 병원을 못 가니까 링겔을 와서 놔주라고. 너무 고맙지.

앞선 두 사례와 달리 피후견인 C는 후견서비스와 후견인의 역할, 후견인과 요양보호사의 차이점 등에 대해 어느 정도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후견인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경제상태

피후견인 C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초연금 같은 공적 이전소득이 주된 소득원이며 월 90~1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다. 피후견인은 경도 알츠하이머성 치매 판정을 받았지만, 본인이 통장 및 수입·지출 관리를 하고 있다. 피후견인이 필요한 물건이나 식재료는 요양보호사에게 체크카드나 현금을 주고 받는 방식으로 금전 관리를 하고 있다.

*O: 생활비는 부족하지 않으세요? 공과금 내시고 식사하시고.*

*C: 그런 거는 많지 않잖아요, 혼자 사니까. 뭐 여기 전기 요금도 2~3만 원만 내면 되는 거고 수도 요금이 5천 원인가? 4천 원인가 그러고. 가스 요금이 겨울에 그게 조금 나오는데 뭐 요양 선생이 올 때만 내가 가스를 틀지 나 혼자 있을 때는 그냥 끄고 그냥 그렇게 그렇게 살아요. 뭐 내가 나랏돈 받아 먹으면서 편하게 살 수는 없고.*

## 3) 일상생활

피후견인 C는 일반 주택 2층의 옥상 건물에 3~4년 전부터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 주택 외부에 설치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높이가 30cm 이상으로 계단별 높이가 높고, 경사가 급할 뿐 아니라 난간 손잡이 높이도 매우 낮아 성인이 혼자 올라가는 데도 위험한 환경이다. 피후견인은 척추협착증으로 걷기 불편한 상태이며 두 달에 한 번 정도 병원 가는 것 이외에는 2층 집안에서만 생활하고 있다.

피후견인 C는 호흡기 질환, 척추협착증 등으로 집안 침대 위에서 TV를 시청하거나 누워 지내며, 가끔 현관문 앞의 2층 공간에 나가 앉아 있는 것이 하루 대부분의 일과이다.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전부터 외부와 단절되어 있었으며, 식사도 잘 하지 않는 등 신체적으로 매우 쇠약한 상태였다. 현재는 요양보호사가 식사를 준비해 주고 있어 예전보다는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있으나, 치아가 거의 없고 식욕이 없어 식사량은 많지 않은 편이다. 안과 질환과 난청 문제가 심해지고 있으나, 병원에 가는 것을 회피하고 있다.

*O: 병원은 자주 다니세요?*

*C: 병원에는 두 달에 한 번씩. 그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갔는데 지금은 내가 잘 걷지를 못하니까 힘들고 숨이 차서. 호흡기 질환이에요.*

#### 4) 후견 이외의 이용 서비스

피후견인 C는 약 1년 전부터 장기요양서비스의 방문요양을 이용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는 오전 11시에 와서 주 5일, 하루 3시간 동안 피후견인에게 가사, 신체수발, 병원 동행, 시장 보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O: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오시면 무엇을 하세요?*

*C: 내가 찌개 없으면 밥을 못 먹어요. 진짜 요새 한 2~3일째 밥 먹지, 너무 진짜 안 넘어가는 거야. 밥이 도대체가. 그러니까 굶기를 진짜 누구 말마따나 밥 먹듯 했는데 그러니까 국이나 찌개나 이렇게 해놓고.*

## 라. 피후견인 D<sup>29)</sup>

### 1) 후견 이용 계기

피후견인 D는 2019년에 피후견인의 배우자가 피후견인의 치매 검사를 의뢰하여 치매안심센터에 처음 방문하였으며, 2019년에는 인지저하자 판정, 2020년에는 치매 진단을 받았다. 치매검사 이후 치매안심센터의 이용자로 관리되다가 2022년에 노인보호전문기관, 주민센터를 통해 배우자에 의한 학대 의심이 있어 치매안심센터와의 연계 및 개입을 요청받아 피후견인을 사례관리 대상으로 등록하게 되었다. 이후 행정복지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경찰서 등과 연계하여 사례회의, 가정방문, 상담 등이 이루어졌다.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이 참석하는 통합사례관리회의에서 피후견인의 약물 리스트를 검토한 결과 고용량의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것을 파악하였다. 예를 들면 3개월마다 약을 처방받아야 하지만, 3개월이 되지 않아 병의원에 방문하여 진료하고 약 처방을 요구한다거나 조현병 치료 약물도 복용하는 등 지역사회 내 내과, 정신과 등을 이용하면서 과도하게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로 인해 피후견인의 가정에 방문하였으나 배우자의 비협조, 폭력에 가까운 반대에 부딪혀 약물 복용이나 직접적인 개입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다. 여러 가지 학대 정황으로 인해 주민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경찰서 등과 각자 기관에서 개입하거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며 사례관리를 지속하던 중 2022년 하

29) 피후견인 D는 치매 경증 수준이지만 연구진이 피후견인 D가 거주하는 노인요양시설에 방문하여 개별 면담을 실시한 당시에는 의사소통이 어려워 면담을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함. 이로 인해 피후견인 D의 후견서비스 이용, 일상생활 등에 관한 내용은 피후견인을 담당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의 사회복지사(I)와 후견인(P)의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반기에 보호자인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하였다. 배우자 사망 당시 피후견인은 치매와 고용량의 약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앉아 있지 못하였으며, 식사도 하지 못해 영양실조에 가까운 상태였다.

행정부지센터에서 먼저 개입하여 배우자의 장례 등을 치르고, 치매안심센터에 연락하여 후견서비스를 의뢰하였다. 후견 신청 및 후견인 지정까지 몇 달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간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후견인을 요양병원에 입원시켜 피후견인의 식사와 약물 관리, 그리고 기타 의료적으로 필요한 진료와 치료를 받도록 하였다.

## 2-1) 후견 사무: 거소 이전

피후견인 D<sup>30)</sup>는 요양병원에 입원 후 행정복지센터와 치매안심센터에서 후견 신청과 지정을 받는 과정을 거쳤다. 후견인이 선임되면서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보증금 반환 등 기존 거주지<sup>31)</sup>를 처분하고,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후견인을 노인요양시설로 전원하기 위한 여러 단계를 거쳤다.

먼저, 후견인이 요양병원에 자주 면회를 가서 피후견인과 라포를 형성하고, 병원 관계자와의 상담을 통해 피후견인의 건강상태와 일상생활을 모니터링하였다. 요양병원에서 제때 식사를 하면서 영양상태가 개선되고, 적절한 약물 관리를 통해 혼자 걸을 수 있게 되는 등 건강상태가 많이 호전되는 것을 보면서 노인요양시설로의 전원을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둘째, 노인요양시설 입소에 대한 피후견인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피후견인은 요양병원 입원 초기에는 같은 병실에 있

30) 피후견인은 세 번의 결혼을 하였으며, 슬하에 1남 2녀의 자녀가 있으나 현재는 모두 단절된 상태임.

31) 피후견인은 배우자 사망 전까지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음.



는 환자들과 마찰이나 갈등이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본인은 혼자 살기 싫다는 의사 표현을 해서 동년배 노인들이 거주하고, 24시간 돌봐줄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을 알아보기 시작하였다.

*I: 어르신이 '나는 혼자 못 살아요'. '누가 옆에 있으면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를 꾸준히 반복해서 해서 저희가 그곳(노인요양시설)으로 옮기게 됐고. 여기 요양원은 ○○ 지역에서 그래도 제일 등급도 잘 받고 선생님들도 좋고.*

셋째, 피후견인이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 노인요양시설을 알아보고, 입소 결정 및 그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졌다. 현재의 노인요양시설을 결정하기에 앞서 여러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하였다. 시설장과 만나 피후견인과 후견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노인요양시설의 평가 등급, 본인부담금<sup>32)</sup> 부분 등을 세세하게 챙겨 가장 적합한 시설을 선택하였다.

*I: 후견인 선생님이랑 저희가 시설도 저기 있는 데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해서. 그 시설장님 만나서 인터뷰도 해보고. 부담금은 얼마나 식사는 어떻게 되냐 이런 것까지 다 해보고. 저희 부모님이라도 이쪽이 제일 괜찮겠다 하는 곳으로 해서 지금 모셔놓은 상태예요.*

넷째, 피후견인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후 적응하도록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피후견인은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의 환자와 갈등이 있곤 했으며, 노인요양시설에 입소 초기에도 같은 침실을 사용하는 노인과의 마찰이 발생하였다. 다행히 노인요양시설과 후견인, 그리고 치매안심센터가 개입하여 4인실에 적응해서 1년 넘게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32) 피후견인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지만, 일부 비급여(상급 침실료, 식재료비 등)는 본인이 부담해야 함.

I: 시설 적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장님이랑 복지사님이랑 알고 있고 또 선생님(=후견인)이 면회를 더 자주 가시고 계속 물어보시고. 그래서 저희가 보고서를 내시잖아요. 그럼 전화한 횟수라든지 방문한 횟수, 면회 횟수가 굉장히 많아요. 다른 저희 선생님들(=후견인)도 잘하시지만, 초반에는 많이 챙겼고. (중략) 사실 처음에는 되게 민원이 있었잖아요. 옆에 분이랑 싸움이 있어서 그 다른 분이 나가겠다고.

P: 피후견인 때문에. 예를 들면 피후견인이 네 명이 있으면 남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다 꺼버리는 거예요.

I: (창문이 보이는 쪽으로 침대를 이동) 그런 몇 가지의 조치들을 한 후에는 지금은 적응하셨는데. 지금은 프로그램도 잘 참여하고 그러신다고 들었습니다.

## 2-2) 후견 사무: 시설 입소 후 후견 사무(병의원 동행)

요양병원 퇴원 후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해 생활하면서 별다른 질병은 없는 것으로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피후견인이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여 입소 초기에는 치매안심센터 담당자와 후견인이 피후견인과 병원 진료를 동행하여 건강상태를 파악하였다. 특히 3개월, 6개월 단위로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대학병원 외래 진료 시에는 치매안심센터 담당자나 후견인이 반드시 동행해서 피후견인의 건강상의 주요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I: 계속 귀가 아프다고 반복적으로 하시는데 아무리 치매 환자분이라도 ‘아, 치매 환자분이니까.’ 그냥 그 말을 허투루 듣는 건 또 아니잖아요. (중략) 눈 같은 경우에도 눈이 안 보인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또 눈이 안 좋으신가 하고 그래서 시력 검사를 하러 갔어요. 근데 예전에 백내장 수술까지 미리 해놓으실 정도로 시력도 괜찮고. 근데 하루는 또 머리가 아프다니까 MRI도 찍고.

I: 어디가 아프다 두통이 심하다 하면 동네 내과는 요양보호사님이 모시고 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외래 큰 대학병원은 그동안에 변화라든지 그래서 꼭 참석하셔서... (중략) 치매 인지 검사도 도래되면 또 검사하잖아요, 대학병원에

서. 약을 더 올릴지 아닐지 그래서 그 점수 결과도 작년보다 몇 점이 떨어지고 이런 걸 주치의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요양보호사님들도 해 주실 수 있지만 후견인 선생님도 이분에 대한 보고자, 법적인 대리인이니깐 알고 계시는 것도 필요해서 사실 저희는 큰 병원 외래 진료는 후견인이(반드시 가도록 합니다).

### 2-3) 후견 사무: 시설입소 후 후견 사무(재산관리)

피후견인은 월 34만 원 정도의 기초연금 이외에 수입은 없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노인요양시설의 본인부담금이나 병의원 이용에 대한 본인 부담금은 없기 때문에 매월 지출되는 금액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P: 병원비는 무료고 하니깐 제가 맡았을 때는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돈이 조금씩 쌓이고 있어요. 조금씩, 수급비를 안 쓰니까.*

피후견인의 통장은 후견인이 맡아서 관리하고 있으며, 노인요양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나 물품 이외에 피후견인이 필요로 하는 물품은 후견인이 피후견인 통장의 돈으로 구입해서 전달하고 있다. 다른 후견인들과 마찬가지로 매월 피후견인의 수입과 지출 목록을 치매안심센터에 보고하고 있다.

*I: 옷 필요한 것, 신발, 연고, 크림 이런 것은 요청이 들어오면 (피후견인한테) 다 사다 드려요.*

*P: 피후견인의 돈으로 제가 다 사드리죠. 여기서 영수증 이런 거, 그리고 우리 피후견인은 인지가 있으셔서 되게 까다로우세요. (중략) 몇 번 바꾸세요. 옷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 아니면 사이즈가 다르다. (후략)*

### 제3절 후견인 측면에서의 현황 진단

#### 1. 참여자의 주요 특성

후견인 FGI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9명으로 수도권 거주자 5명, 비수도권 거주자 4명이다. 조사에 참여한 후견인들은 사회복지 관련 직종(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또는 공무원 종사자로 사업 참여 이전부터 ‘치매’ 등 관련 정책에 대한 기본적 인지도를 갖추고 있었다.

조사에 참여한 후견인은 1인당 1~3명의 피후견인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후견한 인원은 1~6명으로 다양하다. 후견인의 양성 교육 수료 시점은 2018년 치매공공후견사업 시작 이후부터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이 중 참여자 D는 치매공공후견사업 시작 이전에 타 단체를 통해 교육을 수료하였다. 대부분 후견인과 동일 구(區) 또는 동일 시(市) 내의 근거리에 거주하는 피후견인을 담당하고 있으나, 일부는 광역 도(道) 단위까지 담당하면서 피후견인의 거주 범위를 넓게 포괄하기도 하였다.

〈표 4-4〉 참여자 주요 특성(후견인)

| 성명 | 기본 정보(후견인) |     |      |      |              | 후견 제공 관련 정보 |            |        |    |
|----|------------|-----|------|------|--------------|-------------|------------|--------|----|
|    | 성별         | 연령  | 지역   | 교육수준 | 최장기 일자리      | 양성 교육 수료 시점 | 피후견인과의 근접성 | 피후견인 수 |    |
|    |            |     |      |      |              |             |            | 누적     | 현재 |
| A  | 여          | 54세 | 수도권  | 대졸   | 간호사          | 22년 5월      | 광역시 내      | 1명     | 1명 |
| B  | 여          | 61세 | 수도권  | 대졸   |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 19년 8월      | 구 내        | 1명     | 1명 |
| C  | 남          | 69세 | 수도권  | 대학원졸 | 공무원          | 19년         | 시 내        | 3명     | 2명 |
| D  | 남          | 68세 | 수도권  | 대졸   | 사회복지사        | 15년         | 광역시 내      | 3명     | 2명 |
| E  | 여          | 56세 | 수도권  | 전문대졸 | 사회복지사        | 23년 6월      | 구 내        | 3명     | 2명 |
| F  | 남          | 68세 | 비수도권 | 대학원졸 | 공무원          | 19년         | 광역시 내      | 3명     | 1명 |
| G  | 남          | 70세 | 비수도권 | 대학원졸 | 교사           | 18년 8월      | 시 내        | 4명     | 3명 |
| H  | 남          | 66세 | 비수도권 | 대졸   | 공무원          | 18년 7월      | 시 내        | 6명     | 3명 |
| I  | 남          | 65세 | 비수도권 | 대학원졸 | 군인           | 20년         | 시 내        | 2명     | 2명 |

주: 대상자 특정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은 수도권/비수도권으로만 표기함.

출처: 연구진 작성

## 2. FGI 분석 결과

### 가. 후견인의 역할 및 권한에 대한 경험/인식

#### 1) 후견인의 역할

공공후견인의 역할은 법원이 정한 대리권 범위 내에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부여된 사무를 지원하는 것이다. 대체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와 신상(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지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사무 지원, 거소 관련 사무 지원, 일상생활비 및 일상생활 관련 사무 지원) 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보건복지부, 2024b). 이러한 업무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sup>33)</sup>에 제시된 대리권을 기반으로 수행된다.

구체적인 역할에 대한 논의에 앞서 후견인 역할에 대한 후견인들의 인식 수준을 살펴본 결과 후견인은 피후견인을 지원함에 있어 의사결정 지원뿐만 아니라 이들의 안정적 삶을 위한 지원체계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후견인 존재 자체만으로도 치매환자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바라보았다.

*E: 저는 후견인이라는 그것 자체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연고 이신 분들에게 후견을 하는 거잖아요. 무연고인데 이 사람한테는 어떤 후견인이 있다. 그래서 법원과의 연결이 돼서 그거 자체만으로도 신체적인 안전뿐만이 아니고 경제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역할, 그러니까 제가 요양원에 어르신이 계셔도 요양원에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것과 누군가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한 번 더 신경을 쓰게 되는 부분이 아닐까. 제가 어떤 많은 역할을 하*

33) 후견등기사항 증명서는 후견인 자신이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관공서, 은행 등에서 대리권을 행사할 때 후견등기를 제시함으로써 대리권을 증명함(보건복지부, 2024b).

지는 않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후략)

F: 독거 노인들 혼자 이렇게 계시고 기초수급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이분들한테 제가 제일 큰 역할이 우리 사회에서 공적인 신분을 가진 사람한테 자기가 케어를 좀 받고 있구나.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도 사회의 한 일원이다 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게 좀 크다고 저는 봤거든요. (중략) 우리 사회에서 독거 노인이라고 혼자 산다고 무시하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누군가가 이분들한테 온정의 손길이든 법적인 손길이든 관심을 갖고, 나는 그런 신뢰관계 형성시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후견인 업무의 비중은 후견인이 후견 업무의 방점을 무엇으로 두느냐에 따라 상이하였다. 일부 참여자들은 치매환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후견인이 활동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참여자 A, B). 반면 일부 참여자는 재산관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참여자 F, H).

A: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먼저 접근하는 것 같아요.

B: 저는 어르신이 건강하고 안전, (중략)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안전에 대한 대처 방법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건강과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F: 제가 제일 관심 가진 거는 금융입니다. 금융도 생활비거든요.

H: 저는 이제 가장 중요도가 높다라는 것은 재산 관리, 그다음에 건강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기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재산관리이다. 재산관리는 자산 및 부채 외에도 보험 관리, 일상생활비 지출 등을 모두 포함한다. 재산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피후견인의 재산 상태 파악을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차적으로 재산 상태에

대한 파악과 정리가 이루어지고 나면 일상적 지출에 대한 관리를 중심으로 업무가 진행되므로 초기 셋팅이 진행된 이후에는 해당 업무에 대한 부담이 적다.

C: 피후견인에 대해서 대리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에 대한 재산, 부채 파악을 처음에 들어가면서 하는데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된다. (중략) 그다음에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빈도가 낮은 업무는 지출 내역하고 통장 정리야 매월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출 항목이 거의 동일하고, 또 수입도 기초생활수급이나 장애인 수당이 똑같은 때문에... (후략)

또한 대상자의 기능 상태 악화에 따른 거소 관련 사무를 경험한 참여자도 다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피후견인의 시설 입소 필요도를 판단하여, 피후견인에게 적합한 시설을 직접 알아보고 피후견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치매안심센터, 행정복지센터 등과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E: 저는 제일 어려웠던 건 요양원을 찾는 거였어요. 그래도 좋은 요양원을 찾아야, 물론 다 좋겠지만 그중에서도. 그거 찾는 과정이 조금 어렵긴 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기관이고 다른 법인들하고 같이 협력하면서 보니까 찾아졌고요.

B: 안 그랬으면 쓰러져서 못 일어났을지도 모르지. 저는 바로 실행을 했어요. 시설하고도 상담하고, 후견인 감독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다.” (중략) “어르신, 심각해지고 심해지면 우리 시설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단지 저는 일반적인 요양시설에 가시는 건 원치 않는다. 공동생활 과정이나 이런 쪽으로 제가 한번 알아보겠다.” 그러니까 흔쾌히 또 얘기를 우리 선생님이 알아봐주시라고 해서 그 다음 날 상처 꿰매고 하고. 난 다음 날 바로 어르신 모시고 가고. (후략)

일부 참여자는 피후견인의 기능 상태 개선 시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을 고려하여 기존 거주지에서의 생활 유지를 위해 현재의 주거지를 유지하기도 하였다.

*I: 이 어르신의 상태가 좋아지면 사회생활 복귀하도록 항상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략) 그리고 집도 지금 사실은 필요 없지만 유지하고 있는 것이 언젠가 나오시면 살 수 있도록. (후략)*

시설입소자의 후견을 담당하는 참여자는 피후견인의 시설 입소 후에도 피후견인의 시설 내 일상적인 생활(시설이용료, 병원비, 약제비, 의류비 등)과 관련된 지출 및 기호식품 조달 같은 기본적 지원(참여자 D)과 함께 시설 거주 피후견인을 정기적으로 면회하여 피후견인의 정서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참여자 E), 병원 동행 등도 지원하였다(참여자 D).

*D: 아무래도 행정적인 것, 비용 들어가는 것. 병원비라든가, 진료비라든가, 약제라든가, 필요한 의류. 그다음에 기호식품 그런 걸 조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E: 다만 너무 외로우셔서. 그래도 한 달에 1번은 모시고 나와서 하려고 하는 게, 시간 내는 게 그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D: 병원 진료를 하게 될 때는 시설에서는 병원까지만 모셔다 드리고 다시 철수를 해요. (중략) 그때는 후견인이 가서 하루종일 진료를 받고 다시 모시고 시설로 또 오셔야 되는 그런 생활을 했었고,*

뿐만 아니라 피후견인이 시설에서 적응하며, 후견인의 존재만으로도 피후견인이 지지를 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피후견인에 대한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G: 저는 요양원(피후견인 있는 기관)에 봉사활동도 가져드요. (중략) 풍선아트*



연수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가서 공연을 해줘요. (중략) 후견인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양반이 좀 이게 뭔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후견 활동을 하고 있어요. (중략) 그래서 이렇게 관계를 만드는 것이 피후견인을 위해서 후견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이외에도 피후견인 주변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피후견인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피후견인 주변의 사회적 관계망을 대상으로 후견인의 존재를 인지시키고, 후견인을 통해 일상생활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였다(참여자 B). 이러한 역할은 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에 명시된 후견인의 임무 중 ‘피후견인의 안전망 조력자’와 ‘긴급연락망 형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산 및 신상 관련 업무 외에도 후견인을 위한 주요한 업무 중 하나이다.

I: 소통이죠. 소통인데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렇게 주위에서 달려드는 분들이 많아요. (중략)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후략)

B: 사회안전망 구축은 사후 관리가 아니라 사전이에요. 활동 내내 사회 안전망 다 되어 있어야 돼요. (중략) 점차 스며들어가면서 저를 다 알렸어요. 기관에 다가. (중략) 이 어르신한테 있는 문제사항은 무엇이든지 저한테 연락을 해 달라. (후략)

## 2) 후견인의 권한 수준

후견인의 이러한 업무는 후견인의 권한 수준에 기반하여 진행된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법원에서 정해진 대리권 내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 것이 후견인의 권한이라고 인지하고 있었다.

B: 후견인의 권한 수준 같은 경우는 후견인 직무 대리권이 심판문 안에서만 가능한 거잖아요. (중략)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대리권에서는. 우리는 그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이상 어디까지 개입은. 저는 그 안에서 충분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후략)

A: 저도 후견 증명서에 있는 권한을 하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처럼 역할과 권한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하다보면 불명확한 부분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A: 역할과 권한이 사실 명확하잖아요. 명확하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다 보면 부딪히는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명확한 게 맞나?' 그런 의문이 들어요.

대표적으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요양보호사의 부재 시 요양보호사의 업무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며, 요양보호사와의 업무의 구분이 불명확한 부분도 존재한다.

A: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지 않아요. 주간 보호를 이용하니까. 그래서 저는 일상 생활 지원부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H: 과연 일상생활 항목을 우리들이 매번 가서 해 줘야 되는 건지 또 요양보호사 선생님도 있거든요. (후략)

또한 참여자들은 후견인의 권한이 제한되는 부분에 대해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으로 의료서비스 이용 시 수술동의서 작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 후견인 양성 교육에서는 의료서비스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도록 교육을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실제 책임을 질 수 있는 관련자의 부재로 후견인이 동의서에 서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여 해당 상황에서 해결방안을 찾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G: 요양원에서 응급실 가서 응급 처치 받고 입원하기 전까지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후견인이 해야죠. (중략) 교육받을 때는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하면 누가 해 줄 사람이 없어요. (후략)

H: 수술까지는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누가 동의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동의를 하려니까 의사 선생님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중략) 후견인이 동의서 쓰고 나중에 가족이 와서 하든.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해요. 왜 후견인으로 지정해놓고 수술 동의까지는 못하는 건지. 그럼 누가 동의를 하나요. 어떤 면에서는 후견인들한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정적으로 그렇게 명시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급할 때는 그 부분도 사실 인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B: 제일 어려운 건 신상에 관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신상에서도 주거라든지 의료 서비스. 집을 옮겨야 되거나 시설을 변경해야 될 때, 의료원에 입원해야 될 때, 수술을 할 때는 저희들이 대리권이 없어요.

이와 같은 권한 부재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 반면, 윤리적 판단에 따른 가치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은 결정을 하기 어려워하였다. 예를 들어, 피후견인의 신체적 결박이 필요한 경우 시설에서는 후견인에게 동의를 구하고자 하지만, 후견인이 임의로 윤리적 판단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고민 지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 요양시설이나 병원에서 피후견인들 어르신들 손발을 묶잖아요. (중략) 그래서 이것을 사인을 해달라고 그래요, 후견인한테.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의 인권의 어떤 것까지도 다 책임져야 되는 것인지. 없는 부분들을 요구할 때는 후견인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B: 병원에 입원을 하셨잖아요. (중략) 우리 어르신 같은 경우, 그분이 폭력을 했어요. 간호사를 때리고. (중략) 어르신 신체 결박을 하는 데 동의를 하시라고 각서나 동의서를 제가 써야 돼요. 신체 결박에 대한 어려움, 굉장히 난감하잖아요.

이러한 권한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권한 범위의 명확화와 함께 후견인과 피후견인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우선시되어야 후견 업무가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H: 범위가 설정은 돼 있지만 당연히 해 줘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또 법으로는 또 그렇게 그게 제한이 되니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클리어하게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H: 피후견인을 모시고 시골 장터를 가가지고 밥을 사 드린 적이 있어요. (중략) 모시고 가다가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을 질 수 있느냐, 보상을 해줄 수 있느냐. (중략) 그 권한이나 역할이 실질적으로 그런 것까지 다 보장이 되고 어느 정도의 예산적으로 지원이 된다면 권한을 좀 확대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 3) 공적 서비스 제공자와의 관계

치매정책 사업안내에서 제시하고 있는 치매공공후견사업 대상자 요건을 볼 때, 피후견인들은 대부분 다양한 공적 서비스의 대상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치매환자이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가 대부분이며, 따라서 시설에 거주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요양보호사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등 돌봄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또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후견 업무 전반이 관리되므로 치매안심센터에서 일차적으로 이들을 관리하며, 저소득층의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사례관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즉, 후견인은 피후견인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 과정에서 피후견인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공적 서비스 지원체계와의 협력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도움을 주고 받기도 하고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으로 요양보호사와의 업무분장 및 관계설정의 이슈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후견인은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고, 요양보호사와의 업무 범위 불명확성(참여자 H)에 따른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또한 요양보호사와 치매환자 사이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라포(rapport)로 인하여 후견인이 피후견의 사무처리에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후견인은 요양보호사와의 소통과 치매안심센터의 도움을 통해 상황을 극복하기도 하였다(참여자 G). 후견인과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후견인은 금융 및 재산관리, 요양보호사는 의료 관리)하여 요양보호사와 협력하는 참여자도 있었다(참여자 F).

*H: 요양보호사와의 어떤 관계가 애매한 또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어디까지 요양보호사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인가.*

*G: 한 분은 중간에 제가 맡게 됐어요. (중략) 요양보호사하고 피후견인하고 친해서 후견인이 가면 잘 받아주지 않는 거야. (중략) 이전 후견인이 이제 관둔 거예요. 제가 맡아서 들어갔어요. (중략) 과정을 다 요양보호사한테 설명을 해줬어요. (중략) 이제 안심센터도 같이 가서 요양보호사하고 얘기를 하고 요양보호사를 이해를 시켜서. (중략) 이제 그 과정을 극복을 했어요.*

*F: 저는 의료 분야를 일거수일투족을 제가 책임을 못 지겠는 거예요. (중략) 그래서 의료 분야는 요양보호사가 많이 해요.*

후견인은 후견활동 과정에서 치매안심센터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으며, 피후견인에게 발생한 문제 등의 해결 과정에서 치매안심센터와 의논하여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치매안심센터는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관계에서의 갈등, 후견인과 타 공적 서비스 연계체계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슈 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또한 치매안심센터에 일방적으로 보고를 하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도움을 주고받는 상호보완적 관계로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B: **\*\*치매안심센터와 광치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견뎌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주변에 복지관, 사례관리팀에서도 도와주시고 이래서 저는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후견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H: 전혀 없어요. 그냥 그분들하고 협조를 잘 해서... (후략)

G: 제가 했던 안심센터는 굉장히 후견인한테 호의적이고요. (중략) 갈 때 같이 가는 거예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같이 가는 거죠. 왜냐하면 감독기관도 봐야 될 거 아니냐. (중략) 담당하는 직원이 있으니까 동행을 해서 하니까 일이 쉽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어려운 점이 있으면 직접 얘기를 해야죠, 보고하는 게 아니라.

다만 일부 참여자는 치매안심센터와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치매안심센터 담당자의 잦은 변경으로 피후견인 관리의 연속성이 낮은 상황에서 치매안심센터의 잦은 개입이 후견인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편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D: 제가 8년 동안 모시고 있었으니까. (중략) 환경을 알면 내가 더 잘 알지, 갑자기 보직 바뀌어서 전임자에게 인수인계 받은 그 상황에 따라서 관여하고, 그건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후견인들은 타 공적 서비스 제공자와 다양한 관계 속에서 협력하여 후견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갈등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변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고 협력하는 것이 원활한 후견 업무를 위해 필요한 부분임은 인지하고 있었다.

B: 일상생활 지원 같은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있기 때문에 협력만 잘하면 일은 참 쉬워요.

F: 이 권한에 대해서 혼자서 다 하려고 하기보다도 그 행정복지센터하고 치매안심센터하고 적절히 분산해가지고 제가 못하는 걸 못한다고 얘기를 해야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후략)

## 나. 후견 과정에서의 어려움

### 1) 피후견인 매칭 과정에서의 어려움

인터뷰 참여자들은 양성 교육 이후 피후견인을 지정받기까지 오랜 시간 대기 기간이 있었다. 양성 교육을 통해 후견인 양성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만, 실제 매칭되어 활동하는 후견인 규모는 현재까지 크지 않다. 참여자들은 매칭률이 낮은 요인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F: 2019년에 했는데, 지원자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는 많이 없을 줄 알았지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덟아홉 명 지원했나요. 그중에 두 명을 뽑더라고요. 심사위원들도 보니까 좀 제대로 해서 하는데, 저는 뭐 그냥 신청하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먼저, 피후견인 발굴에 어려움이 있다. 2018년 제도 초기에 양성 교육을 이수한 참여자들은 피후견인이 후견사업 참여에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기에 대상자 수가 적다고 생각하였다.

*G: 후견인을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대상자 선정을 하면 자꾸만 안 하려고 그러고 주변에서 못하게 하고 그러는 바람에 발굴에 어려움이 있어서 후견활동이 늦어졌죠.*

일부 참여자들은 후견에 대한 욕구나 필요를 느끼는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대상자들이 적극적으로 발굴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 결과, 후견인 양성 교육을 통해 후견인 규모는 증가하지만, 피후견인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매칭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였다.

D: 저는 D시에 거주하면서 치매안심센터에 건의를 했더니 금년도는 안 된대요. 예산이 딱 배정돼 있어서, 내년도에 가서. (중략) 현재의 인원 가지고 내년 예산 책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에 또 안 되는 거예요.

G: 근데 지금은 대상자가 많아지는데 예산이 이제 어떻게 되나 모르겠어요. 지금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요양원에서도 이제 제가 이제 후견활동을 계속 하니까 이 양반도 좀 해주세요. 이 양반도 좀 해주세요.

F: F구 치매안심센터도 지금 리스트를 그 외에도 있지만은 꼭 필요한 사람 중에 네 사람 정도 리스트를 만들어놓고 있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선정을 못해주는 거예요.

또한 일부 후견인은 후견인의 활동 지역이 한정되어 매칭이 어려울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후견인과 피후견인 간의 매칭 시, 지리적 접근성은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이다. 따라서 후견인이 활동 가능한 지역과 피후견인의 거주 지역 간의 거리 때문에 매칭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C: 피후견인을 선임해서 안배를 할 때 **\*\*광역치매안심센터**하고 또 시군의 치매안심센터하고, 법원에서 직권으로 지정하는 게 있는데요. 저는 활동하는 범위를 A시와 B시, C시, D시로만 제가 한정을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대상자가 나타날 때,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제가 **\*\*도나 전 지역을** 한다고 했다면 바로바로 있을 수가 있겠죠.

## 2) 후견 업무 수행에서의 어려움

피후견인 매칭 후, 후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후견인들은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나 후견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후견인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후견증명서를 지참하지 못한 경우 후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후견증명서를 지참하고, 치매안심센터의 도움으로 이를 증명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견인의 업무를 인정하지 않아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B: 바로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제가 후견인 등기 증명서를 안 가지고 갔을 때도 있고요. (중략) 그럴 때 그걸 제출을 못하고 내가 후견인이라 하면 인정을 안 해주는 부분, 후견인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으면 좋겠다.

C: 담당 의사가 후견인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진단서라든지, 병원의 진료 소견이라든지 그런 걸 해달라고 할 때 기피하기 때문에 인식이 덜 되어 있다. (중략) 그다음에 피후견인에 대해서 관공서에 가서 여러 가지 증명 발급을 할 때, 본인 도장, 본인 신분증, 특정후견 증명서를 보여줘도 불필요하게 당사자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중략) 그런 것이 어려웠어요. 관공서하고 병원에 가서 우리가 신분 대리 행위를 할 때, 불필요한 증명을 요구한다. 또 후견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A: 관공서에서 저를 후견증명서를 보여드려도 업무 처리가 안 됐을 때, 그걸 센터랑 공유했을 때도 센터랑 은행 직원이란 통화해도 인정을 하지도 않고 그렸을 때, 그런 부분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후견증명서에 후견 업무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담당자의 인식 부족, 관련 행정 지침상의 내용 부재, 일관되지 않은 업무처리 절차 등으로 후견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되기도 하였다.

A: 은행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 증명서 안에 있는 내용은 분명히 저희가 할 수 있는 업무인데도, 이 분들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은행 업무 담당자마다 또 의견이 다른 거예요.

G: 인감증명을 떼려면 제 등기부 등본과 제 주민등록증하고 피후견인 도장과 주민등록증하고 제 도장하고 이걸 가져가서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중략) 우리한테 권한은 있어요. 등기부 등기사항에 있는데 그런 지침이 없는 거예요. (중략) 행정안전부에는 그런 지침이 없어요. (중략) 인감증명을 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요.

후견인들은 피후견인이 치매환자이기에 발생하는 어려움도 경험하였다. 인지기능 상태가 좋지 않은 치매환자의 특성상 치매환자와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참여자 B). 또한 피후견인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현재 생활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후견인이 파악하여야 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였다(참여자 H).

B: 어르신하고는 갈등 많았어요. 1년 가까이. (중략) 근데 제가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업무 처리보다는 일상적인 부분에 많이 개입을 했어요. (중략) 초반 1, 2년 사이에는 너무 많이 했어요. (중략) 어르신의 표정, 일상에 서서히 스며들어갔다 그러죠.

B: 치매 환자를 보조할 때 어려움은 의사결정이 정확히 전달 안 된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거죠. (중략) 배변 기저귀를 갈아야 되거나 이런 부분은 표정이나 어느 표현으로 봐서도 다 알 수가 있는데 뭔가 요구 사항을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 부분에서 파악한다는 게 제일 어렵죠.

I: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르신이 일상생활 하는 데 무엇이 문제인가를 모르세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모르니까.

또한 피후견인 주변에 구축되어 있는 사적 관계망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개입하는 부분에서도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치매환자의 낮은 인지 수준으로 인하여 치매환자는 주변의 관계망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후견인이 그 관계망에 개입하여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F: 치매 어르신들이 돈 쓰는 분야를 자기 자신이 관리를 잘 못하니까 누구한테 맡기더라고요. (중략) 본인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돈도 그분이 관리를 하죠. 근데 그 시스템을 제가 못 고치겠더라고요. (중략) 두 사람이 또 이렇게 오랜 한 마을에 있었던 관계이다 보니까 단박에 제가 이렇

제 뭘 바꾸겠다 하는 게 어렵겠더라고요.

I: 후견인이 선임되기 전에 이미 있던 관계들이 있어요. 후견이 붙었을 때는 그  
피후견인은 그 관계에 있던 사람들에게 완전히 종속화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긴 시간이었고,

그 외에도 후견 업무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처리에서도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후견인은 후견감독인에게 제출하는 월 정기보고서<sup>34)</sup>에는 후견 업무에 대한 기록 외에도 생활비 사용처에 대한 지출 내역, 금융자산에 대한 파악, 구입 물건 내역 등 자세한 내용들을 작성해야 한다. 또한 별도의 양식에 피후견인 재산 관련 금전지출 내역과 활동 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보고 내용은 후견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하며, 후견인으로서의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34) 후견인 월 정기보고서 내용

| 내용                         | 상세내용                        |
|----------------------------|-----------------------------|
| 피후견인 주소                    | 변경 여부 확인                    |
| 시설거주 여부                    | 자유제한시설 거주 여부 / 그 외 시설 거주 여부 |
| 피후견인 상태                    | 돌봄 필요도                      |
| 연금 및 사회복지급여 수령             | 연금 등의 종류, 지급장소, 액수 등        |
| 급여 및 연금 등을 지급받는 은행         | 계좌번호 / 생활비 사용처 및 지출 내역      |
| 생활비 부담자                    |                             |
| 생활비 이외의 용돈 사용처             | 사용처 / 용돈지급 방법               |
| 금융자산 상태 및 처분 가능 금융계좌       | 계좌번호 및 금액 / 정기적 입금되는 액수     |
| 보고 기간 중 피후견인이 구입한 물건 또는 권리 | 일상생활용품 제외                   |
| 법률행위 또는 신상결 정을 대리한 경우      | 의료, 주거, 법률, 은행, 공법상 신청행위 등  |
| 피후견인 직접 방문 또는 대면 횟수        |                             |
| 피후견인에게 배달된 주요 우편물 처리       |                             |
| 피후견인의 조력자 및 긴급연락망          |                             |
| 기타 보고                      |                             |

출처: “〈서식 4-1〉 후견인 월 정기 보고서,” 보건복지부, 2024d, p. 375. [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19&list\\_no=1480673&seq=4](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19&list_no=1480673&seq=4)

G: 후견 보고서라든가 연간 보고서라든가 월말 보고서 그런 것들을 일반인들이 하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일부 참여자는 개별적으로 후견 업무에 대한 상세한 기록과 함께 증빙서류들을 작성하고 있었다.

I: 바로 그냥 마을금고 새마을금고에 가서 체크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중략)  
갈 때마다 언제 가서 뭐 봤다는 걸 씁니다. (중략) 날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중략) 이런 양식 없는데,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에 후견인들은 정기보고서의 내용과 지출 증빙의 간소화 또는 전산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후견인 양성 교육 및 보수 교육에서 정기보고서 작성을 위한 제반 절차 및 정보화 교육 등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후견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G: 후견 보고서를 매월 해서 정기적으로 낼 때 그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서류가 통장을 복사를 해서 낼 수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월 천 원씩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금전 내역서를 해가지고 이제 그걸 첨부 파일로다가 났었거든요. (중략)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온라인으로 다 하게 되니까 한 달 며칠부터 며칠까지를 딱 이제 캡처해서 그걸로 해서 내니까 깔끔하고 좋잖아요.

G: 온라인적인 그런 금융 거래 이런 부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캡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기초적인 것 부분은 교육을 했으면 뭔가 그 보고서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한 금융거래 시 후견등기사항 증명서 유효기간에 대한 절차적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후견등기사항 증명서는 법률상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시 은행에서 관행상 3개월에 이

내 발행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관계기관 합동, 2023). 재산관리가 후견 업무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상황에서 후견인은 금융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해 3개월마다 후견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경험한다고 이야기하였다.

*H: 금융 관리는 후견 등기부 증명서 그걸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게 3개월짜리인데요. 3개월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나 ◇◇으로 가서 받아야 되는데 그게 과연 그럴 수밖에 없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 다. 피후견인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방법

전술한 바와 같이 피후견인은 치매환자로서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있어,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따라 참여자들은 나름의 방법으로 피후견인의 의사를 최대한 이해하고 이를 반영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다. 대표적인 방법은 피후견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이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을 지속적으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연락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끊임없이 질문하여 피후견인에게 문제를 인식시키고 그들의 의사를 파악하고자 했다.

*H: “지금 보험이 들어가 있는데요. 알고 계세요?”라는 그런 것도 인지 못해요. (중략) 이 보험이 이러이러한 보험인데 자세히 말씀을 드리죠. 중복이 돼 있다. 또 말씀드리고 나서 꼭 필요한, 계속 갈 거냐 아니면 해지하는 게 좋겠느냐라고 이제 묻죠. (중략) 어르신들한테 다시 얘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최종적으로 어르신의 의사를 통해서 이제 실천하고 그런 어떤 절차를 밟고 있죠. 문제 인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F: 그런 문제는 그 사람과 전화를 하다, 전화를 수시로 통화하거든요. 사실 전화 통화하다 보면 그 분이 얘기를 해요.*

또한 시설에 거주하는 피후견인의 경우, 후견인은 시설 직원과의 직접 소통하거나 시설의 SNS를 활용하여 피후견인의 상태를 파악하였다.

*D: 제가 직접 대면을 못하니까 거기에 시설장이나 사회복지사, 아니면 요양보호사와 수시로 카톡이나 문자 교류를 해요. (중략)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활동을 했었죠.*

*B: 그 시설 같은 데는 밴드라는 게 당연히 있는 거예요. 1:1의 어떤 교감이 없더라도 밴드가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어르신의 상황 파악. 제가 일상생활 안심한다는 건 시설 가고 나서 안심한 거죠.*

그러나 치매환자의 특성상 그들의 의견을 완전히 반영하는 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피후견인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치매안심센터와 협의하여 결정을 내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치매안심센터와의 의견 차이가 발생하기도 했으나, 대다수가 센터의 권고를 가능한 따르려는 경향을 보였다(참여자 A). 이 같은 상황에서 치매안심센터에서 수행하는 후견지원회의 또는 공동 의사결정 회의는 후견인의 의사결정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 저는 어떤 게 조금 있을 때마다 항상 안심센터랑 공유를 해요. (중략) 제가 업무하면서 생각했던 게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서 결정하는 대로 저는 진행하고, 그 정보를 찾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어필할 수 있는 정도. (중략) 그 선생님도 보니까 선생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다시 회의를 거쳐서 저한테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맞는 것 같고.*

다만 일부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모든 결정을 후견인에게 일임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참여자 C). 이는 치매안심센터마다 사례에 대한 개입 수준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며, 특정 치매안심센터가 후견지원회의나 공동 의사결정 회의를 통한 의사결정 지원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지원 과정에서 치매안심센터의 후견감독인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에서 편차가 존재함을 나타낸다.

C: 피후견인이 생각하는 것과 또 저나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 바른 길로 안 나가고 할 때, 많은 결정을 치매안심센터와 동사무소 사회 복지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고 제가 상의를 해요. 그런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통상 답을 못 줄 때가 있어요. "그건 후견인께서 알아서 결정하세요." 그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결국 피후견인의 안전이 위협받는 긴급한 상황에서 후견인은 치매안심센터와 협의하여 우선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사후적으로 피후견인의 의견을 묻거나 해당 결정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러한 대응 방식은 피후견인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조치이지만, 이로 인해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이 제한됨을 의미하기도 한다.

A: 주간보호에 가시는 것도. (중략) 인지가 너무 낮으시니까. 어쨌든 거기 가면 서 식사 해결되니까. 그냥 그건 어르신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해야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결정을 내린 거였어요.

B: 저는 바로 실행을 했어요. 시설하고도 상담하고, 후견인 감독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다." (중략) 그래도 어르신이 안 가려고 막 그러실 줄 알았거든. 설득 여지도 없지. (중략) 다음 날 가니까 너무 잘 계시네. 밥을 세 끼를 다 잡수셨어요.

I: 어르신이 원하시는 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또 어르신이 원하신다고 할지라도 저나 또 안심센터에서 저희들이 매월 사례 회의를 합니다. (중략) 우

리는 생활지도사, 시청 공무원들과 복지센터 공무원들 나옵니다.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독단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구요.

H: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르신이 일상생활 하는 데 무엇이 문제인가를 모르세요. (중략) 제가 이제 확인을 하면서 이게 과연 필요한 것인가를 일단 판단하고 그것을 이제 안심센터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한 번 토의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어르신에게 문제된 그것을 한 번 여쭙보죠.

G: 인권은 존중받아야 되구요. (중략) 의사소통을 해도 뭐 그냥 일상적인 거나 하는 거지 나머지 깊은 거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안심센터하고 주무관님하고 해서 큰 거는 다 결정을 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수시로 통화해서 그 주무관님 의견을 많이 따라서 제 의견하고 절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라. 후견인 활동 지원

### 1) 치매공공후견인 양성 과정 및 보수 교육

치매공공후견인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치매공공후견인 양성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치매공공후견인 양성 교육은 국가치매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정해진 교육(총 21시간)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교육 내용의 대부분은 치매에 대한 이해나 법률 사무, 후견인의 직무와 역할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B: 제도적인 부분을 많이 하잖아요. 양성 교육할 때는. 그 이후에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이런 게 나오지만. 그때는 처음 제도적이고, 행정적인 절차 과정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너무 뜻깊다. 좋았다.'

그러나 교육 내용과 실제 활동 내용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A: 교육받을 때 거주지 관련도 저의 결정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략)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가정에 같이 갔는데 “현재 지금 지역사회에 계실 분이 아니다.” 말씀하셨는데, 선생님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런 갈등이 교육 내용이라는 다르지 않나. 저 내적으로 갈등이 많이 생겨서.

또한 참여자들은 현재 온라인으로 진행 중인 치매공공후견인 양성 교육을 대면교육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제도에 대한 대략적 이해가 있지 않는 이상 대면교육을 통해 제도의 이해를 돕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즉, 타 후견제도 참여 경험이 있거나, 보수 교육의 경우는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첫 번째 양성 교육은 대면교육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E: 치매공공후견 교육 듣기가 조금 쉽지는 않았어요. (중략) 온라인으로 교육을 들었는데 (발달장애인은) 대면 교육하는 부분이 되게 저는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모르는 것들이 더 많으니까. (중략) 발달장애인 공공 훈련 교육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교육이 크게 무리는 없었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대면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D: 신규자, 하고자 하는 희망자들 있지 않습니까? (중략) 그런 분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집합 교육을 시켰으면 어땠겠나 하는 생각을 늘 갖고요.

치매공공후견인은 후보자 양성 교육 이수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별도의 보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보수 교육은 희망자 대상으로 운영되지만, 보수 교육 활성화를 위해 광역지원단에서는 보수 교육을 이수한 후견인 후보자를 우선적으로 후견인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있다. 보수 교육의 내용은 후견인의 역할, 윤리, 후견감독사무 안내, 후견활동 사례, 치매환자와 소통 방법, 지역사회 사회복지서비스의 이해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광역지원단에서는 상황에 따라 교과목을 별도로 구성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수 교육은 매년 동일한 내용을 일률적으로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어, 참여자들은 후견인의 참여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 교육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B: 보수 교육을 매년 받을 때는 ‘이거 너무 시간 낭비 아닌가. 똑같은 내용, 똑같은 강사라든지, 단순히 강사만 바꾸고 이렇게 한다는 건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활동하는 그 책자가 매번 다른 게 아니고 거의 똑같더라고요. (중략) 후견인은 치매 공공 같은 경우는 3년마다 1번씩 되잖아요.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이분들을 잘 후견활동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후견인 선생님들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부분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D: 보수 교육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대면이나 온라인 그런 과정을 하고. 사실 교육이 똑같아요. 매년 똑같은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비대면 그런 온라인 강좌 그걸로 대체해주고.*

이에 참여자들은 현재 활동 중인 후견인과 양성 교육 이후에 피후견인 연계 대기 중인 후견인 후보자에게는 상이한 내용으로 보수 교육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음을 피력하였다. 즉, 대기 중인 후견인 후보자에게는 현재의 보수 교육을 통해 후견 업무 전반을 상기시키는 작업이 중요하며, 현재 활동 중인 후견인에게는 후견활동 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E: 아직 실질적으로 후견을 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보수 교육을 듣잖아요. 사실은 그분들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런 교육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존에 대기하고 계신 분들과 지금 훈련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보수 교육은 분명히 달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후략)*

*H: 이제 현장에서 사례 좀 어려웠던 것들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현장 사례들이 실질적인 교육에 반영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좀 해봅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례 발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등을 공유하거나, 정기보고서 작성 등과 같은 실질적 업무 수행에 대한 보수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치매안심센터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간담회와 포럼 등도 보수 교육으로 같음하여 보다 유연한 교육 인정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A: 기본 틀은 있지만 그 과정을 해결하는 방법이 선생님들은 노하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모였을 때 한번 이렇게 같이 기본 틀을 두고 그 안에서 자기만의 노하우 같은 거 그런 거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G: 보고서 작성이라든가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D: 교육보다는 사실 애프터 서비스가. 나중에 우리가 후견활동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려움 부딪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때의 지원이 사실 더 필요한 것이지, 그런 원론적인 일반적인 교육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나아가 양성 교육 이후 피후견인 연계까지 기간이 많이 소요될 경우 활동 없이 1년 단위 보수 교육의 정기적 이수를 요구하며 무한정 대기하도록 하는 것 역시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였다.

E: 치매 교육 양성은 받고, 활동도 없이 계속 뒹가는 해야지 되는 게, 그리고 그분들도 이렇게 보수 교육을 안 받으면 탈락이 되고. '이제 과연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것 없이 계속 뒹가는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중략) 그분들은 그것도 없이 그냥 1번 교육받았으니까 매칭될 때까지 무한정 기다려야 되는 거고, 보수 교육은 계속 들어야 되는 거고.

## 2) 후견인 활동비

현재 후견인에 대한 활동비는 1인 담당 시 월 20만 원이 지급되며, 2인 담당 시 월 30만 원, 3인 담당 시 월 40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참여자들은 현재의 1인 월 20만 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용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다만 현재 본인들이 수행하는 후견 업무의 수준과 대비할 때 현재의 20만 원이 충분하다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부족하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다만 자원봉사 또는 사회적 기여 측면에서 후견업무에 참여하고 있어, 현재의 활동비 수준을 수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C: 저도 처음에 접할 때는 자원봉사 성격으로 접했는데 실제로 피후견인하고 접촉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많아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요. (중략) 저는 1인당 20만 원 한 달 활동비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B: 저는 어르신 처음 갔을 때 되게 어렵고, 업무 후견인 활동 실무 능력에서 모든 경험을 다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 서비스, 공공, 금융, 행정 거의 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신상에 관한 것까지. 그래서 하다 보면 그럴 때 너무 집중해야 돼요.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많았었고, 그럴 때는 이 보수를 생각한다면 알토당도 않죠.*

만약 증액될 경우 서비스 질에 대한 논의가 제기될 수밖에 없으며, 외부에서 후견인을 보는 시각도 달라질 것이고, 후견인에게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질 것이기에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따라서 현재의 활동비 수준에서 적당한 수준까지만 개입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럽지 않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참여자 F).

*C: 금액이 커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서비스 질이라든지 또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후략)*

F: 지금 이런 말씀하셨던 거를 또 요구를 받아들여줘가지고 이렇게 보장해 주시려고 그러면은 자꾸 더 올려줘야 돼요. 저는 그냥 치매안심센터하고 또 행정복지센터하고 적절히 권한 분배해가지고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만나보고 요양보호사들이 관리하는 걸 적절히 컨트롤만 좀 하고 일선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20만 원 정도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만 모든 참여자들은 현재 2인 이상부터 10만 원 단위로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고 지적하였다. 피후견인은 개별적 개입이 필요한 대상으로 2명의 피후견인에 대한 사무를 진행할 때 업무가 반감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현재의 1인 20만 원을 유지하고, 1인이 추가될 경우 20만 원씩 증액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제안하였다.

B: 피후견인들 한 사람이 후견인 활동을 할 때, 한 사람씩 매칭되는, 피후견인이 2명, 3명 될 때는 간격에서 금액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D: 1인이 20만 원, 2인 할 때 30만 원, 3인 할 때는 40만 원 이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중략) 아니, 이분하고 이분하고 사정이 다르고 엄연히 다른데 같이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H: 최소한 60 정도 돼야 3명을 했을 경우에. 그래야 뭔가 기본적인 관리가. 한 분 하고, 또 추가 한 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 제4절 치매안심센터 측면에서의 현황 진단

### 1. 참여자 주요 특성

치매안심센터 사업 담당자 FGI는 수도권 및 비수도권 권역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수도권 5명, 비수도권 4명의 담당자가 참여하였다.

조사 참여자들의 직종은 공무원(임기제 포함) 5명, 사회복지사 2명, 간호사 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이 속한 기관의 근무 인원은 최소 6명에서 39명까지 다양하였다. 치매안심센터에서 근무한 총기간(현 소속기관에서의 근무 기간) 역시 최소 1년에서 최소 6년까지로 다양하게 분포하였다. 현 소속기관에서 담당한 후견심판청구 건수(누적)는 최소 3건에서 최대 14건까지 기관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2024년 5월 말 기준 담당 사건 수는 최소 1건에서 최대 6건이었다. 조사 참여자들은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총괄하는 것 이외에도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 등록 관리 사업 등 다수의 사업을 겸임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4-5〉 참여자 주요 특성(치매안심센터 사업 담당자)

| 구분   | 기본 정보 |     |            |                      | 업무 경력         |                   | 담당<br>후견 건수 |            | 현재 담당 업무                                                 |
|------|-------|-----|------------|----------------------|---------------|-------------------|-------------|------------|----------------------------------------------------------|
|      | 성별    | 연령대 | 직함         | 소속<br>부서<br>근무<br>인원 | 총<br>근무<br>기간 | 현<br>소속기관<br>근무기간 | 누적          | 현재<br>(24) |                                                          |
| 수도권  | 여     | 30대 | 사회<br>복지사  | 7명                   | 5년            | 5년                | 14건         | 5건         | - 치매공공후견, 맞춤형<br>사례관리                                    |
|      | 남     | 30대 | 사회<br>복지사  | 6명                   | 3년            | 3년                | 6건          | 3건         | - 치매공공후견,<br>맞춤형 사례관리                                    |
|      | 여     | 30대 | 주무관        | 39명                  | 6년            | 2년                | 5건          | 4건         | -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br>터 운영, 치매공공후견                            |
|      | 여     | 40대 | 주무관        | 38명                  | 1년            | 1년                | 4건          | 1건         | - 치매공공후견,<br>맞춤형 사례관리                                    |
|      | 남     | 30대 | 주무관        | 10명                  | 4년            | 4년                | 4건          | 3건         | - 치매공공후견,<br>등록관리 및 상담등록,<br>치매치료비관리                     |
| 비수도권 | 여     | 40대 | 임기제<br>공무원 | 12명                  | 6년            | 6년                | 7건          | 3건         | - 치매공공후견,<br>맞춤형 사례관리,<br>치매사례관리위원회                      |
|      | 여     | 30대 | 간호사        | 24명                  | 3년            | 3년                | 9건          | 6건         | - 치매공공후견, 조기검진<br>및 등록관리, 인식 개선,<br>치매안심마을, 치매인력<br>관리 등 |
|      | 여     | 50대 | 간호사        | 16명                  | 6년            | 6년                | 4건          | 3건         | - 치매공공후견, 환자등록<br>주변 사례관리, 맞춤형<br>사례관리                   |
|      | 남     | 50대 | 주무관        | 13명                  | 1.6년          | 1.6년              | 3건          | 3건         | - 치매공공후견, 맞춤형<br>사례관리                                    |

주: 1) 대상자 특정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은 수도권/비수도권으로만 표기함.

2) 현재 담당하는 후견 건수는 재청구 건수를 포함한 숫자임.

출처: 연구진 작성

## 2. FGI 분석 결과

### 가. 치매공공후견사업의 업무 비중

소속기관의 업무(치매안심센터의 역할)에서 치매공공후견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한 결과, 약 10% 내외라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치매안심센터별로 차이가 있긴 하나, 현재 담당하고 있는 후견 사건 수가 많지 않음에 따른 응답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사업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업무의 비중은 약 30~40% 내외를 차지하였다. 앞에서 확인한 참여자의 기본 정보와 함께 고려해 볼 때, 사업 담당자는 다방면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치매공공후견사업에도 많은 에너지를 투여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A: 10%도 안 된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거의 (피후견인을) 한두 명 하니까. 그리고 제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한 30~40% 정도 되고요.

D: 치매안심센터사업 중에서 후견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 내외 정도인 것 같고, 제가 담당하는 업무 중에서의 비중은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F: 체감하고 있는 정도는 5~10%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지금 담당하는 사업들 중 치매공공후견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50%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크게 피후견인 발굴 및 선정, 후견인 후보자와의 매칭, 후견심판청구 지원, 후견인 관리 및 감독 업무로 운영된다. 후견사업 전반에 담당자가 관여하지만,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업무에 대해서는 사업의 경과 연수에 따라 응답의 차이가 있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이 시작된 초창기에는 사업 안내를 비롯하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선정하는 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투여되었다. 사업의 초기



에는 생소한 법적 용어 및 서식에 대한 이해와 이를 위한 준비 과정이 특히 많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A: 면담을 몇 번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적 조사, 주변환경까지 다 조사해야 되고요.

C: 발굴할 때는 여러 번 어르신을 자주 찾아 뵙는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에 업무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고요.

F: 시작할 때는 아무래도 심판청구에 대한 준비가 지역사회에서 이 분에 대한 히스토리나 이력들을 다 전부 알고 나서 진행하는 사업이라서 그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하느라고 많은 에너지가 투입되는 것 같고요.

그러나 사업이 6년 차에 접어들면서 대상자 발굴 자체에 투입되는 에너지는 사업 초기와 비교하면 덜한 상황이다. 현재 대상자 발굴은 치매안심센터 내부 또는 외부 관련 기관에서의 추천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치매안심센터마다 차이가 있긴 하나 대다수가 외부 관련 기관(행정복지센터, 복지관 등)의 추천을 통해 발굴되는 경우가 많다. 지자체에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통합사례관리 회의에서 발굴되는 대상자가 많고, 치매안심센터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 중 후견으로 연계되는 경우도 있어 이전만큼 대상자의 발굴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는다.

C: 반반 정도인데요. 동에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사례관리를 나가서 어르신을 한번 만나서 어떤 상황인지 보죠. 원하시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될 경우에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치매환자로 등록하기 위해서 센터를 방문하셨는데, 보통 독거나 위기 상황이 있으면 사례관리팀이 같이 상담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후견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하면 사업을 소개해 드리고 내부에서 받고요.

E: 동에서 통합사례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그때 요청을 많이 주세요.

오히려 담당자들은 현재 후견 감독 및 관리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대상자 발굴 및 선정보다 더 큰 업무 부담을 느끼고 있다. 피후견인을 발굴하고 심판을 청구하는 과정은 거의 일회성으로(참여자 I)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련 노력이 줄어들 수 있지만, 후견인 선정 이후부터 종료되기까지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참여자 C의 “3년이란 시간 동안 후견인과 후견 감독인은 계속 마음의 짐을 가지고 가는 사업”이라는 발언은 이러한 상황을 잘 대변한다.

특히 담당자들은 특정후견 기간이 만료된 후 재청구로 접수된 사건들과 신규 후견 사건들이 누적되기 시작하면서 후견 관리 및 감독 업무의 강도가 더 높아지고 있음을 느낀다. 즉, 초기와 비교하여 관리감독이 필요한 사건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담당자들이 느끼는 업무의 비중 역시 변화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담당자들이 해당 사업을 맡은 기간이 길수록 더욱 뚜렷하다.

C: 이제 6년 차 넘어가니까 오히려 감독 활동의 비중을 조금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중략) 대상자가 치매환자이다 보니까 감독인의 참여가 조금 덜하면 어르신들이 후견사업에 대해서 어느 순간 인지를 잘 못하시기도 하더라고요.

D: 후견이 한 번 정해지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항상 예기치 못하게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관리 감독이. (후략)

E: 피후견인 특성상 문제행동이 계속 발생하고 후견인분이 해결해 주시더라도 몇 달 뒤에 또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과정들이... (후략)

I: 후견인 관리 및 감독 업무가 거의 대부분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피후견인 발굴이나 심판청구 준비는 거의 일회성인데 심판청구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 후에 후견인 선정되고 3년 동안 계속 관리를 해 줘야 해서 관리 감독 업무가 가장 비중이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나. 사업 담당자가 인식하는 피후견인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UN 장애인권리협약을 통해 강조되기 시작한 의사결정 지원의 중요한 의미는 어떤 상황에서도 개인의 가치관, 선호, 욕구 등을 최대한 파악하고, 그에 따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 담당자들 역시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의사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후견이 이루어져야 함을 최우선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참여자 A). 실제적인 후견 역시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으나, 피후견인의 의사가 본인의 건강이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후견인과 사업 담당자가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A: 저희는 무조건 최우선은 어르신의 의사 표현이에요. 어르신이 의사 표현을 하실 수 있으면 거의 따르는 편이고요. 근데 치매 어르시다 보니까 자기 표현이라는 게 자기가 좋은 거지,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어르신의 의사 표현이고, 두 번째는 안전의 문제. (중략) 어르신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지만, 만약에 그게 안전의 문제라면 저희가 밀고 나가죠. 어르신이 아무리 그게 싫다고 하셔도 할 수 없이,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으로 가고 있어요.

D: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건강과 관련된, 자기 건강을 해치는데 그렇게 하고 싶다는 부분은 다 들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제재하는 건 있는 것 같고요,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필요 시에는 보호적 개입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원칙의 고수와 함께, 사업 담당자들은 후견인과 피후견인 간의 라포 형성이 의사결정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다. 후견인 선임 이전에 후견인과 피후견인이 라포를 형성하는 기간을 설정하고, 잦은

접촉을 통해 후견인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시키며 피후견인의 욕구나 선호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작업은 향후 후견활동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E: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가 라포 형성 기간이 있잖아요. 그 3개월 심판청구 기간 동안은 저희가 라포 형성 기간으로 두고 그때는 진짜 많이 찾아가시라고 권유를 드리거든요. (중략) 피후견인이 나를 이렇게 진심으로 대하지 않는다고 느끼시면 마음을 많이 여시고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나아가 사업 담당자들은 후견인들이 후견 과정 전반에서 피후견인의 상황에 맞는 대화법 및 접근 방식을 활용하여 욕구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판단한다.

*H: 본인의 눈높이에 맞는 대화법이라든가 이런 화법을 이용해서 그런 욕구를 파악을 하고 보통 후견인도 피후견인을 만나면서 욕구 파악을 하고. (후략)*

이 같은 상황에서 볼 때, 실상 경증의 치매환자나 스스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에는 피후견인의 의사를 이해하고 반영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인식한다.

*E: 사실 경증이나 중증이나랑 피후견인의 사업 이해도와 적극성에 따라서 이 의사 반영이 달라질 것 같긴 한데... (후략)*

*H: 초기 치매환자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본인의 의사결정 다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서... (후략)*

그러나 치매의 중증도에 따라 의사소통 정도와 후견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질 수 있다(참여자 E). 후견 감독 과정에서 관찰된 바와 같이 중증의

치매환자일 경우, 후견인들은 언어 표현 외의 방법으로 그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지원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후견인들은 우편물이나 집안의 독촉장 등을 확인하여(참여자 E) 필요한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피후견인의 상황과 욕구를 파악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E: 어르신이 말씀하신 제 아니라 그런 우편물이나 집에 있는 독촉장 이런 것들을 보면서 확인을 하고 해결을 하고 있고요.*

후견감독인의 입장에서 사업 담당자가 직접 피후견인을 방문하거나 우선 접촉을 통해, 피후견인의 욕구나 상황을 파악하기도 한다.

*C: 한 번씩 방문을 해요. 이런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시니까 다시 알려드리고요.*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 후견인-피후견인 간의 활동을 통해 피후견인의 욕구나 선호를 간접적으로 파악하게 된다. 매월 이루어지는 후견지원회의는 이러한 의사결정 지원을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한다. 이 과정에서 후견인과 후견 감독인(사업 담당자) 간의 소통을 통해 현재 후견 과정 전반을 이해하고, 피후견인의 욕구를 반영하여 공동으로 결정을 내리는 창구로 활용한다.

*F: 매월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그런 현황들을 공유할 수 있는 후견인 사례회의를 통해서 의사를 좀 파악하고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I: 한 달에 한 번씩 후견지원회의라고 후견인한테 한 달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중략) 후견인하고 후견 감독인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의사결정 지원을 보통 해 드리고 있어요, 욕구에 맞게.*

*H: 후견지원 월 보고 회의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고, 감독인하고 상의를 해서 이 사람(피후견인)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런 부분이 적합하다라고 공통의 의*

*견을 가지고 진행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이 같은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사업 담당자들은 공동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사자의 최선의 이익’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확한 의사를 파악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그 의사를 파악하는 방법 역시 모르겠다”는 참여자 B의 발언은 이를 뒷받침한다.

*B: 그분의 진심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제 후견인의 말씀이 옳다고만 볼 수도 없어요. (중략) 그분의 정확한 의사를 파악한다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파악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일부 담당자들은 피후견인의 의사를 참고하되 실질적으로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나, 피후견인의 의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을 부담스럽게 인식한다. 특히 중증 치매노인의 경우,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거부를 하지 않은 상황’을 동의로 간주하여 후견인과 공동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상황들도 존재한다.

*B: 그러니까 이제 보호하는 선에서 후견인 분의 말씀을 주로 듣고, 대상자분의 의견은 참고할 부분이지, 대상자분의 의사가 반영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요.*

*E: 중증으로 가셨을 때 요양원 입소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들어가시겠다고 하지 않으시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피후견인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시도록 하시다가 한 번은 그냥 외상상태로 주말 내내 그냥 대소변을 하신 채로 누워 계셨던 거예요. 그 경우에 대상자분께 요양원에 정말 들어가시지 않으시겠냐라고 여쭙봤을 때 보통 싫다고 계속하셨는데 답변이 없으셨어요. 그렇게 좋다, 싫다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미동하시긴 했지만 싫다고 거부를 하지 않았으니 동의로 간주를 하고 저희가 입소를 진행한 상태가 있긴 하거든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에 관한 김효정(2020)의 연구에서도 후견인들이 피후견인과 원활한 소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후견인이 생각하기에 피후견인에게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결정 또는 사업 담당자 등과 상의하여 결정을 한 후 피후견인에게 통보하는 식의 후견활동이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피후견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한계와 보호적 개입이 필요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후견인과 사업 담당자들은 피후견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하나, 피후견인이 직접적인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방법으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뒤따른다.

따라서 후견감독인의 입장에서 사업 담당자들은 향후 후견인들이 피후견인과의 후견 과정에서 경험한 사례나 현장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마련해야 한다는 데 다수가 뜻을 모은다.

*B: 제 생각엔 경험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지침에 이렇게 적어 주셔도 연세가 있으셔서 아마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경험 많으신 분들은 교육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같이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면 아마 일하시는 데 답답함이 좀 덜하실 것 같아요.*

*C: 치매환자를 대하는 방법이나 후견 전후로 상담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은 해드리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D: 후견인 선생님들한테 교육 같은 걸 정기적으로 한 번씩 하는 건 좋을 것 같긴 해요. 일단 치매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강의부터 해서 노인들의 노화로 오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나 이런 것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후견인 선생님들끼리 한 번씩 모여서 같이 사례 공유도 하고 이런 부분이 더... (후략)*

현재 후견인 교육 시 치매 또는 노화에 대한 이해를 교육 내용에 포함하고 있긴 하나, 관련 내용이 현실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재편될 필요성 역시 강조된다. 이 같은 노력들이 더해질 때, 피후견인의 의사를 파악할 수 있는 자세가 달라짐은 물론 후견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역시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후견감독인으로서 이들 역시 당사자의 의견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관련 노력이 후견인뿐만 아니라 후견감독인에게도 이루어질 필요성 역시 제기된다.

## 다. 사업 담당자가 인식하는 치매공공후견인의 주요 역할

### 1) 치매공공후견인의 주요 사무

후견감독인의 입장에서 사업 담당자들은 치매노인에게 가장 필요한 후견인의 역할은 신상보호의 측면이라고 인식한다. 법률상 신상보호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나, 피후견인들의 경우 병원 진료 동행을 통해 현재의 건강 상태에 대해 관리하거나 사회서비스 신청 및 변경 등과 같은 제반 업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련의 신상보호와 관련한 사무가 ‘피후견인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참여자 F)’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E: 건강 관리, 치매 관리에 대한 연장선. 그리고 진료 동행에 대한 부분 그리고 부수적으로 진료를 갔을 때 후견인 선생님이 같이 가서서 혼자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략) 사회복지 서비스들 그런 것들을 신청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대리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F: 신상 보호들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되게 가볍게 볼 수는 있겠지만 어떤 상황*



이 터졌을 때 피후견인 어르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략) 신상보호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필요하고 강한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좀 드는 상황입니다.

H: 치매 환자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신상 보호 측면이 가장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재산관리가 중요하다는 응답 역시 있었으나, 이는 피후견인의 재산이 이들의 일상생활 유지 등을 위해 적절히 지출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나온 발언으로 해석된다.

E: 제가 생각하는 건 통장 관리인데요. 재산 관리 부분인데, 저희 피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수급비 나오는 날 수급비 전액을 다 인출하셔서 거의 다 음주하시는 데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음주 한 일주일 정도 하시고 3주 동안은 식사를 거르시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후략)

## 2) 피후견인의 거주 장소에 따른 치매공공후견인의 주요 사무

치매공공후견인에게 요구되는 주요 사무는 피후견인의 거주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지역사회(재가)에서 거주하는 피후견인의 경우, 후견인은 은행 업무를 비롯하여 병원 진료, 사회 서비스 신청(변경)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일부 참여자는 이를 두고 후견인이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일(참여자 A)’을 거의 다한다고 생각할 만큼, 후견인이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역할을 전담한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후견인 활동의 다양성은 피후견인의 욕구에 대응하여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역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경계를 설정하

기 어려울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후견인의 역할이 과중해질 수 있다는 문제를 사업 담당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A: 재가에서 후견인들, 선생님들이 활동하는 건 다양하죠. 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거의 다 돕고 계시니까. 집에 물건을 뭘 구입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까지 전부 다 해 주시는 거니까요. 요양병원, 행정복지센터, 아니면 서비스 받고 싶은 것들. 저희는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거의 다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C: 은행 업무 하는 거나 보통 병원 진료 갈 때 한 달에 한 번씩이든 정기적으로 진료할 때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없는 어르신은 동행하시거나 아니면 물건을 새로 구매하셔야 될 때 동행하시거나 그런 거.

I: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 같은 경우는 후견인이 매달 가정 방문하면서 어르신 욕구를 파악해가지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신청해 준다는 거 아니면 우편물을 확인해서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을 위한 서류 제출 대리하는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사업 담당자들은 피후견인의 기능 상태가 악화되어 시설로 입소해야 하는 상황에서 후견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보고 있다. 후견인은 시설 입소나 병원 입원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고, 피후견인이 선호하는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의사결정 지원은 당사자의 의사결정 능력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이해하며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포함한다(박정연, 2020). 따라서 이 단계에서 후견인들은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이후 거주지를 이전(시설 또는 병원)할 경우, 원래의 주거지를 정리하는 업무까지 후견인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사업 담당자들은 언급했다.

C: 후견 받은 후에 건강이 안 좋아져서 후견인 선생님이 병원을 알아보고 입원을 시켜드리는 것까지 하셨고, 병원에서 요양원으로 전환할 때는 어르신

한테 어떤 곳이 좋은지도 알아봐 주시고 금액이랑 이런 걸 다 확인해서 해주셨었고요. (후략)

E: 요양원 가시면 사실 초반에는 원래 살던 집을 정리하시거나 집 재계약을 해지하시거나 이런 사고들 때문에 처음에 조금 정신이 없으시고요.

상기 사례와 같이 피후견인이 시설(또는 병원)로 거소를 이전하였거나, 당초부터 시설에 거주하는 피후견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후견인의 역할에 대해 사업 담당자들은 서로 상반된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현재 시설(또는 병원)에 있는 피후견인을 대상으로는 대체로 매월 비급여 항목을 포함하여 입소(입원)비용에 대한 납부, 면회 또는 유선 접촉을 통한 안부 확인 등의 후견 사무가 이루어진다.

A: 매월 진행되는 비용, 그다음에 매월 어르신이 잘 계시는지를 확인하는 정도고요.

B: 요양기관에 계시거나 요양시설에 계시면 사실 특별히 할 일은 없습니다. 다 달이 복지급여가 정산되는 거 확인하고, 만나서 얘기 들어주고.

C: 입원이나 입소하신 상태에서는 면회하고 간식 해 드리는 거, 그리고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가끔 비급여 항목에 주사나 약을 줄 때는 보호자한테도 고지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견인 선생님이랑 간호사가 상담해서 진행을 하거나.

일부 참여자들은 이 같은 역할을 두고 ‘후견인의 역할이 크지 않다(참여자 E, I)’고 생각한다. 이는 후견인의 역할에 대한 경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신상보호와 관련한 사무가 치매노인에게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관점에서 나온 반응으로 볼 수 있다. 즉, 시설(또는 병원)에 입소한 피후견인의 경우, 신상보호와 관련한 역할을 해당 시설(또는 병원)에서 일정 부문 담당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후견인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응답이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E: 관내 요양원이 몇 군데 없어서 OO 이런 곳으로 많이 가져드요. 그렇게 가시면 후견인 선생님이 실질적으로 거기까지 가시기가 너무 머신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 유선으로 점검하시고 어버이날이라든가 이럴 때만 가시니까요. 본인 역할이 요양원비 납부, 필요한 물품 구입 정도밖에 안 돼서 본인이 느끼시기에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I: 사실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후견인의 역할이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중략) 사실 요양원 입소를 하게 되면 거기서는 무조건 종료가 맞지 않나. (중략) 요양원에 계신 분 같은 경우도 이번에 후견 기간이 끝나게 되면 딱히 해 드릴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은 또 요양원에서도 관리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요.

반면 일부 사업 담당자들은 시설(또는 병원)에 입소해 있을지라도, 피후견인의 권리 옹호 차원에서 후견인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인식한다(참여자 A). 오히려 후견인이 존재함으로써 시설(또는 병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누군가 피후견인을 지켜보고 있다’는 인식(참여자 D)이 피후견인과 그 주변인에게 공유되어, 보이지 않는 위해로부터 보호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즉, 시설(또는 병원)에서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후견인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A: 시설 안에서의 권리, 이 어르신이 받아야 되는 권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는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중략)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얼굴을 뵈고 뭔가 일이 있거나 아니면 요양원에서 뭔가 일이 있을 때 선생님이 가서 확인을 하고 물어보거든요.

D: 눈에 보이지 않는 업무도 많은 것 같아요. (중략) 후견인 선생님이 옆에 계시니까 ‘이 사람을 지켜주는 누군가가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많이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후견인의 역할과 책임 범위는 피후견인의 거주 형태와 상태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 역할을 정의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부족할 경우, 후견인이 제공하는 지원의 범위가 과도하거나 부족할 수 있으며 이는 피후견인의 권리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후견계획 수립 및 후견감독 과정에서 후견인과 후견감독인 간의 소통을 통해 후견인의 역할을 정의하고, 그 안에서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돕는 작업이 보다 중요할 것이다.

### 3) 후견인의 후견 사무 수행 관련 후견감독인의 역할

후견인의 사무 범위는 법원이 정한 심판문 내에서 이루어지지만, 실제 활동은 후견인 개인의 인식과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후견감독인으로서 사업 담당자들은 후견인이 그들의 역할의 범위와 중요성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돕고,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견에 대한 명확한 안내 및 역할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참여자 C). 그렇지 않을 경우,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이 자칫 ‘과도한 돌봄’으로 접근될 수 있기 때문이다(참여자 H).

*C: 감독인이 한 번씩 이렇게 방문해서 지금 받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르신들은 어쨌든 누가 나를 도와주러 온다는 거에 대해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시니까 조금 많이 개선되는 것 같아요.*

*F: 뜻이나 그런 사명에 대한 본인이 체감하고 있는 역할에 대한 범위나 그런 중요도에 따라서 조금씩 권한이나 역할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H: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의지가 앞서다 보니 이분의 돌봄 계획을 좀 과도하게 해 갖고 와가지고 저희가 좀 조정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측면도 있고.*

따라서 후견계획 수립(후견시작 전)과 후견감독(후견시작 후) 과정에서 후견감독인과 후견인 간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후견인과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후견인의 역할이 법적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며, 필요시 후견인에게 명확한 지침과 피드백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연유로 일부 참여자는 후견인이 법적으로 명시된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며, 추가적인 권한 부여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참여자 A, C). 이러한 주장은 권한이 과도하게 부여될 경우 후견인에게 불필요한 책임이 전가될 수 있으며, 후견감독인의 부담도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다(참여자 F).

A: 하고 있는 뭔가도 충분하고, 권한을 더 부여받을 필요도 없고요. 권한으로는 병원에서 하는 수술 동의만 얻는데, 그것도 저는 적당하다고 봐요. 그것까지 후견인 선생님한테 부담 주는 건 아니라고 봐요.

C: 광범위함에 있어서 이분이 어르신인 모든 걸 다 책임져서 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정말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이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오히려 그 외에 너무 자주 방문을 하셔야 된대거나 어르신이 무엇을 요구하는 걸 다 들어드려야 될 필요는 없다고 후견인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어요.

F: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너무나도 적고 그 역할에 대한 책임은 후견인 선생님들이 짊어지기에는 너무나도 책임의 소지가 중하기 때문에. (후략)

## 라. 사업 담당자가 경험한 후견 과정의 어려움

### 1) 후견 과정에서의 단계별 어려움

#### 가) 후견인 발굴 및 선정

후견을 진행하면서 사업 담당자가 인식하는 어려움은 후견 대상자 발굴 및 선정, 후견인 후보자와의 매칭, 관리 감독 측면에서 각각으로 부각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후견 대상자 발굴은 치매안심센터 내부뿐 아니라 외부 기관의 추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외부 기관에서 추천되는 사례의 대다수는 “법적인 문제(참여자 A, B, C)”로 인해 긴급한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가 많아, 후견 대상자로 연결되기 적절치 않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A: 저희 케이스는 거의 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오는 케이스였어요. 동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아버님이 돈이 없는데 계속 물건을 구매하셔서 체납이 점차 되니까.

B: 만약에 주위 분들한테 피해가 간다고 하면 해결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서는 후견인을 두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중략) 사건, 사고가 발생했거나 여지가 모호할 때 후견인을 세우는 게 저희로서의 기준입니다.

C: 문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개입을 했으면 좋겠지만, 현재는 무언가 경제적이든 일상생활에서든 문제 상황이 조금 두드러지게 발생하는데, 핸드폰 사기를 당하셨어요. 대포폰. 그래서 체납액 때문에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해결이 잘 안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 다 개입해서 하고 있고요. (후략)

추천되는 대상자들의 다수는 체납 혹은 주변인에게 피해를 가하는 등의 상황으로 즉각적 대응을 필요로 하지만, 공공후견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길게는 4개월(참여자 A)”까지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담당자로서

운영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A: 뒤늦게 법적인 문제 때문에 (후견)신청을 하시면. 그 법적인 문제라는 게 바로 한 달, 두 달 사이에 뭔가를 해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심판청구를 하면 보통 2~3개월, 길게는 4개월도 걸리는데, 그 안에 뭔가를 하려면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같은 상황에서 사업 담당자들은 외부 기관이 인식하는 후견의 의미와 개입 시점이 다르다고 느낀다. 이는 외부 기관에서 “해결되지 않은 사례”가 후견으로 연계되는 측면에서의 어려움과 결부된다.

A: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 아니면 주위에서 지인들이 해결하지 못할 때 오시는 것 같아요.

F: 소위 얘기하는 지역사회에서 처리하기 힘든, 어느 센터나 기관에서도 맡기 힘들어하는 그런 케이스들을 의뢰를 받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고요.

현재의 공공후견사업은 당장 시설 또는 병원 입소를 필요로 하는 긴급한 이슈를 가진 대상자들에게는 적절하지 않다고 인식하지만(참여자 E), 실상은 이 같은 사례가 다수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후견인과의 라포 형성을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서는 “중증으로 넘어가기 전에 후견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참여자 C)”고 여기지만, 외부기관에서 연계되는 사례는 대체로 와상의 중증 치매환자가 다수로 이 역시 후견 연계 과정에서의 어려움으로 지적된다.

C: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해서 중증으로 넘어가기 전에 후견인을 해 놓음으로써 중증으로의 진행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 동에서는.  
(후략)



E: 시급하기 때문에 어르신이 지금 당장 필요해서 요청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치매공공후견사업이 진행되기가 힘들어요. 당장 입원하셔야 하고 당장 이번 달 안에 가셔야 한다고 하시는데 공공후견사업은 로딩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3개월의 소요 시간이 걸리거든요.

나아가 사업 담당자 입장에서는 후견 대상자의 적합성을 결정하는 문제 역시 쉽지 않다. 치매공공후견사업 대상자는 치매정책 사업 안내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할 경우를 우선순위로 하여, 후견 필요 여부와 후견 유형을 후견지원회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업 담당자의 결정(혹은 판단)이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A: 선정 회의 전에 거의 다 내부적으로, 아니면 의뢰기관 분들과 상담을 하고 진행돼서. (후략)

D: 선정회의 전에 대상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협의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후략)

이 과정에서 담당자들은 과연 이 대상자가 후견 대상자로 적절한지, 혹은 사례관리 측면에서 운영되어야 하는지, 외부 기관으로의 연계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서 결정하기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지원체계 없이 결정하는 것의 어려움과 후견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제철웅 외(2023)의 연구 결과와 맞닿는 측면이다.

B: 발굴 선정에서 제가 고민이 되는 게 이 분을 후견인을 뒀다 되나, 안 뒀다 되나를 제가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에 선정 회의를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어렵고. (후략)

G: 피후견인 발굴 및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 분 헤드리는 거에 대해 정말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혼자 결정하는 것도 잘 모르겠고요.

## 나) 후견인 후보자와의 매칭

피후견인 선정 후에는 광역치매센터에서 추천한 후견인 후보자와의 매칭이 이루어진다. 후견인 후보자 모집 및 선정은 광역치매센터에서 전담하여 진행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치매안심센터 사업 담당자들은 피후견인과의 매칭이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후견인 후보자는 피후견인과의 지리적 근접성, 과거의 경력,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되지만, 피후견인에게 “3년간 법적 보호자(참여자 C)”를 세우는 일인만큼 후견인과 피후견인 간의 적절한 매칭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C: 누군가의 삶에 내가 선택한 사람을 3년간 법적인 보호자로 세운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깨가 무거운 일이라서요. 아무나 그냥 좋은 거 같아서, 잘할 것 같아서라고 추측으로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D: 과연 이 분이 어르신과 맞을지를 사실 저희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후보자 선생님 중에서 한 명, 한 명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기에는 후보자 선생님들에게 너무 부담이기 때문에. (중략)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어르신이란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생각한 거와 또 다른 성향의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후략)*

이에 일부 참여자는 후견인 후보자 선발 심사 시, 치매안심센터 사업 담당자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참여자 A). 사업지침서상에 후견인 후보자 선발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부재하며, 광역치매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한다는 점에서 향후 반영이 가능한 부분으로 보인다. 즉, 선발 과정에 사업 담당자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매칭 이후의 문제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A: 저희는 후견인 면접을 볼 때 요청을 했어요. 저희도 참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는 후견인 면접이나 이런 거 할 때 참여를 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면접을 볼 때 어느 정도 캐치를 해서 ‘어르신하고 맞을 수 있을 까?’라는 걸 유념을 하죠.

#### 다) 후견인 관리 및 후견 감독

법원으로부터 후견인 선임이 이루어진 후, 본격적으로 후견인-피후견인 간의 후견이 시작된다. 이 과정에서 사업 담당자는 후견인의 월 정기 보고서 점검 등 전반적인 감독 업무를 맡게 된다. 후견 감독은 결국 후견인과 피후견인 간의 관계가 원만히 유지되고 그 안에서 적절한 후견 사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후견인 및 피후견인 양측에 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참여자 F).

F: 피후견인 세 명을 모시고 있는 게 아니라 후견인까지 해가지고 저는 여섯 명을 지금 대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여섯 명인 거예요, 피후견인 세 명과 후견인 세 명.

특히나 의사결정 지원 측면에서 후견이 적절히 이루어지는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문서화된 보고서(정기보고서 등)의 점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례적인 후견지원회의를 통해 후견인과 만나 후견활동의 전반적 어려움 등을 공유하는 기회를 갖고 있다. 그러나 사업 지침서에는 후견 감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후견지원회의에서 논의되는 문제 등에 대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는 후견인이 서로 다른 치매안심센터 소속의 피후견인을 담당하는 경우, 더욱 두드러진다. 이에 일부 참여자는 해당 지역 내에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기도 하다(참여자 C). 물론

피후견인마다 상황 및 욕구가 다르다는 점에서, 일률적으로 이를 정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최소한의 원칙이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

*C: 후견인을 관리하는 건 방문하는 범위, 횟수 이런 게 지침상에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끼리 정한 적도 있었거든요. 이 구에서 했던 선생님이 타 구에서 할 수도 있는데 자치구마다 너무 다르니까 (후견인) 선생님들도 혼동스럽고 담당자들과 (후견인)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어디 구는 어떻게든 데 여기는 뭐도 안 해주네.”라는 부분이 있어서. (후략)*

또한 후견인과의 소통이 어려운 경우, 감독인으로서 후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권한이 부족하다는 어려움도 있다. 후견인의 임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발생하면 후견인의 변경 신청이 가능하지만, 단순한 소통 문제나 경미한 관리상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E: 아무리 감독 기관의 입장이라 하더라도 (후견인을)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또 없기 때문에. (후략)*

*F: 저희한테 너네는 솔루션 방안을 나한테 내놓아라 그것을 내가 하겠다라고 하고요. 정기 보고서나 활동 일지에는 본인이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이렇게 해 놓았다라고 (사후에) 보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I: 후견인이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도 감독인이 계속 물어봐도 소통이 안 돼서 어떻게 활동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후견인이 잠시 부재한 경우, 후견 사무의 공백 최소화를 위해 후견 감독인이 후견인의 활동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어(참여자 I) 이로 인한 업무 과중의 어려움 역시 제기되고 있다.

I: 후견활동 지원도 어떻게 보면 후견 감독인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후견 공백 시 후견인 역할을 후견 감독인이 대신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요. (후략)

참여자들에 따르면 각 치매안심센터에서는 1명의 담당자가 공공후견 사업을 전담하고 있다. 현재는 각 센터별로 맡고 있는 후견 사건이 많지 않은 편이지만, 재청구를 포함하여 관리하는 후견 사건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경우 관리 감독의 업무가 더 커질 것으로 예견하며 그에 따른 인력 충원 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D: 만약에 후견인 선생님들이 한 10명 넘어가고 많아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걸 담당하는 사람들도 좀 늘어나야 될 것 같고요.

## 2) 유관 기관과 협력 과정에서의 어려움

피후견인에게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후견인의 책임 범위와 역할이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있으며 후견감독인의 입장에서 개입하기 어려운 경우 역시 존재한다. 예를 들어 피후견인이 긴급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후견인이 법적 대리권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참여자 A) 이는 후견인의 실제 책임 범위를 넘어서는 요구이다.

A: 예를 들어 피후견인이 갑자기 집에서 쓰러져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보통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는 동으로 연락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동에서 거기서부터 업무에 선을 나누기 시작하면 이분은 후견인이 있는 분, 후견인이 법적 보호자니까 알아서 다 해야 되니까. (중략) 이제 후견인 선생님이 해야 할 범위에서 또 벗어나는 일이에요. (중략) 후견인이 선정되고 나면 이분에 대한 건 다 알아서 해줄 거라는 기대가 사실은 동에서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같은 상황에서 후견감독인, 후견인과 지역 내 유관 기관 간 명확한 역할 분담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제 유관 기관 간 협력이 잘 이루어진 경우, 이후 후견 과정 역시 원활히 이루어진 바 있다(참여자 C). 후견감독인 및 후견인과 유관 기관 간 소통이 부족하거나, 역할이 명확하지 않을 때 앞의 사례와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일부 참여자는 후견이 시작될지라도, 기존 유관 기관에서 이루어지던 지원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참여자 E).

*C: 그쪽(행정복지센터)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쪽에 연락을 해주고, 우리 쪽에서도 일이 있을 때 서로 연락을 해서 어르신을 돌보는 게 어떻게냐고 회의를 하고 난 후부터는 원활해졌어요.*

*E: 저희가 후견인으로 아무리 들어가더라도 주민센터에서 이 개입을 중단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이는 유관 기관에서 후견 및 후견인 업무에 대한 인식 부족이나 사업에 대한 이해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일 수 있다. 사업 담당자들은 실제 후견 과정에서 금융기관이나 요양기관 담당자 사이에서 이 같은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에서는 후견인 증명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공공후견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필요한 사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참여자 C), 이로 인해 후견인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잦다. 또한 기관 담당자마다 사업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해 상황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지는 점(참여자 D)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는 후견인들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어려움을 초래하며, 결과적으로 후견감독인에게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C: 예금이나 적금 같은 거, 아니면 통장 이런 거 할 때 금융기관에 후견인 증명 서류를 내고는 있지만 담당자분들이 치매 공공후견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 은행을 정해서 가진 하지만 은행의 담당자가 바뀌면 선생님이 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D: 은행에서는 담당자마다 자기 기준에 따라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요양기관의 경우, 후견인의 역할을 요양보호사의 역할로 간주하거나 후견인을 피후견인의 전적인 보호자로 인식하여(참여자 E)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후견인의 실제 역할과 책임을 두고 혼선이 발생하며, 그 과정에서 관리상의 어려움 역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개선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한다.

*E: 후견인은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데도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후견인이 왔으니까 보호자가 생긴 줄 아시는 거예요, 자녀처럼. 그러니까 뭐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것들이 당연히 그래 많이지죠. 없던 자녀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 마. 치매공공후견사업에 대한 개선사항

### 1) 지자체 담당자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

치매공공후견사업에서 향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논의한 결과, 치매공공후견사업의 담당자들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앞의 후견 대상자 발굴과 맞물리는 것으로, 당장 시설 입소를 필요로 하거나, 병원 입원을 필요로 하는 등의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한 대상자는, 후견인 선임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후견 대상자의 성격에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C: 이 사업은 경증일 때 오히려 필요한 거지, 중증으로 이미 진행됐을 때 더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I: 동 주민센터는 사실 후견사업 취지에 안 맞는 분들을 많이 추천해 주셔서요. (중략) 즉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이 보통 피후견인으로 발굴이 많이 되거든요.

이 경우, 오히려 지역 내에서 사례관리 대상자로 관리하면서 필요시 후견으로 연결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참여자는 후견인 선임까지의 기간은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로 관리하여, 개입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I: 후견인 선정되기까지 소요 시간이 있어서 그 사이에 맞춤형 사례관리를 동시에 하면서 동시에 관리할 수 있게. 그런 공백 기간은 사례관리를 해 드리고 후견인 선정 이후에는 사례관리를 종료하고 후견으로 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후견의 시작은 대상자의 발굴에서부터 이루어지며, 이는 곧 후견의 개입 시점을 어떻게 간주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서 지역 내 유관 기관의 치매공공후견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

또한 하나의 후견 사건은 최대 3년까지 기간이 보장되는 데 반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잦은 교체로 지속적인 업무 교류가 어렵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C: 저희는 공무원이고 담당하시는 분(지자체)은 공무원이신데 너무 잦은 인사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시니까, 책임자가 자꾸 바뀌니까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요.



## 2) 특정후견 종료 시점의 실효성에 대한 재고

특정후견 종료 시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의 특정후견 대상자의 경우, 최대 3년 이내의 후견 기간이 보장되나 참여자들 중 피후견인의 사망을 제외하고 종료로 이어진 사례는 부재하였다. 참여자들 대다수는 치매 및 노화의 진행 속도를 고려할 때 “증상이 더 호전될 수 없다(참여자 D, E, I)”는 염려 속에서 재청구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D: 중간에 그냥 살아 계시는데 종료된 적은 없어요.*

*E: 치매 대상자이시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된다거나 또 아직 발견되지 않은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치매는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이 요양원에 입소하시게 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재청구는 무조건 진행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I: 사실 재청구 같은 경우도 이분이 치매 환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증상이 여기서 더 호전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결국 미래에 문제 행동이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예비적인 방안으로 또 후견인을 선정해서 재청구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 같아요.*

‘예비적인 방안으로(참여자 I)’ 후견을 이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업 담당자 입장에서는 한번 심판청구가 시작되면 시설(또는 병원) 입소하기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과 함께(참여자 I),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후 피후견인이 자립하여 지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상황이다(참여자 A).

*A: ‘3년이 지난 후에 이 분이 정말 가정에서 혼자 자립적으로 살 수 있을까? 안 전망 구축으로 살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했었는데요. 그 고민이 현실로 되는 게, 저희는 올해 3월에 다 종료가 되어서 두 분 다 재청구를 했어요. 재청*

*구한 이유가 어르신의 신체적인 상황은 더 안 좋아졌었고, 그러면 후견인 선생님이 더 필요한데 여기서 종료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I: 보통 한 번 청구하게 되면 말이 특정후견 기간 3년이지, 결국에는 요양원에 들어가실 때까지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후략)*

따라서 특정후견의 방식을 유지하더라도 3년이라는 기간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혹은 종료 사유를 현재와 같은 기간 만료로 두기보다 피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종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역시 제안하고 있다. 사업의 운영 취지 및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제기되는 비판 사항 등을 고려할 때, 특정후견의 기간을 무한정 늘리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후견 종료라는 퇴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재청구로 이어진다는 것은 현장의 욕구와 제도의 설계 사이에 간극이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피후견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운영 방안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A: 이 사업 자체의 목표가 좀 변경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간 없이 조건을 어르신 사망, 아니면 피후견이나 후견인이 원하지 않을 때라는 걸로 하는 게 이 사업에 더 맞는 것 같아요.*

*C: 후견인을 3년 이내로 한다는 건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 3) 후견인에 대한 교육 강화 및 보수 개선

후견인에 대한 교육 강화 및 보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제기되었다. 후견인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여 ‘어디까지가 후견의 사무인지’에 대한 고민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후견인 교육과 실무 지침서 제공 등 다방면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보다 구체화된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후견인들이 자신이 수행해야 할 역

할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문과 요청을 할 경우 후견 감독인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보다 실무적인 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는 교육자료 및 지침 제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F: 후견인에 대한 교육이 되게 중요하겠더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중략) 제일 많이 저는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이거 어디까지 해야 되냐, 내가 어디까지 개입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그 부분들을 저희는 설명을 다시 해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지침도 어디에도 그렇게 명확하게 써져 있는 곳이 없어요.*

나아가 감독인의 입장에서 볼 때, 실제 후견인들에게 주어진 역할 및 책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공되는 활동비가 이에 상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후견인의 업무와 책임에 비해 현재 책정된 활동비는 불충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수준의 보상에 불과하다는 불만이다. 따라서 현실적인 수준의 활동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F: 본인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나 범위는 굉장히 많고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급여가 오히려 너무 적다고 판단이 드는데 이게 인원수에 따라서 급여가 삭감이 돼요.*

*I: 활동비 금액에 대해서도 조금 인상을 하면 공공후견인을 선정하는 거에도 조금 더 활발히 되지 않을까.*

#### 4) 현장의 수요를 고려한 예산 책정

한정된 사업 예산 내에서 운영되다 보니 후견이 필요할지라도 실제로 연계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C: 예산이 부족해서 헤드릴 수가 없어요. 다른 자치구는 모르겠지만,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으로는 부족해서 저희가 다른 곳에서 끌어다가 예산을 쓰거나*

활동비를 드리는데 원하시는 대기자분들은 다 해드리고 싶어도 해드릴 수 없어서 그냥 일단 대기로 하고요.

D: 대상자를 계속 늘릴 수도 없고 계속 데리고는 가야 되는데. (중략) 좀 더 치매안심센터에서 중요한 사업이 되면 어르신들한테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후견 개입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시점과 실질적으로 후견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전체 치매안심센터 사업 예산에서 사업이 운영되는 상황이다 보니, 필요로 하는 대상자를 모두 후견으로 연계하기는 현실상 어렵다. 더욱이 현재는 재청구 사례까지 관리하고 있어, 새로운 후견 사건 연계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일부 참여자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따로 대기자 리스트를 작성하는 등(참여자 C, E)의 노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 개인적으로 대기자 리스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역의 사례관리 담당자 선생님들이 무연고이고 후견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면 리스트업을 하고 있어요. 제 마음 속에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올해는 이분을 들어가고자 했어요. 미리 한 1년 정도 전에 생각하고 있는 편이에요. 내년이나 내후년 때까지는 저희 지금 다 차 있는 상황이에요.

H: 분명히 잠재적인 대상자들이 되게 후보군이 많지만 담당자들이 다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후략)

##### 5) 치매공공후견사업 관련 치매안심센터의 역할 조정

치매공공후견사업 전반에서 치매안심센터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C: 치매안심센터에서 할 사업인지 의구심이 드는 게, 지금 선생님들이 다 얘기하신 대로 비용도 문제가 되죠. 예산도 조금 내려오죠. 인력도 없죠. 이런 상황에서 치매안심센터에서 공공후견인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5명, 10명 늘어나면 그때부터 관리가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저희 담당자 입장에서도 늘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산도 없지만, 무게감이 그만큼 더 늘어나니까.

E: 재청구도 사실 신규처럼 청구를 넣어야 하는 거라 발굴만 안 한다 뿐이지 은근히 소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이 사업만 진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 참여자는 치매안심센터가 지역 내의 주 사례관리 기관이 아니라고 인식하며(참여자 F), 따라서 공공후견사업 역시 전담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에 한계를 느낀다. 최일선의 치매관리 전달체계로서 치매안심센터는 조기검진을 비롯하여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지속성을担保한 장기적인 사업인 공공후견사업을 맡는 것에 대한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F: 지역사회에서도 치매안심센터 자체가 주 사례관리기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검진 성격이 강하고. 검진부터 시작해서 중점사례관리, 치매공공후견사업 대상자가 될 때까지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후략)

I: 센터에서는 이 후견사업만 맡는 게 아니니까.

즉, 3년이라는 기간 동안 후견 감독인의 입장에서 책무가 이어지지만 해당 사업에 대한 치매안심센터 내부 또는 외부에서의 인식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실상이다.

C: 사실은 3년이란 시간 동안 후견인과 후견 감독인은 계속 마음의 짐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처음만 바쁘고 마지막만 바쁘다고 자칫 생각할 수 있어요.

*F: 아쉽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조용하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이고, 일 터지면 난리가 나는 사업이다라는 게 있고요.*

따라서 수행기관의 업무를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대다수 참여자들이 공감하고 있다. 특히 공공성을 띤 사업인 만큼 정부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의지가 있다면(참여자 H), 현재와 같이 치매안심센터가 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에는 부담이 따른다고 보고 있다.

*H: 저도 수행 기관이나 수행 업무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부에서 이 대상을 활성화시켜서 확장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따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확장을 할 것 같으면은 안심센터에 한정된 인원한테 계속 하라고 하는 거는 무리가 되는 거고요.*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치매공공후견사업 운영과 관련한 치매안심센터의 역할에 대한 의견은 사업 담당자마다 상이하였다.

한 가지 제안으로는, 현재 치매안심센터가 후견 대상자 발굴과 선정, 후견심판청구 지원 업무에 집중하고, 이후의 관리 및 감독 업무는 광역치매센터나 중앙치매센터가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H: 치매안심센터는 후견 대상자 발굴, 추천만 전담하고, 중앙이나 광역에서 발굴, 추천한 대상자를 선별해서 감독을 다 전담하다 보면 좀 더 많은 대상자가 발굴되고 서비스가 전문적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또 다른 의견으로는 정신질환자 및 발달장애인 치매공공후견사업과 같이 법인으로의 운영 역시 건의되었다. 법인 차원에서 전반적인 후견 감독 및 관리를 맡거나 문제 상황이 많거나 고난이도 사무가 예상되는 후견의

경우 법인에서 이를 담당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역시 개선되었다.

*I: 법인이 낫다고 생각을 해요. (중략) 오히려 관리, 감독만을 중점적으로 하면  
후견인 활동도 그렇고 피후견인도 좋은 관리를 잘 받으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E: 적어도 문제 상황이 많으시거나 고난도 케이스 같은 경우만이라도 법인에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6) 사회 전반의 치매공공후견에 대한 인식 개선

마지막으로 사회 전반에서 치매 공공후견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독거 가구나 치매 유병자 수 등의 주요 사회 지표를 고려할 때,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는 많지만 현실적인 개입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특히 당사자인 노인들에게 중요한 사업임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다수가 동의하고 있다. 제철웅 외(2023) 연구에서는 치매공공후견 사업에 대한 안내 시 재산 관리나 통장 관리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재산에 대한 관여로 오해되어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에 대한 명확한 안내와 홍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유관 기관인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D: 분명히 이렇게 독거 노인, 보호자가 안 계신 치매 어르신들 중에서 도움이 필요  
하신 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텐데 생각보다 발굴이 어렵다는 건 홍보가 잘 안 돼  
있어서, 이 서비스를 몰라서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H: 사회적 교육이나 이런 사회적 인식이 조금 많이 심어져서 이런 제도가 있어  
서 내가 앞으로 보호받지 못할 때 후견제도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걸 조금 노인들이 알고 있으면 이게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 제5절 후견감독관 측면에서의 현황 진단

### 1. 참여자 주요 특성

후견감독관 FGI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3명으로 서울, 수원, 부산 가정법원에서 현재 공공후견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사관이 참여하였다. 후견감독관이 속해 있는 부서는 각 가정법원의 조직체계에 따라 상이하였다. 서울은 금년도부터 후견과가 신설되어 해당 과에서 공공후견감독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두 지역은 가사와 소속으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후견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원(조사 참여자 포함)은 해당 지역의 후견감독 건수에 상응하여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후견감독관으로 근무한 기간은 약 1년에서 6.5년까지 다양하다. 조사 참여자들은 대체로 치매공공후견을 비롯하여 이외 발달장애인, 정신질환자 공공후견 등의 후견감독 업무를 겸하며, 이외 후견인들을 위한 교육활동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견감독 과정에서는 후견인 및 피후견인과의 접촉 횟수가 적당한지, 피후견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방임이나 학대는 없는지 등을 주요하게 파악한다. 이외 지자체(후견감독인)와 후견인, 후견인과 피후견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이사항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표 4-6〉 참여자 주요 특성(후견감독관)

| 구분 | 기관 정보     |                                            | 경력            |                   | 현재 담당 업무                                                                                                                                   |
|----|-----------|--------------------------------------------|---------------|-------------------|--------------------------------------------------------------------------------------------------------------------------------------------|
|    | 직위        | 부서 내 후견감독<br>담당 인원 수<br>(소속부서 전체<br>근무 인원) | 총<br>근무<br>기간 | 현<br>소속기관<br>근무기간 |                                                                                                                                            |
| A  | 조사<br>사무관 | 18명<br>(26명)                               | 6.5년          | 3.5년              | ①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을<br>사유로 특정후견이 청구되어 특정<br>후견이 개시된 사건 감독<br>② 치매공공후견지원사업을 사유로<br>특정후견이 청구되어 특정후견이<br>개시된 사건<br>③ 개인의 청구로 특정후견이 개시된<br>사건   |
| B  | 조사<br>주사보 | 6명<br>(43명)                                | 11개월          | 8.5년              | ① 후견 개시 사건, 후견 감독 사건<br>(공공후견 전담), 후견 부수 사건,<br>후견 공조 사건 진행 및 조사 담당<br>② 친족 후견인 교육 진행<br>③ 후견 사건 외부기관 연계 총괄, 신<br>규 조사관 교육, 후견 사건 배당<br>담당 |
| C  | 조사<br>주사보 | 4명<br>(16명)                                | 1.6년          | 6.6년              | ①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미<br>성년후견 등 사건에 대해 명령에<br>따라 개시 조사 진행 및 조기감독,<br>정기감독 진행<br>②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에 대한 교육                                       |

출처: 연구진 작성

## 2. FGI 분석 결과

### 가. 치매공공후견 감독 업무의 특성

현재 참여자들이 담당하는 공공후견 감독 업무 중 치매공공후견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았다. 이는 앞에서 치매공공후견사업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까지 치매공공후견사업으로 청구된 심판 수 자체

가 적다는 측면에서 연동되는 사항이다.

A: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작년에 중앙치매센터의 사업보고서를 보면, 연평균 치매 공공후견 접수 건수가 93건이에요. 똑같이 대입을 할 수는 없지만 〇〇 기준으로 1년 동안 53건의 치매 감독사건이 있다면 결국은 그 나머지 사건들이 〇〇에 있는 것이고, 그렇게 따지고 보면 노령 인구가 많은 〇〇이나 〇〇, 〇〇이 정도. 그런 대도시들에 있는 사건들 빼면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앙치매센터 보고서도 치매공공후견사업 미참여 지역이 전체 중 40% 정도를 상회하는 걸로 보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편차들이 있는 것 같고요.

치매정책사업 안내에 제시된 바와 같이, 치매공공후견사업에 대한 감독 업무는 매년 후견사무보고서와 후견감독사무보고서를 검토하는 것이 주요 업무이다. 후견감독관들은 이 과정에서 후견감독인(지자체)의 역할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현재 후견감독 업무는 매월 후견인이 작성한 정기보고서를 후견감독인이 1차적으로 검토하며, 이를 통해 후견활동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매년 법원에서 요구하는 후견감독사무보고서를 제출하며, 법원의 후견감독관이 해당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즉, 법원에서는 문서화된 보고서를 중심으로 후견활동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지므로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1차적인 후견감독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B: 지자체가 감독관이기 때문에 이 감독인을 통해서 후견 사무가 잘 처리됐는지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후견인의 직접적인 정보는 서면이나 보고서 형태로만 확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략) 기록된 부분에 한해서 저희가 의문이 가거나 절차상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감독 담당자인 지자체 공무원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자체 공무원들하고 주로 소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 법원이 1차적인 감독 기능을 감독인한테 넘겨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감독인의 활동이 되게 중요하죠. 감독인이 후견인의 1년 동안 사무들을 본인이 잘 평가하고, 감독사무보고서를 법원에 넘으로써 저희(법원)는 후견인 사무가 잘 진행된다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치매공공후견사업과 타 공공후견사업 간 비교시에도, 후견감독관들은 치매공공후견사업의 1차적인 후견감독 활동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는 현재 치매안심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사례회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참여자 A는 기존 치매안심센터에서 수행하던 사례관리의 연장선에서 공공후견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간주하며, 그에 따라서 전반적인 후견활동과 그에 따른 후견감독 업무가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A: 치매안심센터는 사례관리에 준해서 다루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례관리 처럼 여러 기관들을 조합하고, 필요한 자원들을 연결해서 거기에 후견인이 들어가고 공공후견이 들어가는 시스템이죠. 그게 매달이나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점검하기 때문에 실제로 신상 문제나 돌봄, 케어의 문제에서는 훨씬 디테일하게 진행이 되는 장점이 있죠.

B: 치매 같은 경우에는 사건 기록을 좀 봐도 사례회의를 해서 그런지 그 사람의 기억력이나 앞으로 향후 상황에 대한 논의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담겨 있더라고요, 보고서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감독하는 과정에서도 도움이 됐고,

C: 치매안심센터에서 (제출)하는 보고서 양식을 받아보면 정말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나. 후견감독 과정에서 인식하는 피후견인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서면 자료에 의존하여 이루어진 판단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후견감독관들은 치매공공후견사업이 대체로 피후견인의 입장에서 후견활동이 이

루어지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후견인에게는 피후견인의 선호, 가치, 욕구 등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피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재산관리를 진행하는 것이나(참여자 C), 피후견인에게 거소이전을 위한 다양한 선택지를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의사결정을 이끌어내는 노력(참여자 B) 등이 의사결정 지원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되고 있다.

*C: 피후견인이 요양시설 입소자였는데 지출이 불투명해서서, 후견인이 직접 한 달에, 월에 얼마 정도 써야 되는 것들 목록을 다 받고 그 목록을 대신 본인이 지출해서 지급하는 식으로 해서... (후략)*

*B: 사실 후견감독 과정에서 피후견인의 의사를 저희가 직접 매번 청취는 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실 한계가 있기는 한데... (중략) 주거와 관련해서도 얼마 전에 비닐하우스에서 지내시는 분이 계셨어요.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어서 후견인이 주거지를 이전하자고 의견을 제시해도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거부를 했고, 일단 최종적으로는 여러 차례 설득을 거쳐서 이동하기는 했는데 그 당시에는 후견인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임의로 결정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후략)*

나아가 후견감독관들 역시도 과도한 개입은 지양하고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였다. 특정후견인에게는 후견이 필요한 사무 영역에 한해 대리권이 주어지며, 대리권이 있다 할지라도 피후견인이 스스로 행동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위능력에는 제한이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참여자 A는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이 특정후견인의 권한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것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후견인들의 과도한 개입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은 후견이 보호와 박탈이 서로 연결되어 나타나는

이중적 속성(신권철, 2013, p. 83)을 지녔다는 기존 논의와도 부합한다. 즉,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 오히려 피후견인의 자율성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에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A: 항상 저희가 후견감독인들한테 사무 지도하면서, 후견인한테 사무 지도할 때 주의하라고 내보내고 있는 게 공공후견인들이 마치 성년후견인처럼 과도하게 개입하지 말라는 거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리권 내에서만 개입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피후견인이 결정하는 거 지켜봐주고 제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건 후견 영역이 아니거든요. 사회복지 영역이겠죠. 다만 본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거에서 이분이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본인이 지원을 하라는 의미예요.*

다만 앞에서 언급한 일부 사례 이외에도 후견 과정 전반에서 효과적인 의사결정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피후견인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참여자 C). 치매공공후견인의 활동 경험에 관한 김효정(2023)의 연구에서도 지속적인 방문을 통해 치매노인의 관심사를 알아가는 작업이 피후견인과의 친밀감 및 신뢰를 쌓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주지한 바 있다. 결국 후견활동은 관계에 기반한 활동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의사결정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한 체계적 구조 마련 역시 중요하다(참여자 B). 이러한 노력이 있을 때, 후견인의 역량이나 후견감독인의 재량에 의한 후견활동의 차이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요구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를 전달하며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적 접근(이지은, 2022)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C: 후견인이 가족이 아니므로 피후견인의 의사를 제대로 파악하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라포 형성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면접촉 횟수뿐 아니라 후견 기간도 중요해 보이고요.

B: 후견인의 역량 그리고 감독 담당자의 의지에 따라서 피후견인에게 가는 서비스의 수위가 달라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략) 후견인 후보자 관리가 결국에는 신상보호 관리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서. (중략) 지금의 체계에서 후견인 관리가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해주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일 것 같다고 생각해봤습니다.

#### 다. 후견감독 과정에서 인식하는 후견인의 주요 역할

후견감독관들은 공통적으로 신상보호 관련 사무가 치매공공후견인에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이야기하였다. 현재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대다수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독거의 치매노인이라는 점에서, 후견감독관들은 이들이 적절한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후견인이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A: 본인이 치매 환자이고 그리고 독거를 하고 있다면 가장 문제되는 건 신변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을 둘러싼 사회복지서비스가 적절하게 연결돼야 되는 부분들도 이분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중략) 이 분들이 적절히 정보를 탐색하고 이걸 연결하고 신청할 수는 없겠죠. (중략)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는 사업 대상만 놓고 보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이고, 나머지 대리권은 사실 그때그때 있을 때 쓰거든요.

B: 재산 상황이 많은 게 아니다 보니까 신상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후견인이 들여다 보고. (중략) 대면을 많이 방문하셔서 필요한 서비스 찾아주시고, 가령 영구임대 아파트로 옮길 수 있게끔 그 아파트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사나 필요한 물품 구입 그리고 이분의 기억력 상태까지 점검하셔서 향후 시설 입소에 대한 의견들을 확인해 주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고. (후략)

C: 독거하시는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병원이나, 아니면 입소 시설 그런 데 안 계시는 경우에는 혼자서 지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피후견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은 신상보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신상보호는 특정후견 영역에서 특히 중요한 후견 사무임에는 틀림없다. 그러한 측면에서 후견감독관들 역시도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정적 대리자이자, 신상보호를 위한 법적 대리자로서의 역할이 주된 임무라고 언급한다.

A: 대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리인으로 서명하는 역할을 하신다고요. 왜냐하면 서명이 있어야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선택 결정에 대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고. (후략)

그러나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후견 사무의 범위가 일선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 사례관리자로서의 역할(서비스 및 자원 조정, 연계)과 일부 혼동되는 측면이 있다.

A: 어쨌든 ‘사회복지 관련된 자원 연계가 이분들한테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B: 오히려 저희가 갖고 있는 사건들 자체가 사회복지서비스가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서비스가 제공되는 게 좋다, 적절하다,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C: 사례관리자의 역할을 하긴 하는데 저는 이제 클라이언트인 피후견인에게는 여러 곳에서 서비스를 다양하게 받을 수 있으니 더 좋겠다고만 생각했는데... (후략)

신상보호와 관련하여 후견인의 역할을 어디까지로 간주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는 어려운 문제이다. “요양보호사보다 더 자주 방문(참여자 A)”하

게 되면서 피후견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후견인의 선호나 욕구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요소이다. 그러나 이 같은 후견활동이 자칫 기존 서비스 제공 인력과 갈등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점은(참여자 C) 후견인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상이 정립되지 않기 때문으로 간주된다. 김효정(2023)의 연구에 있어서도 매뉴얼이나 치매정책 사업안내를 통해 제시된 것 이외에 더 광범위한 역할을 후견인이 담당하고 있기도 하며,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대신하기도 하는 등 업무에 대한 역할 갈등을 토로한 바 있다. 특히나 현재와 같이 후견인의 법적 역할과 사례관리자로서의 역할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상황에서,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다.

*A: (중략) 요양보호사보다 더 자주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C: 후견인이 개입을 하려고 하면 그런 것들을 활동보조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그런 것들을 침해하거나 후견인의 역할을 제한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활동보조인과 후견인 또 그 후견인과 피후견인 간의 갈등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후략)*

## 라. 치매공공후견사업에 대한 개선사항

### 1) 후견감독인의 후견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업무 교류의 지속성 강화

후견감독관들은 후견감독인들의 후견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업무 교류의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특정후견인이 후견 사무 범위 내에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후견인뿐 아니라 감독인들의 후견에 대한 이해도 역시 높아야 하나, 일부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또한 업무 교류 측면에 있어서, 후견감독인의 잦은 보직 이동 등으로 지속적인 논의가 어려운 점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사례회의 참석자와 실제 사업담당자가 상이할 때 발생하는 어려움 역시 실무선에서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A: 감독인이 갖고 있는 법률적인 의미나 법원이 기대하는 감독인의 역할에 대해서 양쪽 다 이해도가 떨어지는 공통점은 있는 것 같아요. (중략) 보통 치매 안심센터에 계시는 사회복지사라고 해야 되나? 그분들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분들이 또 퇴사율이 높아요.

B: 담당자가 자주 바뀌기는 했었어요. 분명히 1월에 제가 자리로 오면서 확인을 했었는데 7월이 안 됐는데도 인사이동이 한 번 있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중략) 아니면 담당자가 2명인데 실제 사례관리자는 누가 있고, 실제로 사례회의는 다른 사람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관리가 이중체제로 된다는 것도 있었어요.

## 2) 피후견인 발굴과 후견 연계의 강화

후견 연계의 적극성이 필요하다는 지적 역시 제기되었다. 현재는 치매 안심센터 내부 시스템(ANSYS)이나 외부 기관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최종 선정은 후견지원회의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후견이 필요함에도 최종적으로 선정되지 않는 이들은 현행 청구 방식으로는 후견으로 연결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대상자들에 대한 청구 방식을 확대하거나, 대상자 선정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공공성의 의미는 다양하지만, 국가가 단순히 재정적 책임을 지는 것 이상으로 대상자 발굴과 연계 활동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 역시 제기된다. 또한 현재는 고난이도 사무가 예상되거나 복잡한 요구를 지닌 피후견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되며, 관련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A: 사업이 너무 독거 치매, 저소득층 이쪽에 한정되어 있는데 공공이라는 게 그 의미만은 아닐 것이라는 것도 사실은 있어서. (중략) 치매는 누구에게나 다 올 수 있는 문제인데. (중략) 공공후견인들도 고난도 사건이라고 생각되면 거절하고 초기부터 나가시는 거고. 오히려 후견이 필요하면 고난도 사건들 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사각지대가 되고.

A: 학대나 방임으로 방치돼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재산이 중간 정도 있으면서 여기도 속하지 못하고 저기도 속하지 못하고. (중략) 이런 분들이 법원에서 검토가 되면 적어도 공공후견 쪽으로 저희가 넘겨서 할 수도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는데 그걸 안 하시더라고요. (후략)

이외에도 후견 대상자 발굴 시 이웃이나 주민자치센터 등도 하나의 주체로 포함되나, 여전히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관련 기관에 대한 홍보 역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의 역시 제기되었다.

C: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걸 어떻게 연계하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 방법이나 절차를 일반인은 잘 몰라서 그런 것들을 놓치는 사람들도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3) 후견 활용의 다각화

후견 활용이 다각화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현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대상자 중 치매 중증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희망할 때 임의후견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는 특정후견으로의 연계만 정형화되어 이루어지고 있어, 인지저하가 가속되기 이전에 임의후견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가 치매관리 사업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A: '사업을 단일하게 특정할 게 아니라 다각화할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것이고.(중략) 초기에 치매 처음에 접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후견제도에서 임의후견제도를 설명하는 설명회도 하시고, 그 속에서 독거 어르신들이라면 초기에 내가 의사결정할 수 있는 것들도 선별해서 하고, 의사결정을 부탁할 수 있는 것들도 선별해서 하시고, 임의후견 계약할 수 있는 지원이나 사업 시스템을 가지고 임의후견 계약도 지원하시고.(후략)

#### 4) 장기적인 관점에서 후견 운영 방식에 대한 재고

마지막으로 현재와 같이 시민 후견의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제시되었다. 피후견인의 욕구 및 상황에 따라서 후견인이 필요시마다 대응해야 하지만, 현재는 후견인의 역량과 재량에 따른 편차가 크고 상황별 대응력 또한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후견법인을 통해 체계적인 후견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A: 공공후견 법인이 있어서 중복을 피하면서도 필요한 대리권들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세팅이 된다면 자원의 낭비는 덜하겠죠?

## 제6절 소결

현재까지 피후견인 및 후견인, 치매안심센터 사업 담당자, 가정(지방) 법원 후견감독관을 중심으로 수행한 질적 조사를 통해, 치매공공후견사업의 이용(운영) 현황에 대해 진단하였다.

### 가. 피후견인 측면

피후견인들은 대체로 주변의 권유로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치매안심센터나 지역사회 사례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공공후견으로 연계되는 경우가 많다. 대개 실질적 무연고 상태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후견 대상자 선정 요건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후견 연계가 용이하였다.

후견을 이용하는 주된 목적은 피후견인의 현재 상태를 고려할 때, 기본적인 일상생활 지원이나 재산관리 업무를 수행이다. 그러나 후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초기에 수행되던 재산관리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저소득층에 집중된 피후견인들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할 때, 수급비를 포함한 수입이 고정적이며 지출도 공과금 납부나 생필품 구매 등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신상보호와 관련된 사무는 피후견인의 인지 및 신체 기능 상태, 그리고 개인적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 피후견인이 타인과의 연락을 선호하지 않거나 후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사회 안전망에 대한 점검이 주요한 업무로 수행된다. 반면 추가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재산 상황 파악을 통해 불필요한 보험을 해지하거나, 건강 관리를 위한 병의원 동행, 그리고 기존 공적 서비스 제공자와의 교류 등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설에 입소하게 될 시에는 거소 이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피후

견인의 입소 의사를 파악하여 입소를 결정하게 된다. 입소 후에도 후견인은 피후견인뿐 아니라 피후견인이 거주하는 시설 대표 등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유지한다.

인터뷰에 참여한 피후견인들은 후견 외에도 다양한 공적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일정 수준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망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피후견인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후견의 필요성이 여전히 높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이들의 기능 상태를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 나. 후견인 측면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피후견인과의 관계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한다. 후견 사무는 피후견인의 의견에 기초하여 진행하고자 하지만,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상태 고려 시 이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고려하는 것의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인식한다. 특히 긴급한 결정이나 피후견인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치매안심센터 등과의 공동 의사결정을 통해 처리한 후 피후견인에게 결정을 고지하는 상황으로 진행된다.

후견인의 역할은 주로 피후견인의 신상보호와 관련된 지원에 집중되나, 각자가 인식하는 후견 사무의 우선순위에 따라 그 역할을 달리한다. 후견인에게 부여된 권한은 그들의 역할과 직결된다고 인식되며, 활동 과정에서 권한의 부재로 인한 한계와 윤리적 판단에 기반한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후견사업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후견 사무 수행 시 관련 기관 등과 불필요하게 야기되는 어려움도 다수가 경험하고 있으며, 행정 업무와 관련된 피로도 역시 높다.

현재 후견인에 대한 지원은 교육과 보수(활동비)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은 후견인 후보자 대상의 양성 교육과 후견인 활동(대기) 중 제공되는 보수 교육으로 나뉘지만, 후견인들은 두 교육 간의 실질적인 차이가 크지 않고, 후견활동에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얻는 데 효과가 적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보다 실효성 있는 교육 내용 및 방법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대부분의 후견인은 현재 후견활동을 사회적 기여 차원으로 인식하고 있긴 하나, 활동비 증액 역시 현실적인 수준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 다. 치매안심센터 사업 담당자 측면

치매안심센터 사업 담당자들은 후견사업에 대한 부담은 높지만, 치매안심센터 전체에서 차지하는 사업의 비중은 크지 않아 그로 인한 어려움과 갈등이 존재한다. 사업 초기에는 후견 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과 피후견인 발굴의 어려움이 주요 문제였으나, 사업이 6년 차에 접어든 현재에는 관리와 감독 측면에서의 업무 부담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다. 이는 후견 감독이 사후적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월 정기 보고서 검토에 그치지 않고, 개별 후견 사무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지원 과정에 걸쳐 있기 때문이다.

각 치매안심센터에서 공공후견사업의 중요도를 다르게 인식하면서 사업 운영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후견감독인의 관리감독 업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업 담당자들은 치매환자를 지원하는 후견인의 주요 역할로 신상보호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러한 역할은 피후견인의 거주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다만 시설(병원)에 거주하는 피후견인을 지원하는 후견인의 역할에 대해서는 사업 담당자 간

에 의견이 다소 상충하는 경향이 있다.

향후 개선사항과 관련하여, 사업 담당자들은 관련 지자체 담당자들이 공공후견사업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후견 결정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긴급한 욕구(시설 또는 병원 입소 등)를 해결하기 위한 대상자 연계는 적절하지 않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이는 후견 개입 시점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치매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후견 종료 시점의 실효성 있는 개선,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사업 예산 배정, 치매안심센터의 역할 재정립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 라. 법원의 후견감독관 측면

법원의 후견감독관들은 치매공공후견사업 외에도 정신질환자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사업의 감독 업무를 겸하고 있다. 타 공공후견사업에 비해 치매공공후견사업의 감독 건수는 많지 않지만, 후견감독관들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일차적인 후견감독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후견감독 측면에서 볼 때, 특정후견의 성격을 살려 후견인들이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후견인뿐 아니라 치매안심센터 사업 담당자의 사업에 대한 인식 역시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신상보호 지원에 대한 후견인 역할의 중요성을 후견감독 과정에서 자주 경험하나, 일부 후견감독관들은 신상보호 업무를 사회서비스 영역의 사례관리자 역할과 혼동하는 경향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종합적인 개선사항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사업 담당자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지속적인 업무 교류, 후견 연계의 적극성, 후견 활용 다양화(임의후견 활성화) 등을 제안하였다.

## 마. 종합

현재까지 살펴본 대상군별 질적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공통의 쟁점을 정리한 내용은 <표 4-7>과 같다.

우선 치매공공후견사업이 치매안심센터 전체 사업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미미하다. 이는 법원의 후견감독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현장(치매안심센터 사업 담당자 및 후견인 등)에서 평가하는 후견 사업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지원은 피후견인의 개인적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보호나 안전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공동 의사결정 등을 통한 지원 방식을 고려하는 등 다각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의사결정 지원 방법으로는 직접적인 소통 이외에도 치매환자의 특성을 고려해 반복적인 안내, 비언어적 의사소통, 우편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들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파악하고자 노력한다. 하지만 피후견인의 최선의 이익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보호나 안전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공동 의사결정을 내린 후 피후견인에게 고지된 동의를 하는 등의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치매안심센터마다 공동 의사결정 회의나 후견지원회의에서의 지원 수준에서의 편차도 발생한다.

후견인의 주요 역할은 초기에는 재산관리에서 출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재산관리의 비중은 줄어들고 신상보호가 중심이 된다. 하지만 신상보호 범위에 대한 이해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후견인의 권한을 설정하는 것에 혼란이 있다. 또한 피후견인이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후견인의 역할 역시 달라진다. 재가에서는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업무가 중심이 되고, 재가에서 시설로 거주지가 바뀔 때에는 거소 이전 관련 업무를,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안부 확인과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게 된다. 관련하여 시설에 거주하는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인의 역할에 대해서는 인식 차이가 크다. 후견인의 역할 중 하나로 간주되는 피후견인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공적·사적 서비스 제공자와의 관계 설정이 필요하지만, 관련 서비스 제공자마다 후견인에 대한 인식이 달라 상호보완적 관계 또는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 같은 후견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크게 교육 및 보수(활동비) 제공이 있다. 현재 교육과 관련해서는 후견인 양성 교육과 보수 교육 간에 차이가 없고,<sup>35)</sup> 이론 중심의 교육으로 인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이미 활동 중인 후견인의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는 절차적 기제가 부재하다는 측면에서 제기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또한 현재의 활동비 체계와 관련하여, 피후견인 1인이 추가될 때 오히려 활동비가 감액되는 구조는 불합리하다는 지적 역시 제기된다.

35) 현재 보수 교육은 광역치매센터마다 교육 대상이(후견인 후보자/ 후견인 후보자 및 후견인 등)나 방식, 시수가 상이하며, 보수 교육, 간담회, 상시교육, 연수회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표 4-7〉 심층면접 및 FGI를 통해 도출된 주요 쟁점

| 구분            |                        | 주요 내용                                                                                                                                              |
|---------------|------------------------|----------------------------------------------------------------------------------------------------------------------------------------------------|
| 치매공공후견사업 비중   | 업무 비중                  | - 치매안심센터 전체 사업 중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후견감독 사건도 동일)<br>- 치매안심센터 사업 담당자가 인식하는 사업의 비중은 높은 편                                                                    |
|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지원 | 의사결정 지원에 대한 인식         | - 피후견인 개인의 의사를 최우선<br>- 피후견인의 보호 또는 안전과 관련된 사안은 공동 의사결정 등을 통해 지원                                                                                   |
|               | 의사결정 지원 방법             | - 치매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복적인 안내를 취하거나 비언어적 의사소통 또는 우편물 등을 통해 간접적 의사 파악                                                                                   |
|               | 의사결정 지원의 한계            | - 치매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대한 해석 및 의사 파악 방법 한계<br>- 피후견인의 보호 또는 안전과 관련된 사안의 경우, 공동 의사결정 이후 고지된 동의 방식으로 결정되는 상황 발생<br>- 치매안심센터에 따라 공동 의사결정 회의나 후견지원회의에서의 지원 편차 |
| 후견인의 권한 및 역할  | 후견인의 주요 역할(권한)         | - 기본적으로 재산관리를 수행하나, 초기 세팅 이후 재산관리 비중 적은 편<br>- 신상보호가 주된 업무로 인식되나, 신상보호에 대한 범위 이해 차 발생<br>- 권한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 후견(감독)인 모두 어려움을 경험                   |
|               | 피후견인 거주 장소에 따른 후견인의 역할 | - (재가) 재산관리, 신상보호 관련 업무<br>- (재가→시설) 거소 이전 관련 업무<br>- (시설) 기본적인 안부 확인 및 재산관리<br>→ 시설입소 노인을 위한 후견인 역할에 대한 인식 차이 존재                                  |
|               | 공(사)적 서비스 제공자와의 관계 설정  | - 피후견인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 일환으로, 현재 이용 중인 공(사)적 서비스 제공자와의 관계 설정 필요<br>- 단, 서비스 제공자마다 후견인에 대한 인식이 상이하여 다양한 양상 노출(상호보완적 관계 또는 갈등 관계)                         |
| 후견인 활동        | 후견인 교육                 | - 후견인 양성 교육과 보수 교육 간의 차이 없음<br>- 실무 중심이 아닌 이론 중심으로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움<br>- 이미 활동 중인 후견인의 전문성 축적을 위한 보수 교육 필요                                            |
|               | 후견인 보수                 | - 피후견인 1인 추가 시 합리적 증액                                                                                                                              |

출처: 연구진 작성

다음으로 후견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이를 바탕으로 제기된 개선사항을 정리한 내용은 <표 4-8>과 같다.

후견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은 여러 방면에서 제기된다. 우선 후견인을 발굴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외부 기관에서 추천할 때 긴급한 욕구를 지닌 대상자가 많아 후견 대상자로 연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후견이 결정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이 같은 긴급한 대상자의 연계는 적절치 않다는 것으로, 이는 후견 및 후견 개입 시점에 대한 이해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비롯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나아가 후견 대상자 선정 시 사업 담당자가 혼자 결정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심적 부담이 따르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 대기자로 관리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후견인 후보자와의 매칭에서는 치매안심센터 사업 담당자의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일부 존재한다. 또한 피후견인과의 지리적 접근성 역시 후견인 매칭 시 고려하고 있어, 한정된 활동 지역으로 인해 매칭이 어렵다는 문제 역시 제기된다.

후견 사무 수행에 있어서는 사회 전반의 후견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후견인임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한다는 것이 어려움으로 지적된다. 후견등기사항 증명서 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의 이해 부족으로 원활히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잦다. 이외에도 정기보고서 및 다양한 증빙 문서 작성과 제출의 번거로움, 후견등기사항 증명서 유효기간에 따른 업무상의 번거로움도 뒤따른다.

후견인 관리 및 감독 측면에서는 재청구 사례가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후견 관리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후견감독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치매안심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는 것 역시 한계이다. 마지막으로 유관 기관과의 협력 시 후견인과의 책임 범위와 역할이 불분명해져 혼선이 발생하기도 한다. 일례로 후견이 결

정되고 나서 기존 자원 연계가 갑작스럽게 종결되는 사례도 종종 나타난다. 이는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모든 일상생활을 책임지거나 대리한다는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이외에도 금융기관, 행정기관, 요양기관 등에서 후견에 대한 인식이 상이해 발생하는 갈등 또는 업무상의 번거로움도 후견 과정에서의 주요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사항으로는 다음의 사항들을 제안하였다. 첫째, 치매공공후견사업에 대한 사회 전반, 특히 유관 기관의 이해도를 제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단순히 사업을 홍보하는 것을 넘어, 후견의 필요성 및 성격을 정확히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의 사업 안내서 이외에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한 별도의 홍보물 및 사업안내 자료 등을 마련하여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둘째, 장기적인 측면에서 특정후견의 종료 시점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사업이 시행된 지 6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사업이 지속될 경우 재청구 사례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종료 시점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강조되고 있다.

셋째, 후견인 교육의 강화 및 보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실무에서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내용과 전달 방식을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연유한다. 관련하여 현재 비대면 방식(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육을 대면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한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그 과정에서 노하우를 체득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아, 이러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질적 조사 시 후견인들이 갖고 있는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지원에 대한 기본 원칙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의

대응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적인 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교육 시 이러한 내용을 공유해 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양성 교육과 차별화된 보수 교육을 통해 후견인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도 강조된다.

넷째, 제반 행정업무의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이고, 증빙서류를 전산화하여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업무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섯째, 합리적인 예산 책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장의 후견 수요를 반영하여 예산을 적절히 배정함으로써, 대기자로 관리되는 사례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기자로 관리되던 사례를 후견으로 연결하려고 할 때, 대기 기간 동안 후견 이용 의사가 바뀌는 경우가 많아 후견 연결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후견은 적시에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현장 상황을 반영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여섯째, 치매안심센터의 역할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후견사업은 장기적인 지속성을 요구하므로, 현재와 같이 치매안심센터의 세부 사업으로 진행하는 데에 부담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치매공공후견사업에서 치매안심센터의 역할을 재편하여, 대상자 발굴 및 선정, 후견심판청구 지원 업무에 집중하거나, 장기적으로는 법인화를 검토하는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모색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후견 활용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재는 특정후견 방식을 고수하고 있지만, 치매 중증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임의후견을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정보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통해 피후견인의 필요와 상황에 맞는 후견 연계 및 후견의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표 4-8〉 심층면접 및 FGI를 통해 도출된 후견 과정에서의 어려움 및 개선사항

| 구분           | 주요 내용                                                                                                                                                                                                                                                |
|--------------|------------------------------------------------------------------------------------------------------------------------------------------------------------------------------------------------------------------------------------------------------|
| 후견 과정에서의 어려움 | <b>발굴 및 선정</b><br>- (후견 개입 시점) 외부에서 추천 시, 긴급한 욕구(병원 또는 시설 입소 등)를 지닌 대상자인 경우가 다수임. 후견 결정까지 소요되는 시간 등 고려하면 대상자로 연계되는 것에 한계가 있음<br>- (대상자 선정) 후견 대상자의 적합성을 결정하는 측면에서 사업 담당자의 심적 부담 존재<br>- (대기자 관리) 후견에 대한 욕구나 필요가 있을지라도 사업 예산 부족에 따라, 대기자로 관리되는 사례도 존재 |
|              | <b>후견인 후보자와의 매칭</b><br>- 후견인 후보자 선발 및 관리는 광역치매센터에서 일괄하므로, 치매안심센터 사업 담당자의 참여 제한적<br>- 후견인 활동 지역 한정으로 매칭의 어려움 존재                                                                                                                                       |
|              | <b>후견인의 후견 사무 수행</b><br>- 사회 전반의 후견에 대한 인식 부재로, 후견인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어려움<br>- 정기보고서 및 다양한 증빙문서 작성, 제출 등의 어려움<br>- 후견등기사항 증명서 유효기간에 따른 업무상 번거로움                                                                                                   |
|              | <b>후견인 관리 및 감독</b><br>- 재청구 사례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인 후견 관리 업무 부담 가중<br>- 후견감독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부재로 치매안심센터에서 자체적인 기준 마련하여 적용                                                                                                                                  |
|              | <b>기타 (유관 기관과의 협력 시)</b><br>- 유관 기관과 후견인 간 책임 범위 및 역할이 불분명한 상황 등 존재<br>- 후견 결정 이후, 기존의 자원 연계가 종결되는 사례 발생<br>- 금융기관, 행정기관, 요양기관 등 후견에 대한 인식이 상이하여 발생하는 갈등 또는 업무상 번거로움                                                                                 |
| 주요 개선 사항     | <b>사업 이해도 제고</b><br>- 사회 전반 및 지자체, 사업 담당자의 후견에 대한 명확한 인식 필요                                                                                                                                                                                          |
|              | <b>특정후견 종료 시점 실효성에 대한 재고</b><br>- 치매환자의 특성상 3년 종료 이후 재청구로 이어지는 상황으로, 현 종료 시점 또는 종료 사유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 존재                                                                                                                                                 |
|              | <b>후견인 교육 강화 및 보수 개선</b><br>- 실무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내용 및 전달 방식 개편<br>- 보수 교육의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양성 교육과의 차별화                                                                                                                                            |
|              | <b>제반 행정업무 간소화</b><br>- 행정절차의 전산화, 간소화                                                                                                                                                                                                               |
|              | <b>합리적인 예산 책정</b><br>- 현장의 후견 수요를 고려한 사업 예산 배정 필요                                                                                                                                                                                                    |
|              | <b>치매안심센터의 역할 조정</b><br>- 후견은 지속성을 담보로 하는 장기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의 세부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br>- 치매공공후견사업에서 치매안심센터의 역할을 재편(대상자 발굴 및 선정, 후견심판청구 지원 업무 집중)하거나 장기적 측면에서는 법인화 필요 제안                                                                                   |
|              | <b>후견 활용 다양화</b><br>- 치매 중증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희망 시 임의후견을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 강화                                                                                                                                                                       |

출처: 연구진 작성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5장

###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제2절 정책 제언





## 제 5 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 1. 치매공공후견사업 현황 및 쟁점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의 저하를 경험하는 이들의 존엄성 및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2018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누적된 치매공공후견 심판청구 건수는 562건이며, 매년 약 100건 내외의 후견심판이 접수되고 있다. 그러나 치매 유병률과 노인 독거 가구 비율 등의 주요 사회지표를 고려할 때, 현재의 사업은 실제 이를 필요로 하는 수요를 원활히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이 전체 청구 건수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별 이용에 편차가 있음은 물론 상대적으로 고령층이 밀집한 농촌 지역에서는 후견서비스 이용이 매우 드물다. 이는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수행하는 치매안심센터가 처한 상황 및 센터별로 인식하는 후견사업의 중요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나아가 특정후견 방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3년이라는 기간 내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피후견인의 사망을 제외하고 대다수 재청구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후견인 양성의 경우, 2024년 4월 기준으로 1,346명이 후견인 교육을 수료했지만 대기 인원이 약 절반에 달하여 피후견인과의 매칭을 역시 낮다. 현재 후견인 교육은 총 21시간의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며, 제도 및 법률 사무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치매환자와의 의사소

통 원칙이나 실제 활동 사례 공유는 부족하다는 지적 역시 존재한다.

## 2. 국내외 유관 사례 분석 및 쟁점

### 가. 국내 사례

치매공공후견사업과 발달장애인 및 정신질환자를 위한 공공후견사업 간의 비교를 통해 도출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 가지 공공후견사업 모두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한정후견을 허용한다. 후견은 기간 만료 또는 피후견인이 사망하면 종료되며, 종료 전에 지속 여부를 조사하여 후견심판을 새로 청구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종료 이후에도 안정적인 자립 기간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닌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치매공공후견사업의 경우 피후견인의 사망 외에는 대다수가 재청구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후견 기간 설정이 치매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지원 측면에서 국내 공공후견사업들은 피후견인의 의사와 선호를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해 후견 개시 과정에서 사회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후견심판 전에 피후견인과 후견인 후보자 간의 면담을 통해 대상자의 욕구와 관심사를 파악한다. 후견 개시 후에도 후견인 정기보고서 작성 및 검토를 통해 활동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치매환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의사결정 지원 과정에서 피후견인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하고 파악하는 것에 대해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며, 후견 감독 과정에서 역시 의사결정 지원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점도 존재한다.

셋째,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시민 후견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발달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공공후견사업은 법인 후견을 운영한다.<sup>36)</sup> 법인 후견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피후견인의 욕구에 대한 대응 및 고난이도 사무 연계가 용이하다. 반면 시민 후견은 후견인의 역량 등에 따른 후견 사무의 편차가 크고, 전문성 축적의 한계 역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후견 전달체계의 차이가 있다. 현재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치매안심센터가 주요 역할을 수행하며, 발달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공공후견사업은 법인들이 주축이 된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관리 전달체계의 주축으로 다양한 사업을 병행하고 있어, 공공후견사업을 전담하기가 어려운 구조이다. 향후 후견을 필요로 하는 대상층이 증가할 것을 감안할 때, 현재의 운영 방식에 대한 재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 나. 해외 사례

해외 사례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허브기관의 중요성이다. 독일의 성년후견청과 일본의 중핵기관은 후견제도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일원화된 후견 사무 수행이 가능하고, 다양한 지원기관과의 협력하에 피후견인을 위한 후견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후견 과정 전반에서 후견인-피후견인은 물론 협력기관과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

둘째, 의사결정 지원의 법적 명문화와 정책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독일과 일본은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후견제도의 보충성 원칙을 천명함은 물론 의사결정 지원을 중심으로 한 법적·제도적

36) 엄밀한 의미로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이 법인 후견 방식을 활용하며,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은 법인을 통해 후견인을 양성하여 지원하는 자연인 후견이 다수를 차지하며, 법인 후견 방식은 제한적임.

를 마련하고 있다. 독일은 사전 의료지시서 및 후견 지시서 같은 제도를 통해 피후견인의 의사를 사전에 반영하고, 확장된 지원 방식을 통해 후견 외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일본 역시 의사결정 지원 가이드라인을 통해 후견활동에서 피후견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후견사업의 토대는 마련되었지만 후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음은 물론 이를 실천하는 데 필요한 사전적, 사후적 기제가 아직 미비하다.

셋째, 후견인 양성 및 관리를 위한 다층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독일은 명예 후견인, 전문 후견인뿐만 아니라 법인 후견인과 관청 후견인을 통해 무자력 노인 같은 후견 사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본 역시 중핵기관 등을 통해 법인 및 시민 후견의 적극적 양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민 후견 체계에 의존하여 후견인 양성 및 관리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보다 다각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즉, 국가 차원에서 후견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그 안에서 후견인들이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 3. 대상군별 질적 조사를 통한 쟁점

피후견인, 후견인, 치매안심센터, 법원 감독관의 관점에서 드러난 후견 제도의 필요성과 한계는 분명하다. 이와 관련하여 각 대상군별 질적 조사에서 드러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 가. 피후견인

피후견인들은 치매라는 특성상 인지기능 상태가 저하된 경우가 다수로 후견사업에 대한 이해가 매우 제한적이다. 대체로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지역 내 치매안심센터나 유관 사례관리 서비스 등을 이용하다가 공공후견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공공후견제도의 핵심 목적은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있지만, 실제 후견 과정에서 피후견인을 위한 재산관리 비중은 크지 않다. 피후견인의 경제적 상태를 고려하면 한정된 수입에 따라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지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신상보호 관련 사무는 피후견인의 인지 및 신체기능, 개인적 성향에 따라 범위를 달리하나, 대체로 이들의 일상생활 유지와 기존 공적 서비스 제공에 대한 모니터링, 건강 관리를 위한 병원 동행 등이 이루어진다. 시설 입소를 필요로 할 때에는 거소 이전 관련 업무를, 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재산관리 및 안부 확인 등의 후견 사무를 진행하였다.

피후견인이 저소득층임을 감안할 때, 후견 외에도 다양한 공적 서비스를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피후견인의 기능 쇠퇴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점과 사회적 안전망 부족, 위기 또는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후견이 지속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 나. 후견인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피후견인과의 관계 형성을 중시하며, 피후견인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을 고수하고자

한다. 다만 치매환자의 특성상 이들의 의사를 파악하고 반영하는 것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피후견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치매안심센터와의 공동 의사결정 등의 방식으로 후견 사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이 경우 피후견인에게는 고지된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한계 역시 존재한다. 후견인의 역할은 주로 신상보호에 집중되나, 역할의 우선순위는 후견인마다 상이하다. 이는 후견인마다 후견을 바라보는 인식이 다르며, 각자의 역량에 따라 후견 사무가 달라질 수 있음을 내포한다. 아울러 후견 과정에서 후견인들은 공통적으로 본인들의 권한 부족 및 윤리적 판단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후견인들을 위한 지원은 크게 교육과 활동비 측면에서 이루어지지만, 교육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다수이다. 현재 본인들의 활동을 사회적 기여의 일환으로 인식하긴 하나, 활동비 증액의 필요성 역시 제기하고 있다.

#### 다. 치매안심센터 사업 담당자

치매안심센터 담당자들은 후견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사업 진행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 사업 초기에는 피후견인 발굴과 후견 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이 주요 문제였으나, 현재는 관리와 감독 업무에 대한 부담을 더 크게 인식하였다. 각 센터마다 인식하는 후견사업에 대한 중요도가 다르므로, 그에 따른 운영의 편차 역시 발생하고 있다.

사업 담당자들은 신상보호가 후견인의 주요 역할이라고 인식하지만, 피후견인의 거주 장소에 따라 후견인의 역할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이 중 시설에 거주하는 피후견인을 지원하는 후견인의 역할에 대해서는 사업 담당자마다 이해가 다소 상충한다.

후견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발굴 및 선정, 후견인 매칭, 관리 및 감독 단계별로 다양한 양상으로 제기된다. 특히 외부에서 추천되는 대상자들의 경우, 후견 결정까지의 소요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긴급한 욕구를 지닌 경우가 다수로 사업 진행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잦다.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자체 및 관련 기관의 이해도 제고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다. 나아가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예산 배정 및 치매안심센터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라. 법원의 후견감독관

법원의 후견감독관들은 치매공공후견사업 외에도 정신질환자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사업의 감독을 겸하고 있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의 감독 전수는 많지 않지만, 후견감독관들은 치매안심센터가 일차적 후견감독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후견인의 역할로 신상보호 지원에 대한 업무를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으나, 일부는 후견인의 역할을 사회서비스 영역의 사례관리자 역할로 혼동하는 경향도 있다.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지원 측면에서 원활히 사업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치매안심센터 담당자의 이해도 제고와 함께, 임의후견 활성화 같은 제도의 다양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마. 종합 쟁점

첫째,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지원에 있어서는 개인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자 하나, 치매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들의 최선의 이익을

파악하고 해석하는 것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피후견인의 안전 및 보호와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는 고지된 동의 등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뒤따르며, 이 과정에서 치매안심센터마다의 지원 수준에 따른 편차도 존재한다.

둘째, 후견인 발굴 및 선정 과정에서 외부 기관의 연계 시 후견에 대한 이해 차이로 인한 문제가 야기된다. 특정후견은 3년간 법적인 조력자를 두는 것이나, 외부에서 후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긴급히 병원 또는 시설 입소 등을 목적으로 한 사례가 다수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에서 어려움이 제기된다. 이 같은 문제는 결국 후견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기인하며, 후견제도의 필요성과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이 후견 개입 시점 및 후견인의 역할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후견인의 주요 역할은 초기에는 재산관리에서 출발하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상보호가 중심이 된다. 그러나 신상보호의 범위에 대한 이해는 상이하여 현장에서는 후견인들의 권한을 설정하는 것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더욱이 시설에 입소한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 사무의 경우, 후견인 또는 이를 지원하는 치매안심센터 사업 담당자들 역시 이해를 달리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후견인들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나, 이론적 교육이 주가 되는 상황으로 전문성 축적을 위한 기제가 부족하다. 특히 현재 활동 중인 후견인들을 위한 심화교육 또는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기전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넷째, 후견인의 역할 중 하나인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공사적 서비스 제공자와의 관계 설정 및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만 후견에 대한 인식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으로, 후견 사무를 진행함에 있어 번거로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잦다. 이에 대한 인식 개선 역시 중요한 개선 과제로 지적하고 있다.



다섯째, 후견 대상자를 발굴하고 후견이 결정되기까지는 비교적 명확한 절차적 안내와 관련 자료가 구비되어 있으나, 후견이 시작되고 나서부터의 관리 및 감독 과정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부족하다. 이는 후견인의 교육 지원 측면에서 제기된 문제와도 연결된다. 제도의 경과 연수가 길지 않고,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에서 제기되는 문제로도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관리 및 감독 과정에 대한 지원 편차가 발생하며, 후견인 및 이들을 지원하는 후견감독인 역시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활동이 곧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지원에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 체계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특정후견 종료 방식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현재 후견은 대부분 피후견인의 사망을 제외하고는 재청구로 이어지고 있다. 후견 종료라는 명확한 퇴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회적 안전망이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거나, 후견 필요성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현재는 사업이 시작된 지 6년 차로 재청구 횟수는 아직 1회에 그치지만, 앞으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업의 운영 방식과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의 종료 시점이나 종료 사유를 재검토하고, 피후견인의 지속적인 안전망 구축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 역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 제2절 정책 제언

### 1. 치매노인의 의사결정 지원에 대한 개념 정립과 체계적 접근

의사결정 지원의 개념을 정립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의사결정 지원의 핵심은 의사 형성 지원과 의사 표명 지원을 단순히 구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두 단계를 모두 고려하여 후견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 형성 지원은 피후견인이 정보를 이해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며, 의사 표명 지원은 그 결정을 외부에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의사 표명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의사 형성 지원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 부분은 해외 사례, 특히 피후견인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반적인 노력을 강구하는 외국의 접근 방식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의사결정 지원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고, 의사결정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널리 형성하는 것에서 나아가 의사 형성 및 의사 표명 지원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체계적 접근의 일환으로 의사결정 능력을 평가하는 도구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능력을 세밀하게 평가하는 도구를 통해 후견 개시 전에 피후견인의 자기결정 능력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개별화된 후견계획을 수립한다. 이러한 평가 도구는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능력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유연한 의사결정 지원 전략 역시 필요하다. 피후견인의 건강 상

태나 인지능력이 변화할 때 그에 맞춰 의사결정 지원 전략을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 역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후견지원회의가 운영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이러한 논의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치매센터를 비롯한 슈퍼비전 체계 강화 역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치매환자를 위해 비언어적 소통 도구(보조기구)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비언어적 신호와 시각적 도구는 피후견인의 의사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실천 과정에서 도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지원 역시 필요하다. 더 나아가 이 같은 도구 개발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의 필요성 또한 대두된다.

마지막으로 해외에서는 의사결정 지원의 중요성을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을 통해 이를 정책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적 차원의 관심을 제고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정책적 우선순위로 설정하여 관련 지원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 2. 후견인의 전문성 강화 및 교육체계 개선

현재 치매 공공후견제도의 교육은 주로 법률 및 제도를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어, 치매환자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및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일상적 문제 해결에 대한 실무 교육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후견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교육 내용에는 법률적 지식뿐만 아니라 치매노인의 신상 보호와 재산관리 사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 다양하게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후견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과의 상호작용을 돕기 위한 의사소통 실례와 사례 기반 실무 교육 등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 구체적으로 치매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상태를 고려한 다면적 의사소통 및 이를 위한 환경 조성 방안, 치매노인의 거부를 존중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은 전문 후견인 등록 시 의사결정 지원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45시간에 걸친 의사결정 지원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며(Bundesministerium der Justiz, n.d.), 이 교육을 통해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후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호주에서는 후견인 교육이 법적 지식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기술, 치매 및 인지 장애에 대한 이해, 윤리적 의사결정, 위기 관리 기술 등 다양한 역량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Mental welfare commission for Scotland, 2021).

나아가 후견인들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정기적인 워크숍 등을 제공하는 방안 역시 고려할 수 있다. 이는 후견인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후견인 보수 교육이 제공되고 있긴 하나, 이 같은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후견인 후보자와 현재 활동 중인 후견인을 구분하지 않는 교육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치매센터에서는 후견인의 활동 유형에 따른 교육을 제공하여, 각 단계마다 필요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후견인이 어려움을 겪을 때 전문적인 슈퍼비전 체계가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K-넷은 후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한 전국 단위의 상담 창구 기능을 담당하며, 다양한 전문가들이 협력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가 가능하다.

이 같은 사례들을 바탕으로 치매노인의 의사결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후견인 교육 체계를 재정비하고, 슈퍼비전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 3. 후견인 역할 및 권한 설정 명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후견인이 후견 과정에서 직면하는 혼란은 피후견인의 권익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후견인의 권한과 윤리적 책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후견인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매뉴얼 제공이 필요하다. 현재도 실무 매뉴얼이 제공되고 있지만, 법적 변화와 현장의 경험을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후견인의 권한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사업 경과 연수가 짧아, 다양한 후견 경험이 아직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시간이 지나 후견 사례가 축적되면, 후견인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 보다 정교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후견인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후견인의 공통된 역할과 상황에 따른 차별화된 역할을 구분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피후견인의 거주 형태 및 건강 상태에 따라 후견인의 역할이 다를 수 있고,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상충된 이해가 존재한다. 이 같은 문제는 구체적인 역할 모델을 마련하고 그에 맞춰 후견인의 권한 및 윤리적 책임을 명확히 설정할 때 일정 부문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중앙 차원에서 온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활동(대기) 후견인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뉴스레

터를 발송하고 그에 따른 피드백을 공유하는 등의 환류체계를 마련하는 것 역시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같이 후견인의 권한과 윤리적 책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은 피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후견인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 4. 후견감독인의 역할 명확화

후견감독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 피후견인과 후견인 간의 원활한 후견이 이루어지려면, 감독기관의 적절한 개입이 필수적이다. 특히 재청구 사례가 누적됨에 따라 후견감독인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강조되고 있다. 각 치매안심센터마다의 운영 편차로 인해, 후견감독인들은 본인들의 업무 권한 및 범위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사업 지침서나 매뉴얼은 주로 후견인의 사무에 중점을 두고 있어, 후견감독인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후견감독인들은 자신의 업무와 책임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자체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자주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감독 체계의 일관성을 저해하며, 치매안심센터마다 감독 수준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후견감독인의 업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표준화된 교육과 매뉴얼로 제공함으로써 일관된 감독 체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노력이 수반된다면, 공동 의사결정 등이 필요한 복잡한 사례 등이 발생할 때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 5. 장기적 측면에서 후견 종료 시점 및 재청구 절차에 대한 검토

치매공공후견사업에서 후견 종료는 주로 피후견인의 사망 시 이루어지며, 후견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재청구 절차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구조는 3년이라는 특정후견 기간이 당초 목표로 삼았던 피후견인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후견 종료 시점과 재청구 절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일차적으로는 현재와 같이 후견 종료 전에 후견인과 치매안심센터가 협력하여 피후견인의 사회적 안전망이 적절히 유지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후견 종료 이후에도 피후견인이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재청구 절차로 이어지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현장에서는 후견 종료 시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사업이 6년 동안 운영되어 재청구 사례가 1회에 그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치매환자의 상태 악화와 더불어 재청구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후견 기간을 피후견인의 상태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후견을 종료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피후견인의 상태와 그들이 처한 사회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견 기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즉,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면서도, 그들이 필요할 때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후견 종료 및 재청구 절차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보완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다양한 사례 축적을 통해 대표적인 후견 종료 사유에 대해 유형화하고, 종료 시점에 대한 가이드 제시, 재청구 사례에 대한 유형화와 유형별로 피후견인 상태를 구체화하고 그에 따른 추가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고려하는 노력 역시 필요할 것이다.

## 6. 후견 전달체계 개선 및 치매안심센터의 역할 재정립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관리 사업의 주요 전달체제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는 다시 말해 치매공공후견사업에 전담할 수 없는 구조임을 뜻한다. 피후견인 1인당 최소 3년이라는 후견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의 지속성 및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하나 현재의 전달체계는 이를 뒷받침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따라서 전달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치매안심센터 내에 후견 전담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전담팀 구성을 통해 후견사업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대기 중인 후견인 등을 피후견인 발굴 및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준전문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 역시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한정된 예산과 인력의 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 증액과 관련된 정책적 고려가 필수적이다.

장기적으로는 후견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독립적인 후견 관리 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현장에서는 치매안심센터가 후견 수요 발굴과 후견심판청구에 집중하도록 하고, 후견 매칭 및 감독은 별도의 전문 기구가 담당하는 체계가 장기적 차원에서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 운영을 통



한 후견 운영 방안 역시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타 공공후견사업의 운영과 같이 고난이도 사례나 후견인 매칭이 어려운 사례에 대해 효과적인 연계가 가능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외 후견 전달체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해외 사례, 특히 독일 같은 국가에서는 다층적인 전달체계를 통해 전문성과 일관성을 갖춘 후견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미래의 후견 수요와 변화하는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 7. 후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후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잘못된 이해는 후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후견제도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업 안내를 넘어서, 후견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자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 적극적으로 후견제도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무 또는 보수 교육 등에 후견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 역시 고려해 볼 수 있다.

나아가 캠페인과 홍보 활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함으로써, 후견인이 일상생활 지원보다는 법적·재정적 측면에서 피후견인의 입장에 서서 권리와 자율성을 보호한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파트너 플러스 사업에 후견 홍보 사업단 등과 같은 자발적인 특화 조직을 만들어 다양한 캠페인을 펼치는 방안 역시 고려할 수 있다.

더불어 미디어를 통해 홍보하는 것과 정책적 논의를 통해 후견제도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대중 매체, 온라인 플랫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후견제도의 필요성 강조는 후견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에서는 정부 홈페이지와 관련 미디어를 통해 개정된 후견법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민간기관에서는 후견의 날을 지정해 후견제도를 대중에게 알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여 후견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8. 임의후견 활성화 등 예방적 개입 강화

후견제도의 다각화와 예방적 개입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역시 경주되어야 한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 치매환자의 경우, 인지기능 저하가 심화되기 전에 임의후견 등으로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양한 경로에서 제기되고 있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이 특정후견으로 정형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인지저하가 심화되기 이전에 대상자에게 보다 다양한 후견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과 정보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사전후견 지시서(Betreuungsverfügung) 제도는 참고할 만한 사례다. 독일에서는 이를 통해 피후견인이 자신의 후견인을 미리 지정하고, 후견인이 어떻게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지를 사전에 명확히 기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후견 개입이 필요할 때에도 피후견인의 자율성과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유사한 형태로 후견에 대한 사전적 의사표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

다. 치매 초기 단계부터 피후견인의 의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후견 개입 시점에서도 권리와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임의후견 같은 후견제도의 다양한 형태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관련 교육체계 역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국문 자료]

- 강상경, 하경희. (2019). 정신장애인 공공후견제도: 성과와 한계 및 발전방향. **비판사회정책**, 63, 7-45.
- 관계기관 합동. (2023).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주요 QA**. 2024. 8. 14. 검색, <https://www.fsc.go.kr/comm/getFile?svcId=BBSTY1&upperNo=80131&fileTy=ATTACH&fileNo=2>
- 국립정신건강센터. (2023). **정신질환자 공공후견 개편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2024. 5. 17. 검색, [https://www.ncmh.go.kr/ncmh/board/boardView.do?fno=37&menu\\_cd=01\\_01&no=9503&bn=newsView#](https://www.ncmh.go.kr/ncmh/board/boardView.do?fno=37&menu_cd=01_01&no=9503&bn=newsView#)
- 김미옥, 김새봄, 유하얀. (2019). 발달장애인 공공후견과정의 쟁점과 딜레마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정책**, 46(2), 175-201.
- 김성우. (2017). 한국 후견제도의 운영과 가정법원의 역할. **법조**, 66(2), 123-160.
- 김용일. (2022).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https://dcoll.jejunu.ac.kr/common/orgView/000000010609>
- 김윤정, 김정환, 안문희, 서용성. (2017). **성년후견제도의 운영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 김현철. (2015). 자기결정권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 **법학논집**, 19(4), 357-372.
- 김효정. (2020). **신상영역에서 공공후견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에 관한 사례연구**[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https://daegu.dcollection.net/public\\_resource/pdf/200000291148\\_20240808140443.pdf](https://daegu.dcollection.net/public_resource/pdf/200000291148_20240808140443.pdf)
- 김효정. (2022). 노년케어에서의 의사결정지원-호주의 노인케어 제공자를 위한 정책개발지침. **Issue Brief**, 24, 1-3.
- 김효정. (2023). 치매공공후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치매공공후견인의 활동경험을 중심으로 -. **사회복지법제연구**, 14(1), 95-120.

민법, 법률 제19409호 (2023).

박인환. (2016). **성년후견제도 전문화·활성화를 위한 방안연구**. 법무부.

박인환. (2019). 장애인권리협약과 의사결정지원 제도화를 위한 국제적 모색. **법학연구**, 22(2), 25-64.

박인환. (2021a). 공공후견 및 의사결정지원 촉진을 위한 입법과제. **법조**, 70(3), 43-86.

박인환. (2021b). 일본의 성년후견제도가용촉진법시행동향과 의사결정지원 가이드라인으로부터의 시사. **중앙법학**, 23(2), 49-103.

박인환. (2023).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의사결정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필요성 - 후견지원과 후견감독의 기능적 역할 분담의 관점에서 -. **아주법학**, 17(2), 133-170.

박정연. (2020). 행정 영역에서의 의사결정 지원- 발달장애인 의사결정 지원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33(1), 133-167.

박정연. (2022).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 - 공법적 분석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53, 1-38.

박정연. (2023). 치매노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 의사결정 지원과 돌봄의 연계적 고찰. **Institute for Legal Studies**, 56, 165-20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18호(201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650호(2015).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등을 위한 후견법인 지정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75호 (2017).

백승흠. (2011). 독일의 후견·성년후견제도의 개혁에 관한 소고. **한독사회과학논총**, 21(4), 161-182.

보건복지부. (2015a). **2015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2024. 4. 16. 검색, [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19&list\\_no=337270&seq=1](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19&list_no=337270&seq=1)

보건복지부. (2015b). **2016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24. 4. 16. 검색, <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

- 0010&list\_no=331416&seq=1
- 보건복지부. (2016). **2016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2024. 4. 16. 검색, [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19&list\\_no=337379&seq=1](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19&list_no=337379&seq=1)
- 보건복지부. (2017a). **2017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2024. 4. 16. 검색, [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19&list\\_no=338390&seq=2](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19&list_no=338390&seq=2)
- 보건복지부. (2017b). **2017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24. 4. 16. 검색, [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10&list\\_no=337861&seq=1](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10&list_no=337861&seq=1)
- 보건복지부. (2017c). **정신장애인 공공후견법인 지정 신청 안내(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388호)**. 2024. 4. 16. 검색, [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03&list\\_no=339921&seq=1](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03&list_no=339921&seq=1)
- 보건복지부. (2018a). **2018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2024. 4. 16. 검색, [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26&list\\_no=344244&seq=2](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26&list_no=344244&seq=2)
- 보건복지부. (2018b). **2018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24. 4. 16. 검색, [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10&list\\_no=343301&seq=1](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10&list_no=343301&seq=1)
- 보건복지부. (2019a). **2019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2024. 4. 16. 검색, [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19&list\\_no=347693&seq=2](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19&list_no=347693&seq=2)
- 보건복지부. (2019b). **2019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24. 4. 16. 검색, [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10&list\\_no=347243&seq=1](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10&list_no=347243&seq=1)
- 보건복지부. (2020a). **2020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2024. 4. 16. 검색, [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19&list\\_no=353126&seq=2](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19&list_no=353126&seq=2)

- 보건복지부. (2020b). 2020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24. 4. 16. 검색, [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10&list\\_no=352616&seq=1](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10&list_no=352616&seq=1)
- 보건복지부. (2021a). 2021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2024. 4. 16. 검색, [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26&list\\_no=365389&seq=1](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26&list_no=365389&seq=1)
- 보건복지부. (2021b). 2021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24. 4. 16. 검색, [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10&list\\_no=363187&seq=1](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10&list_no=363187&seq=1)
- 보건복지부. (2022a). 2022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2024. 4. 16. 검색, [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19&list\\_no=370411&seq=2](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19&list_no=370411&seq=2)
- 보건복지부. (2022b). 2022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24. 4. 16. 검색, [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10&list\\_no=369565&seq=1](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10&list_no=369565&seq=1)
- 보건복지부. (2023a). 2023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2024. 4. 16. 검색, [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19&list\\_no=375430&seq=3](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19&list_no=375430&seq=3)
- 보건복지부. (2023b). 2023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24. 4. 16. 검색, [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10&list\\_no=374925&seq=1](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10&list_no=374925&seq=1)
- 보건복지부. (2024a). 2024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24. 3. 28. 검색, [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10&list\\_no=1480297&seq=1](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10&list_no=1480297&seq=1)
- 보건복지부. (2024b). 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본문). 2024. 3. 28. 검색, [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19&list\\_no=1480673&seq=2](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19&list_no=1480673&seq=2)



- 보건복지부. (2024c). **2024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2024. 4. 16. 검색, [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19&list\\_no=1480768&seq=2](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19&list_no=1480768&seq=2)
- 보건복지부. (2024d). **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서식)**. 2024. 3. 28. 검색, [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19&list\\_no=1480673&seq=4](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19&list_no=1480673&seq=4)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 (2012. 7. 9.). **발달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한다 -발달장애인 장애유형별로 특화된 종합지원계획 수립-**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27&list\\_no=274191&seq=1](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27&list_no=274191&seq=1)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2013. 6. 24.). **7월 1일부터 성년후견제도 시행**[보도자료]. [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27&list\\_no=287817&seq=1](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27&list_no=287817&seq=1)
-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2022). **2022년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 사업 안내**. 2024. 5. 17. 검색, [https://www.ncmh.go.kr/ncmh/board/boardView.do?fno=106&menu\\_cd=04\\_03\\_00\\_04&gubun\\_no=9&no=9160&bn=SNMH\\_BOARD#](https://www.ncmh.go.kr/ncmh/board/boardView.do?fno=106&menu_cd=04_03_00_04&gubun_no=9&no=9160&bn=SNMH_BOARD#)
-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2023). **2023년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 사업안내**. 2024. 5. 17. 검색, [https://www.ncmh.go.kr/ncmh/board/boardView.do?fno=106&menu\\_cd=04\\_03\\_00\\_04&gubun\\_no=9&no=9356&bn=SNMH\\_BOARD#](https://www.ncmh.go.kr/ncmh/board/boardView.do?fno=106&menu_cd=04_03_00_04&gubun_no=9&no=9356&bn=SNMH_BOARD#)
-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2024).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 사업안내**. 2024. 4. 16. 검색, [https://www.ncmh.go.kr/mentalhealth/board/boardView.do?no=9665&menu\\_cd=04\\_02\\_00\\_04](https://www.ncmh.go.kr/mentalhealth/board/boardView.do?no=9665&menu_cd=04_02_00_04)
- 보조금통합포털. (연도 미상). **보조사업 현황**. 2024. 5. 17. 검색, <https://www.bojo.go.kr/bojo.do>
-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2015). **3. 후견업무의 흐름\_법정후견업무**. 2024. 4. 29. 검색, <http://kscg1.mireene.com/xs/dbgk/6787>

-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2023). **통계로 알아보는 우리나라 후견(감독) 사건의 현황**. 2024. 5. 8. 검색, <http://kscgl.mireene.com/xedbdata/13827>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연도 미상). **공공후견인 교육 안내**. 2024. 5. 13. 검색, [http://m214.mirweb.co.kr/bbs/content.php?co\\_id=education](http://m214.mirweb.co.kr/bbs/content.php?co_id=education)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2023).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활동 매뉴얼**. 2024. 4. 16. 검색, [http://m214.mirweb.co.kr/bbs/board.php?bo\\_table=c\\_material&wr\\_id=6](http://m214.mirweb.co.kr/bbs/board.php?bo_table=c_material&wr_id=6)
- 서성운, 최성현. (2023). 치매 노인 공공후견제도에 관한 정책연구: Gilbert와 Terrell 분석 틀을 중심으로. **공공정책연구**, 40(1), 1-34.
- 서울가정법원, 한국후견협회. (2023). **제2회 한국후견대회-한국후견제도 시행 10주년, 성과와 전망**-[자료집].
- 송영신. (2017). 우리나라 공공후견제도의 현황 및 향후 개선 과제 - 저소득 치매노인(시설거주 및 재가독거)을 중심으로 -. **사회보장법연구**, 6(1), 211-242.
- 신권철. (2013). 성년후견제도의 쟁점과 과제: 답습과 극복: 답습과 극복. **사회보장법연구**, 2(2), 39-88.
- 오채근. (2011). 보건의료영역에서의 동의능력과 성년후견제. **사회정신의학**, 16(1), 11-20.
- 오혜인, 박수빈. (2020). 사회복지 전문가 후견인들의 치매 노인 후견 경험에 관한 연구-신상보호과정에서 피후견인의 자기결정 지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72(4), 181-213.
- 오혜인, 이아영. (2021). 치매노인 공공후견 과정의 자기결정지원 요소에 대한 비판적 고찰 -치매공공후견인을 위한 「후견사무매뉴얼」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73(3), 123-151.
- 이동석. (2019). 지원의사결정의 개념 및 필요성에 대한 기초고찰. **후견**, 2(1), 1-25.
- 이성우. (2018). 영국의 치매 돌봄 경로 구축 사례. **정책동향**, 12(8), 78-94.
- 이영규. (2020). 피성년후견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법학논총**, 37(4), 273-297.

- 이은정. (2018). **한국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의 경험에 관한 연구 - 공공후견활동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http://www.dcollection.net/handler/cau/000000228608>
- 이은정, 장혜림, 박순우. (2022). 시설거주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의 후견활동경험에 관한 연구. **사례관리연구**, 13(3), 153-176.
- 이지은. (2020). 공공후견과 후견법인의 역할. **법학논총**, 47, 293-326.
- 이지은. (2022). 치매와 의사결정지원 -미국의 의사결정지원법(Supported Decision-Making Law)의 검토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54, 231-260.
- 이현곤. (2018). **성년후견제도의 이해와 활용 - 치매노인과 발달장애인의 신장보호와 재산관리**. 고시계사.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24호 (2016).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902호 (2024).
- 제철웅. (2015). 고령자의 판단능력 쇠퇴를 대비한 미래설계와 새로운 성년후견제도. **법학논총**, 32(1), 149-175.
- 제철웅, 최윤영, 유혜인. (2016). 공공후견인의 직무 분석과 그 시사점. **비교사법**, 23(2), 651-686.
- 제철웅, 김효정, 박인환. (2019). 치매국가책임제와 의사결정지원제도. **의생명과학과 법**, 21, 81-107.
- 제철웅, 정민아. (2020). 신장보호 영역에서의 지원의사결정 제도 - 영국 정신능력법상의 제도를 중심으로. **의생명과학과 법**, 23, 5-36. <http://dx.doi.org/10.22397/bml.2020.23.5>
- 제철웅, 최윤영, 이현주, 김효정, 오혜인. (2023). **치매노인의 의사결정 지원에 중점을 둔 재산관리 및 신장보호 목적 공공후견사업 수행의 현황 분석과 활성화 방안 연구**. 국립중앙의료원·중앙치매센터·후견실태연구센터.
- 조미경, 김란효. (2017). 공공후견인의 발달장애인 후견활동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37, 217-237.

-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2017). **후견인이 필요한가요?**. 2024. 4. 16. 검색, <https://www.broso.or.kr/hp/bbs/ViewCmpPosNttDtl.do?cnterCd=01000001&bbsId=0&bbsTyCd=02&nttId=1414>
- 중앙치매센터. (2024a). **전국 및 시도별 치매유병현황**. 2024. 5. 8. 검색, [https://www.nid.or.kr/info/today\\_list\\_2023.aspx](https://www.nid.or.kr/info/today_list_2023.aspx)
- 중앙치매센터. (2024b). **중앙치매센터 치매공공후견사업 현황 내부자료**.
- 중앙치매센터. (2024c). **치매의 일반적 경과**. 2024. 6. 1. 검색, [https://www.nid.or.kr/info/diction\\_list3.aspx?gubun=0306](https://www.nid.or.kr/info/diction_list3.aspx?gubun=0306)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4). **성년후견의 의의 및 종류**.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94&ccfNo=3&cciNo=1&cnpClsNo=1#694.3.1.1.2711314>
- 최진술, 윤지훈, 김제완. (2021). 고령자의 후견을 위한 가족 간 공동명의 예금계좌의 법적 쟁점 -영미법상 older adult joint bank account 제도의 시사점-. **가족법연구**, 35(3), 131-180. <http://dx.doi.org/10.31998/KSFL.2021.35.3.131>
- 최희경. (2017). 치매인을 위한 인권중심 사회복지실천의 방향과 방안에 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72(1), 69-91.
- 하경희, 강상경, 김남희, 김성용, 김경희. (2019). 정신장애인 공공후견제도와 사회복지사의 역할. **한국사회복지교육**, 48, 31-61.
-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2024). **공공후견 업무 교육 자료 & 업무 매뉴얼** [내부자료].
- 행정안전부. (2024). **주민등록인구현황: 행정구역(읍면동)별/5세별 주민등록인구(2011년~)**. 2024. 5. 8.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5N&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5N&conn_path=I2)
- 홍민우. (2024). **정신장애인 공공후견서비스(정신질환자 공공후견 활동지원사업)** [전문가 포럼 발표자료].
- 홍정기. (2024).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법인 현황** [전문가 포럼 발표자료].

- 통계청. (2022). **장래가구추계: 가구주의 연령/가구유형별 추계가구-전국**. 2024.  
5. 8.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Z0502&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Z0502&conn_path=I3)
- 통계청. (2023). **장래인구추계: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5세별)/전국**. 2024.  
5. 8.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I3)

### [일문 자료]

- 最高裁判所. (2020). **意思決定支援を踏まえた後見事務のガイドライン**. <https://www.mhlw.go.jp/content/000750502.pdf>
- 最高裁判所. (2024). **成年後見関係事件の概況 - 令和5年1月~12月 -**. [https://www.courts.go.jp/toukei\\_siryou/siryo/kouken/index.html](https://www.courts.go.jp/toukei_siryou/siryo/kouken/index.html)
- 厚生労働省. (n.d.a). **成年後見制度利用促進**.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202622.html>
- 厚生労働省. (n.d.b). **成年後見制度利用促進**.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202622\\_00028.html](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202622_00028.html)
- 厚生労働省. (n.d.c). **第二期成年後見制度利用促進基本計画・施策の実施状況等**.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202622\\_00017.html](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202622_00017.html)
- 厚生労働省. (n.d.d). **中核機関の役割**. <https://www.mhlw.go.jp/file/06-Seisakujouhou-12000000-Shakaiengokoku-Shakai/0000203641.pdf>
- 厚生労働省. (n.d.e). **中核機関の立ち上げ先駆的取組事例集(前半版)**. <https://www.mhlw.go.jp/content/001035746.pdf>
- 厚生労働省. (n.d.f). **成年後見制度利用促進法及び利用促進基本計画について**. <https://www.mhlw.go.jp/content/000983172.pdf>
- 厚生労働省. (n.d.g). **成年後見はやわかり**. <https://guardianship.mhlw.go.jp/>

- 厚生労働省. (n.d.h). *自治体・中核機関の取組事例検索*. <https://guardianship.mhlw.go.jp/municipality/search/>
- 厚生労働省. (n.d.i). *K-ねっと*. <https://www.mhlw.go.jp/content/12000000/001112978.pdf>
- 厚生労働省. (n.d.j). *市区町村長申立ての事務の流れ*. <https://www.mhlw.go.jp/content/000983172.pdf>
- 厚生労働省. (2018). *地域における成年後見制度利用促進に向けた体制整備のための手引き*. <https://www.mhlw.go.jp/content/000503081.pdf>
- 厚生労働省. (2024). *成年後見制度利用促進に係る取組状況等について*. <https://www.mhlw.go.jp/content/12000000/001228464.pdf>

#### [영문 자료]

- Brose, D. (2022). *Aspects of the Reform of the German Legislation of Betreuung*. [https://www.americanbar.org/groups/senior\\_lawyers/resources/voice-of-experience/2010-2022/aspects-reform-german-legislation-betreuung/](https://www.americanbar.org/groups/senior_lawyers/resources/voice-of-experience/2010-2022/aspects-reform-german-legislation-betreuung/)
- Mental welfare commission for Scotland. (2021). *Supported decision making - good practice guide*. <https://www.mwscot.org.uk/sites/default/files/2021-02/Supported%20Decision%20Making%202021.pdf>
- United Nations. (2014).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General Comment No. 1*.

#### [독문 자료]

- Betreuungswerk Berlin. (n.d.). *Betreuungswerk*. <https://www.btwerk.de/betreuungswerk/index.html>
- BGB(Bürgerliches Gesetzbuch). (1896). <https://www.gesetze-im-internet.de/bgb/>

- BGT e.V. (n.d.). *Der Weg zur erweiterten Unterstützung*. [https://www.bgt-ev.de/fileadmin/Mediendatenbank/Tagungen/Nord-BGT/15/AG4\\_Erweiterte\\_Unterst%C3%BCtzung\\_\\_11\\_BtOG.pdf](https://www.bgt-ev.de/fileadmin/Mediendatenbank/Tagungen/Nord-BGT/15/AG4_Erweiterte_Unterst%C3%BCtzung__11_BtOG.pdf)
- Bobisch, K. (n.d.). *Die Reform des Betreuungsrechts: Ein Überblick*. <https://berufsbetreuer-werden.de/wp-content/uploads/2023/11/Die-Reform-2023-Ein-Ueberblick.pdf>
- BtOG(Betreuungsorganisationsgesetz). (2021). <https://www.gesetze-im-internet.de/btogg/BtOG.pdf>
- BtRegV(Verordnung über die Registrierung von beruflichen Betreuern). (2022). <https://www.gesetze-im-internet.de/btregv/>
-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n.d.). *Gemeinsam. Auf meinem Weg. Zu mehr Selbstbestimmung in der Betreuung [Poster]*. [https://www.bmj.de/SharedDocs/Publikationen/DE/Broschueren/Betreuungsrecht\\_Platat\\_2.html](https://www.bmj.de/SharedDocs/Publikationen/DE/Broschueren/Betreuungsrecht_Platat_2.html)
-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2023a). *Betreuungsrecht: Mit ausführlichen Informationen zur Vorsorgevollmacht*. <https://www.bmj.de/SharedDocs/Publikationen/DE/Broschueren/Betreuungsrecht.html>
-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2023b). *Häufig gestellte Fragen zum Betreuungsrecht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guardianship law]*. [https://www.bmj.de/SharedDocs/Downloads/DE/Themen/Nav\\_Themen/BetrR\\_FAQ.pdf?\\_\\_blob=publicationFile&v=2](https://www.bmj.de/SharedDocs/Downloads/DE/Themen/Nav_Themen/BetrR_FAQ.pdf?__blob=publicationFile&v=2)
- Bundesverband der Berufsbetreuer/innen. (n.d.). *Weiterführende Themen*. <https://www.berufsbetreuung.de/berufsbetreuung/was-ist-rechtliche-betreuung/daten-und-fakten/>
- Deutscher Bundestag. (2020). *Mehr als 4,7 Millionen Vorsorgevollmachten im Zentralen Vorsorgeregister*. [https://www.bundestag.de/webarchiv/presse/hib/2020\\_07/707306-707306](https://www.bundestag.de/webarchiv/presse/hib/2020_07/707306-707306)

- FamFG(Gesetz über das Verfahren in Familiensachen und in den Angelegenheiten der freiwilligen Gerichtsbarkeit). (2008). <https://www.gesetze-im-internet.de/famfg/>
- GVG(Gerichtsverfassungsgesetz). (1877). <https://www.gesetze-im-internet.de/gvg/>
- Hamburger Betreuungsvereine. (n.d.). *Aktuelles*. [https://hamburgerbetreuungsvereine.de/2020/wordpress/wp-content/uploads/2024/03/231129\\_Betreuungsjournal-51\\_Digital-ES.pdf](https://hamburgerbetreuungsvereine.de/2020/wordpress/wp-content/uploads/2024/03/231129_Betreuungsjournal-51_Digital-ES.pdf)
- Hochtaunuskreis. (n.d.). *Betreuungsbehörde*. <https://www.hochtaunuskreis.de/Betreuungsbeh%C3%B6rde.html>
- Landeshauptstadt München. (n.d.). *Betreuungsstelle*. <https://stadt.muenchen.de/infos/betreuungsstelle.html>
- SGB I (Sozialgesetzbuch Erstes Buch). (1975). [https://www.gesetze-im-internet.de/sgb\\_1/](https://www.gesetze-im-internet.de/sgb_1/)
- VBVG(Gesetz über die Vergütung von Vormündern und Betreuern). (2021). [https://www.gesetze-im-internet.de/vbvg\\_2023/](https://www.gesetze-im-internet.de/vbvg_2023/)





## Abstract

### **Exploring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 Focusing on decision-making support for older adults with dementia and cognitive decline

Project Head: Lee, Sunhee

The primary aim of this study is to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current public guardianship system for individuals with dementia, focusing on enhancing their protection and self-determination. The Public Guardianship Program for Dementia, introduced in July 2018 following the amendment of the Dementia Management Act, marked a significant institutional step beyond mere caregiving, enabling comprehensive decision-making support for the older adults with dementia. However, clear limitations in the system persist and require resolution.

Based on an analysi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 studies, as well as qualitative research conducted with users and providers of the public guardianship program,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are proposed:

First, the concept of decision-making support for individuals with dementia must be redefined, and a systematic approach to its implementation is necessary. Second, it is crucial to en-

hance the expertise of guardians and improve the educational framework. In addition to legal knowledge, training should focus on communication skills and practical competencies, while also fostering a network for guardians to share experiences and best practices. Third, guidelines clarifying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guardians should be established based on the accumulation of diverse guardianship cases. Fourth, the role of supervisory guardians requires clearer definition. Fifth, guardianship termination timelines and reapplication processes need to be reviewed from a long-term perspective. Sixth, the guardianship service delivery system must be improved, with a redefinition of the role of Dementia Relief Centers. Seventh, efforts must be made to improve societal awareness of guardianship. Finally, preventive measures, such as activating voluntary guardianship and providing more information, should be considered. Long-term strategies, including the preparation of advance guardianship directives, should also be explored.

**Key words:** Public Guardianship for Dementia, Older adults with Dementia, Decision-Making Support